디지털통상 교재
시리즈 3권
2023. 12월

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



산업통상자원부
KSA 한국표준협회

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

발간사

세계 경제가 급속히 디지털화 되어감에 따라 국제 통상환경도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은 기존의 통상 수단의 역할에서 더욱 확장하여 디지털 자체가 교역 대상으로서 거래·유통·소비되는 통상의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온라인 소비자 보호, 디지털 제품 비차별,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기존의 통상규범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국제통상 환경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되게 되었고, 세계 각 국은 이러한 이슈들이 디지털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자국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통상이 향후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디지털통상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한국-유럽연합 디지털통상협정,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세계 첫 복수국간 디지털협정),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통상 관련 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주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 전반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통상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통상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적기에 산업 현장 등에 보급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대학 학부과정 디지털통상 관련 강좌 개설, 산업현장 실무교육, 고급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석사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사업 확대 필요성 및 높은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석사과정 참여 대학원을 추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통상 관련 강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세 번째로 “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통상은 비교적 최근 등장한 개념으로 관련 용어 및 개념들이 생소하여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실제 디지털통상 협정 또는 실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요 기본개념과 용어 100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해당 개념 및 용어와 관련된 사례·이슈 등의 내용도 아울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디지털통상 입문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교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시의성있고 활용도 높은 디지털통상 교재를 꾸준히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통상 네트워크 확장과 더불어 인력양성 및 민·관 소통강화 등 디지털통상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교재 개발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집필진 분들과 한국표준협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교재가 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 문

국제 통상환경이 급격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을 이끌어 갈 미래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국내 2개 대학원 석사과정 및 5개 대학 학부과정 강좌 지원, 디지털통상 분야 실무급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교재 개발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세 번째 디지털 통상 전문 교재입니다. 2021년에는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2022년에는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가 출간되어 대학뿐 아니라 현업에서도 널리 활용되며 디지털통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누구나 디지털통상 협정에 대한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통상 협정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교재는 제1부 '디지털통상 용어'와 제2부 '디지털통상 협정 및 파트너십 용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실린 용어는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부속서 가'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정부, 학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제1부는 각 용어의 의미, 관련 사례 및 쟁점, 주요 법령·정책 동향, 관련 협정문·파트너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용어는 크게 디지털 제품·서비스, 디지털통상 및 비즈니스 촉진, 데이터,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디지털 경제의 개방·혁신 및 사회를 기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2부 '디지털통상 협정 및 파트너십 용어'는 양자, 다자간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파트너십의 개요, 주요 조항, 체결이 갖는 주요 의의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지털통상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과 핵심 설명을 담은 본 교재가 디지털통상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비롯해 통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민간 실무진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재 집필과 편집에 애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표준협회 회장 강명수

본 교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교재에 기술된 내용은 집필진 개인의 의견이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표준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Contents

제1부. 디지털통상 용어 ····· 8

1장. 디지털 제품/서비스 ····· 10

1절. 디지털 제품 ····· 11

1. 디지털 제품 ····· 12
2.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 15
3. 디지털 단일시장 ····· 17
4. 망 중립성 ····· 19
5. 망 사용료 ····· 22
6. 무관세모라토리움 ····· 25
7. 전자적 전송 ····· 27

2절. 디지털 서비스 ····· 29

8. 디지털 서비스 ····· 30
9. 온라인 플랫폼 ····· 32
10.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 ····· 35
11. 네트워크 효과 ····· 38
12. 다면시장 ····· 41
13. OTT 서비스 ····· 43

3절. 디지털 기술 ····· 45

14. 사물인터넷 ····· 46
15. 클라우드 컴퓨팅 ····· 48
16.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 51
17. 빅데이터 ····· 54
18. 인공지능 ····· 56
19. 블록체인 ····· 58
20. 분산원장기술 ····· 60
21. 디지털 신원 ····· 62
22. 메타버스 ····· 64
23.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66
24. 핀테크 ····· 68
25. 레그테크 ····· 70

2장. 디지털통상 및 비즈니스 촉진 ····· 72

1절. 디지털 전환과 통상 ····· 73

26. 디지털통상 ····· 74
27.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 76
28.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78
29. 물류 ····· 80
30. 전자송장 ····· 83
31. 전자지급 ····· 85

32. 종이없는 무역 ····· 87
33. 특송화물 ····· 89
34. 전자상거래 ····· 92
35. 국내 전자거래 체계 ····· 94
36.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 96
37. 싱글 윈도우 ····· 98
2절. 디지털세 ····· 101
38. 디지털세 ····· 102
39. 국제조세과세원칙 ····· 105
40. 조세조약 ····· 107
41. 조세피난처 ····· 109
42. 가상고정사업장 ····· 111
43.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액션 플랜 ····· 113

3장. 데이터 ····· 116
1절. 공공데이터 ····· 117
44. 공공데이터 ····· 118
45. 공공데이터법 ····· 120
2절. 기업데이터 ····· 123
46. 기업데이터 ····· 124
47. 데이터 가치평가 ····· 126
48. 데이터 거래 ····· 128
3절. 마이데이터 ····· 131
49. 마이데이터 ····· 132
50. 마이데이터 기본원칙 ····· 134
51.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 136
4절. 개인정보보호 ····· 139
52. 개인정보보호 ····· 140
53.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 142
54. 적정성 결정 ····· 145
55. 개인정보 보호법 ····· 147
56. 데이터산업법 ····· 149
57. 신용정보법 ····· 151
5절. 데이터 이동 ····· 153
58. 국경 간 데이터 이동 ····· 154
59. 네트워크안전법 ····· 157
60. 컴퓨터 설비의 위치 ····· 160
61.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 163
62. 대서양 횡단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 166
63. 데이터 혁신 ····· 169
64. 데이터 주권 ····· 172
65. 데이터 배당 ····· 174

4장.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 176
66.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 ····· 178
67. 소스코드 ····· 180
68.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세지 ····· 182
69. 인터넷 접근 및 자유화 ····· 185
70. 사이버보안 ····· 187
71. 탈린 매뉴얼 ····· 189
72. 온라인 소비자 보호 ····· 191

5장. 디지털 경제의 개방과 혁신 ····· 194
73. 디지털 경제 ····· 196
74.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 198
75.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 200
76. 정부데이터 공개 ····· 202
77. 디지털플랫폼 정부 ····· 204
78. EU 디지털 시장법 ····· 206
79. EU 디지털 서비스법 ····· 209
80. 온라인플랫폼공정화 ····· 211

6장. 디지털 경제와 사회 ····· 214
81. 디지털 포용 ····· 216
82. 디지털 격차 ····· 218
83. 디지털 리터러시 ····· 220
84. 디지털 생태계 ····· 222
85. 디지털 공공재 ····· 224
86. 디지털 권리 ····· 226
87. 상호 운용성 ····· 228
88. 투명성 ····· 230
89. 기술 중립성 ····· 232

제2부. 디지털통상 협정/파트너십 용어 ····· 234
90. FTA 상 전자상거래 챕터 ····· 236
91.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 241
92.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 244
93.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 249
94.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 253
95.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 258
96.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 263
97.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 ····· 266
98. 한국-EU 디지털파트너십 ····· 272
99. EU-싱가포르 디지털파트너십 ····· 277
100.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 협상 ····· 282

제 1 부

디지털통상 용어

제1장 디지털 제품/서비스

제2장 디지털 통상 및 비즈니스 촉진

제3장 데이터

제4장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제5장 디지털 경제의 개방과 혁신

제6장 디지털 경제와 사회

산업통상자원부 KSA 한국표준협회 비매품

제 1 장

디지털 제품/서비스

제1절 디지털 제품

01. 디지털 제품 (Digital Produc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디지털 제품이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될 수 있고,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것들로서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비디오, 사진, 음악 등의 파일과 같은 것을 의미함.

전통적인 무역의 맥락에서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책, DVD로 재생하는 영화, CD로 재생하는 음악, CD-ROM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소비했다면, 디지털 통상의 맥락에서는 책,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을 파일 형태로 전자적으로 전송함으로써 물리적 제품의 전달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USJDTA) 제1조 (g)항

"디지털 제품은 상업적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암호화,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음향녹음 또는 기타 제품을 말함"

"Digital product means a computer program, text, video, image, sound recording, or other product that is digitally encode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and that can be transmitted electronically"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제품 정의의 법적 모호성

WTO 회원국들은 책, 음악,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소비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분류하여 취급하고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 예를 들면, EU와 미국은 디지털화가 가능한 미디어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EU는 전자적 전송이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상품으로 분류하거나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하이브리드로 분류하는 것을 선호함.[1] 이처럼 현재의 디지털 통상 규범상 디지털 제품의 정의가 법적으로 모호함. 디지털 제품의 정의가 포함하는 제품을 보면, 디지털 제품은 컴퓨터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통신 서비스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2] WTO 규범은 상품과 서비스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함에 따라 적용하는 협정이 GATT인지 GATS인지 차이가 나는데, 이는 회원국들이 합의한 개방 의무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제품을 상품과 서비스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한미 FTA에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정의가 도입된 이후, 다른 협정에서도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정의에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 제품의 무역이 상품무역 또는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음. 또한 디지털 제품에는 디지털 화폐(digitised representation of a financial instrument, including money)가 포함되지 않음.

3D 프린팅에 활용되는 CAD 파일에 대한 관세 적용

WTO 규범과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 디지털 제품이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파일과 제품 같은 경우 어떤 WTO 협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회원국의 국내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기도 함. 3D 프린팅의 경우, CAD(Computer-Aided

[1] Neeraj, R. (2019). Trade Rules for the Digital Economy: Charting New Waters at the WTO. *World Trade Review, 18*(S1), S125.
[2] 김민정. (2021).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 통상법무정책, 1, 70.

Design) 파일을 제작한 후, 3D 프린터와 필요한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품을 제조할 수 있음. 그렇다면 CAD 파일을 디지털 제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상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실제로 미국 연방 순회 법원(US Federal Circuit Court)에서는 미국 기업이 고객들의 치아 측정치를 파키스탄에 보내 엔지니어들이 제작한 치아 교정기의 CAD 파일을 미국 기업이 다시 받았을 때, CAD 파일을 미국 관세국 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물품(Article)으로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이러한 판결은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을 물리적 실체로 간주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제품이 서비스화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소프트웨어, 음향물, 음성물, 영상물, 전자서적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 수출입을 "무역"이라고 정의함. 2003년에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 거래가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무역에 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 제2조(정의) 제1항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한국 -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3]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미국 FTA *KORUS FTA*	제15.3조 디지털제품 *Article 15.3* *Digital Products* 제15.9조 정의 *Article 15.9* *Definitions*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가.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그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 또는 나.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 *1. Neither Party may impose customs duties, fees, or other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a) if it is an originating good, a digital product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b) a digital product transmitted electronically.* 디지털제품이라 함은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digital products means computer programs, text, video, images, sound recordings, and other products that are digitally encoded an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
2	미국-일본 디지털무역 협정 *USJDTA*	제1조 정의[4] Article 1 Definitions	"디지털 상품"이란, 상업적 판매나 유통을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암호화되거나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음향녹음 또는 기타 상품을 말한다. *"digital product" means a computer program, text, video, image, sound recording, or other product that is digitally encode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and that can be transmitted electronically*
3	싱가포르-칠레- 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DEPA*	제3.1조 정의 *Article 3.1* *Definitions*	위와 동일 *"digital product" means a computer programme, text, video, image, sound recording or other product that is digitally encode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and that can be transmitted electronically*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SADEA)에도 해당 용어의 언급이 있음.
[4] 한국법제연구원(2020), 주요 국가 디지털 무역 관련 협정문. 이 문건의 번역을 따름.

02.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MFN)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은 차별 없는 교역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되었음.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에 관한 협정문 상의 조항은 이런 WTO 비차별 원칙을 명문화하여 디지털 제품에 적용한 것으로서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의 동종(like) 디지털 제품과 대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함. 일부 디지털 통상 관련 협정(예: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5])에서는 비차별 대우의 내용을 내국민대우로 한정하고 최혜국대우를 포함하지 않음. 즉, 당사국은 상대국 디지털 제품과 자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상대국 제품과 제3국의 동종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상당수의 RTA(예: 한미 FTA)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최혜국대우 의무도 적용함. 비차별 대우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정부 보조금, 방송,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와 의무와의 불합치가 일어나는 경우 등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제14.6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음."

"Neither Party shall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a digital product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to a digital product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동종 디지털 제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 판단에 고려할 사항

동 조항의 핵심은 동종 디지털 제품에 관한 판단과 동종 제품을 불리하게 대우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6] 상대국의 동종 제품을 판단하려면, 디지털 제품의 원산지(rules of origin)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디지털 제품의 생산에 협정 당사국 외에 다른 국가의 영역 또는 인(人)이 관여할 수 있음. 또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의무는 광범위한 행위(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 또는 상업)와 행위자(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행위자와 행위에 있어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불리한 대우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미국의 입장 변화[7]

미국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 당시만 해도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을 복수형으

[5]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부속서한.
[6] 김민정. (2021).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 통상법무정책, (1), 72.
[7] Lester, S. (2021). Digital Trade Agreements and Domestic Policy. *Free Trade Bulletin*. CATO Institute. 참고하여 작성.

로 표현하며 이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 그런데 새롭게 협상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용어가 바뀌어 디지털 제품을 단수형(a digital product)으로 지칭하게 됨. 이러한 변화는 불리한 대우를 판단할 때 국내외 제품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것인지 또는 개별 디지털 제품에 대한 대우를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게 함. 예를 들어, 디지털 제품에 대한 멕시코나 캐나다의 조치가 해당 제품군 전체에 국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즉, 모든 국가의 기업에 어떠한 불리한 대우가 발생) 개별 미국 제품에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USMCA 제19.4조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해당 없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8]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제19.4조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9] *Article 19.4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1. 어느 당사국도 다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생산되거나 출시되거나 계약되거나 위탁되거나 상업적으로 최초 제공된 디지털 제품, 또는 다른 당사국의 적용대상자가 저자, 연주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인 디지털 제품에 대해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 2. 양 당사국은 일방 당사국의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보증 및 보험을 비롯하여 그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무상지원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한다. *1. No Party shall accord less favorable treatment to a digital product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or to a digital product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an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2.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a subsidy or grant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a government-supported loan, guarantee, or insurance.*
2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6조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Article 14.6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제1항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 또는 제17장(지적재산권)에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Neither Party shall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a digital product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to a digital product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of any inconsistency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contained in an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or with Chapter 17 (Intellectual Property).* *3.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4.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broadcasting.*

[8] 한국-미국 FTA, 한국-싱가포르 FTA, 한국-중미 FTA,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USJDTA)에도 해당 용어의 언급이 있음.
[9] 한국법제연구원(2020), 주요 국가 디지털 무역 관련 협정문. 이 문건의 번역을 따름.

03. 디지털 단일시장 (Digital Single Marke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디지털 단일시장이란 유럽연합(EU)이 지역 통합을 위해 물리적으로 단일 시장을 추진했던 것처럼 디지털 시장에서도 기업 성장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여 단일 시장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EU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10]

"디지털 단일시장이란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개인과 기업이 공정한 경쟁 및 높은 수준의 소비자 및 개인 정보보호의 조건 하에서 국적 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온라인 활동에 순조롭게 접근하여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곳을 의미함"

"A Digital Single Market is one in which the free movement of goods, persons, services and capital is ensured and where individuals and businesses can seamlessly access and exercise online activities under conditions of fair competition, and a high level of consumer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or place of residence."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EU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11]

디지털 단일시장은 EU의 'Europe 2020 전략'의 일환으로 EU 단일시장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EU 회원국 간 디지털 조화(Digital Harmonisation)를 이루기 위한 전략임. 디지털 단일시장과 관련해서는 음악 다운로드 사업 진흥, 온라인 지불을 위한 단일 구역 설정, 가상공간에서의 EU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디지털 아젠다가 설정됨.[12]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3개의 분야(Three pillars)를 토대로 2015년에 수립됨. 먼저, 유럽 전역의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임. 이를 위해 EU 회원국 간 계약법 및 저작권법상 차이를 줄이고, 저렴하고 고품질의 국경 간 소포 배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며, 적합한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EU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 발생하는 불공정한 차별(지리적 차단(geo-blocking)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추진함. 두 번째로는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만드는 것임. 이를 위해 신뢰성 있는, 고속의 통신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마련하며, 디지털 서비스와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신뢰와 보안을 강화함. 마지막으로, 유럽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성을 최대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 ICT 인프라 및 기술(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과 연구 및 혁신에 투자하고, 디지털 경제의 성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헬스케어, 교통, 환경, 에너지 등 핵심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표준을 조화하는 계획을 추진함.

[10] European Commission. (2015).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11] Ibid.
[12] 노유나·최선미. (2016). EU 디지털 정책 및 전략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31*(2), 2.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중일 디지털 단일시장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이 발표된 이후, 2015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정상은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하나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한중일 디지털 단일시장의 주된 내용임. 2018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수행한 공동연구가 마무리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13]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SADEA*	제30조 디지털 통상을 위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Article 30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for Digital Trade*[14]	1. 당사국은 준수 비용을 감소하고 일관성, 상호운용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증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제대로 작동하는 디지털 경제를 조성하는 데 표준의 역할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디지털 통상을 지원하는 표준의 개발 및 채택과 관련이 있는 지역 및 국제 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e role of standards in reducing barriers to trade and fostering a well-functioning digital economy, including their potential to decrease compliance costs and increase consistency, interoperability, reliability and efficiency.* *2. Each Party shall, where appropriate, actively participate in the work of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standards that support digital trade.*
2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DEPA*	제2.7조 전자지급 *Article 2.7 Electronic Payments*[15]	1. 전자지급, 특히 신규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 촉진,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 및 상호연결성 촉진, 그리고 전자지급 에코시스템에서의 유용한 혁신과 경쟁 장려를 통해 국경 간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전자지급을 발전시키는 데에 합의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고 각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인정한다: ...(b) 각 당사국은 관련된 전자지급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급 표준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Noting the rapid growth of electronic payments, in particular, those provided by new payment service providers, Parties agre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safe and secure cross border electronic payments by fostering the adoption and us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promoting interoperability and the interlinking of payment infrastructures, and encouraging useful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payments ecosystem.* *2. To this end,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the Parties recognise the following principles: ...(b)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take into account, for relevant payment systems, internationally accepted payment standards to enable greater interoperability between payment systems...*

[13] 디지털 단일시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조항은 없음. 따라서, 디지털 단일시장의 핵심인 디지털 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호운용성, 표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 단, 전자지급(electronic payments), 전자인증(electronic authentication), 전자송장(electronic invoicing), 개방형 표준(open standard), 디지털신원(digital identities),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 여러 조항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일부만 포함함.

[14] KSDPA에도 유사한 조항이 제14.31조에 있음.

[15] SADEA, KSDPA등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음.

04. 망 중립성 (Network Neutrality)[16]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또는 Net Neutrality)이란 망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된 단말 기기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처리(Equal treatment of all data packets; No priority delivery)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

인터넷 발전 초기, 인터넷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트래픽에 대한 동일한 처리와 무조건적인 접근성을 보장함. 망이나 이용자에게 해가 된다는 증거가 없다면, 모든 콘텐츠, 사이트, 플랫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이러한 개방성이 인터넷 발전의 중요 요인이 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망 중립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립되었지만, 아직도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의 디지털 통상 협정문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한미 FTA의 제15.7조(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망 중립성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아래 4. 참조).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망 중립성에 관한 찬반 논쟁

망 중립성을 둘러싼 쟁점은 매우 넓고 다양함. 여기에는 인터넷의 혁신성, 평등과 효율성, 언론의 자유, 공공성과 재산권, 이용자 선택권, 공정경쟁, 전송 차별화 및 품질보장, 망투자 유인 등이 포함됨. 망 중립성을 찬성하는 측은 인터넷 망의 개방성이 인터넷 발전 및 혁신의 원동력이며, 전송 차별화는 소자본 온라인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기 때문에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함. 인터넷의 본질은 평등과 개방성이기 때문에 지불 능력에 따른 우선권 부여는 양극화를 초래하고 인터넷의 본질을 파괴함. 망 중립성은 인터넷 망이 통신사업자와 같은 대기업의 상업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함. 망보유 사업자가 망 중립성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면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트래픽을 차단 및 지연하는 등의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이는 공정경쟁의 저해와 통신사업자의 온라인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 독점을 가져올 수 있음.

망 중립성을 반대하는 측은 콘텐츠 시장의 성장에 따라 그 기반인 망에 대한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넷플릭스,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거대 콘텐츠 사업자(CP)가 ISP가 구축한 인터넷 망을 무료로 사용하며 그에 대한 부담을 모두 ISP에게 떠넘겼다는 것임. 또한, 망 중립성을 폐지함으로써 인터넷 혁신을 도모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권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5G 이동통신 기술의 품질 보장을 위해서 서비스 특성에 맞는 망의 차별화가 필요함. 품질 관리가 중요한 서비스에 차별화 정책을 도입, 우선권 부여를 통해 망 고도화와 개방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미국에서 망 중립성의 역사적 전개

2000년 초부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의 개방성, 자유 또는 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망

[16]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2)가 발간한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 10장 '넷플릭스는 무임승차? (이희진)'을 참고

중립성을 법제화하려고 노력했음.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FCC는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을 정하였음. 오픈 인터넷 규칙은 투명성(Transparency), 차단금지(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라는 3가지 핵심 규칙으로 구성됨. 첫째, 투명성은 네트워크 관리현황, 성능 및 서비스 계약 조건의 공개. 둘째, 차단금지 조항은 ISP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네트워크에 해가 되지 않는 디바이스에서의 이용이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의 금지. 마지막으로 차별금지 조항은 합법적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할 시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를 규정.

오픈 인터넷 규칙이 발표되자 미국 ISP들은 일제히 반발하였고, 2011년 대형 ISP 중 하나인 버라이즌(Verizon)은 FCC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였음. 미국 통신법상 ISP는 부가통신사업자(Value Added Common Carrier)[17]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ISP가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트래픽 차단 금지 의무를 지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음.

2015년 5월, FCC는 2010년의 오픈 인터넷 규칙보다 강력한 개정안을 발표했음.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유·무선 ISP를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 재분류하였음. 둘째, 차단금지(No Blocking), 조절금지(No Throttling), 대가에 의한 우선 처리 금지(No Paid Prioritization) 조항을 명시하였고, 이와 함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의무도 부여하였음. 결국 재분류를 통한 FCC의 권한 강화로 미국 ISP들은 오픈 인터넷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음.

트럼프 정부가 등장한 이후 2017년 초부터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음. 망 중립성 반대론자인 아지트 파이(Ajit Pai)가 FCC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통신 사업의 경쟁 촉진 및 규제 완화를 통해 ISP의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거대 CP들은 망 중립성 폐지를 반대하였지만 2017년 12월 망 중립성 폐지안이 FCC에서 통과되었고, 2018년 망 중립성 원칙은 정식으로 폐지되었음.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한 논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가 즉각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망 사용료 논쟁(#5 참조)에서 보듯이 망 중립성은 디지털 통상 관련 다양한 논쟁에서 중요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11.12)

우리나라에는 망 중립성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음. 위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 다섯 가지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0년 미국의 오픈 인터넷 규칙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3.2 정책 이슈

기술발전과 망 중립성

미국이 망 중립성 정책을 폐지하고, 5G와 같은 신기술이 나오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17]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통신 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공공성을 가진 서비스를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고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즉,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부가통신사업자이고, 이들이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 역무를 이행한다.

맞고 있음. 기존의 망 중립성은 5G의 활용을 저해하여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의 가치 창출과 이용자 선택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특히 ISP는 해외 CP들의 영향력 확대 우려와 5G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망 중립성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망 중립성을 완화한다면, 기존에 확립된 네트워크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대형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

국내의 경우, 2020년 12월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시대를 맞아 망 중립성 규제와 5G 서비스 활성화 정책이 양립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특수서비스[18] 개념을 도입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디지털 통상 관점에서 보면 망 사용료 논쟁에서 보듯이 (#5 참조), 미국은 한국과 EU의 망 사용료 도입 논의를 비판하면서 망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내세움. 미국이 자국 내에서는 망 중립성을 폐기했으면서, 대외적으로 통상 문제가 불거질 때는 망 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임.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 미국 FTA *KORUS FTA*	제15.7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Article 15.7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가.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및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 나. 법 집행상의 필요를 조건으로, 자신이 선택한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 다.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라.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자간의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가지는 것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each Party recognizes that consumers in its territory should be able to:* *(a) access and use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 of their choice, unless prohibited by the Party's law;* *(b) run applications and services of their choice, subject to the needs of law enforcement;* *(c) connect their choice of devices to the Internet, provided that such devices do not harm the network and are not prohibited by the Party's law; and* *(d) have the benefit of competition among network providers,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and content providers.*

[18] 특수서비스란 특정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특정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5G 특화망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지능형 공장은 기계, 장비, 로봇 등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IoT, 클라우드로 연결하고 AI로 제어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대량 트래픽이 요구되고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에 별도의 5G 주파수를 할당받아 별도의 고성능 5G 특화망을 구축한다 (김호철, 2023,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지정학과 통상협상 신의제 검토. 통상법률. 제158호: 3-57).

05. 망 사용료 (Network Use Fee)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망 사용료란 인터넷에서 콘텐츠, 즉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주로 통신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함. 망 사용료라는 용어에는 접속료(Paid peering)와 전송료(Termination fee)라는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음.

접속료는 콘텐츠 제공자(Content Provider, CP)가 자신의 콘텐츠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ISP에 직접 연결이 되어야 하고 이것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일정 기간 동일한 액수를 내는 정액제를 말함. 전송료는 'Termination(종점에 닿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데이터를 최종 사용자에게 닿게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함. 즉, CP의 콘텐츠를 최종 사용자가 요청하면 그 데이터가 특정 ISP의 망을 지나서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하는데, 통과한(사용한) 망의 소유자인 ISP에게 CP가 통과/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임. 따라서 전송료는 데이터를 많이 보내면(소비자가 많이 다운로드 할수록),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 하는 종량제를 따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망 사용료는 아직 논쟁적인 주제로 법이나 협정 등에서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19]

국내 망 사용료 논쟁

망 사용료 문제는 2011년부터 국내에서 불거짐. 네이버와 같은 CP가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네트워크 구축에는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 통신회사들이 망 사용료 지불을 요청하였음. 네이버는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으므로 전송료를 또 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 논쟁은 2016년 정부가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하면서 일단락되었음. 이는 데이터 트래픽을 기반으로 종량제로 지불하도록 정한 것으로 이후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망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지불하고 있음.

SK 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소송

망 사용료 문제가 다시 본격화된 것은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가 보편화되며 시작되었음. 이들 서비스로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됨. 한 조사에 의하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트래픽 발생량에서 구글과 넷플릭스의 비중이 각각 27.1%와 7.2%로 전체의 1/3을 넘게 사용함[20].

이런 배경에서 2019년 11월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함.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함. 더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람들이 집에서 콘텐츠를 즐기는 경향이 많아져 넷플릭스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

[19]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2)가 발간한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 10장 '넷플릭스는 무임승차? (이희진)'을 참고
[20] 망 사용료' 뭐길래?... 빅테크-통신사-소비자 엇갈린 의견, 2022년 9월 21일, https://www.bbc.com/korean/news-62979836;

발하였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SK 브로드밴드의 입장임.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이 이미 망 사용료, 즉 전송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과 결부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넷플릭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고, 법원에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운영,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넷플릭스의 논리는 접속료와 전송료의 구분에서 시작함.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넷플릭스 캐시서버를 의미하는 OCA(Open Connect Appliances)으로부터 일본과 홍콩의 ISP까지 연결된 구간은 접속이지만, 일본과 홍콩의 ISP로부터 SK 브로드밴드까지 구간은 전송이라는 입장을 보임. 따라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본과 홍콩의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최종 사용자인 한국의 넷플릭스 구독자가 요청해서 SK 브로드밴드 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송료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 SK 브로드밴드는 이미 최종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접속료를 받고 있으므로 전송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는 주장을 펼침.

무엇보다도 넷플릭스는 전송료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의 기본 원리인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대한 위배임을 강조함. 망 중립성이란 망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된 단말 기기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처리(Equal treatment of all data packets; no priority delivery)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망 중립성의 정신을 따르면 '인터넷에 정보 배달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비용을 더 낸다고 빠른 전송을 해준다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의 콘텐츠는 제대로 경쟁할 수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됨.

1심은 SK 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었음.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2023년 9월 양사는 3년 넘게 진행되어온 소송을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 합의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음.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풍부한 콘텐츠를 지닌 넷플릭스와의 협력 관계가 타 ISP와의 경쟁에 불가피한 요소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임. 넷플릭스도 만일 한국에서 패소하여 망 사용료 지불 판례가 확립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도미노 효과처럼 제기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있음. 사실 이 재판 결과의 영향은 단지 국내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음. 2022년에 이어 2023 WMC(World Mobile Congress)에서도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빅테크가 유발한 데이터 트래픽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지출을 통신사 혼자 부담하는 현재 상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미국과 EU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6.1.1. 개정) 제46조(접속통신료 정산)

① 인터넷직접접속시 접속통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동일 계위간 : 상호정산 2. 다른 계위간 : 낮은 계위의 사업자가 높은 계위의 사업자에게 지불

개정 전에는 동일 계위간 무정산이었는데 상호정산으로 바뀌었고, 정산 방식도 용량 기반에서 트랙픽 사용량 기반으로 전환되었음. 이전에는 1 계위의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3사 사이에는 주고받는 트래픽에 상관없이 무정산이었지만, 이 개정으로 3사 간에 정산 하게 되었음. 예를 들면, 대형 CP가 접속한 통신사는 다른 두 통신사에게 전송해야 하고, 트래픽에 기반해서 접속통신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이 통신사는 대형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음.

3.2 정책 이슈

망 사용료에 대한 미국의 입장

망 사용료 논쟁은 민간 기업 간의 소송을 넘어서서 국회에서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는 입법을 시도하면서 디지털 통상의 이슈로 부각 되었음. 이에 대해 미국과 통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실제 미국의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통상의 관점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화 동향을 비판하는 보고서[21]를 발간했음. 여기서 망 사용료 입법은 자발적이고 상업적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인터넷의 기본 구조(architecture)를 위협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쟁점과 관련하여 한미 FTA(KORUS)의 관련 조항에 위배될 것이라고 주장함. 즉 미국의 CP가 한국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통신 제14.2조 접속과 이용)이며, 한국의 거대 ISP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제14.5조 경쟁보장장치)이라고 주장함.

EU 집행위도 CP가 네트워크 유지 비용에 대한 '정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며 망 사용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EU의 망 사용료 부과는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화해 온 인터넷 기술 및 시장 조건을 교란할 수 있다고 비판함.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일관된 것은 아님. 국내적으로는 상원이 작업반을 설치해서 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연방 통신위원회도 망을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빅테크가 망 유지를 위해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22].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미국 FTA *KORUS FTA*	제14.2조 접근과 이용 *Article 14.2* *Access and Use*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have access to and use of any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or service, including leased circuits, offered in its territory or across its borders, on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as set out in paragraphs 2 through 6.*
2		제14.5조 경쟁보장장치 *Article 14.5* *Competitive Safeguards*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1. Each Party shall maintain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at, alone or together, are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from engaging in or continu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21] '콘텐츠 및 앱 제공자에 대한 망 사용료는 한미 통상의 미래를 잠식한다' September 2022, "Proposal to Mandate Payments by Content and Application Providers (CAPs) Undermines the Future of U.S.-Korea Trade

[22] 美, EU의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추진에 반대 입장 표명. 해외시장뉴스.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JSESSIONID_KITA=52A11C7F2871629474158E05DF69A489.Hyper?pageIndex=1&type=0&nIndex=1833636 2023.8.11. 검색.

06. 무관세모라토리움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무관세모라토리움이란 해외에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 관행을 유지하자는 WTO 회원국들의 결정을 의미. 도서,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이 더 이상 물리적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 교역됨에 따라 변화한 통상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무관세모라토리움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WTO 문서상의 정의

"1998년 9월 25일,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잠정적인 문구를 정의로 볼 수 있음"

"WTO members agreed to maintain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23]

무관세모라토리움 연장을 둘러싼 논쟁

무관세모라토리움은 1998년 WTO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합의된 이래 다음 각료회의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한 형태로 연장되어 존재해왔음. 현재도 제13차 WTO 각료회의 때까지 효력이 연장된 상황임. 지금까지 WTO가 디지털통상 분야에서 거둔 유일한 성과이지만 한시적인 효력, 무관세 대상인 전자적 전송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합의 부재, 영구화에 대한 찬반 논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 관세부과의 기술적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여전히 디지털통상과 관련된 가장 오래되고도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임. 2024년 3월 31일까지 제13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이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무관세모라토리움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함.

FTA를 통한 무관세모라토리움 영구화

일부 국가의 반대로 WTO에서 무관세모라토리움이 한시적인 효력만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자 주요국들은 무관세모라토리움을 영구화하기 위해 양자·지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함. 일례로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하는 모든 기체결 FTA에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며 대부분 FTA에서 무관세 의무의 효력을 영구화하였음. 조건부 무관세를 규정한 기존 한국-싱가포르 FTA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하여 무관세모라토리움을 영구화하였음. 특히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은 무관세모라토리움의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적용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였음

[23]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1)가 발간한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 7장 'K-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미래(곽동철)' 참고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이란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수출입의 제한, 전략물자의 수출입, 원산지 표시, 수출입의 질서 유지 등을 다루며 물품, 용역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무역의 대상으로 규정함.

- 2조(정의)

①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한국-관세법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제도를 규정하는 법률로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관세평가, 관세품목, 관세율 조정, 관세 면제, 관세의 부과와 징수, 통관 절차 등 무역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규율함.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 대상은 물리적인 형체를 가진 '물품'임.

- 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3.2 정책 이슈

무관세모라토리움의 영구화

일부 국가의 반대로 WTO에서 무관세모라토리움이 한시적인 효력만을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주요국은 양자·지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하여 무관세모라토리움을 영구화 추진 중. 콘텐츠 온라인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제협상에서 무관세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적극 주장해야 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미국 *KORUS FTA*	제15.3조 디지털제품 *Article 15.3 Digital Products*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가.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그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 또는 나.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 *Neither Party may impose customs duties, fees, or other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a) if it is an originating good, a digital product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b) a digital product transmitted electronically.*
2	역내경제동반자 협정 *RCEP*	제12.11조 관세 *Article 12.11 Customs Duties*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한다.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은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관한 「2017년 12월 13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WT/MIN(17/65)」에 따른다. *Each Party shall maintain its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between the Parties.* *The prac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in accordance with the WTO Ministerial Decision of 13 December 2017 in relation to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MIN(17/65).*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5조 관세 *Article 14.5 Customs Duties*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Neither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a Party and a person of the other Party.*

07. 전자적 전송 (Electronic Transmissions)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전자적 전송이란 1998년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의해 처음 합의된 무관세모라토리움의 적용대상을 의미. 과거 물리적인 매체에 체화되어(즉 상품으로) 교역지만 디지털화가 가능해진 상품 중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부분을 전자적 전송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이 가능해진 서비스도 전자적 전송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존재함. 무관세모라토리움의 적용대상인 전자적 전송의 규모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자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의, 범위, 분류 등이 합의되지 않아 국가 간 분쟁 시 관련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USJDTA) 제1조(정의)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이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의미"

"Electronic transmission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 means a transmission made using any electromagnetic means"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제14조(정의)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의미"

"Electronic transmission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 means a transmission made using any electromagnetic means, including by photonic means"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전자적 전송과 콘텐츠

대다수 국가가 전자적 전송에 콘텐츠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전자적 전송에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따라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송 자체, 즉 비트(bit)와 바이트(byte)에는 무관세모라토리움이 적용되어 관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는 무관세모라토리움이 적용되지 않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임. 실제 인도네시아는 자국 관세품목분류에서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상품'을 '99류'로 분류하여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음.

전자적 전송의 분류

상품·서비스·지식재산권의 특징이 혼재된 전자적 전송을 어떻게 분류하는가가 디지털 통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짐. 전자적 전송의 분류에 따라 관세 및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적용될지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적용될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이 적용될지 결정되기 때문임.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경쟁력이 있고 자국 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국가는 전자적 전송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무역자유화 수준이 높은 GATT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반면 외국 문화콘텐츠의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국가는 전자적 전송을 상대적으로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서비스로 분류하여 수입국의 규제주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GATS를 적용시키고자 함. 디지털 콘텐츠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TRIPS의 원칙과 규범이 전자적 전송에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시행령이란 대외무역법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임. 수출입의 신고 및 승인 절차,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수량 제한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제하며,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 활동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 …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3.2 정책 이슈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2010년대 들어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국내 콘텐츠가 디지털 통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지만 기체결 FTA 의 조항상 전자적 전송에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함. 다만 최근 체결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콘텐츠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 향후 FTA 또는 WTO 전자상거래 복수국 간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적 전송에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5조 관세 *Article 14.5 Customs Duties*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Neither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a Party and a person of the other Party.*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12.11조 관세 *Article 12.11 Customs Duties*	1.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한다. *1. Each Party shall maintain its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between the Parties.*
3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	제14.3조 관세 *Article 14.3 Customs Duties*	1. 어느 당사국도 일방 당사국의 적용대상자와 다른 당사국의 적용대상자 간의 전자적 전송(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one Party and a person of another Party.*

제1장

제2절 디지털 서비스

08. 디지털 서비스 (Digital Service)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디지털 서비스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가 생산되고 전달되는 방법에 변화가 생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국경 간 협력이 일어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새로운 전달 방식이 생겼으며, 온라인 게임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국경 간 거래되고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Work Programme on E-Commerce)

"전자상거래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전달을 의미함"

"Electronic commerce is understood to mea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제19.1조

"디지털 제품은 상업적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암호화,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음향녹음 또는 기타 제품을 말함.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이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Digital product means a computer program, text, video, image, sound recording, or other product that is digitally encode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and that can be transmitted electronically."

"This definition should not be understood to reflect a Party's view that digital products are a good or are a service."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전자적 전송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 유형 분류

GATS 협정상 서비스 공급 유형(Modes of supply)은 국경 간 공급(Mode1: cross-border supply), 해외소비(Mode2: 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Mode3: 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주재(Mode4: presence of natural persons)로 구분됨.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적용됐으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서비스 공급에도 WTO 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음. 온라인 도박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둘러싼 WTO 분쟁 사례(US-Gambling)를 통해 WTO 규범을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었음. US-Gambling(DS285)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GATS 모드1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해당 사례에서는 모드1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모드1에 한정하여 결정이 내려졌음.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일어나는 온라인 웹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급되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이 모드1, 모드2, 모드3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음.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WTO 회원국들이 서비스 양허표에 개방할 서비스 분야와 그에 대한 제한을 서비스 공급 유형별로 기재하기 때문임.

IoT는 디지털 상품이자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하여 GATS 협정상 서비스 공급 유형의 적용 문제도 있지만, GATT와 GATS 중 어느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음. 스마트 기기(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미터, 스마트 헬스 기기, 가정

용 보안 기기 등)가 데이터 전송도 처리할 수 있는 IoT의 예시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제품이 서비스의 속성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24] 이미 Canada-Periodicals(DS31) WTO 분쟁 사례를 통해 특정 제품이 상품인 동시에 서비스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그러나 WTO에서 인터넷에 관한 논의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에 비해 IoT 같은 신기술과 관련된 서비스 무역을 둘러싼 과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디지털 통상 관련 협정문은 디지털 제품을 상품과 서비스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어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EU 디지털 서비스법(EU Digital Services Act)

디지털 서비스가 주는 이점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서비스와 콘텐츠가 공유되고,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며, 불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점도 있어 EU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중개사업자(Online Intermediaries)와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s)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2022년 11월에 발효되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유럽 인구의 10%에 달하는 4,5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s)으로 지정하여 연간 위험 평가 수행 및 보고 등의 디지털 서비스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였음. 초대형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VLOSEs)에 대한 의무사항도 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가 DSA의 적용대상이 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25]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미국 FTA *KORUS FTA*	제15.2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Article 15.2 (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11장 내지 제13장(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이 의무는 해당 의무에 적용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The Parties affirm that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delivered or performed electronically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s Eleven through Thirteen (Investment,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Financial Services), which are subject to any exceptions or non-conforming meas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that are applicable to such obligations.*
2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2조 (범위) *Article 14.2 (Scope)*	1.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3.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0장(투자) 및 제12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를 포함한다)의 대상이다.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hat affect trade by electronic means or that, by electronic means, facilitate trade.* *3.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delivered or performed electronically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 9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10 (Investment) and Chapter 12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any exceptions or non-conforming meas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that are applicable to those obligations.*

[24] Chander, A. (2019). The internet of things: both goods and services. *World Trade Review, 18*(Supplement), S9-S22.
[25] "디지털 서비스"라는 용어는 협정문에서 거의 찾을 수 없음.

09. 온라인 플랫폼 (Online Platform)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플랫폼이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 간 가치를 창출하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함.[26] 플랫폼은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그들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장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규칙을 설정함.[27] 이렇게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매칭을 가능하게 해주고,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 모든 참여자의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함. 플랫폼 기업은 이제 모든 시장에 존재하고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님.[28] 1)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지속적인 긍정적 피드백 루프(Positive feedback loops)를 생성하며, 이는 새로운 참여자가 유입될 때마다 플랫폼의 가치를 잠재적으로 증가시키고, 2) 제3자 기업과 개별 계약자들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구축하여, 기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공급망과 노동 풀을 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아마존 Web Service는 PC나 스마트폰 앱과 같은 보완재나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플랫폼의 대표적인 예시임. 우버, 에어비앤비, 위챗 등의 플랫폼은 플랫폼 생태계의 참여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함.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들은 역할과 수익화 모델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EU 디지털 서비스법(EU Digital Services Act, DSA)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고 대중에게 배포하는 호스팅 서비스를 의미함."

"Online Platform means a hosting service that, at the request of a recipient of the service, stores and disseminates information to the public"

DSA에서 규제 대상으로 보는 플랫폼을 이해하기 위해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대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되는 정보화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 중 중개서비스(Intermediary Service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중개서비스는 단순 전달(Mere Conduit) 서비스, 캐싱(Caching) 서비스,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호스팅 서비스 중 공중에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봄.[29]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우버의 서비스 분류에 대한 CJEU의 판결

우버는 공유경제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우버는 운전자와 차량에 탑승하는 소비자 간의 매칭

[26] Parker, G., Van Alstyne M., & Choudary, S. (2016). *Platform Revolution: How Networked Markets Are Transforming the Economy – and How to Make Them Work for You*. 5.

[27] Van Alstyne, M. W., Parker, G. G., & Choudary, S. P. (2016). Pipelines, Platforms, and the New Rules of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94*(4), 58.

[28] Cusumano, M. A., Yoffie, D. B., & Gawer, A. (2020). The future of platforms. *MIT Sloan Management Review, 61*(3), 47-48.

[29] 박찬경. (2022).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규제냐 자율이냐를 넘어서. 언론중재 통권 제164호, 64.

을 도와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함. 전자적 전송을 통한 주문 및 결제, 데이터 이동, 서비스 제공이 국경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디지털 통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 자동차에 탑승하기 위한 운전자 호출과 결제는 전자적 수단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버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능하지만, 실제로 서비스 자체는 자동차에 탑승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제공되고 이는 운송 서비스에 해당하기도 함. 이에 따라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지가 법적 쟁점이 되었음. 서비스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우버로서는 운송 서비스로 분류되면 택시 업계 등에 적용되는 보다 엄격한 법규(예를 들어, 면허 관련 요건)가 적용될 수 있고, 온라인 중개 서비스로 분류되면 더 유연한 규제 적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 운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비스가 분류되길 원할 것임.

EU 사법재판소(CJEU)에서 우버의 서비스 분류에 대한 판결이 2017년에 내려졌음.[30] CJEU에서는 우버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운송 분야의 서비스(A service in the field of transport)'인지 '정보 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결론적으로 해당 서비스는 단순 중개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운송 분야의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운송 분야의 서비스 개념에는 물리적인 운송 행위 자체와 '본질적으로 연결된(Inherently linked)'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하였음. CJEU는 판결을 내리는 데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음: 1) 우버가 운전자를 선택한다는 점; 2) 탑승자들은 우버의 온라인 중개 없이 비전문직 운전자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점; 3) 플랫폼이 운송 서비스 제공에 '결정적인 영향력(Decisive influence)'[31]을 행사한다는 점. 국내 법원의 판결이 WTO 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WTO 협상 과정에 레퍼런스를 제시하며, WTO 서비스 분류 체계(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W/120)의 활용과 발전에 함의를 제공함. 특정 서비스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 회원국의 개방 의무와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둘러싼 이슈는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에 속하며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되는 전기통신역무 중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함.[32] 동법은 아래에 나열된 것과 같이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외국 사업자 대상)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으나 동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특정한 규정은 없음. 온라인 플랫폼이 지니는 특성을 반영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법 개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신규법 제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보완적 규제 마련(온라인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30] Hacker, P. (2018). Uberpop, UberBlack, and the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after the Asociacion Profesional Elite Taxi judgment of the CJEU. *European Review of Contract Law, 14*(1), 80-96. 이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함. 법적 근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문헌을 참고하길 바람.

[31] 우버가 운행료의 최대치를 설정하고, 탑승자에게 보수를 받아 일부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며, 일정 수준까지 차량과 운전자의 질을 관리(control)하는 것(탑승자 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운전자를 제외하는 권리까지 행사)을 결정적 영향력의 예시로 듬.

[32] 이한영·권병규·차성민. (2021).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1, 301.

- 제2조의2(국외행위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함.
- 제34조 1항(경쟁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개정안 통과(시행 2021. 12. 30).

한국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이용사업자)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

한국 – 온라인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동영상 콘텐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동영상 콘텐츠를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예: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TV), 크리에이터 또는 이용자 사이의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등에 적용됨(시행 2021. 3. 25).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33]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SADEA*	제11.2조 e항 전자지급 *Article 11.2(e) Electronic Payments*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마.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지급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제3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e) facilitate the use of open platforms and architectures such as tools and protocols provided for through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s") and encourage payment service providers to safely and securely make APIs for their products and services available to third parties, where possible, to facilitate greater interoperability,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electronic payments;*

[33] "온라인 플랫폼" 또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협정문에서 거의 찾을 수 없음.

10.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 (Platform provider's responsibilit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다중 사용자가 컴퓨터서버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칭하는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의 공급자 또는 이용자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정보를 창작하고 발전시키지 않는 한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에 의해 저장, 처리, 전송, 배포되거나 이용하게 된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미국이 당사국인 통상 협정문[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국-일본 디지털무역 협정(USJDTA)]에서 규정함. 이로 플랫폼 공급자를 통해 전달되고 공유되는 콘텐츠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플랫폼 공급자에게 부과할 것인지 명확히 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유해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공급자의 면책에 관한 논쟁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콘텐츠가 업로드됨. 그중에서는 미성년자가 보지 말아야 할 유해한 콘텐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등도 있음. 이런 콘텐츠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었을 때, 유튜브는 콘텐츠를 제작한 주체가 아니어도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미국은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공급자에게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USMCA와 USJDTA에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함하였음. EU 등의 입장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소재에 관하여 미국과 대립하고 있음. EU는 플랫폼 공급자가 자사 플랫폼에 유통되는 유해하고 불법적인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의 유통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봄.[34] EU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콘텐츠 게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부 면책(Conditional Exemption)을 규정하였음. EU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s)을 지정하여 이들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법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였는데, 최근 여러 기업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독일의 잘란도(Zalando)가 2023년 6월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기업으로는 아마존(Amazon)이 최초로 7월에 EU를 상대로 VLOP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 이처럼 플랫폼 공급자에 과도한 책임과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디지털 서비스법의 적용에 관한 빅테크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미국이나 EU와 달리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35]들도 여럿 있으므로 향후 디지털 통상 협정에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관련 조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34] KOTRA.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Global Market Report 20-003.
[35]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SADEA)에는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관련 규정이 없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EU 디지털 서비스법(EU Digital Services Act, DSA)[36]

DSA는 2장(liability of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에서 중개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3장(due diligence obligations for a transparent and safe online environment)에서 일반 중개서비스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투명성 등 다양한 의무사항을 부과함. DSA는 중개서비스 공급자가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되 조건부 면책(conditional exemption)을 허용하는데, 면책 요건은 사업자 분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함. 온라인 플랫폼이 속하는 호스팅(hosting) 서비스 카테고리의 경우(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 저장) 불법콘텐츠(illegal content)[37] 대한 미인지나 인지 즉시 취한 조치(삭제 또는 접속 차단)를 바탕으로만 면책 가능(제6조).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에 이용자가 항의할 수 있는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internal complaint-handling system) 확립, 신뢰 신고기관(trusted flaggers)의 신고 접수에 협조, 불법콘텐츠를 빈번하게 제공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일시적 차단 등의 추가 의무가 부과됨.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s)과 초대형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VLOSEs)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알고리즘)의 기능이나 그 이용으로 인한 위험평가 수행 등의 더 엄격한 요건이 부여됨.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의무사항도 차등적으로 부과됨. 모든 중개서비스 공급자는 기본적으로 연락 담당자(points of contact)와 법적대리인(legal representatives)을 둬야 하고, 투명성 보고에 대한 의무(불법콘텐츠 대응 조치 및 정보 제공 관련 수령한 명령 수,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수, 삭제에 대한 항의 수, 콘텐츠 관리 방식 등)를 지님. 온라인 플랫폼에는 추가적인 투명성 보고 의무가 부여되며 VLOPs에는 더 강력한 의무가 부여됨.

EU 저작권 지침[38] 제17조(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공급자의 보호 대상 콘텐츠 사용)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공급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s)는 권리 소유자로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업물 및 기타 주제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허가되지 않은 공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36]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Text with EEA relevance).

[37] DSA 제3조 h항에 의하면 불법콘텐츠는 "정확한 대상이나 관련법의 특성을 불문하고, 어떤 정보 자체 또는 어떤 행위(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 포함)와 연관된 정보가 EU법 또는 회원국 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정보"를 의미함.

[38]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39]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제19.1조 정의 Article 19.1 Definitions 제19.17조 양방향 컴퓨터서비스[40] *Article 19.17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양방향 컴퓨터서비스란, 다중 사용자가 컴퓨터서버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말함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means a system or service that provides or enables electronic access by multiple users to a computer server;* 1. 양 당사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양방향 컴퓨터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 디지털 무역의 촉진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느 당사국도 양방향 컴퓨터서비스에 의해 저장이나 처리되거나 전송 또는 배포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결정할 때, 그 서비스의 공급자나 이용자를 정보콘텐츠의 공급자로 대우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못한다. 단, 그 서비스의 공급자나 이용자가 그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작했거나 개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어느 당사국도 다음을 이유로 양방향 컴퓨터서비스의 공급자나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a) 양방향 컴퓨터서비스의 공급자나 이용자가 해롭거나 비난할만하다고 여기는 자료에 누군가가 양방향 컴퓨터서비스를 통해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그 공급자나 이용자가 선의로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 또는 (b) 양방향 컴퓨터서비스의 공급자나 이용자가 해롭거나 비난할만하다고 여기는 자료에 누군가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정보콘텐츠의 공급자나 이용자가 만들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조치 4.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a)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 등 지적재산권에 관해 일방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일방 당사국의 능력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는, (c) 다음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i) 일방 당사국이 형법을 집행하는 것, 또는 (ii) 양방향 컴퓨터서비스의 공급자나 이용자가 법집행 당국의 구체적인 적법한 명령을 준수하는 것 *1.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romotion of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includ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vital to the growth of digital trade.* *2. To that end, other than as provided in paragraph 4, no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that treat a suppli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as an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in determining liability for harms related to information stored, processed, transmitted, distributed, or made available by the service, except to the extent the supplier or user has, in whole or in part, created, or developed the information.* *3. No Party shall impose liability on a suppli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on account of: (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by the supplier or user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is accessible or available through its supply or use of the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and that the supplier or user considers to be harmful or objectionable; or (b) any action taken to enable or make available the technical means that enable an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or other persons to restrict access to material that it considers to be harmful or objectionable.* *4.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 apply to any measure of a Party pertaining to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measures addressing liabil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or (b) be construed to enlarge or diminish a Party's ability to protect or enforc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 (c) be construed to prevent: (i) a Party from enforcing any criminal law, or (ii) a suppli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from complying with a specific, lawful order of a law enforcement authority.*

[39] USJDTA 제18조에도 해당 용어가 유사한 구조로 언급되어 있음.
[40] 한국법제연구원(2020), 주요 국가 디지털 무역 관련 협정문. 이 문건의 번역을 따름.

11. 네트워크 효과 (Network Effec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네트워크 효과란 이용자가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얻는 가치가 해당 네트워크에 이미 연결된 다른 이용자 수에 의존하는 효과를 의미함. 대표적으로 전화나 철도 네트워크를 예시로 들 수 있음.[41] 철도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동 가능한 목적지의 수가 증가하면, 해당 철도를 이용하는 가치가 증대됨. 다른 예로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 수가 적으면, 해당 네트워크의 구독자로 가입하는 것의 효용성은 제한적임. 이러한 효과를 일반적으로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Direct network effect)라고 함.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Indirect network effect)는 보완재가 중요한 경우 발생함.[42] 게임기의 보완재인 비디오 게임, 주변 기기,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면, 게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효용성이 증대됨. 즉, 보완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상품의 가치를 높이면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함. 이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패러다임으로 칭하기도 함.

다수의 이용자를 유치하여 더 많은 보완재가 생기는 효과가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긍정적인 피드백(Positive feedback)이 일어나는 구조가 유지되고, 확립된 네트워크와 그로 인해 생산된 지배적 디자인(Dominant design)에 시장이 묶이게(Lock-in) 됨. 이러한 현상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에는 이점으로 작용하지만, 시장이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최대의 효율성, 기술적 우위성이 있는 결과를 낳지 못할 수도 있음. 강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승자독식(Winner-takes-all) 시장이 나타나기도 함. 플랫폼 경제 측면에서 보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네트워크 효과로 나타나는 시장 편향성을 고려하여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표준을 활용함. 네트워크 효과가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확립된 네트워크에서 채택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생김.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 구글의 사례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데에도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 주요 기업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갖게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화가 경제적, 법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이는 디지털 통상을 규율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하였음. 구글의 경우, 다수의 사건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제재를 받았음. 2017년에는 구글 검색 엔진의 지배적 지위로 후발 참가자의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이유로 24.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받았고, 2018년에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등에서 단말기 제조업자 및 이동 통신사업자에 대해 계약상 제한을 하는

[41] Shilling, M. A. (2017).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McGraw-Hill.
[42] Blind, K. (2004). *The Economics of Standards: Theory, Evidence, Policy*.

것에 대해 43.4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으며, 2019년에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연동형 광고 중개 시장에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해한 이유로 14.9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음.[43]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의 규제의 자율성[44]

디지털 산업에서 네트워크 효과로 야기되는 독과점에 관한 우려로 인해 디지털 통상에 관한 규범 제정에 강력한 경쟁법적인 요소를 동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정 기업이 제시하는 지배적인 디자인이나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에 묶이는 것을 해소하고 반경쟁적 경영 전략에 대응하며, 신생 기업이 지배적인 플랫폼의 방해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고, 규제의 자율성(Regulatory autonomy)이 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이같이 정당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의 자유(Right to regulate)는 전통적 무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통상의 맥락에 서도 중요한 사안임. 그러나 지역무역협정(RTA)이나 디지털 통상 관련 협정에 포함되는 디지털 통상 아젠다 역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필요에 따라 설정되었다는 비판도 있음.[45] 예를 들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부터 시작하여 다수의 디지털 통상 관련 협정에 포함된 소스코드 접근 금지 규정은 디지털 산업의 지배적인 기업들의 사적 이익에 편향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협정 상대국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에 포함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악성 소프트웨어나 사이버 범죄로 발생하는 보안상 취약성에 대해 국가가 규제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임.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한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전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보장을 목적으로 함.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함. 플랫폼 기업이 얻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원칙적으로 동법으로 가능함.

한국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법이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이용사업자)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

[43] 이한영·권병규·차성민. (2021).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1, 325-326.

[44] Neeraj, R. (2019). Trade Rules for the Digital Economy: Charting New Waters at the WTO. *World Trade Review, 18*(S1), S121-S141. 참고하여 작성.

[45] Azmeh, S., & Foster, C. (2016). The TPP and the Digital Trade Agenda: Digital Industry Policy and Silicon Valley's Influence on New Trade Agreements. London School of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2016, No. 16-175.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46]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EU-싱가포르 FTA *EU-Singapore FTA*	제8.31조 경쟁보장장치[47] *Article 8.31 Competitive Safeguards on Major Suppliers*	각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인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하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반경쟁적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반경쟁적 교차보조에의 관여 (b) 경쟁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한 반경쟁적 결과 초래 (c)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있는 정보의 시의적절한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d)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가격 설정 *Each Party shall introduce or maintain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who, alone or together, are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from engaging in or continu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These anti-competitive practices shall include in particular:* *(a) engaging in anti-competitive cross-subsidisation or margin squeeze; (b) us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competitors with anti-competitive results; (c) not making available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n a timely basis, technical information about essential facilities and commercially relevant information which are necessary for them to provide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d) pricing services in a manner that is likely to unreasonably restrict competition, such as predatory pricing.*

[46] 해당 조항은 위에 서술한 네트워크 효과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으나 네트워크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anti-competitive"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조항이므로 포함.

[47] 한국-싱가포르 FTA 제11.4조(지배적사업자의 행위)에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있어 한국-싱가포르 FTA 국문 번역본을 사용함.

12. 다면시장 (Multi-sided Marke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양면시장(Two-sided Market) 또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 개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임.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양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함[48]. 특정 플랫폼의 이용자가 많을수록 그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나 효용성이 높아지므로 구매자는 판매자가 많은 플랫폼, 판매자는 구매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게 됨[49].

예를 들어, 우버에 운전자가 많으면 더 쉽게 차량을 찾아 탐승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탑승자가 유입되고,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Host)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은 게스트(Guest)가 유입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온라인 플랫폼은 구매자와 판매자 그룹의 행태를 모두 고려하여 두 집단 사이의 매칭이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야 함.[50] 이처럼 두 개의 이용자 그룹 간 중개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을 전제로 함. 두 개 이상의 이용자 그룹이 상호작용하는 시장의 경우 다면시장을 전제로 하는데, 플랫폼 산업은 다중시장의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제품의 최종 사용자뿐만 아니라 프린터와 같은 주변 기기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들도 유인하기 위해 타 업체와 경쟁해야 함. 다면시장의 특성을 보이는 구글 같은 경우, 최종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뿐만 아니라 광고주가 있는 세부시장도 공략해야 함.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들 외에도 콘텐츠 제작자를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인해야 함.

다면시장에 구매자, 판매자, 제3자 등을 참여시키기 위해 플랫폼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 온라인 데이팅 앱과 같이 한 이용자 그룹(주로 남성)에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다른 그룹(주로 여성)이 무료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고, 스타(예: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스타 강사)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더 많은 수강생을 유치할 수 있으며,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부 이용자 그룹에 할인 혜택을 주어 플랫폼을 떠나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음.[51]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는 서비스 무료 제공이나 할인 혜택 제공으로 인해 단일 시장에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통해 다른 시장의 이용자 그룹을 확보할 수 있으면,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연쇄적으로 다른 이용자 그룹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상쇄될 수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다면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48] 상세 내용은 본 교재 '온라인 플랫폼' 용어 참조.
[49] 상세 내용은 본 교재 '네트워크 효과' 용어 참조.
[50] 이한영·권병규·차성민. (2021).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1, 24.
[51] Parker, G., Van Alstyne M., & Choudary, S. (2016). *Platform Revolution: How Networked Markets Are Transforming the Economy - and How to Make Them Work for You*. p.123-124.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다면시장을 전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다면시장을 전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다양한 사업자와 이용자가 참여하고, 이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와 데이터 이동에 관여함.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면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중 누구에게 책임소재를 따질 것인지가 디지털 통상 쟁점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A국가 여행객이 B국가로 여행을 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우버 서비스를 결제함. 우버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양면시장을 전제로 하고, 탑승료 지급을 위한 전자적 전송은 단순하게 보면 두 국가 사이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거래 외에 보험 서비스 같은 경우 우버가 C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음. 보험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우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관련 데이터를 제3국에서 보유하고 있고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다른 기업이 엮여 있으면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쉽게 부여받기 어려울 수 있음. 이처럼 플랫폼 생태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참여자가 여러 국가에 분포해 있게 되면서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을 규정하고 책임소재를 묻기가 쉽지 않게 되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함. 현행 공정거래법이 온라인 플랫폼이 지니는 다면시장의 특성, 네트워크 효과 등 독과점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심사지침이 마련됨.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함. 다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면을 여러 개 또는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13. OTT 서비스 (Over-the-top Service)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OTT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함. OTT 서비스로 칭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와 관련 있어 OTT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 오디오, 기타 미디어 콘텐츠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함.[52] 즉,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및 소비를 할 수 있음. OTT 서비스는 크게 음성 및 메시지 서비스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예로는 왓츠앱(WhatsApp), 라인(Line), 스카이프(Skype)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애플티비(Apple TV) 등이 있음.[53]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OTT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OTT 서비스는 시청각 서비스인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인가?

OTT 서비스를 둘러싼 디지털 통상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 사례를 설명하는 데에 드러난 것처럼 전통적인 서비스로 규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이런 서비스는 여러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일 서비스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서비스 분류에 관한 양립 불가능한 관점이 존재함. WTO 회원국들이 서비스 양허표에 개방할 서비스 분야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데에 OTT 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 회원국의 시장 개방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서비스 분류에 관한 다자 협의가 더욱 중요함.

GATS 협정과 W/120에서는 콘텐츠(Contents) 자체가 주요한 서비스로 고려되지 않았음. OTT 서비스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TV 방송, 영화 상영, 라디오 서비스가 시청각 서비스의 주를 이루었고, 통신 서비스는 정보의 전송(Transmission)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어 시청각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가 구별되었음. 이는 정보의 전송과 콘텐츠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음.[54] OTT를 둘러싼 이슈는 무관세모라토리움의 적용대상을 전자적 전송 자체로 한정 지을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까지 포함할지에 관한 논쟁과도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미국과 EU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를 포괄하기 위해 GATS 수정 양허안을 제안했음. OTT 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는 W/120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통신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이며 미국과 EU는 각각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음.[55]

OTT 서비스와 같이 기존 WTO 규범상 규정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법을

[52] Peng, S. Y. (2016). GATS and the over-the-top services: A legal outlook. Journal of World Trade, 50(1), 23.
[53] Ibid.
[54] Ibid., p.22.
[55]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1)가 발간한「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기술과 통상」- 4장 '넷플릭스, 너는 누구냐? 국경간 제공되는 OTT 서비스의 분류 문제(곽동철)'」 참고

적용해볼 수 있음. 이는 크게 기능적(Functional) 또는 목적론적(Teleological) 접근법과 구성요소 기반(Components- based) 접근법으로 구분됨. 전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 또는 추구하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후자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별개의 요소들을 분별한 판단을 내림.[56] OTT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도 제공하는 본질적인 서비스를 고려하면 시청각 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구성요소를 고려한다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나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인풋으로 필요로 하므로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또는 통신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음. EU의 경우, 지원 서비스(Enabling Service)와 콘텐츠 또는 핵심 서비스(Content or Core Service)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디어 콘텐츠나 방송이 컴퓨터 서비스와 결합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어도 이러한 서비스를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음.[57] 디지털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구성요소에 기반한 접근법을 택하면 대부분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나 통신 서비스의 하위 서비스 분류에 해당하게 되므로 일부 서비스로 수렴하게 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국내에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사업법)으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의 법적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법이 제정되면,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IPTV, 그리고 OTT를 포괄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될 예정.

EU –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 AVMSD)[58]

2010년에 제정된 AVMSD에 따르면, 선형 미디어 서비스(예: 공중파 방송)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은 데에 비해 비선형 미디어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콘텐츠 제공자가 콘텐츠 제작이나 통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서비스(예: 유튜브)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지 않았음. 2018년에 AVMSD가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예: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주문형 미디어 서비스(예: 넷플릭스)에는 최소 30%의 콘텐츠가 EU 콘텐츠여야 하는 쿼터가 부과되었음. 이는 미디어 산업에 대해 EU가 정부의 규제를 중요시하고 보호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 개방에 대한 함의가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56] Willemyns, I. (2019). GATS Classification of Digital Services – Does 'The Cloud' Have a Silver Lining?', *Journal of World Trade, 53*(1), 59-81.
[57] 곽동철(2021).
[58] 곽동철(2021)을 참고하여 작성함.

제1장

제3절 디지털 기술

14.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사물인터넷(IoT)이란 인간, 자연, 환경, 기계,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 일련의 물리적 매체를 의미. 이러한 정보의 대부분은 사물인터넷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수집할 방법이 없었고 수집하더라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고가의 특수한 장치가 필요.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현재는 큰 비용 부담 없이 방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이를 관리·분석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사물인터넷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각종 센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물인터넷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끊김없이 국경을 넘어 이동이 가능해야 함. 일례로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롤스로이스는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여 판매한 이후에도 사물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함. 전 세계 어디서든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엔진에 부착된 수백 개의 센서가 엔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면 영국에 위치한 중앙제어센터에 실시간으로 보고되어 전문 엔지니어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엔진 오류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공기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그러나 데이터가 수집된 국가에서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요구한다거나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제한한다면 사물인터넷의 활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 개인정보보호, 영업기밀보호, 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사물인터넷과 디지털 기술표준

인간의 개입 없이 기기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기기 간 상호운용성이 필수적임.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상이한 통신 프로토콜, 독자적인 운영시스템, 독립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으로 IoT 생태계가 파편화될 가능성이 큼.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술표준을 사용하는 것임. 국가들이 서로 상이한 IoT 플랫폼이나 IoT 서비스 기술표준을 사용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없고 디지털통상도 이루어질 수 없음.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등 최근 디지털통상협정은 디지털 경제에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통상과 관련된 기술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한국, 경량블록암호 알고리즘의 국제표준 채택

국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경량 블록암호 알고리즘인 LEA(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가 ISO/IEC의 국제표준으로 제정.[59] 경량 암호는 보안, 높은 처리량, 낮은 전력 소비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형 센서와 기기로 구성된 사물인터넷 환경에 적합.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디지털 분야에서는 기술표준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국제표준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	제14.1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이전 *Article 14.11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어느 당사국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개인정보 포함)의 국경 간 이전이 적용대상자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 *2.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2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 협정 *KSDPA*	제14.14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Article 14.14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2. Neither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f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3		제14.31조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Article 14.31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for Digital Economy*	2. 양 당사국은 아래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의 개발 및 그 채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역, 다자 또는 국제 포럼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표준 개발에 관한 정보 및 절차는 수립된 메커니즘을 통하여 표준화 기관의 구성원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며, 통지되고 전달된다. 나. 표준 개발 절차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인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t regional, multilateral or international fora that both Parties are party to, to promote development of standards relating to the digital economy and adoption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as below:* *(a) Information and procedure regarding standards development shall be easily accessible, notified and communicated through established mechanisms to the members of standardising bodies;* *(b) Standards dev elopment process should allow open and non-discriminatory participation to the extent practicable...*

[59] 전자신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경량 블록암호 '미' 제치고 국제표준 됐다', 2019.11.04.자.

15.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이하 클라우드)이란 최소한의 관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 작용만으로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서버, 저장공간,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등 가상화된 컴퓨팅 자원에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일컬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aaS), 서비스로서의 인프라(IaaS) 등으로 구분되며, 배포 유형에 따라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로 구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고 클라우드를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또 언제든 필요한 만큼 컴퓨팅 자원을 확대할 수 있어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에 유리.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을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필수적이며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서비스 분류

국경을 넘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서비스 분류표상 클라우드를 어떤 서비스로 분류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많음. 서비스 분류는 WTO 회원국의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임. EU와 미국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기존에 존재했었던 오프라인 형식의 데이터 접속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사용 서비스가 온라인화된 것에 불과하여 서비스 분류표상의 컴퓨터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반면 중국은 새로운 서비스(New service)이기 때문에 현행 시장개방 양허가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클라우드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하나의 최종 생산물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한 가지 서비스로 분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CSP)는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 전 세계 주요 지점에 위치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서비스를 공급함. 따라서 최종 소비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이 필수적임.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

는 각종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클라우드 사업이 제한받고 있음. 글로벌 CSP를 다수 보유한 미국은 매년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포함하여 자국 CSP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각국의 클라우드 관련 조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함. 한국의 경우,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가 대표적임.[60]

CPTPP, USMCA, 미국-일본 디지털통상협정,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등 최근 체결된 무역협정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허용 조항 및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며, 보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며 이용자를 보호함.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국 – 클라우드법(The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CLOUD Act)

자국 클라우드 기업이 해외 서버에 저장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 등의 데이터를 미국 수사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미국의 국내법으로 2018년 발효. 2013년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된 온라인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발부한 영장이 효력이 없다는 논리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국외 소재 서버에 저장된 범죄 관련 온라인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 자국의 법집행 기관에 협조할 의무와 서버 소재지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던 글로벌 CSP들은 동 법을 지지.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은 동 법이 통신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3.2 정책 이슈

한국, 공공클라우드 전환사업

우리나라는 국내 민간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을 추진 중임. 노후화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과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 환경인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통합하려는 시도임. 핵심은 공공 부문에 민간클라우드를 도입하여 2021년 현재 4%에 불과한 민간클라우드센터 이용률을 2025년까지 46%까지 높이는 것임. 국내 CSP뿐만 아니라 글로벌 CSP도 동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CSP 모두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획득해야 함.

[60]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대해서는 본서의 '16.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참고 바랍니다.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	제14.13조 컴퓨팅시설의 위치 *Article 14.13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2. 어느 당사국도 적용대상자가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컴퓨팅시설을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내에 두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2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제19.12조 컴퓨팅시설의 위치 *Article 19.12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어느 당사국도 적용대상자가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컴퓨팅시설을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3	한국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15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Article 14.15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Neither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 at territory.*

16.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CSAP)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인증기관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인증하여 사용자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제도를 말함. 공공부문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됨. 미국의 연방 위험 및 인증 관리 프로그램(FedRAMP), 일본의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 및 평가 프로그램(ISMAP), 싱가포르의 다계층 클라우드 보안(MTCS) 등 주요국도 CSAP와 유사한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찾지 못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이란 인증신청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61]

정부조달 분야의 무역장벽인가 정당한 규제 권한인가?

글로벌 클라우드 업계가 소속된 소프트웨어연합(BSA)은 주요국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제도와 달리 CSAP가 가진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 첫째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버와 민간용 클라우드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물리적 망분리 요건'과 데이터와 서버의 위치를 국내로 한정하는 '데이터 현지화 요건'임.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는 이미 최첨단 보안 기능이 갖추어져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해외에 보유하고 있음. 그런데 만약 한국 공공기관만을 위한 클라우드 서버와 관련 인프라를 한국 영토 내에 배치해야 한다면 활용도가 낮은 설비에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최종 소비자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둘째, 국내에서 인증받은 암호화 기술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검증필 국가표준암호화 기술 요건'이다.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면 외부로부터 데이터 침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외부 해커의 접근을 차단하여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음.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암호화 기술을 배제하고 한국 정부가 인증한 특정 암호화 기술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접근법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음.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준암호화 기술(ARIA, SEED) 대신 최첨단 고급암호화표준(Advanced Encryption Standards, AES)[62]을 활용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는 CSAP를 획득할 수 없어 사실상 한국 클라우드 조달시장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됨. 미국 무역대표부 역시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

[61]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2)가 발간한「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4장 '내 구름은 내가 지킨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의 명(明)과 암(暗)(곽동철)' 참고

[62] 미국 국립기술표준원이 제정한 암호화 방식으로 기존 암호화 방식보다 월등히 높은 안전성과 속도로 인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서 CSAP가 정부조달 분야에서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를 차별하는 한국의 핵심장벽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반면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정부조달 예외, 안보상 예외, 데이터주권, 국내산업보호 등을 내세워 CSAP의 엄격한 요건과 지속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음. CSAP가 정부조달 분야의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인지 아니면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규제권한의 일부인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며, 보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며 이용자를 보호함.

- 제23조(신뢰성 향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할 수 있다.

한국-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4조(보안인증 유형 및 등급)

② 보안인증 등급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한다.

한국-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5조(보안인증기준)

② 인증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별표 4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3.2 정책 이슈

CSAP 요건 완화, '하'등급 우선 시행

CSAP의 과도한 요건(물리적 망분리 요건, 데이터 현지화 요건, 검증필 국가표준 암호화 기술 요건 등)으로 인해 글로벌 CSP의 국내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원천 봉쇄되고 이로 인해 국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글로벌 CSP와 협업하는 국내 스타트업은 CSAP로 인해 오히려 국내 공공조달사업에 입찰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한국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보안인증 등급제를 실시하여 '하' 등급[63]에는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는 등 CSAP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있음.

[63] CSAP 등급제는 국가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중 '하'등급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2조 범위 *Article 14.2 Scope*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2.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a) government procurement*
2		제14.15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Article 14.15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3		제14.18조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Article 14.1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3. 암호기법을 사용하고 상업적 응용을 위하여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 다. 그 당사국 정부에 의한 또는 그 당사국 정부를 위한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특정한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를 사용하거나 통합한다... *3. With respect to a product that uses cryptography and is designed for commercial applications, neither Party shall impose or maintain a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that requires a manufacturer or supplier of the produt, as a condition of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to:* *(c) use or integrate a particular cryptographic algorithm or cipher, other than where the manufacturer, sale,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is by or for the government of the Party...*

17. 빅데이터 (Big data)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빅데이터(BigData)의 사전적 정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수치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하고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함. 다국적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는 빅데이터를 '지금까지 데이터를 관리하던 기존의 소프트웨어로는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규모의 데이터'로 정의했고,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큰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빠른 수집·발굴·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1.2 빅데이터의 특성(3V와 5V)

가트너(Gartner)는 빅데이터의 특성으로 규모(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의 3V를 제시함, 빅데이터는 향상된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거대한 용량(Volume)의 정형 및 비정형의 다양한 형태(Variety)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Velocity)로 쏟아져 나와 축적되는 특성을 지닌 정보자산이라고 정의함, 최근에는 데이터경제시대에 빅데이터 특성을 확대하여 기존 3V요소에 정확성(Veracity)과 가치(Value)를 추가한 5V를 제시함

1.3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통상 협정문에는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데이터 및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가 명시됨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제14.1조(정의)

"개인정보(개인데이터)는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데이터)를 의미함"

"Personal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including data, about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통상과 빅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조직 문화,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뜻함. 디지털 통상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무역으로 통상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I.C.B.A(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통상, 무역의 운영 방식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디지털 통상에서의 빅데이터 경제(BigData Economy)는 빅데이터의 공유 및 이용, 활용 촉진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유통시장의 창출, 보안 기술 및 인재 육성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임.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과 데이터 거래소

한국신용정보원은 2019년 6월부터 5,00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금융빅데이터를 금융업권, 핀테크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운영

하고 있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보유한 금융빅데이터를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방시스템임.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여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임. 데이터 거래소는 핀테크, 통신,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며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함. 최근 금융보안원은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금융 분야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금융데이터거래소(FinDX)를 2020년 5월 11일에 출범하였음. FinDX는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데이터 판매자와 수요자에 필요한 거래 기능(등록, 검색, 계약, 결제 등)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유통·활용 종합 플랫폼임. 디지털 통상에서도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공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Article 9.4: 데이터 혁신)에서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 주도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신뢰 가능한 공유 프레임워크 및 개방허가협약 등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데이터 혁신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며 데이터 거래소 구축이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한국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 조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1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됨. 데이터 기본법은 ① 국가 전체의 데이터 컨트롤타워 확립, ②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③ 데이터 거래사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 또한 정부는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기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기본계획의 경우 ① 데이터 생산 및 보호, ② 활용 활성화, ③ 거래 촉진, ④ 전문인력 양성, ⑤ 산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 데이터 공유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고려사항 등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Trusted Data Sharing Framework)"를 발표하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사용방법 탐색 및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Data Regulatory Sandbox)'를 운영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25조 데이터 혁신 *Article 14.25 Data Innovation*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화와 데이터 사용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은 실험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며 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digitalisation and the use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promote economic growth. To suppor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nd promote data-driven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further recognise th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ables and supports, and is conducive to, experimentation and innovation.*

18.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어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미국의 컴퓨터과학자 존 맥카시(John McCarthy)가 1956년 다트머스 콘퍼런스(Dartmouth Conference)에서 사용한 용어. 인공지능 분야 개척자인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는 인공지능은 컴퓨터에서 자연어를 이해·번역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천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인공지능은 기억, 지각, 이해, 학습, 연상, 추론 등 인간의 지성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기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학문 또는 기술의 총칭으로 정의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EU AI Act)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1년 4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법 제정안(AI Act)' 초안을 공개하였고, 2022년 11월 오픈AI의 챗GPT(ChatGPT)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법안 채택 협상이 가속화되었음. 2023년 6월 인공지능법(EU AI Act)이 통과되면서 EU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주요 규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되었음. 인공지능법은 EU에서 개발·사용되는 인공지능이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고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건강, 안전, 기본권 및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모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법에 따라 최소 위험부터 허용할 수 없는 위험까지 단계로 분류됨. 예측적 치안(프로파일링, 과거 범죄 행위) 도구,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목적 없이 스크랩하는 행위(인권 및 사생활 침해)는 금지되며, 어린이, 취약 계층 및 채용 관행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은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됨. 또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개인의 사회적 행위 등을 평가 또는 점수화하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민감한 특성(성별, 인종, 시민권 상태, 종교, 정치적 성향)을 사용하는 생체 인식 분류 및 감정 인식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도 전면 금지되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된 콘텐츠가 인간이 구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과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됨. 인공지능법은 개인정보보호 기준과 투명성 법규 등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벌금이 부과됨. 한국 국회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기본법)이 논의되고 있음. 법안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적 전략을 설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한국 - 지능정보화기본법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개발,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국제협력 등을 규정함, 2020년 12월, AI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원칙으로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2022년 2월,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① AI 개발·운영자의 윤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 ② AI 개발자의 개발 과정상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안내서」를 마련함.

싱가포르 – 모델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2019년부터 「모델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Model AI Governance Framework)」를 발표함. 민간 조직이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시 직면하는 주요 윤리 및 거버넌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지침을 제공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DEPA*	제8.2조 인공지능 *Article 8.2 Artificial Intelligence*	1. 양 당사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과 채택이 디지털 경제에서 점점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use and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have grown increasingly widespread in the digital economy.* 2. 양 당사국은 AI 기술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윤리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2.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of developing ethical and governance frameworks for the trusted, safe and responsible use of AI technologies.*
2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28조 인공지능 *Article 14.28 Artificial Intelligence*	1. 양 당사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이 개인 및 기업에 상당한 사회적 및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 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use and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within a digital economy offering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to nahiral persons and enterprises.* 2. 양 당사국은 인공지능의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The Parties also recognis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ethical governance frameworks for the trusted, safe and responsible use of AI technologies that will help realise the benefits of AI.*

19. 블록체인 (Block Chain)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블록체인(Block Chain)이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Distributed Database)와 유사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구조체이며,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 및 저장하여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저장플랫폼. 블록(Block)은 거래 건별 정보가 기록되는 단위이며 이것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체인(Chain) 형태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이라고 함. 한국은행은 블록체인을 '거래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공동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로 정의한 바 있음.

1.2 블록체인의 거래기록 및 저장방식

블록체인은 블록의 정보와 거래내용(거래정보)을 기록하고, 이를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분산 및 공유하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또는 공공거래장부를 말함. 비트코인(Bitcoin)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명)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로 P2P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장부시스템(Public Ledger)이라고 언급함. 블록체인은 은행이나 환전소 등 중앙서버의 개입 없이 P2P를 통해 네크워크상에서 사용자와 제공자의 컴퓨터에만 거래내역이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함. 블록체인은 위변조(forgery)에 대한 보안성이 뛰어나 이를 선호하는 네트워크 거래 참여자들 간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되고 있음.

1.3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 기반의 환경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당사자 간에 거래가 자동으로 체결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약임. 과거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 그리고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이나 스마트 계약은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됨. 따라서 스마트 계약은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계약 체결과 이행에 따르는 위험이 제거되고, 향후 재판이나 강제집행, 그리고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 효율성이 장점임. 또한 조건에 의해 거래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므로 중간관리자에 의한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거래정보기록이 보존되어 계약서 위조, 사고기록 조작 등의 신용리스크와 계약 상대방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음. 스마트계약은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동일 증명 작업을 기반으로 상호 약속된 규칙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업무 영역에서 가장 큰 적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① 상호 거래 및 검증이 빈번하며, ② Data Ownership 및 보안이 민감하거나, ③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고, ④ IT 시스템의 확장 및 효율화가 가능한 업무가 스마트계약 적용에 적합한 업무 영역임. 그 중 특히 보험 산업에서 스마트 계약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음.

보험업의 특성상 손해보험 보상업무의 경우 가입자, 보험사, 손해사정, 정비업체, 병원, 사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위하여 각기 상이한 대외 업무 처리를 통한 복잡한 인터페이스 프로세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전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음. 보상 프로세스 진행과 관련 관련자간 동일한 증빙문서에 대하여 블록체인을 통하여 상호 합의한 처리내용에 대하여 위·변조가 불가하면서도 처리 절차를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 진행하여 블록체인 기반 연계업무를 누수 없이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음. 이처럼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중앙방식 보안에서 탈중앙방식 보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로서, 비대면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인 금융거래 정보의 암호화 인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근 특정 가상자산 가격의 폭락과 거래소 파산 등의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①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② 고객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및 동일종목·동일수량 보유, ③ 가산자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 ④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 ⑤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또한,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② 시세조종행위, ③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가상자산법 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한국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신청·승인한 전자무역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제15조).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무역문서를 교환·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함.

3.2 주요 정책·이슈

싱가포르, TradeNet 및 TradeTrust 운영

싱가포르는 무역업체가 수출입 관련 제반 사항을 세관 등 무역 당국에 일괄 제출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인 TradeNet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에는 정부 및 기업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여 전자무역서류를 교환·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인 TradeTrust를 개발 및 운영함.

ASEAN, 제3차 아세안디지털장관회의(ADGMIN)

제3차 아세안디지털장관회의(ADGMIN)에서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발 및 디지털 전환 적용을 위한 정책 및 규정의 수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업 및 프로그램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20.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분산원장기술은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ledger)을 공동으로 분산관리하는 기술. 중앙관리자나 중앙데이터저장소가 없으며,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peer)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하여 공유함. 이들 거래 정보는 분산관리하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할 수 있음.

1.2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분산원장기술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임.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은 금융산업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분산원장기술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함. 클라이언트나 서버 개념 없이 동등한 참가자(peer nodes)들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데이터나 주변 장치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로 음악, 영화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에 활용됨. 분산원장기술은 모든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하고 새로운 거래를 반영하여 갱신(update)하는 작업도 공동으로 수행함. 분산원장기술은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Efficiency), 보안성(Security), 시스템 안정성(Resilience), 투명성(Transparency) 측면에서 장점을 가짐.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인증과 데이터 거래 증명을 위해 여러 중간 매개체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나 분산원장은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직접 공유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지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앙화된 시스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거래 정보가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 및 위조의 위험성도 낮아짐.

1.3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분산원장기술과 디지털통화(가상자산)

디지털통화(가상자산)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새로운 유형의 지급수단임. 이것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고, 중앙은행,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 공인기관이 발행하지 않으며 분산원장 이용의 P2P 네트워크에서 거래기록 및 승인이 이루어짐. 디지털통화는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낮은 수수료, 익명성, 역외거래 편의성, 빠른 거래속도 등의 장점을 보유함.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정보의 취합과 기록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함. 금융위원회의 '2022년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3조원이고, 유통되는 가상자산 개수는 1371개, 중복을 제외하면 638개로 조사되었음. 가상자산 중 139개(36%)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의 소규모로, 급격한 가격변동과 유동성 부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분산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ty)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회사에서 발급하는 사설인증서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됨. 이와 함께 신흥 기술인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분산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ty)이 공공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신원확인과 전자서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분산신원증명은 사설인증서와 달리 탈중앙화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ID 디지털신원 증명서비스임. 이용자가 자기통제 하에 본인확인, 자격인증, 단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인 신원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임. 이에 공공 및 금융서비스 등 법 규정에 근거한 이용자 신원확인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 간 신원확인, 사물 간 신원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아키텍처 및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국내외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부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카드, 운전면허증 등으로 분산신원증명 확대 방침을 발표했으며 부산광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역시 모바일 분산신원증명을 도입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활용도는 초기 단계이며 개인이 단말기를 분실하는 경우 해결책이 미흡하여 이에 대책 논의도 필요한 상황임.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신청·승인한 전자무역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제15조), 최근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무역문서를 교환·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함.

싱가포르 – 싱가포르 TradeTrust

싱가포르 TradeTrust는 정부와 기업들을 분산원장기술(DLT)을 사용한 공공 블록체인으로 연결하여 전자무역서류의 진위와 출처를 증명하고, 이를 교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임,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전자무역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거래비용·시간 절감, 사기 위험 등 감소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2016년 물류분야 디지털화를 위한 '물류산업 디지털 계획(Logistics IDP)'을 발표함, 물류기업이 채택가능한 단계별 디지털 솔루션(물류 로드맵)과 기술훈련, 중소기업의 온라인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됨, 싱가포르 물류 로드맵은 디지털 경제를 위한 준비(1단계), 디지털 경제에서의 성장(2단계), 도약(3단계)로 구성되며, 도약단계에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과 분산원장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3.2 주요 정책·이슈

ASEAN, 제3차 아세안디지털장관회의(ADGMIN)

제3차 아세안디지털장관회의(ADGMIN)에서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발 및 디지털 전환 적용을 위한 정책 및 규정의 수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업 및 프로그램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21.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이란 온라인 상에서 개인이나 디바이스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 신원관리(Identity Management)는 시스템의 정당한 사용자의 신원확인과 시스템 자원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통제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소프트웨어 도구로 구성됨. 신원관리는 시스템 사용자의 분류 체계를 확인하고 허가하며 각 사용자에게 어떤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지 명시하기 위한 정책과 사용자의 신원보호를 위한 프로세스와 기술을 포함함. 최근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과 함께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및 마이데이터 시행 등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을 보장하려는 흐름과 맞물려 차세대 디지털 신원인증 모델의 필요성 및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통상 협정문에는 디지털 신원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자인증에 관한 정의는 명시됨.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제14.1조(정의)

"전자인증은 전자통신 또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자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 또는 행위를 의미함"

"Electronic authentication means the process or act of verifying the identity of a party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or transaction, or ensuring the integrity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자기주권신원모델과 분산신원증명(DID)

자기주권신원(Self-Sovereign Identity, SSI) 모델은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제3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소유·관리하는 것임. SSI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제3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인증한 신원을 서비스 제공자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임. 3세대 SSI 모델을 구현하여 자기주권신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로 분산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ty, DID)이 주목받고 있음. DID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중앙서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던 기존 신원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저장하고 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골라서 제출하는 신원인증 기술임. 서비스 제공자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암호학적 특성(Hash)을 기반으로 제3의 중앙화된 신뢰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에 등록된 발급정보를 통해 사용자 신원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음. 즉, DID는 개인정보에 대한 주권 실현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중앙화된 공급자 중심의 인증 시장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탄생한 새로운 패러다임임.

분산신원증명(DID)의 향후 과제

DID 기술이 보다 범용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함. 먼저, 호환성 및 표준화 문제임. DID 연합체마다 이용하는 솔루션이 다른 탓에 각 연합체의 회원사 간에만 DID가 호환되고 있음. DID가 어느 서비스에나 적용 가능한 인증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DID 기술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DID 기술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는 등 DID 기술 표준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해외에서는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을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이 수행되고 있음. 다음으로 보안문제임. 스마트폰(전자지갑)에 저장된 신원정보 데이터를 간편한 인증을 통해 제출이 가능한 만큼 스마트폰 단말의 보안성 또한 뒷받침되어야 함. 스마트폰에서 신원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 및 신뢰실행환경(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TEE)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비인가자가 신원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사용자 인증절차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한국 -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효력을 가지며(제3조), 정부가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제4조),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후, 현재 국내 전자서명·인증에는 특정 서명·인증 수단을 요구하지 않음.

싱가포르 - 전자거래법

싱가포르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Act)」은 전자서명과 보안 전자서명을 구분하고, 각 서명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함,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인증기관에 대한 자발적 인증시스템을 운영하며, 공인된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갱신, 일시 중지, 해지 등과 관련된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한국 - K-DID(Decentralized Identity, 분산신원증명)

우리 정부는 DID 기술을 적용한 각종 인증 체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과 2022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며 세계 최초로 국가 DID 인증 체계 도입에 성공함, 병무청도 블록체인 DID 플랫폼 'e-병무지갑'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음. 향후 정부는 DID를 적용한 디지털 플랫폼 지속 확대를 위해 디지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등기서류, 의료보험증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인증 서비스 도입을 계획·운영 중에 있음.

싱가포르 - 싱패스

싱가포르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정부·민간 서비스를 이용 시 사용가능한 디지털 신원 서비스인 '싱패스(SINGPASS)'를 운영함, 싱패스는 정부조달, 건설, 부동산, 결혼·출산·육아 지원, 취업, 교육, 보건, 투표, 노령인구·저소득층 지원 등 약 800여개의 정부·민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원 확인이 가능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30조 디지털 신원 *Article 14.30 Digital Identities*	1. 개인 또는 기업의 디지털 신원에 대한 양 당사국의 협력이 지역 및 글로벌 연결성을 증가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양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에 대해 구현 및 법적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한다. 양 당사국은 디지털 신원에 대한 각자의 체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Recognising that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on digital identities, individual or corporate, will increase regional and global connectivity, and recognising that each Party may have different implementations of, and legal approaches to, digital identities,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promote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ir respective regimes for digital identities.*
2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DEPA*	제2.7조 전자결제 *Article 2.7 Electronic Payments*	1. 당사국들은 디지털 신원을 사용하여 개인 및 기업의 국경 간 인증 및 전자적 고객확인제도를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able cross-border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know-your-customer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using digital identities.*

22. 메타버스 (Metaverse)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메타버스는 그리스어로 초월이나 가공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1992년 미국의 SF작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Snow Crash)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 메타버스를 직관적으로 정의하면 'AR(Augmented Reality)과 VR(Virtual Reality) 기술이 만들어내는 모든 가상세계'를 뜻함. AR은 현실에 가상기술을 증강하여 현실을 보강하는 기술이며, VR은 현실과 분리된 가상현실을 의미함.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술은 아니며, 이전부터 연구된 증강 및 가상현실 이외에 라이프로깅(Life 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등의 기술이 융합되면서 생성된 용어. 오늘날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제·사회·문화 활동이 상호 연결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과 신경제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은 메타버스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졌음.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 친숙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에게 중요한 소통채널이 되었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플랫폼 모델로서 영업점 점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 기업들은 고객 유치뿐 아니라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수단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며 사내 디지털 혁신의 도구로 활용 중임. 최근 유통, 제조, 금융 등 다방면에서 메타버스를 연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메타버스 테마 기업의 IPO(기업공개)가 흥행에 성공하며 기업을 넘어 대중과 자본시장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 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blox)는 2022년 12월 기준 일일활성이용자(DAU)가 6,150만 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음.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메타버스 분야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와 비전을 제시하고, 팀 개편 및 기술기업 인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금융업의 메타버스 플랫폼 적용 사례

국내 금융 산업은 외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비대면 거래와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음. 국내외 메타버스 플랫폼은 SK텔레콤이 2021년 7월에 개발한 이프랜드(ifland), 전 세계 3억 4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네이버제트(z)의 제페토(ZEPETO), 미국 IT기업 게더(Gather)가 개발한 메타버스 화상회의 플랫폼 게더타운(Gather town), 그리고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 등이 대표적임. 우리금융지주는 이프랜드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MZ세대 직원과 은행장 타운홀 미팅을 수행한 바 있고, 하나금융지주는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금융콘텐츠 방송을 진행한 바 있음. DGB금융지주는 제페토를 통해 그룹 경영 현안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으

며, 게더타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신입 행원 채용 설명회를 2021년부터 개최한 바 있음. KB국민은행은 게더타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영진 회의와 외부업체 회의를 개최하고, 로블록스 플랫폼 기반의 가상 영업점을 개설하여 대출상품을 홍보하고 있음. 이처럼 은행권은 외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화상회의와 직원교육연수, 그리고 금융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의 신규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는 MZ세대와 적극 소통하고 있음. 증권업에서는 외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기보다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을 기반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메타버스형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하고 있음. IBK투자증권은 메타시티포럼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여 금융교육, 자산관리, 모의투자,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삼성증권 또한 자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상도시 메타시티 내 증권사 지점을 개설하였다. KB증권은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퀄컴, 아마존, 로블록스 등)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출시하였고, 한국투자증권은 VR·AR 기기 제조기업과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메타버스 금융상품을 출시한 바 있음. 최근 금융권에서는 은행 지점을 찾지 않는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영업점 또는 가상 영업점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즉, 메타버스 안에 가상 영업점을 만들고 은행 코어뱅킹과 메타버스를 연결해 가상현실 환경에서도 송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음. 향후 금융 서비스와도 연동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제1차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

디지털 경제 이익 증진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대화'를 개최함(2023.05.19). 양국 디지털 기업 25개사(한국 14개사, 싱가포르 11개사)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 솔루션 및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 개발·활용 관련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EU, ICT 표준화 롤링플랜 2023

EU 집행위원회는 EU 정책 지원에 필요한 ICT 표준화 활동을 정리한 "ICT 표준화 롤링플랜2023"을 발표함, EU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40개의 ICT 표준화 기술에 대해 약 260개의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올해 신규로 메타버스 기술이 추가됨.

프랑스 메타버스 표준위원회

프랑스 디지털전환및전자통신부와 프랑스표준협회(AFNOR)는 프랑스 메타버스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2023년 2월 22일 "메타버스 표준위원회"를 발족함, 위원회는 상호운용성 해결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마케팅 및 영업 지향, 인재중심채용, 디자인과 혁신 지향 등을 중심으로 메타회의론자를 안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23.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소통 양식. API는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정한 규약으로 외부개발자가 정보공급자의 콘텐츠를 타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XML, JSON 형태로 제공하는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말함. API 목적은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받는데 그치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조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API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통상과 오픈 API(Open API)

오픈 API(Open API)는 플랫폼 기능 및 콘텐츠를 외부에서 웹 프로토콜(HTTP)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한 API를 말함. 즉,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공개된 API를 말함.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이들 정보를 상업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를 위한 인터페이스임. 오픈 API를 이용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음.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Article 2.7 Electronic Payments)에서 당사국들은 결제 인프라의 상호운용성과 상호연결을 촉진하며, 결제생태계에서 유용한 혁신과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경 간 전자결제개발을 지원하는 데 동의하고 있음. 오픈 API를 통한 국가 간 데이터 개방 및 활용으로 디지털경제 시대에 국제사회의 디지털무역 흐름을 주도하고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수 있음.

금융권 오픈뱅킹(Open Banking)과 오픈 API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육성 초기부터 핀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권의 API 개방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금융위와 금융권은 지급결제망 및 개방성, 접근성 확대의 중요성을 빠르게 포착하고, API 체계를 구축한 바 있음. 은행권을 아우르는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은행 모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전산표준이 서로 다른 복수 은행과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중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최초로 참가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오픈뱅킹)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참가기관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말하며,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로 구성됨. 오픈 API는 핀테크 기업이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도구로 7개의 서비스 API와 인증/관리 API를

제공함. 핀테크 기업은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기존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IT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출시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잔액 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 실명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등의 데이터 조회 기능과 출금이체, 입금 이체 등 지급결제 기능을 오픈 API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2016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관련 규제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통화청 및 각종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API를 웹사이트(www.mas.gov.sg)에 공개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11조 전자결제 *Article 14.11 Electronic Payments*	1. 비은행, 비금융 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전자결제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1. To facilitate the rapid growth of electronic payments, in particular those provided by non-bank, non-financial institution and FinTech enterprises,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n efficient, safe and secure environment for cross-border electronic payments.* 2. 양 당사국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아키텍처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결제의 상호 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결제서비스 제공업체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API를 안전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2. Each party shall facilitate the use of open platforms and architectures such as tools and protocols provided for through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API) and encourage payment service providers to safely and securely make APIs for their products and services available to third parties, where possible, to facilitate greater interoperability,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electronic payments.*
2		제14.26조 공공데이터 *Article 14.26 Open Government Data*	1. 양 당사국은 공공데이터를 대중에게 제공하기로 선택한 범위 내에서,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우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PI를 통해 공간적으로 구현가능한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1. To the extent that a Party chooses to make governmen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it shall endeavour to ensure to the extent practicable, that the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in a spatially enabled format with reliable, easy to use and freely available APIs.*

24. 핀테크 (FinTech)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 기술을 의미함.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등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 플랫폼화, 탈중개화 등 금융혁신이 급격히 진행됨.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핀테크를 금융산업의 혁신과 융합을 촉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가적인 지원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음. 핀테크 초창기 시대인 1세대 핀테크(핀테크 1.0)는 간편결제, 송금, 펀드, 자산관리 등 기존 금융서비스를 IT와 결합하여 기존 금융서비스의 해체 및 재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화된 핀테크 2.0은 혁신융합기술을 통해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핀테크 2.0의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P2P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있음. 핀테크 산업은 일반적으로 송금·결제(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카드, 현금, 전자화계 등 재화의 거래), 대출(자금 대부자와 대출자를 온라인을 통해 연결), 자산관리(개인자산 통합 관리와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제공), 투자(기업과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해 연결) 등으로 구성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제14.1조(정의)

"핀테크는 금융서비스 제공 및 사용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사용을 의미함"

"FinTech means the use of technology to improve and automate the delivery and use of financial services"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핀테크와 보안 거버넌스

국내외 핀테크 전문가들은 핀테크 환경에 적합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및 보안 거버넌스(security governance)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핀테크 사업구조는 ICT기업, 금융기관, PG(Payment Gateway)사 등 다양한 기관 간의 제휴 및 연계로 구성되어 과거 금융기관 위주의 형태보다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관리대상의 증가에 따라 기관 간 보안책임 영역이 모호해지거나 보안관리체계의 수준이 상이한 경우 한 곳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제휴 및 연계된 금융시스템 전체로 보안사고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핀테크 기업들은 기업·기관 간 협의체를 설립하여 금융보안 정책수립에 필요한 국내외 법규와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된(표준화된) 정보보호 및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핀테크 보안 거버넌스(FinTech Security Governance)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핀테크 보안 거버넌스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협의된 표준화된 핀테크 보안정책 수립, 정보보호에 관한 최고경영층의 의사결정권한과 책임수립, 비즈니스와의 전략적 연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보장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 등이 있음. 핀테크 보안 거버넌스를 통해 연계된 기관과 공동으로 보안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리체계가 수립될 수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이슈

3.1 주요 법령 및 정책 동향

싱가포르-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

싱가포르는 기술 발달에 따른 결제서비스 변화에 대응하고 핀테크 시장의 성장지원을 위해, 2019년 「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PSA 2019)」을 제정함. PSA 2019는 결제서비스의 종류를 7가지(계좌개설, 국내송금, 국제송금, 가맹점 인수, 전자화폐 발행, 디지털 토큰, 환전)로 구분하고, 각 서비스의 범위와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 내용을 간소화함.

한국-싱가포르 핀테크 협력

우리 금융위원회와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16년 「핀테크 협력 MOU」를 체결하고, 금융분야 혁신을 위한 정책 정보공유 및 핀테크 관련 대화 개최 등 협력을 진행함. 2018년 개정한 MOU를 토대로 상대국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 시 인가 절차 등을 지원하는 '추천 매커니즘(Referral Mechanism) 제도'를 운영함, 양국 핀테크 기업 간 협력 기회 확대를 통해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국내 기업의 아세안 핀테크 시장진출 촉진이 기대됨.

3.2 주요 정책·이슈

한국, 핀테크 산업과 규제 완화 정책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빅데이터 분석·이용 및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 확보 등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신용정보법"이 개정됨.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새롭고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은행과 제휴 없이 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도 구축함. 또한 P2P업체 정보공시, 투자금 보호,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020년 8월에 시행된 바 있음. 2020년부터 시작된 오픈뱅킹을 비롯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IT 기업과 금융회사의 인수·합병이나 기술제휴가 확대되고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29조 핀테크 협력 *Article 14.29 FinTech Cooperation*	1. 양 당사국은 핀테크 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핀테크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에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양 당사국은 (a) 비즈니스 또는 금융 부문을 위한 핀테크 솔루션 개발을 촉진한다. (b) 각 당사자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핀테크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 또는 스타트업 인재의 협력을 장려한다. *1.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FinTech industries of the Parties. The Parties recognise that effective cooperation regarding FinTech will require involvement of businesse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a) promote development ofFinTech solutions for business or financial sectors; and (b) encourage collaboration of entrepreneurship or startup talent in FinTech between the Parties, consistent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Parties.*

25. 레그테크 (RegTech)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레그테크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규제 준수 및 규제 관련 활동을 기술로 혁신하고자 하는 움직임 또는 산업을 의미함. 레그테크는 기술, 규제, 금융서비스와 핀테크(FinTech)를 상호 연결하여 각각의 강점을 살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잡한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 효율화하는 기술을 의미함.

1.2 레그테크의 특징

레그테크는 양 방향성, 표준화, 자동화,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등의 특징을 지님. 첫째, 레그테크는 기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과 다르게 외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동작하는 양 방향성을 지님. 감독기관의 시스템과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연동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상호 간에 정해진 기술과 프로토콜로 주고받는 등 효율성과 정확성을 추구함. 둘째, 레그테크는 표준화 특성을 지님. 컴플라언스 시스템은 해당 조직이나 기업만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계·운영되었으나 레그테크 시스템은 설계 단계부터 범용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 개발됨. 레그테크의 표준화 특성은 법규 변경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함. 셋째, 레그테크는 자동화 특징을 지님. 수많은 법 제도 및 규정들이 변경될 때마다 금융회사는 변경에 다른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 또는 내부시스템을 변경해야 함.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채택한 Machine Readable Regulation(MRR)은 금융 관련 법규를 시스템(machine)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여 컴플라언스 절차 및 규제 준수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임. 넷째,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혁신성). 레그테크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을 지님.

구분	특징
양방향성	외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동작해 효율성과 정확성 추구
표준화	설계 단계부터 시스템을 범용성을 위해 개발 법규 변경에 신속한 대응 가능
자동화	MRR: 시스템이 변환된 금융 관련 법규 자동 인식 및 분석
혁신성	블록체인,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1.3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싱가포르-호주 디지털 경제협정(SADEA) 제14.1조(정의)

"레그테크란 규제 프로세스 준수를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RegTech" means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improve and manage compliance with regulatory processes.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레그테크의 아키텍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의 사전적 정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사람을 대신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 처리하는 기술을 말함. 최근 RPA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반

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RPA를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로, 가능한 많은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로 정의한다. 금융권은 'RPA 봇(RPA bot)'을 영업점에 도입하여 비대면 계좌 승인 및 거부, 신분증 위조 여부 판독, 신용등급 조회, 전자공시 정보조회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RPA를 통해 신용평가 등 복잡한 업무까지 자동화하는 등 인공지능의 RPA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RPA로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확보해 온전히 고객 상담과 고객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음. RPA는 인건비 절감과 인간의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레그테크의 구현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영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UKSDEA)

2022년 6월 14일에 발효된 영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UKSDEA)은 아시아와 유럽 국가 간 최초의 디지털 경제 협정으로서 글로벌 하이테크 및 서비스 허브로서 디지털 경제의 미래 성장을 확대하려는 양국을 연결함, UKSDEA에는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경제의 초석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과 인공지능, 핀테크 및 레그테크, 디지털 신원 및 법률 기술과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영역의 협력 요소가 포함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영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 *UKSDEA*	제8.53조 새로운 금융서비스 *Article 8.53 New Financial Services*	1.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핀테크 및 레그테크 분야에서 금융서비스의 지식, 경험 및 개발을 공유하고, 금융건전성, 소비자보호, 금융포용성, 금융안정성, 운영탄력성,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개발을 촉진한다. *1. To support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llaborate, share knowledge, experiences and developments in financial services, in areas such as FinTech and RegTech, advancing financial integrity, consumer protection, financial inclusion, financial stability, operational resilience, sustainability and facilitating cross-border development of new financial services.*
2	싱가포르-호주 디지털 경제협정 *SADEA*	제14.32조 핀테크와 레그테크 협력 *Article 14.32 FinTech and RegTech Cooperation*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정책 및 무역진흥기관 및 규제기관을 통해 핀테크 및 레그테크에 대한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1. The Parties shall encourage collaboration on FinTech and RegTech through their respective policy and trade promotion agencies and regulators.*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핀테크 및 레그테크 기업과 산업 기관 간의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2. The Parties shall promote closer and stronger collabo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FinTech and RegTech enterprises and industry bodies.*

제 2 장

디지털 통상 및 비즈니스 촉진

제1절 디지털 전환과 통상

26. 디지털 통상 (Digital Trade)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디지털 통상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함.[64]

넓은 의미로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모든 국가 간의 교역 활동'을 포괄함. 전자상거래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인터넷과 ICT의 역할이 각종 거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등과 이러한 거래에 수반되는 데이터와 지적재산권의 이동까지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다양한 무역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65]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OECD, WTO, IMF 문서상의 정의

"디지털 통상이란 디지털에 의해 주문 또는 배송되는 모든 국제 무역활동 전반을 의미"

"Digital trade is all international trade that is digitally ordered and/or digitally delivered"[66]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통상 관련 국제규범 논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통상의 개념이 확장되며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통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WTO는 1998년부터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가동하면서 전자적 방식의 국경간 무역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자간 무역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 무역장벽을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 연장을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데이터 이동의 자유, 컴퓨팅 설비 현지화, 개인정보 등 핵심 부분에서 회원국간에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 쟁점들에 대해 각 국가들의 입장이 대립하게 되면서 다자차원의 논의가 지연되자, 2000년대 이후에는 양자간 FTA 또는 메가 FTA 체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규범이 형성되고 있음.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주요국 입장[67][68]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해 미국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대외 개방은 소극적이며, 중국은 규제를 통해 독자적으로 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미국은 다자 합의가 정체되자 자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규범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음. 최근까

[64] 박영훈. 2020.「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Global Market Report 20-003. KOTRA.
[65] 이효영, 박설희. 2021.「디지털 무역 규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여시재 미래디자인 시리즈.
[66] Ahmad, N., Brackfield, D., & Colecchia, A. 2020. *Handbook on Measuring Digital Trade, Version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67] 박영훈. 2020.「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Global Market Report 20-003. KOTRA.
[68]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1)가 발간한「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2장 '한국–칠레 FTA를 넘어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이주형)' 참고

지 미국 주도 무역협정(한국-미국 FTA, CPTPP, USMCA)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디지털 무역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자국이 체결하는 FTA에 계속 추가하기 시작하였다. USMCA에서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대신 '디지털 통상'이라고 장의 제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의무,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 의무, 소스 코드 강제이전 금지 의무 등 높은 수준의 규범을 도입해왔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3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중의 하나임. 개인정보의 정의가 더욱 구체화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함.

한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됨.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함.

한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분야에서 가명정보가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됨. 기업 및 법인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되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미국-일본 디지털협정 *USJDTA*	제14조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 *Article 14 Online Consumer Protection*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디지털무역에 관여할 때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상거래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dopting and maintaining transparent and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activities when they engage in digital trade.*
2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제19.2조 범위 및 일반 조항 *Article 19.2 Scope and General Provisions*	양 당사국은 디지털무역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디지털무역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촉진할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무역의 이용 및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The Parties recognize the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ies provided by digital trade and the importance of frameworks that promote consumer confidence in digital trade and of avoiding unnecessary barriers to its use and development.*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KSDPA*	제14.22조 사이버보안 협력 *Artcle 14.22 Cybersecurity Cooperation*	양 당사국은 전 세계적인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The Parties have a shared vision to promote secure digital trade to achieve global prosperity and recognise that cybersecurity underpins the digital economy.*

27.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Digital Protectionism)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디지털 보호무역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정의는 정립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국내와 국외 디지털 데이터 혹은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간의 차별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및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동에 대한 다양한 무역장벽을 포괄함.[69]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규제 및 조세 외에도 국경 간 정보 이전,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 행위를 포함하는 '디지털 통상장벽'으로 규정할 수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70]

"디지털 보호무역주의를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애물 또는 방해요소로 정의하며, 이에는 데이터 현지화, 개인정보보호 조치,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 온라인 검열, 기타 디지털 무역 장애요인 등을 포함함."

"Barriers and impediments to digital trade... [including] localization barriers, data privacy and protection measures,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issues, and online censorship, as well as impediments to digitally enabled trade."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통상장벽의 증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하는 NTE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을 각 나라별로 지적하고 있음. 2023년에는 중국의 국경 간 정보 이전 규제, 토착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강제, EU의 개인정보 역외 이동 제한, 일본의 IT 플랫폼 기업 규제 대상 선정 과정 공정성(투명성) 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제가 대표적으로 언급됨.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역에 위치한 주체들 상호 간에 정보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접속·처리·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제도적 환경이 요구되나 오히려 2010년 이후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71] 이에 따라 기업들도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건,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 요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가장 큰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음.[72]

[69] Aaranson, A. S. (2018),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Digital Protectionism", *World Trade Review*, 18 (4): 541-577.

[70]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2013). *USITC Digital Trade in the U.S. and Global Economies, Part 1*. Investigation No. 332-532, Publication 4415, July 2013. p. xxi.

[71] 김승민. 2021. 디지털 무역규범: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72] USITC (2013).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중국 - 네트워크안전법

외국 정부가 중국 내 기관, 조직, 기업이 관리하는 데이터의 조사권 및 관할권 행사를 막고 있음. 국가안보를 이유로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서버를 자국 내에 두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정보인프라 운영자에 대한 벌칙 및 해당 법 위반에 대한 벌금 규정 도입.

중국 - 데이터보안법

중국 주무부처는 국내 법률, 중국이 체결/참가한 국제조약 및 협정과 평등 호혜 원칙에 따라서 외국 사법기관의 데이터 제공에 관한 요청에 응하지만, 관련 정부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데이터 국외이전은 금지하고 있음.

EU -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역외 개인정보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며, 규정을 어길 시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를 벌금으로 부과함.

베트남 - 사이버보안법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에도 베트남 내 데이터 보관 및 사업장 설립과 같은 데이터 현지화 관련 의무 적용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KSDPA*	제14.6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Article 14.6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Neither Party shall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a digital product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to a digital product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2		제14.14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Article 14.14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그 요건은 자의적이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are not arbitrary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are proportionate.*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 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Neither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f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3		제14.31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Article 14.31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양 당사국은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디지털 경제를 조성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는 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중요성과 기여를 인정한다.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and contribution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 fostering a well-functioning digital economy and reducing barriers to trade by increasing compatibility, interoperability, and reliability.*

28.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전자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함.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함.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서부터 논의되어 옴.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19장(Digital Trade)

"전자적 통신 또는 거래에 대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적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전자 서명은 전자 문서 또는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된 전자 형식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전자 문서 또는 메시지와 관련하여 서명자를 식별하고 전자 문서 또는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Digital authentication means the process or act of verifying the identity of a party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or transaction and ensuring the integrity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Electronic signature means data in electronic form hat is in, affixed top, or logically associated with, an electronic document or message, and that may be used to identify the signatory in relation to the electronic document or message and indicate the signatory's approval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document or message."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국가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의 기술 인프라 차이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디지털 협정은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대하여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은 디지털 통상 규범간 관련 조항이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져 USMCA 등을 비롯한 선행 조약과 비슷한 혹은 동일한 정의를 담고 있으나 국가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과 관련한 기술력이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일부 국가는 이를 구현할 컴퓨터 시스템이나 기술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실무적 난제가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서명법도 2020년 개정되었다. 이는 민간과 공공 분야 모두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활성화될 것을 의미한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인증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73]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14.6조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Article 14.6: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1.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서명이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법적 유효성을 거부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자도 (a) 전자거래 당사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b) 전자거래 당사자의 거래가 인증과 관련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 앞에서 입증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전자인증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특정 범주의 거래에 대해 인증 방법이 특정 성능 표준을 충족하거나 자국 법률에 따라 인가된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상호운용 가능한 전자인증의 사용을 권장한다. *1. Except in circumstances otherwise provided for under its law, a Party shall not deny the legal validity of a signature solely on the basis that the signature is in electronic form.* *2. No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for electronic authentication that would: (a) prohibi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from mutually determining the appropriate authentication methods for that transaction; or (b) preven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from having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before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at their transaction complies with any legal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authenticati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Party may require that, for a particular category of transactions, the method of authentication meets certain performance standards or is certified by an authority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its law.* *4.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use of interoperable electronic authentication.*
2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19.6조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Article 19.6: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1. 법률에 따라 제공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서명이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법적 유효성을 거부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자도 (a) 전자거래 당사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적절한 인증 방법 또는 전자서명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b) 전자거래 당사자가 그들의 거래가 인증 또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 앞에서 입증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특정 범주의 거래에 대해 전자 서명 또는 인증 방법이 특정 성능 표준을 충족하거나 자국 법률에 따라 인가된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상호운용 가능한 전자인증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1. Except in circumstances provided for under its law, a Party shall not deny the legal validity of a signature solely on the basis that the signature is in electronic form.* *2. No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for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that would: (a) prohibi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from mutually determining the appropriate authentication methods or electronic signatures for that transaction; or (b) preven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from having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before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at their transaction complies with any legal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authentication or electronic signatures.*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Party may require that, for a particular category of transactions, the electronic signature or method of authentication meets certain performance standards or is certified by an authority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its law.* *4. Each Party shall encourage the use of interoperable electronic authentication.*

[73] 관련 규정은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KORUSFTA),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AUSDEA),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USJDTA)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임의로 몇 개의 협정문만 예시하였다.

29. 물류 (Logistics)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물류(물적유통)는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완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원재료의 공급지로부터 완제품의 소비지까지 제품과 서비스 및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74] 즉,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재화의 흐름으로, 생산자 소비자 간의 시간/공간적 격차를 물리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재화의 효율을 증대시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반 활동(수송, 하역 및 보관, 포장 및 유통가공 등)을 포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 보관 ·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의 주요 의제로서 전자상거래 원활화에 대한 논의[75][76]

2018년 3월 WTO 71개 회원국이 채택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을 바탕으로 2019년 3월에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되어 86개국의 참여 속에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협상의 주요 의제는 1) 디지털 통상 및 전자상거래 원활화, 2) 개방성, 3) 신뢰, 4) 범분야 이슈, 5) 통신, 6) 시장 접근의 총 6개로 구분된다. 특히 전자거래 원활화에 관하여 전자인증·전자서명·전자계약·전자송장의 법적 효력의 동등성 인정, 전자결제 서비스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디지털 무역원활화 및 로지스틱스에 관하여 종이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법적 효력 동등성 인정, 간소화된 세관 절차,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 정보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 상품 반출과 통관을 위한 기술 사용, 무역원활화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간소화된 세관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단독으로 제안하였음.

디지털 유통물류체계 혁신[77]

전자상거래(온라인) 시장 성장은 배송·택배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전체 물류 시장규모를 키우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상품의 입고, 재고관리, 피킹, 패킹, 분류, 배송은 물론 반품까지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Fulfillment)'가 핵심으로 등장하는 등 온라인유통 급성장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기술과 결합하여 유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디지털 유통물류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특히 미국 및 유럽은

[74] 배희성, & 김은수. (2018). "한국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공급사슬지향성의 수준에 따른 신뢰성과 품질 성과의 차이분석." 무역학회지, 43(3), 147-168.

[75]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1)가 발간한「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11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엄도영)' 참고

[76] 이규엽·강민지 (202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KIEP 오늘의 세계경제」제21권 제3호, pp. 1-16.

[77] 김돈정 외. 2021.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동향과 산업전망. PD ISSUE REPORT Vol. 21-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낮은 규제, 광대한 시장규모, 혁신적 기술접목으로 유통혁신이 활발하고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빅데이터 기반의 상품소싱, 마케팅, 옴니채널 구축, 드론 배송 등 유통물류 가치사슬 전반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제1조).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촉진을 위한 시책(제57조),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제61조) 등을 마련하도록 함.

한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됨.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스마트 물류센터 등의 정의와 운영 규정 및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을 포함함.

3.2 정책 이슈

한국, 디지털 무역·물류 플랫폼 서비스 개시

2022년 정부는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수출입화물의 선적·운송·추적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디지털 무역·물류 플랫폼」(uTradeHub 2.0)의 서비스를 개시함. 디지털 수출입물류,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스마트 무역원장, 디지털 전자문서 유통 등의 새로운 기능을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 추가함으로써 무역관련 기관 및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화함.

관세청,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 운영 자격 완화[78]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 혁신을 통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3년 1월 31일에 시행함.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내 GDC의 운영자격을 완화하고,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로 반입이 허용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분류·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 후 각 국가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를 말하며, 개정고시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의 GDC 운영을 허용하고 3년 이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취득 조건도 폐지함으로써 GDC 진입장벽을 완화함.

[78] 권종일, 관세청,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국내유치 '물류거점 육성' 총력, 세정일보, 2023년 1월 31일.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69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KSDPA*	제14.9조 물류 *Article 14.9 Logistics*	양 당사국은 비용 감축과 공급망의 속도 및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국경 간 물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fficient cross border logistics which help lower the cost and improve the speed and reliability of supply chains.*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물류 분야에 관한 우수 관행 및 일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a) 주문형 및 동적 라우팅 솔루션을 포함한 최종 단계 배송 (b) 전기,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 (c) 연합 물품보관소(federated locker)와 같이 상품 배송을 위한 국경 간 선택 사항의 이용 가능성 촉진, 그리고 (d) 물류를 위한 새로운 배송 및 사업 모델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share best practices and general information regarding the logistics secto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 last mile deliveries, including on-demand and dynamic routing solutions;* *(b) the use of electric, remote controlled and autonomous vehicles;* *(c) facilitating the availability of cross-border options for the delivery of goods, such as federated lockers; and* *(d) new delivery and business models for logistics.*

30. 전자송장 (Electronical Invoicing/E-invoicing)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전자송장이란 기존 종이 송장 대신 웹에서 발송 및 수신자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송장을 말함. 전자송장은 복잡한 수출입 및 배송 절차를 간소화하였기 때문에 종이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배송 시간이 줄어 보다 빠른 서비스가 가능해졌음. 세관 대기 시간도 50% 이상 줄어들었음. 반복적으로 제품을 보내는 주소는 한 번에 불러와 일괄 처리하는 등 문서 작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음[79].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제14.1조(정의)

"전자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함."

"electronic invoicing means the automated creation, exchange and processing of a request for payment between a supplier and a buyer using a structured digital format."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베트남의 전자송장 정책[80]

베트남 정부는 2018년 9월12일 시행령 119/2018/ND-CP를 공표해 전자송장 제도를 도입했으며, 같은 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Circular) 39/2019/TT-BTC에 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은 시행규칙 37/2017/TT-BTC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123/2020/ND-CP를 발표했음. 이 시행령은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문서로 전환하는 것으로 부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종이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및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할 것임. 이에 따라 기업은 2022년 7월까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자송장으로 전환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의무화 이전에 비즈니스에 전자 인보이스 사용을 구현해야 함. 베트남 전자송장은 디지털 서명을 필수로 포함하는 XML 형식이며, 1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함. 또한 납세자는 전자송장을 세무당국에 전송해야 함. 베트남의 전자송장 사례는 국가간 통상 쟁점은 아니나 국가마다 전자송장의 형식과 기술규정이 상이하다는 구체적 예시로서 차후 전자송장, 즉 디지털통상과 관련한 기술무역장벽을 잘 보여줌.

[79] 전자신문 (2014). "종이 송장은 잊어라 온라인 배송 솔루션 나서. 2014년 8월 26일자 기사 (https://www.etnews.com/20140826000161)
[80] 한국인터넷진흥원(2021). 전자문서·전자거래 글로벌 동향 조사. 20-21쪽.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한국, 전자증명서 교환대상국 확대 추진

2023년 6월 우리나라가 복수국간 디지털협정인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첫 가입국이 되었음. DEPA의 디지털 협정 내용은 높은 수준으로 종이없는 무역(Paperless Trade) 관련 기존 규범의 의무수준을 높이고 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관련 신규범을 포함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송장 유통망 페폴(PEPPOL)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 확대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DEPA*	제2조 제5항 전자송장 *Article 2.5 Electronic Invoicing*	1. 당사국은 상업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전자 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국은 또한 각자의 사법지역 내에서 전자 청구에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른 당사자의 사법지역에서 전자 청구에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 운용되도록 보장하는 이점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신의 사법지역에서 전자 송장 발행과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국경 간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전자 송장과 관련된 조치를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장사항(존재하는 경우)에 근거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상호 운용 가능한 전자 송장 시스템의 세계적 채택 촉진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전자 송장 발행을 위한 상호 운용 가능한 시스템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4. 당사국은 기업의 전자 송장 채택을 촉진, 격려, 지원 또는 용이하게 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해 협력하고 협력하는 데 동의한다. 이를 위해,당사자는 (a) 전자 송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의 존재를 촉진하고 (b) 전자 송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역량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invoicing which increases the efficiency, accuracy and reliability of commercial transactions. The Parties also recognise the benefits of ensuring that the systems used for e-invoicing with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are interoperable with the systems used for e-invoicing in the other Parties' jurisdictions.*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related to e-invoicing in its jurisdiction is designed to support cross-border interoperability. For that purpose, each Party shall base its measures related to e-invoicing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where they exist.* *3.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importance of promoting the global adoption of interoperable e-invoicing system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share best practices and collaborate on promoting the adoption of interoperable systems for e-invoicing.* *4.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and collaborate on initiatives which promote, encourage, support or facilitate the adoption of e-invoicing by businesse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 promote the existence of underlying infrastructure to support e-invoicing; and* *(b) generate awareness of and build capacity for e-invoicing.*

31. 전자지급 (Electronical Paymen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일반적 맥락의 전자지급이란 거래 당사자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여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 전자지급의 수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예, 페이팔), 선불전자지급(예, 네이버 쿠키로 콘텐츠 이용), 전자화폐(예, 디지털인민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등이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제14.1조(정의)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가능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

"electronic payments means a payer's transfer of a monetary claim acceptable to a payee made through electronic means;"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아세안의 금융인프라와 전자결제활성화[81]

아세안 국가는 은행 지점 수, ATM 기기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금융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베트남은 인구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가 5개 안팎으로 적고, 인구 10만 명당 ATM 수도 태국을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에서 50개 안팎으로 우리나라가 약 280개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인프라가 매우 저발달되어 있음. 전자지급은 예금 및 대출계좌 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은행계좌와 연동시키지 못할 경우 알리페이처럼 자체 핀테크를 보유해야하므로 전자지급의 도입은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은행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도 보급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국가간 차이가 큼.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82]

EU의 지급결제산업지침 개정

2018년 개정된 EU 「지급결제산업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2, 이하 PSD2)는 지급결제서비스 지침을 개정하여 고객 계좌에 대한 접근과 계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도모하려고 함.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따라서 신·구 시장참여자 모두가 금융시장에서 보안위험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EU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8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아세안의 전자지급결제 및 비현금사회 도입 현황과 과제 (https://www.kiep.go.kr/board.es?mid=a10509040300&bid=0034&act=view&list_no=6478&tag=&nPage=10)

[82] 김현부·김인석(2019). 개정된 유럽연합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의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과 관련 국내 전자금융 규제와의 비교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4(4): 79-107.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DEPA*	제2조 제7항 전자지급 *Article 2.7. Electronic Payment*	1. 전자 지급, 특히 새로운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전자 지급의 급속한 성장에 주목하고,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을 촉진하고 상호운용성과 결제 인프라를 상호 연결하고 결제 생태계에서 유용한 혁신과 경쟁을 장려한다. 2. 이를 위해 각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원칙을 인정한다. (a) 당사국은 규제 승인, 허가 요건, 절차 및 기술 표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전자 지급에 관한 각자의 규정을 공개적으로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c) 당사국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사용을 촉진하고 금융 기관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 상품, 서비스 및 거래의 API를 제3자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전자 지급 생태계에서 더 큰 상호 운용성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 당사국은 규제를 통한 전자 지급 시스템의 안전, 효율성, 신뢰 및 보안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규제의 이행은 적절한 경우에 전자 지급 시스템 제공으로 인한 위험과 비례하고 상응해야한다. *1. Noting the rapid growth of electronic payments, in particular, those provided by new payment service providers, Parties agre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safe and secure cross border electronic payments by fostering the adoption and us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promoting interoperability and the interlinking of payment infrastructures, and encouraging useful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payments ecosystem.* *2. To this end,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the Parties recognise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make their respective regulations on electronic payments, including those pertaining to regulatory approval, licensing requirements, procedures and technical standards, publicly available in a timely manner.* *(c)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promote the use of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and to encourage financial institutions and payment service providers to make available APIs of their financial products, services and transactions to third party players where possible to facilitate greater interoperability and innovation in the electronic -payments ecosystem.* *(e)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upholding safety, efficiency, trust and security in electronic payment systems through regulation.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should, where appropriate, be proportionate to and commensurate* *with the risks posed by the provision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32. 종이없는 무역 (Paperless Trading)[83]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종이없는 무역이란 복잡하고 중복되는 서류 요건을 과감히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표준화된 양식을 이용한 전자정보교환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이없는 무역을 통해 국제 무역의 효율성은 더욱 증대됨. 전자자료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기존의 서류를 전자형태의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종이없는 무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제14.12조(종이없는 무역)

"상품의 수입·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입 업자에 의해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무역 행정문서라고 하는데, 이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공개하며 가능한 영어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including through a process prescribed by that Party, Electronic versions of all existing publicly available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Each Party shall accept completed electronic versions of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as the legal equivalent of paper documents."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84]

"종이 없는 무역을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포함한 정보 흐름의 전반적인 디지털화를 의미함. 간단하게 말하자면 종이 기반 문서 대신 전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국경 간 무역 거래임."

"Paperless trade refers to the digitization of these information flows, including making available and enabling the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electronically."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종이를 대체할 디지털 문서 표준

특히 '종이없는 무역'의 실현을 위해서는 WTO 모든 회원국 간의 상이한 수출입 서류 양식 및 자료요건의 간소화 및 조화가 필수적이므로 WTO 모든 회원국이 이와 관련한 국제표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 또는 국가 행정당국 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문서전송에 있어 EDI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대두되고 있음. 특히 국가간 상호호환이 가능한 EDI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UN/EDIFACT와 같은 국제 표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임. 이미 EU를 비롯하여 호주, 한국, 브라질, 일본, 싱가포르 등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UN/EDIFACT 표준을 도입하였으며 SWIFT(Society for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IATA, WCO, IMF, BIS 등 국제 또는 민간 협력기구들도 이를 적극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WTO 회원국들에게 UN/EDIFACT 도입을 촉구함으로써 각국의 EDI 체제를 상호 연계하여 국제적 EDI 네트워크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83] 윤진나 (2001). "서류없는 무역 논의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세계경제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4] UNECE. White Paper. Paperless Trade Version I. (https://unece.org/fileadmin/DAM/cefact/GuidanceMaterials/WhitePapers/WP-PaperlessTrade_Eng.pdf)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종이없는 무역 전망

한국과 싱가포르의 디지털동반자협정 체결로 전자무역문서 활용이 촉진되고 문서처리 및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 거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 협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관세청과 싱가포르 세관 간 「한국-싱가포르 DPA 이행 촉진을 위한 전자적 데이터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산지 증명서 및 비가공 증명서에 대한 전자본 발급 및 상호인정을 시행한 후 향후 자료 교환량 증가 추이에 따라 양국간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임.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은 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 업무의 처리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든 법률임.

- 제15조(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신청 · 승인한 전자 무역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 협정 *KSDPA*	제14조 제12항 종이없는 무역 *Article 14.12. Paperless Trading*	1. 각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존의 모든 무역 관리 문서의 전자 버전을 해당국이 규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3. 각 당사자는 무역관리문서의 완성된 전자버전을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문서로 수락한다. 5. 각 당사자는 (a)원산지 증명서, (b)비조작증명서, (c)양국이 같이 결정한 기타문서를 포함한 무역관리무서와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 타방의 싱글윈도우와 원활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8.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기업간 상업 거래 활동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의 교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에 상호 영토 간 기업 간 국경을 넘나드는 상업 거래 활동에서 사용되는 전자 기록의 사용과 교환을 원활하게 하며,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발전을 지원한다. *1.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including through a process prescribed by that Party, electronic versions of all existing publicly available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3. Each Party shall accept completed electronic versions of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as the legal equivalent of paper documents.* *5.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a seamless, trusted and secure interface with the other Party's single window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data relating to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which may include: (a) certificates of origin; (b) certificates of non-manipulation; and (c) any other documents, as jointly determined by the Parties.* *8. Each Party recognises the importance of the exchange of electronic records used in commercial trading activities between enterprises within its territory.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where appropriate, facilitate the use and exchange of electronic records used in commercial cross-border trading activities of enterprises betwee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including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data exchange systems.*

33. 특송화물 (Express Shipments)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특송화물(특급탁송물품)이란 서류, 카탈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 해외의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의미함.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하는 화물을 통칭하는데, 소형의 샘플류,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이 여기에 해당함. 특송화물은 일반 수입품과 별도로 공항·항만에 설치된 특송 업체 자체 검사장 또는 세관 특송화물 검사장을 거쳐 반입되며 일반 화물의 통관이 수일 소요되는 데 비해 특송화물은 4~6시간 안에 통관할 수 있음.[85]

특송화물의 통관방식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식이 있음. 해외직구 물품을 개인사용을 위해 구매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목록통관이 가능함. 이외에는 간이 수입신고(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초과 미화 2,000달러 이하), 일반 수입신고(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를 해야 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2항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1조(정의)

"특송화물이란 상품의 신속한 국경 간 이동을 위하여 탁송 업무를 운영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 당국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의하여 또는 그 기업을 통하여 수입되는 모든 상품"

"Express consignment means all goods imported by or through an enterprise that operates a consignment service for the expeditious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and assumes liability to the customs authority for those goods"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86]

해외직구 피해 증가와 분쟁 해결 방안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수입 사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사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왔음. 예를 들어, 2018년에 해외직구로 구매된 귀적외선 체온계 13개 제품 중 12개가 위조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음. 2020년에 해외직구 물품 중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특송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685건 중 75% 이상이 소위 말하는 짝퉁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음. 이처럼 정품이 아닌 제품을 산 것과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됨.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 접수된 상담사례에 대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측에 권고해도 강제력이 없어 권고를 따를지는 쇼핑몰 측에 달려있음. 그래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효용성이 주목받고 있음. ADR의 유형에는 크게

[85]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30

[86]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1)가 발간한「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11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엄도영)' 참고

협상, 조정, 중재가 있고,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사법형, 민간기관 또는 개인이 진행하는 민간형, 행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정형이 있음. 해외직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CITRAL)은 2016년 7월 온라인분쟁해결절차(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에 관한 국제규범인 ODR 기술지침(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을 공표하였음. 이는 ADR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고, ADR 기관과 연계되어 있음. ODR은 비대면 방식으로서 온라인 협상, 조정, 중재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관세법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관한 법률인 관세법 241.2항에서는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대해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시 세관장에게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송업체 등록, 특송물품 통관, 특송업체 관리, 행정제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1항에서는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하도록 함.

3.2 정책 이슈

한국, 관세청 항공특송화물 '물류·수출입 현장규제' 완화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한 항공 특송화물의 급증으로 지체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3년 6월부터 항공기 수입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를 기존 국내 입항보고 한 시간 전에서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채택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KSDPA*	제14.13조 특송화물 *Article 14.13 Express Shipments*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무역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항공 특송화물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방식으로 자국의 통관 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The Parties recognise that electronic commer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rade. To facilitate air express shipments, each Party shall ensure its customs procedures are applied in a manner that is predictable, consistent and transparent.*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항공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라.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 서류의 제출부터 4시간 이내에 그 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xpedited customs procedures for air express shipments while maintaining appropriate customs control and selection. These procedures shall:* *provide for information necessary to release an express shipment to be submitted and processed before the shipment arrives;...* *(d) under normal circumstances, provide for express shipments to be released within four hours of submission of the necessary customs documents, provided the shipment has arrived; and...*
2	역내경제 동반자협정 *RCEP*	제4.15조 특송화물 *Artcle 4.15 Express Consignments*	각 당사자는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항공 화물 시설을 통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하여 특송화물의 통관을 신속화하기 위한 통관 절차를 다음에 의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특송화물과 관련된 정보의 도착 전 처리를 규정하는 것 나. 가능한 한도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단일 제출을 허용하는 것....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customs procedures to expedite the clearance of express consignments for at least those goods entered through air cargo facilities while maintaining appropriate customs control and selection, by:* *(a) providing for pre-arrival process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express consignments;* *(b) permitting, to the extent possible, the single submission of information covering all goods contained in an express consignment, through electronic means;...*

34.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87]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이나 다른 전자 플랫폼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구매, 교환,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협의의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브라우저를 통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모바일커머스(M-Commerce)와 차별화됨. 이 경우 근거리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이나 QR코드를 사용한 결제는 모바일커머스로 간주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거래를 통한 상행위로 정의"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전자상거래"라는 용어의 정의와 사용법에 대해서는 WTO, 개별 회원국, 국제 기구, 기업 단체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공통된 합의된 정의가 없으나 WTO의 전자상거래 작업계획(Work Program on E-Commerce)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전달을 전자매체를 통해 하는 것"라고 정의하고 있음.[88]

"E-Commerce is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협상 자체의 정당성 논란과 비판

가장 최근 관련 협상인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의 수는 참여하는 회원국의 수만큼이나 많음. 즉, 회원국의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은 다자협정도 아니고 마라케시 협정 제2조 제3항 상의 복수국간 협정도 아니라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의 법적지위에 의문을 제기하였음. 협상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전자상거래 논의가 시작되었고 전자전송의 무관세 적용 기간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조항이 있어서 협상 타결 이후 이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는 협상 참여국에 남겨진 과제임.

미국 내 전자상거래 업체 규제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중국 핀둬둬의 자회사인 티무에 관련 규제 검토를 촉구하였음. 티무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생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배송하는 서비스임. 2023년 상반기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선정된 바 있음. 위원회는 티무의 본사가 미국일지라도 모회사인 핀둬둬와 연결시키면서 이 앱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강제 노동 방식을 동원하여 생산할 가능성을 주목하여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디지털 상거래도 오프라인 무역에 준하는 규제가 시행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동시에 디지털 산업에서도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본국 리스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음.

[87] 이규엽·강민지 (202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2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8] WTO 협정문에서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로 보는 사항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미국-온라인 원산지 표기법

2023년 7월 28일 미 상원에서 온라인판매 제품의 원산지 표기법이 승인됨. 오프라인 매장제품과 달리 온라인 업체가 제품 라벨에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국 내 소규모 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근거로 원산지가 불분명한 해외에서 생산되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미국 제품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근거가 되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캐나다-유럽연합 무역협정 *Canada-EU Trade Agreement*	제16장 전자상거래 *Ch. 16. Electronic Commerce*	16.2 [목적 및 범위] 1.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성장과 무역 기회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특히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2. 본 장은 당사자 중 하나가 전자방식으로 전달된 물품을 허용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6.4 [전자상거래의 신뢰와 믿음]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 규정 또는 행정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해야 하며, 이를 수행할 때는 양 당사국 모두 회원으로 속한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데이터 보호 기준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16.5 [일반규정] 전자상거래의 사회 및 경제 발전 도구로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a) 국내 규제 체계에서의 명확성,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전자상거래 발전을 최대한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 (b) 상호 운용성, 혁신 및 경쟁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데 기여; 그리고 (c)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데 기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16.2 [Objective and scope]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lectronic commerce increases economic growth and trade opportunities in many sectors and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the WTO rules to electronic commerce. They agre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between them, in particular by cooperating on the issues raised by electronic commerce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2. This Chapter does not impose an obligation on a Party to allow a delivery transmitted by electronic means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obligations under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16.4 [Trust and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Each Party should adopt or maintain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engaged in electronic commerce and, when doing so, shall take into due consider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of data protec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f which both Parties are a member.* *16.5 [General provisions]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electronic commerce as a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ol,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 clarity,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in their domestic regulatory frameworks in facilitating,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b) interoperability,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facilitating electronic commerce; and (c) facilitating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b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35. 국내 전자거래 체계 (Domestic Electronic Transactions Framework)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국내 전자거래 체계란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국내 법적 체제를 의미.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전자문서의 보관, 유통 및 활용 등을 규정하는 국내 법적 틀을 말함.

전자거래를 위한 관한 법적 체계는 기본적으로 1996년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제정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따라야 하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국제 기준을 고려해야함. 또한, 전자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체계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함.

우리나라는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전자서명 모델법을 수용하여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명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제5항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WTO 회원국간 전자거래에 관한 규제 및 법적 틀에 관한 정보교환[89]

WTO 회원국들은 지난 2023년 3월 22일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하에 진행된 토론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및 법적 틀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음. 회원국들은 이러한 틀을 수립하는 데 관련된 국내 사례와 과제, 그리고 WTO가 이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유했음. 싱가포르는 디지털 경제 협정을 통해 전자거래, 종이없는 무역, 전자송장 등 디지털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을 강조하였고, 영국은 투명하고, 효율적, 포용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제도를 주제로 출판 예정인 논문을 소개하였음. 회원국들은 국가 수준 또는 지역 무역 협정의 맥락에서 법적 및 규제적 틀을 수립한 분야를 공유했음. 해당분야에는 소비자 보호, 전자거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 등이 포함됨. 또한, 여러 회원국은 자원 부족으로 효과적인 법적 틀을 개발하기 어려운 회원국에 대해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을 위한 WTO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WTO 협상 참여국간 상이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 수준[90]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국(그룹) 간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임. 선진국 그룹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전자거래, 온라인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사이버 범죄)을 모두 완비했지만, 개발도상국 그룹에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관련법을 제정한 국가 비중이 67%이고,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관련법을 제정한 국가 비중도 80% 미만임(UNCTAD Global Cyberlaw Tracker 데이터베이스). 선진국 중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수준이 다르며, 「전자거래법」을 제정한 개도국이라도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의 수준은 상이하고, 실제 일부 국가에는 종이 없는 무역,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인증, 전자결제 등 관련 컴퓨터 시스템이나 기술이 전무한 실정임. 이러한 국내법 제정 수준은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89]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3_e/ecom_22mar23_e.htm
[90] 이규엽·강민지 (202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1권 제3호, pp. 1-16.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거래의 정의, 전자문서의 효력, 보관, 송수신, 독립성, 적용 등에 관해 규정함. 제20조(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2호에서 정부는 전자문서,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해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한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한국-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 즉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해당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규정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KSDPA*	제14.7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Article 14.7 Domestic Electronic Transactions Framework*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1996) 또는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한다. Each Party shall maintain a legal framework governing electronic transaction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done at New York, November 23, 200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나.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2017)을 채택한다. 그리고 다.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 avoid any unnecessary regulatory burden on electronic transactions;* *(b) adopt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 and* *(c) facilitate input by interested persons in the development of its legal framework for electronic transactions.*
2	역내경제 동반자협정 RCEP	제12.10조 국내 규제의 틀 *Article 12.10 Domestic Regulatory Framework*	각 당사자는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 또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국제 협약 및 모델법을 고려하여,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적 틀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legal framework governing electronic transac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done at New York on 23 November 2005, or other applicabl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model law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3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제14.5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Article 14.5 Domestic Electronic Transactions Framework*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1996) 또는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한다. *Each Party shall maintain a legal framework governing electronic transaction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done at New York, November 23, 2005.*

36.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Work Programme on E-commerce)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91][92]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이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작업프로그램을 의미함.

WTO는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함. 동 선언문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작업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 9월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쟁점을 검토할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채택함.

일반이사회는 작업계획 전반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작업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산하 기구인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지식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rade and Development) 등이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무역 관련 이슈들을 검토함. 또한, 작업계획은 향후 WTO 전자상거래 논의의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회원국 간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규범 정립에 대한 WTO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93]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따른 WTO 산하 기구 역할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따라 4개 WTO 산하 기구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WTO 무역협정 및 전반적인 이슈들을 검토하여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서비스무역협정(GATS)의 법적 틀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일반이사회에 보고함. 상품무역이사회는 1994년도 GATT 조항, WTO 협정 부속서 1A에 포함되는 다자간무역협정, 승인된 작업계획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검토 및 보고함. 지식재산권이사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무역개발위원회는 개도국의 경제, 금융 및 개발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의 개발 영향을 조사하고 보고함.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작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4개 산하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많은 쟁점들에 대한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001년 도하, 2005년 홍콩, 2009년 제네바, 2011년 제네바, 2013년 발리, 2015년 나이로비, 20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2022년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모두 한시적으로 차기 회기까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91] WTO, WT/L/274, 1998. 9. 30.
[92] 곽동철 & 안덕근. (2016). "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통상법률*, (131), 51-90.
[93] 박지현. (2018).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20).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대한 참여국(그룹)간 입장차이

11차 각료회의(MC11) 이전에는 전자상거래의 다자규범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이 우선이며 규범 마련에는 반대하는 아프리카, 최빈개도국(LDC)과의 대립이 지속되었음. 일본, EU 등 전자상거래 논의에 우호적인 국가들은 작업반 구성을 통해 전자상거래 논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은 기존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논의만 수용하며, 전자상거래 협상은 미온적이었음. 1998년 작업계획에 따른 WTO 산하 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논의 진전은 곤란하다고 강조하였음. MC11 이후에는 MC11 전자상거래 공동선언에 참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 회의'를 개최,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해 주제별 쟁점을 중심으로 회원국 간 논의가 진행되었음. 그러나 12차 각료회의(MC12)에서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유예(모라토리엄) 연장에 대한 합의만 도출되었음. 이전까지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일부 분야(전자인증 및 서명, 전자계약, 공공데이터 개방, 소비자 보호, 투명성)에 대해 합의했으나, 여전히 컴퓨팅 설비 현지화, 데이터 이동의 자유, 개인정보 등 핵심 부분에는 회원국간에 큰 의견 차이를 보임.[94] 그럼에도 불구하고 MC12에서 참여국들은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WT/L/274)에 명시된 지침(Mandate)을 기초로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Reinvigorate)하는데 합의하였음.[95]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개발 측면(디지털 격차, 법적 제도적 체계, 전자거래 활성화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입장 차이를 완화하며,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역내경제 동반자협정 *RCEP*	제12.11조 관세 *Artcle 12.11 Customs Duties*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한다.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은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관한 「2017년 12월 13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WT/MIN(17/65)」에 따른다. *Each Party shall maintain its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between the Parties.* *The prac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in accordance with the WTO Ministeral Decision of 13 December 2017 in relation to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MIN(17/65).*
2	한국-중국 FTA *Korea- China FTA*	제13.3조 관세 *Artcle 13.3 Customs Duties*	각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관세 미부과 관행을 유지할 것이다. (각주) 현재의 관행은 「세계무역기구 발리 각료회의 결정(WT/MIN(13) /32-WT/L/907)의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제5항과 합치되게 유지될 것이다. *Each Party will maintain the current WTO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Footnote) The current practice will be maintained consistent with paragraph 5 of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of the Bali WTO Ministerial Decision (WT/MIN(13)/32-WT/L/907)).*

[94] 서진교 외. (2022).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KIEP 오늘의 세계경제」제22권 제12호, pp. 1-20.
[95] WTO, WT/L/1143, 2022. 6. 17.

37. 싱글윈도우 (Single Window)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기술적인 관점으로 싱글윈도우란 다양한 무역 관련 정보와 문서를 하나의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이나 시스템으로 중앙화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함. 중앙화된 플랫폼, 다양한 관련 기관의 연결, 데이터 표준, 자동화된 프로세스, 데이터 공유와 투명성, 데이터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중요한 특징이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UN/CEFAT(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싱글윈도우를 위한 협력과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UN/CEFAT는 싱글윈도우를 "무역과 운송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수출입과 운송 관련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와 서류를 단일한 입력 지점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함"[96]

"A single window is a facility that allows parties involved in trade and transport to lodge standardized information and documents with a single entry point to fulfill all import, export, and transit-related regulatory requirements."

WTO 무역원활화 협정(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97]

UN/CEFAT의 지침서보다 더 포괄적인 싱글윈도우를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함.

"싱글윈도우란 '무역거래자(traders)'와 '참여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기관'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관과 부처'를 대상으로 단일한 지점에서의 제출을 넘어 세관의 모든 절차와 관련 기관 및 부처의 검사와 결과 통보, 위험관리까지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

"Members shall endeavour to establish or maintain a single window, enabling traders to submit documentation and/or data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of goods through a single entry point to the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After the examination by the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of the documentation and/or data, the results shall be notified to the applicants through the single window in a timely manner."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싱글윈도우 개요서[98]

"'싱글윈도우'는 정부의 전통적인 구조가 시민과 기업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새로운 배열로 변형되는 행정 패러다임이다. 싱글윈도우는 공공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뛰어난 표준으로 이해된다."

"A 'Single Window' is a paradigm of governance in which traditional structures of government are transformed into new arrangements that best serve the needs of citizens and businesses. The Single Window is understood as a beau ideal, the highest standard of excellence in the area of delivery of public services"

정리하자면 싱글윈도우는 '단일한 지점에서의 제출'이라는 한정적인 정의에서 '국경관리를 위해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정의로 발전함.

[96] UN/CEFACT (2005).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To Enhance the Efficient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rade and Government. Recommendation No. 33. UN/ECE. pp.1-37.

[97] World Trade Organization. (1998b).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Retrieved from https:// 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DDFDocuments/31348/T/WT/L/274.DOC , World Trade Organization. (2019b).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WT/GC/W/794, 9 December, 2019. Retrieved from https://docs.wto.org/ 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GC/W794.pdf

[98] World Customs Organization Understanding Single Window Environment Vol.1. p.3 (https://www.wcoomd.org/-/media/wco/public/global/pdf/topics/facilitation/instruments-and-tools/tools/single-window/compendium/swcompendiumvol1parti.pdf).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싱가포르 트레이드 넷(TradeNet)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로서 그 이름은 TradeNet이다. 이는 무역업체가 수출입 관련 제반 사항을 세관 등 무역당국에 일괄 제출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임. 최근에는 이를 업그레이드한 디지털 플랫폼인 TradeTrust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데, TradeTrust는 정부와 기업들을 분산원장기술(DLT)를 사용한 공공 블록체인으로 연결하여 전자무역서류의 진위와 출처를 증명하고 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줌.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탈중앙화와 보안성을 보장하며 데이터 형식도 제한이 없음.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을 준수하는 특징이 있음. 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기록 그 자체의 이전을 통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 적인 기록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법규범으로 채택되면 기존의 유가증권을 비롯한 각종 증권적 채권의 전자화 혹은 전자적인 발행·유통을 포괄하여 일원적으로 규율할 수 있음. 규정안은 모든 유형의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되며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규율하는 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99]

싱글윈도우 도입의 쟁점[100]

싱글윈도우 도입과 진화에 대한 국제기구의 이상과 각 나라가 처한 현실 간의 괴리는 큼. '무역거래자를 정부와 단일한 가상의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는 싱글윈도우'를 구축하자면 수십 개의 정부 부처와 기관이 공통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김. 싱글윈도우를 사용하게 될 정부 조직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수출입 규제와 통제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때문에 권한을 다른 조직과 공유할 유인이 적거나 아예 없음. 많은 나라에서 싱글윈도우로 정부 조직의 지위와 권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영역 다툼과 파워 게임에 부딪히곤 함. 나라마다 지정학적 위치의 차이도 싱글윈도우를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테러의 위험이 큰 국가와 비교적 국경 방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싱글윈도우 구축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인식과 추진력은 차이가 큼. 개별 부처와 기관이 사용하던 레거시 시스템과 싱글윈도우 간의 연결도 문제가 됨. 싱글윈도우에서 단순한 기능의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연결된 수십 개의 시스템에 변경과 추가가 요구됨. 이는 관련된 업무 담당자, 무역거래자들의 사용 환경 변화를 초래하여, 싱글윈도우의 존재 자체가 논란이 됨. 싱글윈도우 구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음. 여러 조직의 데이터간에 공통된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일시켜 다수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를 담당하는 수많은 담당자의 동의를 얻고, 각각 조직의 결재를 받고, 관련된 법체계를 바꾸고, 입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싱글윈도우 구현은 요원한 일이 되곤 했음.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많은 나라가 싱글윈도우 참여 부처들의 정책적 의지가 꺾이고, 참여기관들은 싱글윈도우보다 더 다급한 사안으로 돌아선 바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한국 - 관세청

관세청은 2006년부터 식약처·검역본부·환경부·각종 협회에 대한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과 세관에의 수출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 전자통관 시스템인 UNI-PASS 싱글윈도우를 운영하고 있음. 대부분의 무역행정문서는 UNI-PASS(www.unipass.customs.go.kr)에 전자적 형태로 업로드되어있음.

[99] 최경진 (2013).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고찰-제47차 UNCITRAL WG IV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2(1), 285-318.

[100] 이은재·이지수 (2021).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8-39쪽.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WTO 무역원활화협정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제10조 제4항 싱글윈도우 *Article 10.4 Single Window*	회원국은 수입, 수출 또는 물품의 이행을 위한 서류 및/또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무역자가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대한 단일 입구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싱글윈도우를 설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여 당국 또는 기관의 서류 및/또는 데이터 검토 후 결과는 제출자에게 적기에 싱글윈도우를 통해 통보된다. 싱글윈도우를 통해 이미 서류 및/또는 데이터 요구사항이 수령된 경우, 참여 당국 또는 기관은 긴급한 상황 및 공개된 다른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같은 서류 및/또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요청하지 않아야 한다. 회원국은 싱글윈도우의 운영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회원국은 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싱글윈도우를 지원해야한다. *1. Members shall endeavour to establish or maintain a single window, enabling traders to submit documentation and/or data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of goods through a single entry point to the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After the examination by the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of the documentation and/or data, the results shall be notified to the applicants through the single window in a timely manner.* *2. In cases where documentation and/or data requirements have already been received through the single window, the same documentation and/or data requirements shall not be requested by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except in urgent circumstances and other limited exceptions which are made public.* *3. Members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details of operation of the single window.* *4. Members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nd practicable, use information technology to support the single window.*

제2장

제2절 디지털세

38. 디지털세 (Digital Tax)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디지털세란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체계를 의미. 일정수준을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매출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과세권한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GAFA세, 혹은 구글세라고도 함. 디지털세는 하나의 과세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광고수익이나 사용료에 대한 과세(Digital Service Tax), 디지털 음원이나 콘텐츠에 대한 과세(Digital Contents Tax)는 물론이고,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거래에 대한 과세(Digital Transaction Tax), 균형부담금(Equalization Levy)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과세형태를 통칭하는 개념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Article XXVIII(b)

서비스 무역의 형태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digital service)'에 대하여 '서비스 공급자'인 IT 기업은 본사가 소재한 국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만 해외시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101]

"'supply of a service' includes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and delivery of a service"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102]

다양한 디지털세 부과 방식

현재,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얻은 광고 수익이나 사용료 수익에 대한 과세(Digital Service Tax),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과세, 온라인 거래에 대한 원천 징수, 외국 업체에 부과하는 균형 부담금, 해외 전자상거래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음.

프랑스, 세계 최초 디지털세 제도화

프랑스는 2019년 7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세(Loi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les services numériques)'를 제도화했으나, 미국행정부가 보복관세로 대응함에 따라 시행을 미뤄 왔음.

OECD Pillar 1, 2의 등장

2021년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에서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해 139개국 중 130개국이 합의함으로 도입이 공식화됨.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에 세수를 배분할 수 있는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필라1(Amont A Article 1)의 경우, WTO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GATT 제3조)과 충돌한 가능성이 높음.

[101]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디지털 컨텐츠세(Digital Contents Tax), 디지털 거래세(Digital Transactions Tax)로 구분됨. 디지털 서비스세는 사업소득세, 디지털 컨텐츠세는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 그리고 디지털 거래세는 부가가치세로 부가되고 있음. 이 때, 서비스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정의가 GATS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의 4개 유형임.

[102]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1)가 발간한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 8장 '구글에 13억불 관세?: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통상갈등(오준석)' 참고

디지털통상시대의 디지털세의 중요성

디지털경제의 출현과 디지털전환에 따라 도서,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이 더 이상 물리적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국경을 넘어 교역되는 통상환경 속에서 디지털세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은 2022. 12. 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관한 새로운 장(제60조~제86조)을 신설하여 세계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를 법제화하였음.

-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62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3.2 정책 이슈

OECD Pillar 1, 2 시행 예고

2021년 10월 OECD Pillar 1·2 최종합의문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필라1은 2022년초 다자협정·모델규정을 마련하여 2022년 중순 서명식 후 국내 비준 및 입법하여 2023년 발효하고, 필라2는 2021년 11월 모델규정 마련, 2022년 국내법 개정하여 2023년에 시행하는 계획이었음. 그러나 관련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법제화를 위한 기간 소요가 예상보다 길어져 현재 필라1·2 모두 2024년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임.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관세무역 일반협정 *GATT*	제3조 *Article* 3	2.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동종의 국내상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그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의 부과대상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입 또는 국내 상품에 내국세 또는 그밖의 내국과징금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directly or indirectly, to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of any kind in excess of those a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like domestic products. Moreover, no contracting party shall otherwise apply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in a mann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
2	OECD 필라1 OECD Pillar 1	*Amount A* *Article 38*	2.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유사한 조치"는 당사국에서 부과하는 어떠한 형태의 조세로 고객, 사용자, 또는 다른 유사한 '시장을 근거로 한 기준'에서 과세권이 결정된다. *2. The term "digital services tax or relevant similar measure" shall mean any tax imposed by a Party, however described, if it meets all of the following criteria and is not described in paragraph 3:* *a. the application of such tax, or the amount of tax imposed, is determined primarily by reference to the location of customers or users, or other similar market-based criteria*

39. 국제조세과세원칙 (International Taxation Principles)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국제조세과세원칙이란 1923년 국제연맹(UN)이 채택한 국제거래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원칙으로 "first bite at the apple rule"로 불리움. UN의 국제조세과세원칙은 기본적으로 양자주의(Bilateralism)를 근간으로 원천지국(Source country)이 발생소득(the apple)에 대해 우선적 과세권을 가지며(First bite), 거주지국(Resident country)은 면제 혹은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하는데, 원천지국 과세권은 조세조약상 물리적 존재(Physical presence)를 지닌 고정사업장(P.E.) 과세원칙을 전제로 함. 최근 디지털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동시에 거주지국을 저세율 국가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를 방지하는 새로운 국제조세과세원칙이 필요하게 되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최근 다자주의 규범으로 국제조세과세원칙을 변경하는 OECD Post-BEPS 프로젝트(Pillar 1, Pillar 2)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명문상의 국제조세과세원칙은 아직 정의되지 않음.

GATT Article III(4) 에서 '내국과세 및 규제와 관련한 내국민대우원칙(NT Principle)

"과세 원칙이란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은 상품의 국적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운송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기초한 차등적 국내운임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The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like products of national origin in respect of all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ffecting their internal sale, offering for sale, purchase,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use."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변경된 국제조세과세원칙, OECD BEPS Project

현재까지는 UN의 'first bite at the apple rule'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을 통해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이 존재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2012년부터 OECD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의 확보'를 위해 다국적기업이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업을 통해 과세소득을 인위적으로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기반으로 국제조세 과세원칙을 변경하는 OECD BEPS Project[103]가 진행되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103] 본 교재의 43.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액션플랜(OECD BEPS Action Plan) 참고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음.

-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3.2 정책 이슈

OECD 국제조세과세원칙과 WTO GATT 조항의 충돌 가능성

OECD의 국제조세 과세원칙은 WTO의 GATT Article III의 '내국과세 및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와 충돌하는 사례를 보인다. 특히,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업모델(Highly Digitalized Business Model)을 가지고 있는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라 불리는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분쟁의 중심에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미국 FTA *KORUS FTA*	제15.3조 디지털제품 *Article 15.3* *Digital Products*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가. 전달 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그 전달 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 또는 나.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 *Neither Party may impose customs duties, fees, or other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a) if it is an originating good, a digital product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b) a digital product transmitted electronically.*
2	역내경제동반자 협정 *RCEP*	제12.11조 관세 *Artcle 12.11* *Customs Duties*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한다.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은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관한 「2017년 12월 13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WT/MIN(17/65)」에 따른다. *Each Party shall maintain its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between the Parties.* *The prac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in accordance with the WTO Ministeral Decision of 13 December 2017 in relation to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MIN(17/65).*

40. 조세조약 (Tax Treat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조세조약이란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약(Anti-double Taxation Agreement)'을 말하는데, 국제적인 무역거래 및 투자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 자본,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1970년 일본과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최초의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80년 UN에서 모델조세조약이 발표되어 이를 반영하다 1996년 OECD가입에 따라, 이후에는 OECD 모델조세조약의 의무이행 조건을 규정에 반영하고 있음. 최근에는 디지털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다자주의 OECD 조세규범으로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방지를 위한 OECD BEPS 및 Post-BEPS 프로젝트의 합의를 조세조약에 반영하고 있음.[104]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서 조세조약은 공식적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임. 따라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조세조약의 대상이 아님.

FTA 협정문에서는 '조세조치(Taxation)'로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는 FTA협정문에 조세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지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조치'를 언급하고 있음.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통상환경에 따른 국제규범의 변화

디지털 통상환경에 따른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및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양자주의(Bilateralism)기반의 조세조약이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기반의 국제규범으로 변하고 있음.

무역 및 투자와 같은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체약국의 조세불복절차를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를 따르게 되는데, 최근 OECD의 다자주의 국제규범은 중재(Arbitration)를 포함한 상호합의절차(MAP)를 권장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독일 조세조약(1989), 미국-캐나다 조세조약(1995), 미국-일본 조세조약(2013)에 상호합의 절차가 도입되었음.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연합 중재 협약이나 EU 지침(EU Directive 2017 / 1852)에 따른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법으로서의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통상분쟁해결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통상협정 및 조세조약체결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국가의 역할과 중재과정에서의 투자자-국가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국제거래에 대한 기업의 성과에 보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에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여 달러를 지급하라는 국제중재 판정이 나왔으며, 벨기에 론스타에 대해 한국정부는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결이 나왔음.

[104] 2023년 5월 기준 총 97개국 체결(발효 94, 미발효 2, 효력정지 1)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과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음.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싱가포르-이중과세방지협정(Avoidance of Double-Tax Agreement, DTA)

싱가포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여러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DTA를 체결하였는데 세부조약과 제한조약으로 구분됨. 세부조약은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해서 국가간 정보교환(Exchanage of Information:EOI) 을 하는 것이고, 제한조약은 운송 및 항공으로 조달되는 수입에 관해서만 정보교환을 하는 것임.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 *GATS*	제14조 *Article 14 General Exception(e)*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최혜국대우(MFN) 예외인정 (e) 대우의 상이함이, 이중과세 방지협정 또는 그밖의 국제협정 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약정의 결과인 경우 (e) inconsistent with Article II,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the result of an agreement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r provisions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in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or arrangement by which the Member is bound.
2	한국-미국 FTA *KORUS FTA*	제11.5조 *Article 11.5.*	2. 투자에 있어서 ....대우의 최소기준으로,...“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 ..... *2. For greater certainty, ...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covered investments.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at standard, and do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부속서 가 제14.5조 *Annex A Article 14.5*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Neither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a Party and a person of the other Party.*

41. 조세피난처 (Tax Haven)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조세피난처 또는 조세회피처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거나 아주 낮은 국가로 외국의 명목회사를 유치하고, 조세정보교환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이지 못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유럽연합(EU)에서는 조세비협조국 (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정의[105]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Black list)와 그레이리스트(Gray list)로 관리하고 있음. 2023년 기준으로는 사모아, 바하마, 영국 버진아일랜드, 피지, 코스타리카, 바누아투 등이 조세비협력국에 올라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조세피난처는 합의된 명칭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정의는 없음

OECD – "Harmful Tax Competition-An Emerging Global Issues" Report(1998)

OECD Report에서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피난처의 요건을 제시하였는데, ①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으로 과세될 것, ② 과세당국의 정보접근이 제한되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③ 관련 법령이나 행정 규정 등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을 것, ④ 해당기업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않을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106]하였음(① no or nominal tax, ② lack of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③ lack of transparency, ④ no substantial activities).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리히텐슈타인 LGT(Liechtenstein Global Trust) 사건

2008년 2월과 5월, 독일과세당국이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소재 LGT(Liechtenstein Global Trust) 은행의 고객명부를 내부자로부터 확보하여 LGT 은행 계좌 명의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탈세조사를 실시하였음.

스위스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사건

스위스에 소재한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은행 직원이 2008년 11월경에 미국고객의 자산을 은닉하면서, 조세포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세당국은 UBS 은행에 미국고객의 UBS 계좌공개를 요청하여, UBS 은행은 2009년 탈세혐의가 있는 미국고객 약 4,000명의 계좌내역을 미국과세당국에 제공함.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맞물려 2009년 런던에서 개최된 OECD G20 회담에서 많은 국가들이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발표하게 됨. 이후, OECD 모델조세조약 제26조의 준수여부를 기준으로 세계각국을 white list, gray list, black list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기업의 조세정보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 진출시 중요한 입지 고려 요인이 되고 있음.

[10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list-of-non-cooperative-jurisdictions/
[106] OECD (1998),"Harmful Tax Competition-An Emerging Global Issue",OECD, p.23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OECD 모델조약

OECD 모델조약은 국제조세부과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과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26조(정보교환)

①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 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으로서 이 협약과 상반되지 않는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통보받은 정보는 동 일방국의 국내법에 의해 획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그에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기관(사법, 행정기관 포함)에 대해서만 공개된다. 그 같은 인 또는 기관은 그 정보를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변론 또는 재판관의 결정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아래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국의 법 및 행정적 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b)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획득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c)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3.2 정책 이슈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회사 설립에 대한 국제적 대응

디지털경제의 도래로 디지털통상환경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거래와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의미가 없어졌음.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Paper company 또는 Shell company)를 집중적으로 설립함.

동시에,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리기 시작하여 국제적으로 세원기반(Tax base)이 잠식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는데, OECD 재정위원회에서는 이를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라고 분류하여 철폐를 권고하였으나 외자유치가 절박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물론 OECD 회원국 마저도 이에 대해 반발하여, 4가지 기준 중에 ①번과 ④번 2가지를 완화하고 정보교환과 투명성의무를 조세협조국(Tax cooperative jurisdiction)조건으로 제시하였음.

그 결과 2005년 5월 안도라, 리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나우루, 마셜제도, 바누아투 7개국이 조세비협조국으로 남게되었고, 조세피난처(Tax haven)로 국제사회에 인식되었음. 그러나, 이후에도 투자유치가 절박한 국가들이 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부터 OECD는 글로벌 포럼을 구축[107]하여 "조세협력-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하여(Tax Cooperation Toward a Level Playing Field)"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가별 감독 및 평가작업을 하고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107] 2016년 현재 13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년부터 Peer Review Group으로부터 서면심사를 받고 있다.

42. 가상고정사업장 (Virtual Permanent Establishmen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가상고정사업장(Virtual P.E.)이란 디지털 존재(Digital presence)로서 과세연계점(Nexus)[108]을 지닌 간주고정사업장(Deemed P.E.)을 의미.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가 전세계적으로 갖춰짐에 따라서, 소득발생지국인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피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장한 개념임.

국제조세의 부과원칙은 일명 'first bite at the apple rule'로 불리는데,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소득을 발생시킨 원천지국에서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거주지국에서 과세권을 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디지털경제의 등장에 따라서 온라인 상거래나 앱스토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다국적기업들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현지국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고 상당한 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세금 부담없이 올릴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고정사업장은 OECD BEPS Action Plan 7(디지털세 강화 목적)에서 등장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장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의 도움으로 가상공간에서 지속적이고 상당한 매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운영될 때를 의미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가상고정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1항

고정사업장(P.E)를 "기업의 전부 혹은 일부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고정된 장소"(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로 정의하고 있으나, 디지털환경 하에서 OECD 모델조세조약의 개정을 언급한 TAG(Technical Advisory Group) 보고서[109] 에서 "소트프웨어를 통해 사업모델이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보조적 개념의 고정사업장 예외조건을 적용할 수 없고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가상고정사업장의 과세형평성 문제

고정사업장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의 거래를 '상당히,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하기 위한 설비 또는 물리적 존재(Physical presence)로 원천지국에서의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단위임. 디지털경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도움으로 O2O(On-line to Off-line) 거래를 만들어내면서 물리적 거점의 존재 없이도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해진 것임.

따라서, 기존의 고정사업장 기준을 적용하여 비과세대상인 인적교류와 과세대상인 거래를 구분하는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108] 과세연계점(nexus)은 고정사업장 개념을 완화하여, 원천지국(source country)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이나 소비자와 지속적인 접촉,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 등 '과세할 수 있는 근거(taxable nexus)'를 의미한다

[109] OECD(2003),"Are the Current Treaty Ruels for Taxing Business Profits Appropriate for E-Commerce?," OECD TAG,p.36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원천지국 과세권은 '고정사업장'을 조건으로 하는데 '가상고정사업장'은 법인세법과 OECD모델조세조약에서 '간주고정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법인세법 제94조(간주고정사업장)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 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OECD -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 제5항(간주고정사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활동이 있으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3.2 정책 이슈

보호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고정사업장

가상고정사업장(virtual P.E.)은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정의한 물리적인 고정사업장(P.E.)이 아닌 디지털 존재(digital presence)로서의 추상적인 개념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모델을 지닌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과세목적상의 차별적 조치(ring fencing)로, GATT의 무차별원칙(trade without discrimination)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가상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에 대해 미국은 디지털 기술기반의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치와 원천지국 과세권에 대한 강화조치라고 하여 제301조라는 수단을 활동하고 있음. 이 조항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자유무역 이념을 구현하고 통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무역상대국 입장에서는 동 조항이 강력한 보호주의 수단으로 여겨져,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 *GATT*	조항1 최혜국대우 *Article 1 General MFN*	1. ....허여하는 이익, 특전, 특권 또는 면제는 모든 다른 체약국 영역의 동종 원산품 또는 이러한 영역에 적송되는 동종 산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43.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액션 플랜 (OECD BEPS Action Plan)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이란 뜻으로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조세제약이나 세법차이 등을 악용하는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을 말함. 다국적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G20과 OECD를 중심으로 2012년 시작한 프로젝트가 OECD BEPS 프로젝트이며, 그 최종안이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액션 플랜(OECD BEPS Action Plan)임.

디지털경제로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인위적인 조세회피(Artificial tax avoidance)로 인해 BEPS 피해는 연간 1,000억에서 2,400억 달러의 전세계 법인세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산되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조세규범과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15개의 Action Plan을 제시하였음.

-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세체계의 개편
- Action 2 혼성불일치거래 효과의 해소를 위해 각 국가의 세법 개정과 조세조약 개정 사항 권고
- Action 3 해외 자회사를 통한 과세소득 이전을 방지하고자 CFC 규정개정
- Action 4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관련 세원잠식의 제한
-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위한 정보교환제도의 의무화
- Action 6 부적절한 조약혜택의 방지
-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를 위한 OECD모델 조세조약개정
- Action 8-10 정상가격산출 새로운 이전가격지침 제시
- Action 11 BEPS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개발
- Action 12 공격적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납세자와 조세자문가의 보고의무강화 방안
-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
-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선
- Action 15 다자간협정 개발 제안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협정문 상에서 OECD BEPS Action Plan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OECD BEPS 프로젝트

OECD는 G20 중심의 BEPS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 Profit Shifting)"의 의미를 "조세회피를 종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end tax avoidance)"이라고 정의[110]하고 있음.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OECD BEPS Action plan vs. WTO GATT의 무차별원칙

OECD BEPS Action Plan은 디지털 기술기업(Digital Tech Company)으로 불리우는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또는 FAANG(Facebook, Apple, Amazong, Netflix, Google)등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 이는 시장을 제공하는 원천지국에서

[110] https://www.oecd.org/tax/beps/

의 과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델 조세조약의 체계와 정의를 변경하겠다는 시도로 비추어짐에 따라, WTO의 GATT에서 표방하는 무차별원칙과 충돌하고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한국은 2022. 12. 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관한 새로운 장(제60조~제86조)을 신설하여 세계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를 법제화하였음.

-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2조(적용대상)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3.2 정책 이슈

OECD Post-BEPS 프로젝트

OECD BEPS 방지프로젝트의 참여국은 2023년 7월 현재, 138개국으로 프로젝트의 최소기준(Minimum Requirement)에 해당하는 Action Plan에 대한 각 국가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내세법에 입법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는 Post-BEPS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중에 있음.

4. 디지털 통상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 *GATT*	제3조 *Article 3*	2.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동종의 국내상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그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의 부과대상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입 또는 국내 상품에 내국세 또는 그밖의 내국과징금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directly or indirectly, to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of any kind in excess of those a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like domestic products. Moreover, no contracting party shall otherwise apply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in a mann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
2	OECD 필라1 *OECD Pillar 1*	*Amount A* *Article 38*	2.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유사한 조치"는 당사국에서 부과하는 어떠한 형태의 조세로 고객, 사용자, 또는 다른 유사한 '시장을 근거로 한 기준'에서 과세권이 결정된다. *2.the term "digital services tax or relevant similar measure" shall mean any tax imposed by a Party, however described, if it meets all of the following criteria and is not described in paragraph 3:* *a. the application of such tax, or the amount of tax imposed, is determined primarily by reference to the location of customers or users, or other similar market-based criteria*

MEMO

제 3 장

데이터

제1절 공공데이터

44. 공공데이터 (Public Data or Open data)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공공데이터(Public data or Open data)란 공공기관이 일상 업무수행의 결과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자료나 정보로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를 의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제9조의1 정의

"공공데이터는 자유롭게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및 법적 특성을 갖춘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 이 정의는 당사국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정보에만 관련됨"

"Open data means digital data that is made available with the technical and legal characteristics necessary for it to be freely used, reused, and redistributed. This definition relates only to information held or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a Party."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와 국제협력 현황

공공데이터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권리관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컨설팅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요양시설과 간병인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침상 수, 의료인력, 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교육, 관광,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농축산, 교통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활용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 신뢰도 향상과 공공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개방의 범위, 표준화, 접근성 등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나, 국가마다 디지털 환경, 법제도, 인식 등에 차이가 있어서 세부적인 준수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공공조달 분야는 정부 예산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패와 예산 적자위험이 있는 분야로 데이터 개방이 중요함.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개발 지수(Open Useful Reusable; OUR Data Index) 1위 국가로 선정된 바 있음(2019년).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 사례

A 사업자는 중고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등록번호별 기본정보'(차명, 차종, 등록일, 주행거리 등 17개 항목)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B 국가 행정청은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에 더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였음. 이에 A 사업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 자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차량등록원부는 누구나 손쉽게 발급할 수 있어 자동차등록원부 정보와 차량번호를 결합하면 차량 소유자 식별이 가능하여 해당 정보의 개방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이처럼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사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영업비밀, 저작권 등을 침해가 소지가 있다면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함.

3. 주요 법령 3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기업, 일반인 등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도록 함.

OECD – 열린 정부, 공공 청렴도, 예산 거버넌스, 공공 조달에 관한 OECD 권고안

회원국들은 공공 신뢰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가치의 중요성 및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전자 정부 관점에서 공공 조달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함.

다수의 OECD 회원국은 공공 조달 데이터 중 입찰공고 정보 및 입찰 금액 등 조달 절차의 초기 단계 데이터만 공개함(공공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자 데이터, 부당 입찰업체 등 데이터 공개는 미흡).

프랑스 – 디지털 공화국법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생성한 데이터는 예외 없이 공개하고, 광범위한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기업, 개인 등이 자유롭고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공화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제19조의18 개방형 정부데이터 *Article 19.18* *Open Government Data*	1. 양 당사국은 정부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및 혁신을 육성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일방 당사국이 정부정보를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허용할 때에는 데이터를 포함한 해당 정부정보가 기계 인식형이며 공개형일뿐만 아니라 검색, 이용, 재이용 및 재배포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양 당사국은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포함하여 정부가 공개한 정부정보의 이용과 그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1. The Parties recognize that facilitating public access to and use of government information foster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2. To the extent that a Party chooses to make government information, including data, available to the public, it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is in a machine-readable and open format and can be searched, retrieved, used, reused, and redistributed.* *3.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cooperate to identify ways in which each Party can expand access to and use of government information, including data, that the Party has made public, with a view to enhancing and generating business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SMEs.*

45. 공공데이터법 (Public Data Ac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Public Data Act)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함.

OECD 회원국을 비롯하여 통상협정 당사국은 「열린 정부, 공공 청렴도, 예산 거버넌스, 공공 조달에 관한 OECD 권고안(OECD Recommendations on Open Government, Public Integrity, Budgetary Governance, Public Procurement))」 및 개별 협정상의 공공데이터 개방 의무(예, DEPA 제9.5조, USMCA 제19조의18, USJDTA 제20조, SADEA 제27조 등)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법을 제정·운영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공공데이터법의 주요 내용

정부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 등록하여 제공함.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센터는 제공신청, 품질관리, 표준화, 창업, 민관협력, 교육·훈련 등을 지원함. 또한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거부 및 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쟁점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제공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 그러나 개인정보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등은 제공할 수 있음. 또한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영국 -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2017년 제정된 「디지털 경제법」은 상하수도, 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동데이터를 공공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미국 - 증거기반 정책 수립 기반법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2017년 발의된 「개방정부 데이터법(Open Government Data Act」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식 직속 예산관리실장은 지침에 따라 정보자원 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해야 함.

프랑스 - 디지털 공화국법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생성한 데이터는 예외 없이 공개하고, 광범위한 개방 데이터를 토대로 기업, 개인 등이 자유롭고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공화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제9조의5 개방형 정부데이터 *Article 9.5 Open Government Data*	1. 당사국들은 정부정보에 대한 일반인 접근 및 이용의 원활화가 경제적 사회적 발전, 경쟁력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일방 당사국이 데이터를 포함하여 정부정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그 정보를 개방형 정보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기업의 기회를 향상시키거나 창출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협력을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a) 개방형 데이터세트 특히 글로벌 가치가 있는 개방형 데이터세트가 무엇보다 기술이전, 재능의 형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는 영역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활동 (b) 개방형 데이터세트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장려하는 활동, 그리고 (c)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누구나 어떠한 목적으로든 개방형 데이터를 자유로이 접근, 이용, 수정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형 데이터 라이선싱 모델을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표준 공공 라이선스 형태로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촉진하는 활동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facilitating public access to and use of government information may foste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2. To the extent that a Party makes government information, including data, available to the public, it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as open data.* *3.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to identify ways in which Parties can expand access to and use of open data, with a view to enhancing and generating business opportunities.* *4. Cooperation under this Article may include activities such as:* *(a) jointly identifying sectors where open data sets, particularly those with global value, can be used to facilitate technology transfer, talent formation and innovation, among other things;* *(b)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open data sets; and* *(c) fostering the use and develop open data licensing models in the form of standardised public licences available online, which will allow open data to be freely accessed, used, modified and shared by anyone for any purpose permitted by the Parties'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which rely on open data formats.*

MEMO

제3장

제2절 기업데이터

46. 기업데이터 (Enterprise Data)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기업데이터(Enterprise Data)란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전자적 형태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민간데이터의 일종으로서 공공데이터(Public Data)와 대비되는 개념의 데이터임

기업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하고, 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함. 기업데이터에는 크게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 그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정형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비정형데이터'로 나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기업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기업데이터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

'데이터 소유권(Ownership)'이란 용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한 법적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유체물로 한정되므로 무체물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음(민법 제98조). 빅데이터 속에는 무수히 많은 타인의 작은 데이터들을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게 되면 명확한 권리 범위의 획정이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활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정형데이터를 제외하고 '비정형데이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물권적 권리'를 인정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그러나 데이터는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용어는 거래 계약상 '채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기업은 거래계약을 통해서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정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됨.

데이터 수집 관련 분쟁사례

스크래핑(Scraping)이나 크롤링(Crawling)은 오늘날 보편화된 데이터의 수집(추출) 방식임. 그러나 웹 페이지상의 데이터를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인 '리그베다위키'를 미러링 방식으로 전부 복제하여 '엔하위키미러'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7다204315 판결). 반면 HiQ Labs v. LinkedIn 사건(2019)에서 HiQ Labs은 Linkedin에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다른 정보들과 결합·가공하여 판매하였는데, 법원은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개된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서 수집금지 문구가 있더라도 데이터의 수집에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음. 2022년 야놀자 사건[111]에서도 대법원은 앱이나 API 서버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나 객관적 제한을 취하지 않은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이 사건의 민사 법원은 여기어때의 크롤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음.

[111] 이 사건은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 사이의 데이터 크롤링 관련 분쟁으로서, 여기어때는 회사 설립 시부터 선두주자인 야놀자의 숙박업소 관련 정보를 수시로 취합해 왔다. 그러던 중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놀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해 2016년 1월경부터 약 9개월간 야놀자의 제휴 숙박 업소명, 주소, 가격, 입·퇴실시간 등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이에 2018년 야놀자는 여기어때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부정경쟁방지법

절취·사기·부정접속 등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함. 「데이터산업법」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데이터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함(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중국 - 데이터 3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네트워크안전법」를 일컬어 데이터3법이라 하며 데이터의 생산·이용 촉진을 비롯해 데이터의 관리, 안전조치, 해외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특히 역외적용을 규정하므로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일본 - 저작권법

일본은 전자적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Text and Data Mining: TDM)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저작물 복제·번안 행위에 대해 저작권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제30조의4)을 마련함. 한편, 일본과 미국은 영리적 TDM을 허용하는 반면 독일(저작권법 제60d조), 영국(저작권법 제29A조), 프랑스(저작권법 제122-5조)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정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USJDTA*	제18조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Article 18 nteractive Computer Services*	1. 양 당사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양방향 컴퓨터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 무역의 촉진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느 당사국도 양방향 컴퓨터서비스에 의해 저장, 처리, 전송, 배포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된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결정할 때, 그 서비스의 공급자나 사용자를 정보 콘텐츠의 공급자로 취급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못한다. 단 그 서비스의 공급자나 이용자가 그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작했거나 개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어느 당사자국도 다음을 이유로 양방향 컴퓨터서비스의 공급자나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a) 양방향 컴퓨터서비스의 공급자나 이용자가 해롭거나 비난할 만하다고 여기는 자료에 누군가가 양방향 컴퓨터서비스를 통해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그 공급자나 이용자가 선의로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 또는 (b) 양방향 컴퓨터서비스의 공급자나 이용자가 해롭거나 비난할 만하다고 여기는 자료에 누군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정보콘텐츠의 공급자나 이용자가 만들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조치 - 이하 생략 - *1.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romotion of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includ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vital to the promotion of digital trade.* *2. To that end, other than as provided in paragraph 4, neither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that treat a suppli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as an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in determining liability for harms related to information stored, processed, transmitted, distributed, or made available by the service, except to the extent the supplier or user has, in whole or in part, created or developed the information.* *3. Neither Party shall impose liability on a suppli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on account of:* *(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by the supplier or user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is accessible or available through its supply or use of the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and that the supplier or user considers to be harmful or objectionable; or* *(b) any action taken to enable or make available the technical means that enable an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or other persons to restrict access to material that it considers to be harmful or objectionable. - omitted below -*

47. 데이터 가치평가 (Data Valuation)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데이터 가치평가(Data Valuation)란 데이터 가치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법 및 모델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며, 여기서 "데이터 가치"란 데이터 생산, 유통, 거래, 활용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에 대한 측정치를 말함. 다만, 평가의 목적 또는 소유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질 수 있음.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에는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원가접근법(Cost Approach) 등이 있으며, 데이터의 유형·특성, 활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평가 기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거나 두 개 이상을 함께 사용함.

〈 데이터 가치평가 방법 〉

평가 기법	상세 내용
시장접근법	대상 데이터와 같거나 유사한 데이터가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를 비교·분석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 시장접근법을 사용할 때에는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경우, 거래사례에서의 거래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적절히 차이를 조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유사성의 판단 기준과 차이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이 방법은 대상 데이터에 대한 거래사례가 없거나 유사 데이터에 대한 거래사례가 부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수익접근법	대상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데이터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 수익접근법은 평가 시점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평가 기법이나 데이터 자산이 가지는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금액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평가 요소를 적용하여야 함 • 이 방법은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여도 등의 추정이 필요하고 각각의 추정치는 평가금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참여 평가자들은 충분한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 • 평가 시 사용(투입)하는 정보는 최신정보이어야 하고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자료를 사용
원가접근법	대상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지출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생산·구입하는데 지출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 역사적원가 접근방식, 재생산원가 접근방식 및 대체원가 접근방식 등으로 구분 • 역사적원가 방식은 대상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지출되었던 과거의 제반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며, 대상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지출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재생산원가 방식은 대상 데이터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총금액을 의미하며, 대상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구입에 소요되는 원가를 말함 • 대체원가 방식은 평가 시점에 대상 데이터와 동일한 효용(유용성)을 가지는 대체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총금액을 의미하며, 현재의 데이터로 대상 데이터의 효용을 재생하는 원가를 말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데이터 가치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데이터의 공공가치 관련 쟁점

데이터의 가치평가 결과는 비록 동일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기관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부풀린 사례로 인하여 분쟁이 때때로 발생하기도 함. 정부는 불공정한 가치평가를 제거하고 평가기관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평가

지침, 평가품질관리 체계 등을 마련함. 데이터 가치평가는 데이터의 공정가치(Fair value)를 평가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짐. '공정가치(Fair value)'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자발적으로 대상 데이터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강요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액을 의미함. 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함.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정가치 기반으로 공정거래 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공정가치는 반드시 평가기관을 통해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시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서 형성하기도 함.

데이터 가격책정 사례

전국 부동산 매물 및 시세정보, 분양정보 등을 제공하는 A社의 상품이 경쟁상품에 비해 방대한 표본수로 차별화된 경우, 경쟁사의 가격을 고려하기보다 투입된 원가(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일부 비율만큼 이용료를 추가해 산정함. 주식 관련 데이터 제공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B社는 일반회원과 유료회원에 따라 각각 종량제와 정액제 요금을 부과하는데, 일반회원은 최저 이용료 5,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 시에 (단위가격×기간)을 기본으로 부과한다. 유료회원은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월간/연간 이용료를 지급한다.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산업법)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4조). 정부는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데이터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데이터 기반 산업 촉진 및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중국 -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의 유통·거래·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세계 최초 데이터 거래소인 구이양(貴陽) 빅데이터 거래소(2014)를 설립하고, 거래가격 표준화, 표준체계, 회원관리 등 지원서비스를 바탕으로 데이터상품 거래를 추진 중임.

미국 - 민간 주도

데이터거래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서 데이터 가치평가와 관련된 별도의 연방정부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내에 2,500여 개 이상의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거래소가 있으며, 공공데이터, 상업데이터,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기업을 통해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짐.

3.2 주요 정책·이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23년 8월 기준)을 지정했음. 가치평가기관은 향후 데이터 가치평가 운영 현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을 고려할 예정임.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48. 데이터 거래 (Data Transaction)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데이터 거래(Data Transaction)란 데이터를 재화로써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사용·전송하는 행위를 말하며, 데이터가 저작권법 등 법적 보호를 받는 경우에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일정한 이용조건 및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야만 함. 데이터 공급자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자로서 데이터를 생성·가공·제작한 자이거나 데이터 생산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 또는 데이터 권리자로부터 판매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자임.

기업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획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 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음. 데이터 거래형태는 크게 '양도 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이 있으며, 실제 데이터 거래는 전자보다 이용 권한을 제공하는 라이선스 계약이 더 많이 체결됨. 기업 간 거래에서는 서로의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호 라이선스(Cross License) 형태로 각기 보유한 데이터를 교환하기도 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데이터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

한국, 일본 등은 데이터 계약이 보편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형태가 아닌 것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데이터 거래계약은 크게 ①데이터 제공형, ②데이터 창출형, ③데이터 오픈 마켓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제공형'은 가장 많은 거래 유형으로서 일방 당사자(데이터 제공자)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때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이용 권한, 기타 제공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계약 유형임. '창출형'은 복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새롭게 창출한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판매 시, 창출에 관여한 당사자 간의 데이터 이용권한, 이익분배 등을 결정하는 계약 유형임. '오픈마켓형'은 다수의 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 유형임. 플랫폼은 데이터 제공자와 수요자를 매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계약으로 정함.

데이터의 품질과 보증 문제

데이터 거래 시 데이터의 품질(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무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제공자는 제공데이터가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에 따라 취득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빅데이터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완전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제공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로 제공하고,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 이로써 제공자는 데이터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데이터 산업법/산업디지털전환법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데이터거래 표준계약서(데이터 산업법 제21조)와 산업데이터 활용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련(산업디지털전환법 제10조)하여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U - 데이터 거버넌스법/데이터법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은 EU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공통된 규칙 및 관행을 수립하여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으로서 데이터 중개자에 대한 신뢰성(신고 및 감독)을 높이고, EU 전체에 걸쳐 다양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됨. 데이터법(Data Act)은 산업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공유 촉진을 도모하며, B2B 및 B2G 간 사물인터넷(IoT) 제품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가치 배분의 공정성과 '접근 및 이용권'을 규율하고, EU 역내 효력은 물론 광범위한 역외적용과 높은 제재금을 규정하고 있음.

일본 - AI·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의 이용/거래 관련 계약과 AI 개발 관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주요 이슈와 논점, 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USJDTA*	제1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이전 *Article 18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	1. 어느 당사국도 개인정보 및 기타 정보를 적용대상자의 사업활동을 위해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2.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일방 당사국이 적법한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a) 무역을 자의적으로나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위장된 규제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b)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 정보의 전송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 *1. Neither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f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that is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

MEMO

제3장

제3절 마이데이터

49. 마이데이터 (Mydata)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마이데이터(My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된 개인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인 개인이 능동적으로 본인의 데이터를 확인·관리·활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말함.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본인데이터에 접근 및 활용한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할 권한이 기업에서 정보주체로 이동(개인정보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하는데 의미가 있음. 즉,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권 또는 개인정보이동권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개인정보이동권(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정보처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말하며, 이에 따라 정보주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통상 협정문에는 마이데이터 대신 개인데이터 및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가 명시됨.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제14.1조(정의)

"개인정보(개인데이터)는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데이터)를 의미함"

"Personal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including data, about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통상에서의 마이데이터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무역 확산 등 새로운 규범수요에 대응하고 디지털 통상 이슈의 선제대응으로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요 각국에서는 디지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을 위해 2018년 4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 정책 연구 등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음. 산업부가 마련한 디지털 통상정책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마이데이터(Global MyData) 생태계 구축임.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 전반을 일컬음.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제품기획-생산-유통-고객관리-소비 전 과정에 걸쳐 혁신이 촉진되고 있으며 이들 밑바탕에는 마이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요소로 작용함. 글로벌 마이데이터는 개인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정보은행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누구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통상 시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임.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글로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혁신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임.

금융 산업의 마이데이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이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었음.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임.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빅데이터(Financial BigData)를 기반으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선보이게 됨. 마이데이터

를 통해 은행-계좌정보, 카드-결제정보, 보험-납부정보 등의 흩어져 있는 내 신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통합분석이 가능함.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신용정보를 대량 집적하는 산업 특성상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고객을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산업으로 운영함. 다수의 기업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아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마이데이터 산업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하는 것으로, 예금계좌 입출금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 보험계약 정보, 주식·펀드 투자상품, 통신료 등 본인 신용관리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통합·조회하는 서비스(본인신용정보통합조회)를 고유업무로 함. 부수업무로는 정보계좌서비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리행사, 금융빅데이터분석과 이들 결과의 제3자 제공 등이 있음. 인공지능 및 금융빅데이터분석 알고리즘의 고도화에 힘입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화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금융산업의 마이데이터로 인해 기존 대형 금융사와 신생 핀테크 기업과의 정보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 정보들을 통합하여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과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객 편의성이 증대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기대할 수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해당 없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14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Article 14.14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한 자체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개인정보 포함)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2. Neither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f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50. 마이데이터 기본원칙 (Mydata Basic Principles)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의 기본 원칙(데이터 권한 원칙, 데이터 제공 원칙, 데이터 활용 원칙)[112]에 의해 제공되는 개인데이터 기반 서비스. 데이터 권한 원칙은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접근, 이동, 활용에 대한 통제 및 결정권을 가지는 것. 데이터 제공 원칙은 개인이 해당 기업, 기관에 개인데이터를 요구한 경우 안전한 환경에서 개인데이터를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원칙은 개인의 요청 및 승인(동의)에 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임.

구분	유형	설명
마이데이터 기본 원칙	데이터 권한 원칙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통제 및 결정권을 가지는 것
	데이터 제공 원칙	안전한 환경에서 개인데이터를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
	데이터 활용 원칙	개인의 요청 및 승인(동의)에 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해야 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마이데이터 기본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종합포털)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소비자 본인 데이터의 권리를 보장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갇혀 있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용 촉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있음.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혁신적인 플레이어(Player)들은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얻어낼 수 있고, 금융회사는 통합·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고도화하여 금융정보 통합조회, 신용·재무관리와 같은 서비스는 물론,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이데이터 지원센터(mydatacenter.or.kr:3441)를 운영하고 있음.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관련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싱가포르 –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은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의 설치,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접근·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위반 시 조치 및 처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한국 –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이동권]

금융당국은 혁신 성장과 소비자 중심 금융 구현의 토대가 될 금융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빅데

[112] 마이데이터 기본원칙은 GDPR 제5조 개인정보처리원칙에 명시적으로 나열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재인용.

이터 활성화, 금융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의 내실화라는 3대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함, 금융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익명정보 및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로 2020년 2월,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됨.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개인정보이동권)"을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고, 이러한 전송요구권을 바탕으로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됨,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의미함.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정책과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개정된 「신용정보법」 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20조의 개인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참고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25조 데이터 혁신 *Article 14.25 Data Innovation*	1.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의 이점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연구원, 학계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통해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support data 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ng on data-sharing projects, including projects involving researchers, academics and industry, using regulatory sandboxes as required to demonstrate the benefits of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양 당사국은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정책 및 표준 개발에 협력하여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support data innovation through cooperating o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standards for data portability.*
2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26조 공공데이터 *Article 14.26 Open Government Data*	1. 양 당사국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경제적 및 사회적 혜택, 경쟁력,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facilitating public access to and use of government information contributes to stimulating economic and social benefit, competitiveness, productivity improvements and innovation.* 2. 양 당사국은 공공데이터를 대중에게 제공하기로 선택한 범위 내에서 정보가 적절하게 익명화되고 설명 메타데이터가 포함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개방형 형식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To the extent that a Party chooses to make governmen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it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is appropriately anonymised, contains descriptive metadata and is in a machine readable and open format.*

51.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Mydata Business Model)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마이데이터 비즈니스(MyData Business)는 개인(정보주체)이 본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통해 수집 및 관리하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제3의 활용처에 제공하며 그에 따른 이익과 수익을 공유하는 등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관리 및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이며, 정보주체가 스스로 본인정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의료, 통신, 유통,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마이데이터 활용은 데이터 주체, 마이데이터 운영자, 마이데이터 보유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등의 협업으로 이루어짐.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유형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비즈니스', '마이데이터 저장 및 활용 비즈니스', '마이데이터 적용 비즈니스'로 구성됨.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MyData Operator) 비즈니스'는 개인을 대신하여 개인의 마이데이터 계정을 관리하고, 동의 관리를 수행해주는 비즈니스이며 유형에는 개인인증(유형 1)과 개인데이터 권한관리(유형 2)가 있음. 개인인증은 개인의 디지털 아이디(ID) 관리 및 지원을 말하고, 개인데이터 권한관리는 개인데이터의 사용조건 및 동의 내역을 관리하는 것. '마이데이터 저장 및 활용 비즈니스'는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보관 및 활용,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이며 세부 유형에는 개인데이터 저장소(유형 3), 개인데이터 분석(유형 4), 개인데이터 제출 및 거래(유형 5)가 있음. 개인데이터저장소(Personal Data Storage, PDS)는 데이터 활용과 전송,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개인데이터 분석은 개인의 동의하에 다양한 개인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개인데이터 제출 및 거래는 개인데이터가 필요한 재3자와 개인을 직접 연결하거나 중개하는 서비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적용 비즈니스'는 기존 마이데이터 보유 기업이 새롭게 신설되는 마이데이터 규제를 충족하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임(유형 6).

〈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유형 〉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유형	비즈니스 세부 유형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비즈니스	유형 1: 개인인증 유형 2: 개인데이터 권한관리
마이데이터 저장 및 활용 비즈니스	유형 3: 개인데이터저장소(PDS) 유형 4: 개인데이터 분석 유형 5: 개인데이터 제출 및 거래
마이데이터 적용 비즈니스	유형 6: 기존 기업의 마이데이터 활용

1.3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사례: 개인데이터저장소(Personal Data Storage, PDS)

마이데이터 사업의 대표적인 서비스이자 수익모델로 주목받는 것이 개인데이터저장소(Personal Data Storage, PDS)임.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내실 있게 보장함. PDS는 개인이 흩어진 본인데이터를 통합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여기에 보관된 데이터를 전송요구, 제3자 제공, 삭제 등 정보주체 의지에 따라 관리함. 고객이 정보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PDS에 정보를 전송하고, 고객은 PDS를 통해 정보를 수신하고 관리함. 이전에는 고객이 신용정보를 금융사에 요구할 경우 통상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보안취약점에 노출되었으나 PDS는 접근 시 본인인증 절차가 사용되는 등 보안이 강화됨. PDS가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비즈니즈 모델로 각광받는 이유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개인의 데이터 주권'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임.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개인이 주도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PDS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영국의 마이덱스(Mydex)는 2008년 설립된 영국 스타트업 마이덱스 CIC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방식의 플랫폼으로 기업과 정부기관 보유 개인데이터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운전면허 세부정보, 소비 이력, 계좌나 신용카드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함. 이곳에 저장된 데이터는 제휴 기업과 공유 및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어떤 데이터를 어느 범위까지 공유할 것인지는 개인이 설정함. 마이덱스는 이용자에게 개인데이터 접근, 관리서비스와 신원증명서비스(identify service)도 제공하고 있음.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사례: 개인신용정보 통합서비스

2007년 9월 설립된 미국 금융서비스 회사 민트(Mint.com)는 차별화된 서비스 편의성으로 사용자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킨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임. 민트는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의 금융계좌정보를 오픈 API나 스크래이핑(scraping) 기술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입출금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투자내역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수집해서 일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민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계좌정보나 카드정보를 연결해 두면 자동으로 자산 내역과 지출 내역을 가져오고, 이것을 가시성이 최적화된 통계나 그래프를 통해 사용자의 소비패턴과 재무현황을 보여줌.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등 민트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사용패턴을 파악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음. 사용자는 조건 좋은 상품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올리며, 민트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수수료 수익을 획득하는 등 민트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을 수익모델로 구현하였음.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데이터 분석역량을 기반으로 재무현황 분석, 신용관리·정보관리 지원,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33조 협력 *Article 14.33 Cooperation*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정부 및 마이데이터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에 관한 규정, 정책, 시행 및 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e experiences on regulations, policies, and enforcement and compliance mechanisms regarding the digital economy, including in relation to digital government and MyData.*

MEMO

제3장

제4절 개인정보보호

산업통상자원부 KSA 한국표준협회 비매품

52. 개인정보보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개인정보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사업체 및 공공기관 등)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행위·조치를 의미함.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한편,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제19조의1(정의)]

"개인정보란,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한다."

"Personal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including data, about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개인정보 침해사례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관(DSB)는 Meta가 제공하는 추적기술인 '픽셀(Pixel)'과 'Facebook Login'의 사용이 EU GDPR과 EU 사법재판소(CJEU)의 슈렘스 II[113] 결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결정했음('23.3.6.). 운영사는 Meta Pixel 기술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방문자들의 활동을 추적해왔으며, 과도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했으므로 정보 감시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음. DSB 결정은 Meta Pixel 추적기술의 불법성을 최초로 판정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기술을 적용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가명정보의 처리와 결합

가명정보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렇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제3자 제공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함. 또한 신뢰성 있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EU -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EU 내 사업장이

[113] 오스트리아의 프라이버시 활동가인 막스 슈렘스(Max Schrems)가 Facebook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2020년 7월 16일 EU 사법재판소(CJEU)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송된 개인정보가 미국 내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EU-미국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무효로 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의 법인이 유럽경제지역(EEA)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데이터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CJEU는 2015년 10월 Schrems I 결정에서 EU와 미국 간에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이프 하버협정'은 무효화로 이어졌고, EU와 미국은 프라이버시 실드라는 후속 계약을 체결했다.

없더라도 EU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중국 - 개인정보 보호법

중국 내 데이터 저장 원칙, 역외 전송 시 중국 국가기관의 기준 충족해야 함.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 즉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의 동의 없이 플랫폼 간 정보를 전송할 수 없으며(제45조), 또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제6조), 플랫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의무(제58조) 등을 부과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제19조의8 (개인정보의 보호) *Article 19.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 양 당사국은 전자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자무역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전자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발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APEC 프라이버시 보호체계'와 「프라이버시 보호 및 국경 간 개인 데이터의 흐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OECD 위원회의 권고(2013)」 등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야 한다. 3. 양 당사국은 이러한 핵심원칙이 수집대상의 제한, 선택, 데이터 품질, 목적의 구체화, 용도 제한, 보안 세이프가드, 투명성, 개인의 참여, 책임성을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양 당사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국경 간 개인정보의 흐름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규제가 관련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전자무역 이용자를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보호하면서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각 당사국은 전자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국이 제공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자연인이 구제받을 방법, 그리고 (b)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6. 양 당사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접근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각 당사국은 이렇게 서로 다른 체계 간 양립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자국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양 당사국 간의 양립가능성 증진을 위해 적합한 약정을 확장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양 당사국은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상의 체계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경 간 원활한 정보이전을 위해 유효한 매커니즘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1. The Parties recognize th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of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of digital trade and the contribution that this makes to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in digital trade.*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digital trade. In the development of this legal framework, each Party should take into account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the APEC Privacy Framework and the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2013).* *3. The Parties recognize that pursuant to paragraph 2, key principles include: limitation on collection; choice; data quality; purpose specification; use limitation; security safeguards; transparency; individual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The Parties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suring compliance with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ensuring that any restrictions on cross-border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 ar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o the risks presented.* *4.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adopt non-discriminatory practices in protecting users of digital trade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violations occurring within its jurisdiction.* *5. Each Party shall publish inform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s it provides to users of digital trade, including how:* *(a) a natural person can pursue a remedy; and* *(b) an enterprise can comply with legal requirements.* *6. Recognizing that the Parties may take different legal approaches 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echanisms to promote compatibility between these different regimes.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exchange information on the mechanisms applied in their jurisdictions and explore ways to extend these or other suitable arrangements to promote compatibility between them. The Parties recognize that the 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 is a valid mechanism to facilitate cross-border information transfers whil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53.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란 디지털 단일시장전략에 따라 유럽연합(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를 확대하고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자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EU 개인정보 보호법을 의미. GDPR은 그간 EU 회원국 간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통합하여 정보이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잊혀질 권리, '처리제한권', '정보이전권'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법률로 평가됨.

GDPR은 개인정보를 수입하거나 다른 조직(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위해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되며, EU 역내는 물론 EU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외 조직에도 적용됨. 조직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정보 수집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사용이 제한됨.

GDPR을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유로와 연간 매출 4%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가 특징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EU GDPR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Google의 GDPR 위반 사례

2019년 1월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관(CNIL)은 Google이 GDPR에 규정된 투명성 원칙과 동의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 유로(한화 약 642억 원)를 부과했음. 이 사건은 GDPR 위반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임. Google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 ①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Google 계정을 개설해야 하는 점, ②단말기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Google 서비스의 사용 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한 점(동의 강요), ③데이터 처리목적, 데이터 저장기간, 개인맞춤 광고에 사용된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분산된 저장소에서 제공하고 정보 열람을 어렵게 한 점, ④개인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효한 동의를 얻지 못한 점, ⑤다수의 서비스를 통해 수집, 처리된 정보제공자의 데이터를 개인맞춤 광고에 활용한다는 설명이 부족한 점 등임. CNIL은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원칙(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성(제6조), 정보 수립 시 제공되는 정보(제13조, 제1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음.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개인에 대한 특성, 관심사 및 행태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을 하는 것을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고 함. 대표적인 예로서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AI 기반의 개인신용평가, 채용심사, 보험료 산정 등이 있음. GDPR 제22조 제1항은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을 금지함. 여기서 '법적 효력을 초래하는 의사결정'은 결사의 자유, 투표의 자유, 법적 행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처리를 말함. 따라서 특정 지역 거주자에 대한 인구통계분석을 통한 패션광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 인종에게 차별적인 컨텐츠나 광고를 우선 배치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GDPR은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1)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3)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음(제22조 제2항). 제22조에 따른 의사결정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제기도 가능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EU - 제29조 작업반(The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EU 집행위의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EU 자문기구로서 GDPR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이동권, 과징금부과, 투명성, 동의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과 해석을 제공함.

3.2 주요 정책·이슈

기업보안의 주요 사항

GDPR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주체에게 주고 있는 바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시 동의받아야 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로 이동시키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침해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려야 함.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에 고위험을 초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민감정도, 대규모의 모니터링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함. 기업은 컨트롤러(개인정보처리자)·프로세서(개인정보처리 대행자) 외에 개인정보 처리 활동 전반에 자문역할을 할 정보보호책임자(DPO)를 임명하고 감독기관에 통지해야 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제14조의8 개인정보의 보호 *Article 14.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 당사국들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하는데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발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들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를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부터 보호하면서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국이 제공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자연인이 구제받을 방법, 그리고 (b)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5. 당사국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접근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각 당사국은 이렇게 서로 다른 체계 간 양립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규제성과에 대한 인정 – 그 인정이 자발적이든 상호 약정에 의한 것이든지,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틀에 의한 것이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들은 자국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이러한 메커니즘이나 또는 당사국들 간의 양립가능성 증진을 위해 기타 적합한 약정을 확장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of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and the contribution that this makes to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development of its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ould take into account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3.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dopt non-discriminatory practices in protecting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violations occurring within its jurisdiction.* *4. Each Party should publish inform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s it provides to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how:* *(a) individuals can pursue remedies; and* *(b) business can comply with any legal requirements.* *5. Recognising that the Parties may take different legal approaches 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echanisms to promote compatibility between these different regimes. These mechanisms may include the recognition of regulatory outcomes, whether accorded autonomously or by mutual arrangement, or broader international framework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xchange information on any such mechanisms applied in their jurisdictions and explore ways to extend these or other suitable arrangements to promote compatibility between them.*

54. 적정성 결정 (Adequacy Decision)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적정성 결정이란 EU 비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EU집행위원회가 확인·승인하는 제도를 말함.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조항, 의무적 기업규칙 등과 더불어 GDPR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적정성 결정을 획득한 국가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적정성 결정 획득국의 기업은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할 수 있음. 개인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면서도 기업 간 데이터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무역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평가받기도 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45조 제1항]

"집행위원회가 제3국, 해당 제3국의 영토나 하나 이상의 지정 부문, 또는 국제기구가 적정한 보호수준을 보장한다고 결정한 경우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

"A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a third country or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may take place where the Commission has decided that the third country, a territory or one or more specified sectors within that third country, or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in question ensures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114]

GDPR의 적정성 결정 채택국가

GDPR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간 동안 적정성 결정이 채택된 국가는 11개국(스위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건지 섬, 맨 섬, 저지 섬, 페로 제도, 안도라, 이스라엘, 우루과이, 뉴질랜드)이며 GDPR 시행 이후에는 일본('19.1.)과 영국('21.6.)이 적정성 결정을 획득하였음. 우리나라도 EU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적정성 결정을 승인함에 따라 2021년 12월 세 번째로 GDPR의 적정성 결정 채택국가가 되었음. 이로 인해 대EU 수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시간 및 비용부담이 대폭 절감되고 중소기업의 EU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민간 데이터 이전에 국한되었던 일본의 경우와 달리 공공 데이터 이전에도 적용되어 한국-EUEU 정부 간 공공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

EU 비회원국인 A국에 소재한 소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EU 비회원국인 A국에서 소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EU 거주자에게 A국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EU 역내에 사업장을 운영하지는 않음.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고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상용화되어 EU 내에 직접 진출하지 않더라도 EU에 거주하는 주요 고객의 취향과 소비형태를 A국에 위치한 기업 내부에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임.

EU의 GDPR이 발효되자 ⓐ기업의 EU 사업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 GDPR은 EU 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업처럼 인터넷을 통해 EU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시민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적용

[114]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2)가 발간한「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1장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지역간 규칙간의 쟁점: APEC CBPR vs. EU GDPR(곽주영)' 참고

되기 때문임. 또한 EU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만약 ⓐ기업이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EU 역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A국 내로 이전하면 최대 전세계 연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됨.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A국으로 이전하고 과징금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표준계약조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시간과 약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부담이 큼. 한편, A국 정부 역시 자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EU의 적정성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음. 적정성 결정을 받게 되면 ⓐ기업의 경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되어 별다른 부담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적정성 결정을 위한 EU와 A국 간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자 어려운 표준계약절차와 막대한 과태료에 대한 우려로 영세한 ⓐ기업은 결국 EU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을 규율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함.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EU –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EU GDPR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EU의 법률로, 모든 EU 회원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됨.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처리·제공 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벌칙을 부과함.

- 제45조(적정성 결정)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획득한 국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EU 디지털파트너십 *ROK-EU Digital Partnership*	69단락.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Para. 69. Data related Laws and Systems*	양측은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현재의 적정성 결정에 기반하여 데이터 보호 규칙의 융합을 촉진하는 등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역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며, 데이터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Both sides agree to cooperate on supporting international data flows with trust including for instance by promoting the convergence of data protection rules, building upon the existing adequacy decision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and to explore ways to develop and implement data policies aiming to foster the data economy.*
2	일본-EU 디지털파트너십 *Japan-EU Digital Partnership*	81단락. 사생활보호 강화 기술 *Para. 81.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양측은 상호적인 적정성 결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 탄생했다는 점을 환기한다. *With respect to personal data, both sides recall that they have mutual adequacy decisions in place, which together have created the world's largest area of free and safe data flows.*

55. 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이란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함.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하여 규정함.

2011.3.29. 공공·민간부문을 모두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2020.2.4. 개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 법으로 통합하여 온·오프라인 규제를 일원화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통계작성·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음. 2023.3.14. 개정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외에 국외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규정을 정비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안전조치의무 및 유출신고 위반 사례

2003년 한국맥도날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공유가 가능한 프로토콜로 접속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인정보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여 약 487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됐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한국맥도날드에 대하여 6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음. 이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되었음[법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나아가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한 달여 간만 보관한 사실도 확인돼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음.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 쟁점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드론,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됨.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또는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을 표시하여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촬영할 수 있음[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그러나 실무적으로 촬영거부 의사의 표시 방법, 촬영과 함께 녹음까지 할 때 통신비밀보호법과의 충돌문제, 가명처리 규정과의 관계 등 쟁점이 남아 있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모두 매출액과 보유 개인정보 수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전 세계 매출 1조원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일 때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함[법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이는 국내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절차·기준 등을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함(제30조).

EU –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제30조),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제2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제35조), DPO 지정(제37조~제39조), 행동규약 및 인증(제40조~제43조) 등을 요구하고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제14조의8 개인정보의 보호 *Article 14.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발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들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를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보호함에 있어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국이 제공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자연인이 구제받을 방법, 그리고 (b)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방법 5. 양 당사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접근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각 당사국은 서로 다른 체계 간 양립가능성을 증진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규제성과에 대한 인정 – 그 인정이 자발적이든 상호 약정에 따른 것이든,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틀에 의한 것이든 여부와는 관계없다 –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자국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메커니즘이나 또는 양 당사국 간의 양립가능성 증진을 위해 기타 적합한 약정을 확장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of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and the contribution that this makes to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development of its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ould take into account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3.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dopt non-discriminatory practices in protecting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violations occurring within its jurisdiction.* *4. Each Party should publish inform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s it provides to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how:* *(a) individuals can pursue remedies; and* *(b) business can comply with any legal requirements.* *5. Recognising that the Parties may take different legal approaches 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echanisms to promote compatibility between these different regimes. These mechanisms may include the recognition of regulatory outcomes, whether accorded autonomously or by mutual arrangement, or broader international framework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xchange information on any such mechanisms applied in their jurisdictions and explore ways to extend these or other suitable arrangements to promote compatibility between them.*

56. 데이터산업법 (Data Industry Ac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Framework Act on Data Industry Promotion and Utilization Promotion)이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은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세계 최초의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민간과 공공 영역을 아우르며, 기본계획 수립,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결합 촉진, 수집·가공(정보분석) 지원, 가치평가, 데이터자산 보호, 데이터 플랫폼 지원, 거래 표준계약서,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데이터거래사 및 전문인력 양성, 분쟁조정 등을 규정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데이터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AI 개발계약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일방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귀속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면, 금융데이터 개발사인 K사는 금융기관 A의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업무를 수주하고 해당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납품하였는데, 금융기관 A는 프로젝트 종료 후 K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하고 홍보하였음. 데이터 산업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데이터산업법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데이터의 결합, 통합, 거래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포맷과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가 중요함. 미국은 정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민간에게 개방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데이터 간 동일한 포맷과 표준화 양식을 가진다면 통합·가공이 용이할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음. 데이터산업법은 정부로 하여금 데이터 호환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데이터산업법 제28조(표준화의 추진)].

그리고 정부는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데이터산업법 제20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데이터 품질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임. 오류율이 낮은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할 때 효율성 제고, 분쟁 예방, 관리비용 최소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데이터 결합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결합 및 융합을 통해 무한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경제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데이터산업법 제10조(데이터 결합 촉진)]. 특히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주의할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조치와 함께 결합전문기관를 통해 결합해야 함.

데이터 관련 법률 간의 정합성 문제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일련의 데이터 관련 법률들이 제·개정되고 있으며, 과열된 부처 간 입법 경쟁으로 법률 간 저촉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대표적 예로서, 데이터산업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부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함. 반면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앞서 두 법률과는 다른 보호 방식을 취하고 있음.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회피, 제거 등)할 수 있는 도구의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반면, 데이터산업법은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함. 이 밖에도 보호대상 데이터, 구제, 데이터 분석 면책 등에서 관련 법률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법률 간 발생하는 충돌·저촉·중복 등의 문제를 바로잡고 법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6월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3개 기관을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은 데이터의 내용, 구조, 관리체계 등 품질수준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함[데이터산업법 제20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EU - 데이터법

데이터 공유 계약에서 불공정을 방지하려는 조치 및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함. 홍수 및 산불과 같은 비상사태의 경우, 민간 보유 데이터에 공공기관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불법적인 데이터 전송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중국 - 데이터안전법

데이터를 중요도 및 변조·유출·불법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유형/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는 '데이터분류분급제도'를 운영함(제21조). 특히, 중요데이터의 개념을 도입하여 변조, 파괴, 유출되거나 불법취득, 이용될 경우 국가안전, 공공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의 처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등 보다 엄격한 안전보호의무를 부과함(제30조).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57. 신용정보법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이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1995.1.5. 제정)임.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에 있어서 신용 관련 정보(대출, 연체 등)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 이 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준수해야 할 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처리위탁, 보관, 삭제, 신용정보활용체계 공시,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및 내부통제, 권리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신용정보는 개별 신용거래의 거래기록과 그 결과물들이 누적되어 표시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신용거래의 역사라 할 수 있으며 크게 식별정보(살아 있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신용카드, 보증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소득, 납세 등) 및 기타정보로 나눌 수 있음.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위반 사례

A은행은 차주 B에 대한 가계일반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배우자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C의 개인신용정보를 여러 차례 조회하였고, 일부 건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규정(제32조)을 위반하였음.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행위는 위법임.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받아야 함.

한편,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제32조 제4항). 예컨대,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주주사에 대해서 개인신용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동의를 받고 이를 대주주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임.

마이데이터사업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2022년 1월 5일부터 금융 마이데이터사업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 신용정보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제4조 이하)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제33조의2)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마이데이터사업이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부채, 자산, 신용카드 등)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함. 이 사업을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대량 집적하는 산업의 특성상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최소 자본금 5억원과 일정한 정보보호 및 보안 의무 등을 허가조건으로 함. 최근에는 마이데이터사업이 금융을 넘어 공공, 의료 등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실증

및 입법 등이 추진 중임. 그러나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관리와 보안 위험이 증가하고 해킹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신용정보주체가 공개한 정보의 수집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2항). 이러한 예외에는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음. 그런데 이 중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즉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SNS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된 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음. 주의할 것은 이 법은 공개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불허한다는 점임.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2013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에 의해 예고된 제정안은 한국-EU FTA/한국-미국 FTA를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국외에 위탁할 수 있게끔 허용함.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상의 보호조치(정보주체 사전동의,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함.

영국 - 한국-영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 합의

2021년 12월 EU와의 GDPR 적정성 결정이 채택되었지만, 금융정보는 심사에서 제외된 반면, 2022년 7월 영국과의 적정성 결정 채택 합의에서는 금융정보가 포함되면서 양국 간에 확장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해짐.

미국 - Fair Credit Reporting Act

신용점수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용보고기관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성실히 공개해야 하고, 소비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즉시 시정해야 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제3장

제5절 데이터 이동

산업통상자원부 KSA 한국표준협회 비매품

58. 국경 간 데이터 이동 (Cross-border Flows of Data)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Flows of Data)이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데이터가 이동한다는 의미임. 데이터의 범위는 광범위한데, 통상의 관점에서는 주로 개인정보, 산업 데이터(기업·금융 등), 국가안보 관련 중요 데이터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통상 협정문에서는 Data 대신 Information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면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무역장벽(Trade barrier)으로 간주하며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국가의 조치는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시장접근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CPTPP, DEPA, 한국-싱가포르 DPA 등 대부분의 협정문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해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음. 2) 다만, 각 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데이터 이동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요건을 갖출 수 있음. 3) 자국의 규제요건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함.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동(제12.15조)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적용대상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A Party shall not prevent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where such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한국 –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유사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하는 것으로 정의"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메타, EU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폐쇄 경고

메타(구 페이스북)가 2022년 2월, 유럽 전역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SNS에서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유럽연합(EU) 서버에 보관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EU GDPR 규정에 반발한 조치임. 메타 등 미국 기업은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라는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 프레임워크 협약을 근거로 유럽 데이터를 미국 서버에 전송해 왔음. 하지만 이 협약은 EU GDPR 보호조치에 미흡하다며 2020년 7월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무효화됐음. 유럽 매체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메타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

출된 연례 보고서에서 EU 규정에 따라 미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1년이 지난 2023년 5월, 메타는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부터 미국으로 이전한 EU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EU GDPR에 위반됐다며, 12억 유로의 과징금과 미국으로 이전한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나이젤 존스는 미국으로 전송한 EU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저장을 중단하고 삭제하라는 요구사항은 재정적, 기술적, 논리적으로 엄청난 작업이므로 메타가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전송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외 데이터 이동을 허용하고 있음.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U-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45조(적정성결정) (1)항

GDPR에서는 집행위원회가 그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한다고 결정한 경우,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 데이터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중국-네트워크 안전법 제37조

네트워크 안전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핵심정보 인프라사업자에게 중국 내에서 운영 중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에 저장하거나 해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국가네트워크정보기관이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 방법에 따라 보안평가를 진행한 후에 가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3.2 정책 이슈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정책의 득과 실

국경을 넘는 일상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정부, 기업, 개인의 우려가 증가하면서 주요국에서 법 집행이나 감사, 정보주체의 접근권 보장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국경 간 이동 관련 정책 및 규제 또한 증가 추세에 있음. 주요국 정부는 개인정보가 기밀이나 민감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 관점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정책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가 디지털 산업 정책의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므로 디지털 집약적 산업에서 개인정보 관련 자국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경 간 이동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국경 간 이동을 관리하는 정책 및 규제가 다층적이고 엄격한 경우, 기업 등 경제주체가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공 정책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추가 비용, 운영 복잡성 및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역내경제동반자 협정 *RCEP*	제12.15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동 *Article 12.15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신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적용대상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2항과 불합치하는 모든 조치.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나.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A Party shall not prevent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where such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any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hat it considers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14 provided that the measure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or* *(b) any measure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Such measures shall not be be disputed by other Parties*
2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 협정 *KSDPA*	제14.14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Article 14.14: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그 요건은 자의적이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are not arbitrary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are proportionate.* *2. Neither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f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59. 네트워크안전법 (People's Republic of China Network Security Law)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이하 네트워크 안전법)」이란 중국에서 2016년 11월에 제정되어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중국 사이버 보안 규제의 대표적인 법률을 말함. 이 법은 영문명으로 「People's Republic of China Network Security Law」로 번역되는데,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종합한 법률로 볼 수 있음.

동 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네트워크를 설치, 운영, 유지, 사용하거나 네트워크 안전 등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적용됨. 특히, 이 법률은 중국내 수집한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서 저장하거나 중국 정부의 안전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국경간 전송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국제 사례에 해당됨.

〈 네트워크 안전법의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네트워크 안전	o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제21조~제39조) - 데이터 파괴·기능상실·유출 시 국가안전·국가경제·공공이익과 관계있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 네트워크보안 등급 보호제도 시행 o 네트워크 핵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 전용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제23조) - 네트워크 핵심 장비와 네트워크 보안 전용제품은 안전인증 통과 또는 안전검사 의무화 o 이용자 실명제 (제24조) -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접속, 도메인 등록, 유선전화·휴대전화 가입 시 이용자 신원정보 확인 필요 o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내 저장 의무화 (제37조) -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영 중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업무 데이터를 반드시 경내에 저장 - 업무의 필요에 의해 해외에 저장, 해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정부의 안전평가 진행
개인정보 보호	o 네트워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40조 ~ 제42조) - 수집한 이용자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이용자 정보 보호제도 정착 - 개인정보 수집·사용 시 합법·정당·필요 원칙을 준수하고, 목적·방식·범위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및 불법제공 금지 o 이용자의 개인정보 삭제 및 정정 요구권 (제43조) o 개인정보 불법 취득, 판매 및 불법 제공 금지 (제43조) o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및 영업비밀 유지 (제43조) - 유관 부처 및 그 직원은 직무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및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유출·판매 및 불법제공하지 못함.
불법정보 규제	o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차단 및 보고 (제47조) - 법규에서 발표·전송을 금지하는 정보 발견 시 전송 중단, 제거 등 조치를 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유관 부처에 보고 o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불법정보 포함 금지 (제48조) - 전자정보·소프트웨어에 악성 프로그램 및 법규에서 발표·전송을 금지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못함. - 악성 프로그램 및 법규에서 발표·전송을 금지하는 정보 발견 시 서비스 중단, 삭제 등 조치를 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유관 부처에 보고
네트워크 사업자의 협조 및 국가의 네트워크 통신 제한	o 네트워크 사업자의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협조 의무 (제28조) o 국가의 네트워크 통신 제한 등 임시조치 (제58조)
적용범위	o 속지주의 원칙 (제2조) - 「네트워크 안전법」은 원칙적으로 중국 국경 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 사용 및 네트워크 보안의 관리감독에 적용 o 국외에서의 중국 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등에 대한 제재 (제75조)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중국,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중국 외 반출 규제 의무화 실시

2017년 6월부터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라 "핵심 정보 인프라[115] 사업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하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가네트워크정보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제정한 방법에 따라 보안평가를 받아야 함. 이 의무는 다국적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음. 결국, 2017년 5월 세계 각국 상공단체의 시행 연기 청원으로 법 제37조의 시행이 유예되었으나, 2019년 1월에 유예기간 만료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외국 기업들은 데이터 서버를 중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 외에 기타 데이터처리자도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평가를 받아야 함. 문제는 보안평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데이터[116]'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것임.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중국 – 네트워크 안전법(网络安全法) 제37조)

네트워크 안전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핵심정보 인프라사업자에게 중국 내에서 운영 중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에 저장하거나 해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국가네트워크정보기관이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 방법에 따라 보안평가를 진행한 후에 가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중국 –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은 네트워크 안전법의 하위 규정(한국의 시행규칙에 해당)으로서 안전평가 적용 대상과 범위, 평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에서 정한 안전평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제4조).

1) 데이터 처리자가 역외에 중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2) 핵심정보인프라시설운영자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처리자가 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전년도 1월 1일부터 역외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누계 10만명 이상이거나 역외에 제공한 민감 개인정보가 누계 1만명 이상인 경우
4) 국가네트워크정보기관이 정한 기타 데이터 역외 이전 보안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한,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 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제5조).

1) 데이터 역외 이전 및 데이터 역외 수령자의 데이터 처리목적, 범위, 방식 등의 적법성, 정당성 및 필요성
2) 역외로 이전되는 데이터의 규모, 범위, 유형, 민감 정도, 데이터 역외 이전이 국가안전, 공공이익, 개인 또는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가져다 주는 리스크
3) 역외 데이터 수령자가 부담할 것을 약속한 책임 및 의무, 책임 및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관리 조치,

[115] 핵심 정보 인프라는 공공통신,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등 중요 산업과 영역에서 파괴, 기능 상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 국가 안전, 국가 경제, 국민 생활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말함.

[116] 중요 데이터는 변조, 파괴,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획득되거나 이용되는 경우 국가안보, 경제 운용, 사회 안정, 공공안전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함.

기술 조치, 능력 등이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4) 데이터의 역외 이전 중 및 역외 이전 후 변조, 파괴, 유출, 분실, 이전 또는 불법 취득, 불법 이용 등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에 개인정보권익이 보호받는 채널이 원활한지 여부 등

5) 데이터 처리자가 역외 데이터 수령자와 체결 예정인 데이터 역외 이전 관련 계약 또는 기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서류 등에서 데이터 안전 보호 책임 및 의무를 충분하게 약정하였는지 여부

3.2 정책 이슈

「네트워크 안전법」은 APEC CBPR(APEC Cross-Border Privacy Rule), '데이터 주권' 등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Flows of Data)과 관련된 통상 쟁점임.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60. 컴퓨터 설비의 위치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컴퓨터 설비의 위치(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란 한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에 컴퓨터 설비를 설치하도록 제한(요구)하는 것을 의미. 컴퓨터 설비의 위치와 유사한 용어는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sation)임. 데이터 현지화는 데이터가 특정 관할 구역(Jurisdiction) 내에서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저장 또는 처리되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정한 의무적인 법적 또는 행정적 요구("Data localisation trends and challenge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301, 2020)를 의미.

CPTPP, DEPA, 한국-싱가포르 DPA 등 협정문에서 "컴퓨터 설비의 위치"에 대해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각 국은 통신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음. 둘째,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컴퓨터 설비의 위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 셋째, 그러나 "컴퓨터 설비의 위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함. 넷째,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말함.

"Computing facilities means computer servers and storage devices for processing or storing information for commercial use"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금융 클라우드 서버 한국 내 위치는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

아시아클라우드컴퓨팅협회(ACCA)는 '금융서비스와 기술도입 보고서: 아태지역 금융서비스 클라우드에 대한 개선'이라는 2021년도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권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11개국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시 두 번째로 까다로운 규제를 가진다고 분석됨. 한국의 금융 규제가 클라우드 사용 시 물리적인 서버를 한국 내에 두도록 제한해,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클라우드 같은 외국 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클라우드서비스의 진입제한이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117]

[117]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2)가 발간한「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3장 '제3장 개인정보 국내 저장 의무화 이슈: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참고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제11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고시)임.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중국-지도관리조례(地图管理条例) 제34조

중국 측량법(测绘法) 하위 규정인 지도관리조례(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에서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업체에게 지도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버를 중국 내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베트남-사이버보안법 제26조(사이버공간에 정보 보안 보장)

베트남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보장,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조치 및 기밀정보 보호 의무 등을 정하고 있는 사이버보안법('18.6월 제정, '19.1월 시행)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이버공간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 및 외국 기업들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베트남 내의 서비스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이용·분석 및 처리하는 경우 정부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베트남에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3.2 정책 이슈

"컴퓨터 설비의 위치"는 APEC CBPR(APEC Cross-Border Privacy Rule), '데이터 주권' 등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flows of data)과 관련된 통상 쟁점임. 중국, 베트남 등의 "컴퓨터 설비의 위치"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 컴퓨터 설비에 저장되는 데이터(Data) 또는 정보(Information)도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CPTPP*	제14.13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Article 14.13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DEPA*	제4.4조 *Artcle 4.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including equirements that seek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2.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15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Artcle 14.15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 한국-싱가포르 DPA에서는 다음 제4항과 같은 예외사항이 추가됐다. 〉 4. 이 조는 제12.15조에서 정의된 "금융기관" 또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a "financial institution" or a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a Party", as defined in Article 12.15.*
4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SADEA)*	제2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Artcle 2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 싱가포르-호주 DEA에서는 다음 제4항과 같은 예외사항이 추가됐다. 〉 4. 이 조는 제9장(금융 서비스)의 제1조 (e) 및 (h)(정의)에서 정의된 "금융기관" 또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a "financial institution" or a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a Party", as defined in Article 1(e) and (h) (Definitions) respectively of Chapter 9 (Financial Services).*
5	역내경제동반자 협정 *RCEP*	제12.1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Article 12.1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 RCEP에서는 위 CPTPP 등의 제3항과 다르게 안보이익 보호를 위한 예외를 추가하고 있다 〉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2항과 불합치하는 모든 조치.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나.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any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hat it considers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12 provided that the measure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or* *(b) any measure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Such measures shall not be disputed by other Parties.*

61.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 CBPR)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 Border Privacy Rules, CBPR)[118]은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APEC Privacy Framework, APF)'[119]에 따라 APEC 회원국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2011년에 개발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도를 의미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APEC CBPR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CBPR 인증 효과와 한계

CBPR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과정에서의 사전고지, 개인정보 목적 내 이용 여부, 피해구제 시스템, 정보주체의 열람·정정 권한 보장 여부 등 50개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부여하는 인증으로, APEC 21개 회원국 중 9개국(한국·미국·일본·캐나다·호주·싱가포르·대만·멕시코·필리핀)이 참여하였음.

CBPR 인증은 회원국 또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제도 운영 국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CBPR 인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자국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지 않음. 그러나 CBPR 인증 가입국 중 일본·싱가포르 등은 CBPR을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범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체계로서 인정하고, CBPR 인증을 취득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등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여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상대국 또는 상대 기업에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입증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반대로 CBPR 인증을 취득한 상대 기업에 대해 보호 수준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22년 4월에는 미국 주도로 非 APEC 국가로의 CBPR 체제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PEC CBPR과 별도의 'Global CBPR Forum(www.globalcbpr.org)'이 창설되었음. 미국 상무부는 새로운 'Global CBPR Forum'이 APEC CBPR 및 PR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국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기존 APEC CBPR 인증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설명함. 즉, 운영이 APEC에서 글로벌 CBPR 포럼으로 공식적으로 전환된 것임. 2023년 7월에는 영국이 非 APEC 국가로는 처음으로 Global CBPR Forum에 준회원으로 참여하였음.

[118]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2)가 발간한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 1장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지역간 규칙간의 쟁점: APEC CBPR vs. EU GDPR(곽주영)' 참고

[119] CBPR의 핵심인 APF 원칙은 APEC 산하의 전자상거래운영그룹(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이 마련하여 APEC 각료회의에서 승인됨(2005년)

한국은 2022년 5월부터 CBPR 인증을 시작했으며, 정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음. 2023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8개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음. CBPR 인증은 APEC 21개 회원국 중에서도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9개국에 한정돼 가맹국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CBPR은 인증 성과가 저조해, 2012년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은 미국 45개, 일본 5개, 싱가포르 11개, 한국 8개 등 69개에 그치고 있음(2023년 4월 기준). 결국 참여 회원국은 9개국이지만 사실상 4개국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임.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1항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APEC CBPR 인증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음.

일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서도 APEC CBPR 인증과 같은 국제적인 틀에 근거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구체적인 인증의 종류는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함.

3.2 정책 이슈

APEC CBPR과 다른 인증제도와의 연계 체계 미흡

APEC CBPR 인증 시행 국가 중에서도 APEC CBPR 인증 취득 시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법규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상황임. 또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인증(GDPR 인증, ISO, CBPR 등)들의 인증기준이 달라,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든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음. 하나의 인증을 통해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 협정 *KSDPA*	제14.17조 개인정보 보호 *Article 14.17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6. 양 당사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이러한 상이한 접근 간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과 같은 광범위한 국제적 · 지역적 체계 나. 각 당사국의 법 체계, 국가 신뢰마크 또는 인증 체계로 부여되는 유사한 보호에 대한 상호 인정, 또는 다. 양 당사국 간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그 밖의 방법 7.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제6항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메커니즘 간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러한 메커니즘 또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8. 양 당사국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 및/또는 'APEC 프라이버시 처리자 인정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촉진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임을 인정한다. (주석) 양 당사국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대체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9. 양 당사국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과 같이, 공통의 국경 간 정보 전송 메커니즘의 채택을 공동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Recognising that the Parties may take different legal approaches 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echanisms to promote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se different approaches. These mechanisms include:* *(a) broad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frameworks, such as the APEC Cross Border Privacy Rules;* *(b) mutual recognition of comparable protection afforded by their respective legal frameworks, national trustmarks or certification frameworks; or* *(c) other avenues of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7.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xchange information on how the mechanisms in paragraph 6 are applied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and explore ways to extend these or other suitable arrangements to promote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m.* *8.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APEC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and/or APEC Privacy Recognition for Processors System are valid mechanisms to facilitate cross-border information transfers whil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he CBPR System does not displace or change a Party's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9.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jointly promote the adoption of common cross-border information transfer mechanisms, such as the APEC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2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제19.8조 개인정보 보호 *Article 19.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2.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전자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발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APEC 프라이버시 보호체계'와 '프라이버시 보호 및 국경 간 개인 데이터의 흐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OECD 위원회의 권고(2013)' 등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야 한다. 6. 양 당사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접근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이렇게 서로 다른 체계 간 양립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자국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매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양 당사국 간의 양립가능성 증진을 위해 적합한 약정을 확장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양 당사국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상의 체계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경 간 원활한 정보이전을 위해 유효한 매커니즘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digital trade. In the development of this legal framework, each Party should take into account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4 such as the APEC Privacy Framework and the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2013).* *6. Recognizing that the Parties may take different legal approaches 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echanisms to promote compatibility between these different regimes.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exchange information on the mechanisms applied in their jurisdictions and explore ways to extend these or other suitable arrangements to promote compatibility between them. The Parties recognize that the 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 is a valid mechanism to facilitate cross-border information transfers whil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62. 대서양 횡단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Trans-Atlantic Data Privacy Framework)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대서양 횡단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Trans-Atlantic Data Privacy Framework, 이하 TADPF)는 미국이 EU와의 원활한 개인정보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협정을 말함. 1996년 2월에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120]을 받은 미국-EU 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가 있었지만, 'Privacy Shield'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의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2020년 7월)에 따라 'Privacy Shield'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무효화 됨. 'Privacy Shield'가 무효화되면서 미국 기업은 EU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조항(SCCs),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 및 개별 동의 등을 비롯한 다른 개인정보 규제 준수가 의무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메타는 GDPR 위반 혐의로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미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 'Privacy Shield'의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EU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미국이 새로이 제정한 미국-EU 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안)이 TADPF임.

미국이 만든 TADPF는 2022년 12월에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정성 결정」 초안을 받은 이후, 유럽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유럽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2023년 7월에 정식으로 「적정성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EU 시민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됨.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적정성 결정」을 받지만, 미국은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TADPF를 만들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는 것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TADPF는 미국-EU 간 체결한 협정문의 제목으로 통상 협정문에서는 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TADPF 주요 내용

TADPF 내용의 상당 부분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이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음.

분류	내용
피해 구제 방안 *(Redress)*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와 EU-미국 기업의 규제 불이행에 대한 민원 제기 및 필요한 경우 민원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 제공 결정 등의 다양한 규제 장치를 제공 • 피해구제 집행 및 책임성 원칙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개인의 불만과 분쟁을 검토하고 비용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 • EU-미국 DPF 준수 조직에 대한 연락과 관련하여, 개인은 관련 조직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을 접수한 조직은 45일 이내에 데이터 주체에 답변을 제공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민원 처리 담당 조직의 연락처를 공개 • 이외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개인은 독립적인 분쟁 조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방침 항목에서 독립 분쟁 조정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업이 독립 분쟁 조정 기관에서 내린 결정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 또는 관할 법원이 분쟁 해결에 직접 개입

[120] 적절성 결정에 대해서는 이 교재 "#54. 적절성 결정"을 참고하기 바람.

	• 기업은 다음의 경우 EU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이하 DPA)의 분쟁 조사 및 해결에 협조 – 고용 관계 형성에 의해 수집된 직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민원 사항 처리 시 – DPA의 감독이나 질의에 대해 분쟁과 관련된 자발적인 정보 제출 • 미국 상무부 역시 민원을 접수, 검토 및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무부는 DPA가 지정된 연락처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이후에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 • 마찬가지로 FTC 역시 표준화된 민원 사항 전달 절차를 확립하여 DPA로부터 전달된 민원 접수를 위한 연락처를 지정하고, 접수 정보를 상호 공유 – FTC는 자체적으로 개인의 민원 사항을 직접 접수하고 직권으로 EU-미국DPF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다만, 독립적인 분쟁 해결이나 자율 규제 기관, 상무부 및 DPA로부터 받은 원칙 준수 위반 요청 건에 대해 우선적인 처리를 진행 • 이외에도 개인은 특정 조건 하에서 주 소비자법 및 부정 상거래 대책 규정 등에 준해 사법적 피해 구제(손해배상 포함)를 받을 수 있음
구속력있는 중재 제도	피해 구제 제도가 동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은 EU-미국 DPF 패널을 통해 구속력 있는 중재(binding arbitration)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상무부는 EU-미국 DPF를 보완하기 위해 상무부와 EU집행위원회 간에합의된 규칙에 의한 중재 제도를 감독하는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를 지정 • 규제 미준수로 피해를 입는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EU-미국 DPF 패널에게는 개인 특정에 의한 비금융적인 형평법10)상의 구제(equitable relief)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 특히, EU-미국 DPF 패널은 결정을 내릴 때 다른 EU-미국 DPF 메커니즘에 의해 이미 획득된 다른 구제책을 고려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다른 구제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중재에 의존할 수 있음
인증 및 집행	EU-미국 DPF 준수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은 상무부에 위임되며, 이를 위해 EU-미국 DPF는 인증, 재인증,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및 피해 구제 등을 포함하여 적정성 결정 초안 부록을 통해 감독 및 집행 메카니즘을 제시 •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은 원칙 준수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발표하며, 상무부에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관련 별도의 피해 구제 체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 • 상무부는 조직이 모든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대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또한, 필요한 경우 FTC와 법무부의 협조를 통해 인증 충족 여부를 검증

미국 TADPF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0월, TADPF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121]

- 동 행정명령은 보다 강력한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채택하고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EU 내 법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TADPF 추진을 지지할 것을 천명
- 미국은 EU집행위원회에 기존의 EU-미국 'Privacy Shield' 협정을 보완한 TADPF에 대한 「적정성 결정」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
- 동 행정명령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성 원칙, 감독기구 및 구제수단 마련, 정책 절차 검토 등 TADPF 이해에 필요한 방안을 명시
  - (비례성 원칙)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검증된 정보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제한. 대량 수집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고려한 수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
  - (감독기구 및 구제수단) 미국 국가정보장실(DNI) 산하에 시민자유보호관(CLPO)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 평가법원(Data Protection Review Court)을 추가로 설치하여 각 정보기관에 대한 구속력 있는 처분을 결정할 권한 부여
  - (정책 절차 검토) 또한 개인정보 및 시민자유감독귀원회(PCLOB)가 미국 정보기관의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고 CLPO 및 DPRC 결정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121] Executive Order On Enhancing Safeguards For United States Signals Intelligence Activities(2022.10.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10/07/executive-order-on-enhancing-safeguards-for-united-states-signals-intelligence-activities/

EU 집행위원회의 적절성 결정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EU집행위원회는 2022년 12월, TADPF「적정성 결정」초안 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채택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2023년 7월 정식으로「적정성 결정」을 채택.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메타에 대해 GDPR 위반 혐의로 12억 유로의 과징금 부과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ssion, DPC)는 EU 내 사용자 정보를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미국에 이전(전송)한 혐의로 페이스북 아일랜드(Facebook Ireland)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 아일랜드(Meta Platforms Ireland)에 12억 유로(약 1조 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23.5.12.).
또한, 향후 6개월 이내에 EU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이미 전송된 관련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음.

DPC는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122], 과징금 규모는 2021년 룩셈부르크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Amazon)에 부과한 7억 4,600만 유로를 크게 상회하며, EU GDPR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였음. DPC의 과징금 부과 결정으로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EU-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45조(적정성결정) (1)항

GDPR에서는 집행위원회가 그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한다고 결정한 경우,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 데이터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3.2 정책 이슈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필요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미국은 "대서양 횡단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 내로 가져올 수 있지만, EU가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개인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예를 들면 글로벌 CBPR 인증 국가로부터는 CBPR 기준을, 중국으로부터는 보안심사를 받아야 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122] 메타의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하고 있어 아일랜드 DPC가 EU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메타에 대한 제재를 발표

63. 데이터 혁신 (Data Innovation)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데이터 혁신(Data Innovation)이란 데이터를 이용해 국가와 기업, 산업구조와 경제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영역에서 무형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음. 초연결 지능화가 도래하면서 사람과 기기 등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지만 데이터 자원의 근원도 매우 다양함. 이러한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로 작용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생산요소로서 가지는 중요성은 그것이 혁신을 주도하는 원천이 된다는 데 있음.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경제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창출, 집적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동을 효율화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 공공부문에서도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활용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음.[123]

데이터 혁신을 위한 활동에는 데이터 공유 등 접근성 향상, 정부 데이터 개방,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기초 연구/조사, 지식 확산, 오픈 사이언스 지원, 전 부문에 걸친 시험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권장, 규제의 유연한 적용(예: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이 포함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및 통상 협정문에서는 "데이터 혁신"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음. 다만, Data에 대해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통상 협정문 상의 데이터 혁신

통상 협정문에서는 데이터 혁신 중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공유"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DEPA 협정문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 주도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국내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규제 데이터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면서, 신뢰에 기반을 둔 데이터 공유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함으로써, ①혁신 및 창의성을 촉진, ②정보, 지식, 기술, 문화 및 예술의 확산 원활화, ③경쟁과 효율적인 공개 경쟁 시장을 육성한다고 인정하고 있음. 또한, 데이터 주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 및 체계에 관해, 그리고 데이터 샌드박스 등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개념의 입증에 관해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23] 이성엽,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 고려대학교 경제규제와 법(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 제11권 제2호 (통권 제22호), 2018. 11.

한국-싱가포르 DPA 협정문에서는 양국은 디지털화 및 데이터 사용이 경제 성장을 증진한다는 것과 국경 간 데이터 전송지원 및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증진하기 위해 실험과 혁신을 지원(규제 샌드박스의 사용 포함)하며 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양국은 ①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의 이점을 증명하는 데 요구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② 데이터 이동성을 위한 정책 및 표준 개발에 대한 협력, ③ 데이터 혁신과 관련된 연구 관행 및 산업계 관행 공유 등을 통한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EU - 데이터 거버넌스법, 공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통일 규범의 규칙안

유럽연합은 2021년 11월 발효된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에 이어, 2022년 2월에 는 「공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통일 규범의 규칙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을 발표함. 「Data Act」의 제정을 통해 데이터 생성에 투자할 동기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혁신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한국,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한국도 2013년 7월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2020년 6월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21년 10월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데이터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의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임.

특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서는 데이터 혁신 활동과 관련된 국가 등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정책 이슈

DEPA 등 협정문에서 추구하는 「데이터 혁신」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공유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므로, '데이터 혁신'은 '컴퓨터 설비의 위치', '데이터 주권' , APEC CBPR(APEC Cross-Border Privacy Rule) 등과 관련된 통상 이슈임.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DEPA*	제9.4조 데이터 혁신 *Article 9.4 Data Innovation*	1. 당사국들은 국경 간 데이터 흐름과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 주도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국내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규제 데이터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2. 또한, 당사국들은 신뢰에 기반을 둔 데이터 공유 체계나 개방형 라이센싱 약정과 같은 데이터 공유체계가 데이터 공유를 원활하게 해부며, 나아가서 그것을 디지털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가. 혁신 및 창의성을 촉진한다. 나. 정보, 지식, 기술, 문화 및 예술의 확산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다. 경쟁과 효율적인 공개경쟁 시장을 육성한다. 3. 당사국들은 데이터 주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 및 체계에 관해, 그리고 데이터 샌드박스 등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개념의 입증에 관해 협력해야 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cross-border data flows and data sharing enable data-driven innovation. The Parties further recognise that innovation may be enhanced within the context of regulatory data sandboxes where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13 is shared amongst businesses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2. The Parties also recognise that data sharing mechanisms, such as trusted data sharing frameworks and open licensing agreements, facilitate data sharing and promote its use in the digital environment to:* *(a) promote innovation and creativity;* *(b) facilitate the diffusion of information, knowledge, technology, culture and the arts; and* *(c) foster competition and open and efficient markets.* *3.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llaborate on data-sharing projects and mechanisms, and proof of concepts for new uses of data, including data sandboxes, to promote data-driven innovation.*
2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 협정 *KSDPA*	제14.25조 데이터 혁신 *Article 14.25 Data Innovation*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화 및 데이터 사용이 경제 성장을 증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의 사용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험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며 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한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연구자, 학계 및 산업계가 관여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의 이점을 증명하는 데 요구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나. 데이터 이동성을 위한 정책 및 표준 개발에 대한 협력, 그리고 다. 데이터 혁신과 관련된 연구 관행 및 산업계 관행 공유
3	싱가포르-호주 디지털 경제 협정 *SADEA*	제26조 데이터 혁신 *Article 26 Data Innovation*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digitalisation and the use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promote economic growth. To suppor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nd promote data-driven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further recognise th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ables and supports, and is conducive to, experimentation and innovation, including through the use of regulatory sandboxes where applicable.*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support data innovation through:* *(a) collaborating on data-sharing projects, including projects involving researchers, academics and industry, using regulatory sandboxes as required to demonstrate the benefits of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b) cooperating o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standards for data portability; and* *(c) sharing research and industry practices related to data innovation.*

64. 데이터 주권 (Data Sovereignt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이란 생성된 데이터를 각 주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유하고 사용되며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함.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듯이 데이터에 대한 주권 역시 국가나 개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두됨.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사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주로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중심이 됨.

통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은 국민의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가거나 갈 때 특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 대표적인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주권'의 발현은 EU GDPR 제45조에 따른 '적정성 결정'으로서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외국으로 이전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 것임. EU는 제정을 추진 중인 「공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통일 규범의 규칙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에서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非 개인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조항을 명시함. 즉, EU법 및 회원국의 국내법을 위반하는 '非 개인데이터'의 국외이전 또는 외국 정부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에 이를 명시하고 기술적·법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토록 했으며, EU집행위원회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협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조항(Model Contractual Terms)을 개발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계획임.

개인 '데이터 주권'은 나의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를 내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대표적인 소비자 '데이터 주권'은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Mydata)'를 예로 들 수 있음. 개인의 '데이터 주권'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며, 국가안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령에 의해 제한되기도 함. 또한,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개념을 확장해서 '데이터 배당'의 근거로 삼기도 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수집·이용 권리의 절충점 필요

대법원은 데이터 수집·이용 적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음. 유통뿐 아니라 금융·의료 등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반대급부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의 과잉보호가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기업의 과도한 이용자 데이터 수집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함. 데이터 수집·이용과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법원은 데이터 수집·이용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용자 데이터의 광범위한 수집·유통·활용이 빈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호하고,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정립해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 사안에서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임.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공익 목적 및 빅데이터 산업의 기초 자료 조성 등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용자 데이터 수집·활용을 허용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고 설명함.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과도한 영리적 이용은 경계해야 하지만, 공익 목적의 데이터 공유나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사회적으로 적정한 데이터 활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뜻임.[124]

'데이터 주권'과 '컴퓨터 설비 위치' 쟁점

호주는 정부 차원의 '실수' 이후 데이터 보호 전략을 세우기 시작함. 2016년 중국 컨소시엄이 영국의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글로벌 스위치'의 지분 50%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호주 정부가 국방 분야 기밀 정보 일부를 이곳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임. '기밀 정보를 해외 기업의 손에 넘겼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호주 정부는 '글로벌 스위치'와의 계약이 끝나는 2020년 2억달러(약 2,300억원)를 들여 모든 정보를 호주 내 정부 소유 허브로 옮기기로 함. 이어 호주 정부는 2018년에 해외에 있는 자국민 데이터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음. 해외 기업이 해외에 보관한 데이터라도 호주 국민의 소유라면 호주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임. 이 밖에도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 외국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호주신호정보국(ASD) 인증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하며,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호주 국경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새 법안에 명시됐음.[125]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EU·일본·호주·캐나다·영국 등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음.

- 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EU -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45조(적정성결정) (1)항

EU집행위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획득한 국가는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됨. EU GDPR 적절성 결정은 자국민 개인정보가 다른 국가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주권'을 명시한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3.2 정책 이슈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면 '컴퓨터 설비의 위치' 및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제한'은 데이터 공유 제한으로 이어져 '데이터 혁신'이 더디게 일어남. '데이터 주권'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컴퓨터 설비의 위치', 'APEC CBPR(APEC Cross-Border Privacy Rule)' 등과 관련된 통상 쟁점임.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서로 다른 국가의 법역 간의 이동을 뜻하기에 데이터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법적 규제 및 보호 수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124] 데이터 수집 권리 vs 개인정보 보호…어떻게 균형 맞출까, 조선Biz, 2023.06.28.
[125] "정보 주권 지켜라… 전세계 '데이터 민족주의' 바람", 한국일보, 2019.11.12.

65. 데이터 배당 (Data Dividend)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이란 기업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 데이터 축적에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 형태로 되돌려준다는 의미임.

데이터 수집·이용·수익의 발생 과정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개인은 온라인 쇼핑, 소셜 미디어 사용, 인터넷 검색,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 둘째,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용자의 행동 패턴, 선호, 구매력 등을 파악 및 예측. 셋째, 수집된 데이터로 광고 제공, 타겟 마케팅, 제품 개발, 행동 예측, 비식별처리 후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예를 들면,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시청기록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하고 또 콘텐츠 제작에 반영해 수익을 창출하게 됨.

데이터 배당의 근거로는 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는 개인이 권리를 갖는다는 '데이터 주권'을 제시하고 있음. 사용자가 생산(제공)하는 데이터로 수익을 얻는 기업은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임. '데이터 주권'의 개념을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열람·삭제·처리정지·이동'을 개인이 결정한다는 것에서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까지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임.

데이터 배당 사례로 영국의 '디지미(Digi.me)'가 있음. 고객이 디지미社에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디지미는 필요로 하는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현금성 포인트로 제공하고 있음. 일정 이상의 구독자가 발생할 경우 콘텐츠 제공자에게 사례하는 유튜브도 데이터 배당의 사례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데이터 배당'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준 등도 없는 상태임.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데이터 배당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데이터 배당 도입 주장[126]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형 IT기업들의 수익을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른바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에 대한 논의가 한창임.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성장한 구글, 페이스북 등 IT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며 데이터 배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전문가들과 주 의원들은 데이터 배당제에 대한 입법 토론을 했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사실 데이터 배당제는 수년간 실리콘 밸리에서 논의되어 왔다"면서 "(데이터 배당제는) IT, 정보, 기술 회사가 번창하고 자동화의 진보가 일자리를 없앤 시점에서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음. 덧붙여 "또한 본디 배당금은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판매할 경우 국가나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었어야 할지 모른

[126] 남동희,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 도입 추진 배경과 전망, KISO 저널 제35호, 2019년 6월 25일

다"면서 반(反) 기술적인 제도가 아닌 점을 강조했음.

그러나 일부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주 의원들은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의 가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품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면서 "데이터에 일일이 값을 매기고 이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업 옥죄기로 비추어져 해당 산업에 대한 생산성 및 투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경기도 데이터 배당 실험적 실시

경기도는 2020년 2월, 지역화폐 사용자 36만 명이 사용한 지역화폐 거래 기록을 비식별처리한 후 외부 연구소나 기업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5천만 원을 36만 명에게 배분함. 1인당 120원이라는 상징적 금액이었지만, 데이터 배당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에 한정된 실험적 배당에 그침.

한국 – 개인정보보호법

세계 각국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데이터 배당'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3.2 정책 이슈

데이터 배당에 대한 찬반 이슈

데이터 배당에 찬성하는 쪽은 단순히 데이터 이용에 따른 수익을 배당으로 나누자는데 그치지 않음. 데이터 배당은 IT,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등의 진보로 일자리를 잃는 대가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제시되고 있음. 플랫폼 경제에서는 수익의 원천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수익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배당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임.

반면에 데이터 배당에 반대하는 쪽은 개인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시에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예시 : 회원가입 시 포인트 제공), 데이터 제공 결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 분석하는 기업의 노력과 투자 및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제 4 장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66.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암호기법은 수학적인 원리에 기반하여 중요한 정보를 읽기 어려운 값으로 변환하여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하고 오직 암호 키(Key)를 가진 인가된 자만이 복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함. 원본 데이터에 암호기법을 적용하여 암호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암호화라고 하며, 다시 원본 데이터로 복원하는 과정을 복호화라고 함. 암호기법을 사용하면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인증 및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USJDTA) 제21조(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암호화 기법이란 내용을 감추거나 위장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적발되지 않고 변경되는 것과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변환하는 원리 또는 수단이나 방법. 또한, 이는 암호변수와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밀 매개변수를 이용하거나 연관키 관리를 통해 정보를 변환하는 것으로 제한"

"Cryptography means the principles, means, or methods for the transformation of data in order to conceal or disguise its content, prevent its undetected modification, or prevent its unauthorized use; and is limited to the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using one or more secret parameters, for example, crypto variable, or associated key management."

"정보통신 제품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처리 및 통신용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하며, 이러한 기능은 물리적 현상을 판별하거나 기록하고 또는 물리적 과정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전송 및 표시, 또는 전자적 처리를 포함"

"ICT good means a product whose intended function is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transmission and display, or electronic processing applied to determine or record physical phenomena, or to control physical process"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제14.18조(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암호기법이란 정보 내용을 숨기거나 은밀한 수정을 방지하거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원칙,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하고, 하나 이상의 비밀 매개변수(예를 들어, 암호변수) 또는 관련된 키 관리를 사용한 정보의 변환으로 제한"

"Cryptography means the principles, means or methods for the transformation of data in order to hide its information content, prevent its undetected modification or prevent its unauthorized use; and is limited to the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using one or more secret parameters, for example, crypto variables, or associated key management."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암호기법과 국제무역

군사목적으로 개발된 현대식 암호화 기술은 냉전 당시 '이중용도' 기술로 분류되어 수출통제의 대상이었음.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어 안보위협이 사라지고 상업용 암호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주요 서방 국가들은 암호화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음.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암호화 기술에 대한 정책도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됨. 중국 정부는 사이버안보와 토착기술을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개발된 암호화 기술을 배제하고 자국 내에서 개발된 암호화 기술만을 사용토록 하는 기술규제를 실시하였음. 이에 미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특정 암호화 기술만을 사용토록 하는 기술규제를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식하고 CPTPP, USMCA의 TBT 챕터에 특정 암호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 조항을 도입하였음. 이후 해당 조항은 미국-일본 디지털통상협정,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TBT 규범이 아닌 독자적인 디지털통상규범으로 발전하였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과 관련하여 암호기법의 이전이나 접근, 국내 사업자와의 동업 또는 특정 암호기법의 사용 등을 요구하는 국내법은 없음.

중국-암호법

국가 안보, 사회 공공이익, 중국의 국제적 책임 차원과 관련될 경우에는 상용암호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여 암호기법이 적용된 해외 ICT 상품 및 서비스가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 협정 *KSDPA*	제14.18조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제품 *Article 14.1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3. 암호기법을 사용하고 상업적 응용을 위하여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를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인에게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가 소유하고 제품의 암호기법에 관련된 특정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정보(예를 들어 개인 키 또는 그 밖의 비밀 매개변수, 알고리즘 사양 또는 그 밖의 설계 세부사항)를 이전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다. 그 당사국 정부에 의한 또는 그 당사국 정부를 위한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특정한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를 사용하거나 통합한다. *3. With respect to a product that uses cryptography and is designed for commercial applications, neither Party shall impose or maintain a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that requires a manufacturer or supplier of the product, as a condition of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to:* *(a) transfer or provide access to a particular technology, production process or other information, for example, a private key or other secret parameter, algorithm specification or other design detail, that is proprietary to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and relates to the cryptography in the product, to the Party or a person in the Party's territory...* *(c) use or integrate a particular cryptographic algorithm or cipher, other than where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is by or for the government of the Party.*
2	영국-일본 경제동반자 협정 *UKJEPA*	제8.86조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상용 ICT 제품 *Article 8.86 Commerci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1. 당사국은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상용 ICT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상용 ICT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 암호화 기법에 관한 소유권적 정보를 일방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는 적용 대상자에게 이전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특정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기타 정보(개인키, 기타 비밀 매개변수, 알고리즘 스펙, 기타 설계세부사항 등)를 공개하라는 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 다.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암호를 사용하거나 이와 통합하라는 조건 *1. A Party shall not require a manufacturer or supplier of a commercial ICT product that uses cryptography, as a condition of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commercial ICT product, to:* *(a) transfer or provide access to any proprietary information relating to cryptography, including by disclosing a particular technology or production process or other information, for example, a private key or other secret parameter, algorithm specification or other design detail, to that Party or a person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c) use or integrate a particular cryptographic algorithm or cipher.*

67. 소스코드 (Source Code)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소스코드(source code)란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을 기술한 언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포함되는 모든 동작의 코드를 통칭. 알고리즘(algorithm)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상 또는 아이디어라면 소스코드는 이 알고리즘을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거나 구현한 것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소스코드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소스코드 공개 요구와 무역장벽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의 핵심 요소로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시 수입국 정부가 관련 정보의 부당한 공개나 접근을 요구한다면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미국은 중국 정부가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 심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보유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이전을 강제한다고 지적함. 구체적이고 않고 모호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규정에 의해 외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핵심기술이 불필요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지식재산의 침해로 이어져 외국 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소스코드 공개로 인한 지식재산의 침해를 방지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에 한정하여 소스코드의 부당한 공개 및 접근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미국-일본 디지털통상협정,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은 한걸음 더 나아가 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에 포함된 알고리즘의 강제 이전 및 접근도 금지하였으며 소프트웨어의 범위도 한정하지 않음. 단, 규제기관이나 사법당국이 검사·조사·집행·사법절차를 위해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반면 역내포괄적경제협정과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은 소스코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대조를 이룸.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한국

국내외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그 소스코드 또는 알고리즘의 이전이나 접근 등을 요구하는 국내법은 없음.

중국-사이버보안법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에 적용되는 '안전하고 통제가능(secure and controllable)' 요건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업이 소유한 소스코드나 기타 지식재산의 강제 이전 또는 공개를 요구함.

EU-인공지능 법안 초안

위험 평가 접근법에 따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제품·서비스·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AI 법안 초안은 관련 기업에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CPTPP*	제14.17조 소스코드 *Article 14.17 Source Code*	1. 어느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토 내로 소프트웨어나 그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상품을 수입하거나 그 영토 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사국의 적용대상자가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이전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1. No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another Party,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such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in its territory.*
2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제19.16조 소스코드 *Article 19.16 Source Code*	1. 어느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토 내로 소프트웨어나 그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상품을 수입하거나 그 영토 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사국의 적용대상자가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또는 그 소스코드에 내장된 알고리즘을 이전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1. No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another Party, or to an algorithm expressed in that source code,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the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that software, in its territory.*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19조 소스코드 *Article 14.19 Source Code*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그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1. Neither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to an algorithm expressed in that source code,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f use of such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in its territory.*

68.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세지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스팸 메시지(Spam Message)라고 불리우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시지는 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불법스팸으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제14.1조(정의)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세지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인의 전자 주소로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를 의미"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means electronic messages, which are sent to an electronic address of a person for commercial or marketing purpose without the consent or the recipient or despite the explicit rejection of the recipient."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제14.1조(정의)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세지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또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기타 전기통신 서비스를 통해 전자주소로 발신된 전자적 메시지를 의미"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 means an electronic message which is sent for commercial or marketing purposes to an electronic address,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cipient or despite the explicit rejection of the recipient, through an 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 or, to the extent provided for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other telecommunications service."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통상을 저해하는 스팸메세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스팸메시지 발송에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특히 온라인 소비자 정보보호제도가 취약하고 스팸메시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가 허술한 국가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업체와 거래할 경우 과도한 스팸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큼. 이는 결국 국경간 온라인 전자상거래, 즉 디지털 통상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함. 이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여 양국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커졌음. 최근의 무역협정은 상업용 전자메세지 수신을 위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스팸메세지 발신자의 수신 거부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며, 협정당사국이 스팸메세지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한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를 제한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며,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도 포함함.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략)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제14.14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적 메세지 *Article 14.14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1.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적 메세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적 메세지의 수신자가 그러한 메세지의 계속적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메세지의 발신자에게 요구하는 조치 나.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전자적 메세지의 수신에 대해 수신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적 메세지를 최소화하는 조치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regarding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hat:* *(a) require suppliers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o facilitate the ability of recipients to prevent ongoing reception of those messages;* *(b) require the consent, as specified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of recipients to receive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or* *(c) otherwise provide for the minimisation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2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USJDTA*	제16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적 메세지 *Article 16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1.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적 메세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적 메세지의 발신자에게 수신자로 하여금 그러한 메세지의 계속적인 수신을 방지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치, 또는 나. 그 일방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전자적 메세지의 수신에 대해 수신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조치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regarding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e that:* *(a) require suppliers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o facilitate the ability of recipients to prevent ongoing reception of those messages; or* *(b) require the consent, as specified in its laws and regulations of recipients to receive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20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세지 *Article 14.20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1. 각 당사국은 전자 주소로 발송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세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세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세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세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세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regarding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sent to an electronic address that:* *(a) require a supplier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o facilitate the ability of recipients to prevent ongoing reception of those messages;* *(b) require the consent, as specifi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Party, of recipients to receive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or* *(c) otherwise provide for the minimisation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69. 인터넷 접근 및 자유화 (Internet Access and Liberalization)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인터넷 접근 및 자유화는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이 선택한 장치를 활용하여 인터넷 접속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를 통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인터넷에의 자유로운 접근은 방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인권 보호에도 도움. 디지털통상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 또는 전자상거래의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은 필수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인터넷 접근 및 자유화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인터넷 접근 및 자유화와 망 중립성

인터넷 접근 및 자유화는 ISP의 차별적인 조치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망 중립성[127]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ISP가 망 중립성을 위배하여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처리하고 특정 웹사이트로의 접근을 까다롭게 한다면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권이 제한되고 이는 결국 상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현재 많은 국가들이 망 중립성 원칙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등 다수 통상 협정문에서도 망 중립성과 유사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이 채택됨.

반면,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이 국내적으로 입장을 변화하여 주목을 요함.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통해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누려온 미국은 국내적으로 망 중립성을 수용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등에서 인터넷 접근 및 자유화를 인정하였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망 중립성으로 인해 ISP의 영업활동이 제약받는다며 망 중립성을 폐지하였음. 국내적으로는 망 중립성이 폐지되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및 이용을 인정하는 국제적 약속은 유효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논란이 예상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개방형 인터넷 표준

온라인상에서 데이터와 정보의 상호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규격을 의미하는 인터넷 표준(Internet standards)은 전기전자공학자표준협회(IEEE-SA), 인터넷엔지니어링태스크포스(IETF), 인터넷아키텍처위원회(IAB),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 인터넷 사회(Internet Society)와 같은 인터넷 관련 표준제정단체에서 개발함. 이러한 단체들은 개방형 인터넷 표준(Open-Internet standards) 접근법을 취하여 모든 이들이

[127]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본서의 '4. 망 중립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인터넷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기구가 제정한 표준만을 인정하고 개방형 표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개방형 인터넷 표준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개방형 인터넷 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인터넷 표준만을 허용한다면 일반이용자나 기업의 인터넷 접근이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인터넷 자유화가 제한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저해될 수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CPTPP*	제14.10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원칙 *Article 14.10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관련 정책과 법령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소비자들이 다음과 같은 능력을 향유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가. 합리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한,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나. 네트워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사용자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방식에 관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 *Subject to applicable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the Parties recognise the benefits of consumers in their territories having the ability to:* *(a) access and use services and applications of a consumer's choice available on the Internet,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b) connect the end-user devices of a consumer's choice to the Internet, provided that such devices do not harm the network; and* *(c) access information on the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of a consumer's 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
2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제19.10조 디지털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관한 원칙 *Article 19.10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Digital Trade*	양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의 소비자들이 다음의 능력을 향유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가. 합리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한,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나. 네트워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사용자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방식에 관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 *The Parties recognize the benefits of consumers in their territories having the ability to:* *(a) access and use services and applications of a consumer's choice available on the Internet,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b) connect the end-user devices of a consumer's choice to the Internet, provided that such devices do not harm the network; and* *(c) access information on the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of a consumer's 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24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Article 14.24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각 국의 적용 가능한 정책과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능력을 갖춘 소비자의 이익을 인정한다. 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나.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이용자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한, 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다.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Subject to their respective applicable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the Parties recognise the benefits of consumers in their territories having the ability to:* *(a) access and use services and applications of a consumer's choice available on the Internet,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b) connect the end-user devices of a consumer's choice to the Internet, provided that such devices do not harm the network; and* *(c) access information on the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of a consumer's 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

70. 사이버보안 (Cyber Securit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사이버보안이란 전자적 수단을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가, 기업, 기관, 개인의 자산이나 정보 등을 보호하는 활동을 총칭. 현재 많은 기업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보안은 더욱 중요. 특히 국가 안보적 요소를 포함한 사이버보안은 사이버안보로 다루어짐.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사이버보안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통상 협정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등 일부 통상 협정은 담당기관이 컴퓨터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는 악의적 침투나 악성코드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 간 협업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정

한국-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정의)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128],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통상과 사이버안보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될수록 기업의 국제무역활동으로 야기된 국가안보 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핵심 국가시설 등이 통신장비와 인터넷을 통해 외부 네트워크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즉 사이버안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음. 미국은 중국의 통신기업인 화웨이와 ZTE가 대이란 및 대북한 제재를 위반하고 통신장비에 백도어(Backdoor)를 설치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명목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였음.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국제무역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사이버안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서의 사이버보안조치

차별적인 사이버보안조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국가마다 상이한 사이버보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인력과 시설의 현지 주재 요건 및 서버 현지화 요건처럼 지나치게 엄격한 인증요건을 부과한다면 외국 기업은 해당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거나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는 '사이버보안법' 및 관련 법규를 토대로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중국 내 서비스를 제한하는 한편 바이두와 같은 현지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128] 일명 디도스(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공격이라고 부르는 사이버공격의 한 유형으로 정상적인 트래픽을 처리할 수 없을 때까지 대상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압도적인 요청을 보내 추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거부를 초래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한국-사이버보안 역량강화 국제협력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 인도네시아 국가사이버암호원 등과 사이버보안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및 교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미국-국가 사이버안보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미국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기존 국가 사이버보안전략을 개정하여 공개함. 동 전략은 주요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강화, 위협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강화, 신기술 발달로 영향받는 국가안보에 대한 대비 등을 강조함.

EU-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경제 분야의 위험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심화됨에 따라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23년 6월 발표한 경제안보전략에서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 관련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제안함.

중국-사이버보안법

2019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및 관련 법규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보안관리제도, 보안등급 보호제도,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을 의무화. 또한 '안전심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제14.16조 사이버보안 문제에 관한 협력 *Article 14.16 Cooperation on Cybersecurity Matters*	양 당사국은 다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가. 각 당사국의 담당기관의 컴퓨터 보안사고의 대응역량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는 악의적 침투 또는 악성코드의 배포를 식별하고 저지하기 위한 협력을 위해 현행 협업체계를 이용하는 것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 building the capabilities of their national entities responsible for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and* *(b) using existing collaboration mechanisms to cooperate to identify and mitigate malicious intrusions or dissemination of malicious code that affect the electronic networks of the Parties.*
2	EU-한국 디지털파트너십 *EU-Korea Digital Partnership*	21문단 *par 21.*	양측은 팬데믹과 현 국제 정세를 통해 사이버보안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을 인지하며, 보다 효과적인 국제적 사이버보안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Both sides note the increased importnace of cooperation in cybersecurity as a lesson learned from the pandemic and current international developments. Both sides intend to make international cybersecurity cooperation more effective.*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22조 사이버보안 협력 *Article 14.22 Cybersecurity Cooperation*	2.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국 국가 기관의 역량 구축 나. 양 당사국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를 적발하고 경감하는 데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사용, 그리고 다. 청년층 연수 및 육성, 다양성 향상 및 상호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인력 개발 *2. The Parties further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 building the capabilities of their national entities responsible for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b) using existing collaboration mechanisms to co-operate to identify and mitigate malicious intrusions or dissemination of malicious code that affect the electronic networks of the Parties; and* *(c) workforce development in the area of cybersecurity, including through possible initiavies relating to the training and development of youths, improving diversity and mutual recognition of qulifications.*

71. 탈린 매뉴얼 (Tallinn Manual)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범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산하의 사이버방위협력센터(CCDCOE,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를 조직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국제법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국제전문가그룹(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을 소집하여 교전수칙을 논의하였음. 그 결과 사이버방위협력센터는 2013년 3월 사이버전쟁 등 사이버 위협에 적용가능한 국제규범 조항들을 담은 최초의 지침서를 마련한 바 이를 탈린 매뉴얼이라고 칭하고 있음.

국제전문가그룹(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은 만장일치로 95개 규칙과 각 규칙에 대한 주석에 합의, 동 규칙 및 주석이 탈린매뉴얼을 구성하고 있음.

탈린 매뉴얼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현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고, 둘째, 현존 국제법 중 전쟁권(jus ad bellum) 및 전시국제법(jus in bello)의 사이버전(Cyber Warfare)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셋째, 국제전문가그룹(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 구성원 간 의견 대립으로 앞으로 규명되고 정리되어야 할 법적 쟁점이 확인된바 있음.[129]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탈린 매뉴얼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나아가 탈린 매뉴얼은 국제전문가그룹(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 구성원 개인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공식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동 탈린 매뉴얼의 성과가 대부분의 국가들과 다른 국제법 전문가에 의하여 수용되는 결과를 유도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탈린 매뉴얼과 디지털통상규범상 논의

사이버 공격의 악영향과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의 책임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은 아직까지 부재한 형편임. 1999년부터 시작된 '국제 안보 맥락에서의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관한 유엔 정부 전문가 그룹'과 2018년부터 시작된 '국제 안보 맥락에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 행동 증진에 관한 정부 전문가 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GGE)'은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과 글로벌 사이버 규범을 논의하는 주요 국가 간 포럼이었음. 2018년에는 GGE 회원국(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지속되며 러시아 연방의 주도로 국제 안보 맥락에서 정보 및 통신 분야의 발전에 관한 개방형 실무 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이 설립되었음. GGE는 25개 유엔 회원국의 참여를 허용하는 반면, OEWG는 정부 간 및 비정부 기구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참여를 포함하였음. 아직까지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적 약속을 유도하는것에 실패하였고 지금까지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보안을 증진하기 위해 GGE와 OEWG가 2021년에 승인한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음. 따라서 탈린 매뉴얼과 탈린 매뉴얼 2.0과 같은 연성 법규는 구속력은 없지만 사이버 공간을 규율

[129] 박노형, 정명현(2014), "사이버전의 국제법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의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p.68.

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법으로 부상하였음.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의 개발은 아프리카 연합과 아세안과 같은 지역 기구에서도 논의되었지만 거의 진전되지 않았음.

WTO의 주도 하에 전자상거래협정 협상이 시작되고 다자간 디지털무역규범 논의가 재개되었음. 하지만, 동 기구는 국제무역을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동에 대한 책임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은 편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동 WTO 복수국간 협상(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JSI) 참가국들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사이버 보안을 철저히 다루지 않고 있음. 반면, 양자간 규범인 FTA상 전자상거래 챕터 또는 독자적 디지털무역협정을 통해 '사이버안보' 관련 규범이 점차 도입되는 추세를 보임. 물론, 이와 같은 '사이버안보' 규범은 범위가 좁고 협력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3. 주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규제

한국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및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제3조(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①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사이버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 업무(이하 "사이버정보업무"라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이하 "사이버공격예방 · 대응업무"라 한다)

②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정보업무를 수행할 때 중앙행정기관등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해당 기관의 명시적인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 시도나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③ 국가정보원은 사이버공격예방 · 대응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경우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3.2 정책 이슈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등 디지털통상규범은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 담당 국가기관의 역량구축 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이버 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자고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향후에는 디지털통상규범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사항이 규율되어야 할 것임.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72. 온라인 소비자 보호 (Online Consumer Protection)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온라인 소비자 보호란 국경을 넘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개인 소비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공식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외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함. 그러나 일부 국가 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 부재, 국가 간 관할권 문제, 국제적인 제도나 협력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인하여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지 않는 문제 발생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제14.21조(온라인 소비자 보호)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이란 사기적 또는 기만적이며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불러오거나, 예방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피해의 잠재적 위협을 불러오는 상업적 관행을 의미. 예를 들어, △사실에 대한 묵시적 허위 표시를 포함하여 오인한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표시,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후 그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달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 계정에 청구하거나 그러한 계정에서 인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activities refer to those commercial practices that are fraudulent or deceptive and cause actual harm to consumers, or that pose a potential threat of such harm if not prevented. For example:
(a) making a misrepresentation of material fact, including an implied factual misrepresentation, that may cause significant detriment to the economic interests of a misled consumer;
(b) failing to deliver products or provide services to a consumer after the consumer is charged; or
(c) charging or debiting a consumer's financial, digital or other accounts without authorisation."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통상규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소비자가 참여할 경우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 불공정한 계약 조건, 부당행위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면 디지털 통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주요국들은 통상 협정을 통해 온라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또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사기·기만적 상업 활동과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음. 나아가 한국과 싱가포르는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 해결 매커니즘(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활용을 제안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등)을 규정함.

한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자상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함.

3.2 정책 이슈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국경을 넘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임.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진행 중. 향후 신규 통상 협상 또는 FTA 개정 협상 시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로부터 야기된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소비자보호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임.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제14.7조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 *Article 14.7 Online Consumer Protection*	2. 각 당사국은 온라인 상거래 활동에 관여된 소비자에게 실제 또는 잠재적 피해를 초래할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상거래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2.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consumer protection laws to proscribe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activities that cause harm or potential harm to consumers engaged in online commercial activities.*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12.7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Article 12.7 Online Consumer Protection*	2.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나 잠재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적이고 오도적인 관행으로부터 그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laws or regulations to provide protection for consumers using electronic commerce against fraudulent and misleading practices that cause harm or potential harm to such consumers.* 4.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자신이 전자상거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소비자가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4. Each Party shall publish information on the consumer protection it provides to users of electronic commercek including how:* *(a) consumers can pursue remedies; and* *(b) business can comply with any legal requirements.*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4.21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Article 14.21 Online Consumer Protection*	3. 각 당사국은 온라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consumer protection laws to proscibe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activities that cause harm or potential harm to consumers engaged in online commercial activities.*

MEMO

제 5 장

디지털 경제의 개방과 혁신

73.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디지털 경제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로 이해되는 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주요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를 의미함. 최근에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 기술, 사물인터넷(IoT) 등 선진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여 디지털 기술을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거래에 적용하는 시장을 지칭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찾지 못함.
다만, 싱가포르가 체결한 다수 디지털 경제 관련 협정들 (예: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DEPA나 한국-싱가포르 DPA 등)에서는 '디지털 경제'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경제 체제하 디지털 무역의 증가

2022년 7월 발표된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의 "2022년 글로벌 디지털경제 백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47개국 디지털경제 부가가치 규모는 2021년 28조 1억 달러로 2020년보다 15.6% 늘었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디지털 경제 내에서 디지털 무역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내놓은 한 발표 자료는 2019년 세계 디지털무역 규모가 8000억~1조 5000억 달러 정도이고 이는 세계 무역규모의 3.5~6%에 해당될 것이라고 추산했음. 세계 각국의 경제가 빠르게 디지털화 하면서 디지털무역의 중요성과 규모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국가 간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 증가[130]

디지털 경제 하 국제무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다자 규범은 아직까지도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통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디지털 무역의 규율 및 자유화 방향에 대한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입장과 정책 차이로 인하여 국제규범에 대한 다자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선호하는 미국의 적극적 입장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소극적인 EU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충돌하고 있음.

2000년 이후 많은 국가들은 FTA 내에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도입하거나 최근에는 별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이 수립되고 있음. 최근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화 노력은 미국이 주도한 TPP/CPTPP와 USMCA의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무역 챕터의 규정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더욱 최근에는 싱가포르, 호주 등의 주도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무역 협정들이 "디지털 경제협력" 이라는 명분 하에 체결되었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화 동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음.

[130] 자세한 내용은 이효영,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의 동향과 쟁점", 외교안보연구소 (2021.7) 참조.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프랑스-디지털경제의 상호신뢰에 관한 법률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는 약어 LCEN 으로 약칭되며 유럽 지침 2000 /31/EC를 반영하는 인터넷에 관한 프랑스법률임. 인터넷 호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 메일이나 광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규정하였음.

영국-디지털경제법 (Digital Economy Act 2010)

영국의 2010년 디지털 경제법은 크게 11개 조항(Sections)과 2개의 부칙(Schedules)으로 구성되어 있음. 새로 재정된 내용 대부분이 기존의 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의 저작권 관련 법률을 강화시키는 후속법령의 성격을 띠지만,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0), 비디오 녹화법(Video Recordings Act 1984), 공공 대출권리법(Public Lending Right Act 1979), 저작권·의장 및 특허권에 관한 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등의 일부 항목을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보완 및 삭제함.

3.2 정책 이슈

한국 또한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체결한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첫 번째 가입국이 되는 등 국제통상규범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조약들에 근거한 국내법의 변화 또한 전망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KSDPA*	서문 *Preamble*	...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관계를 증진한다는 양 당사국 공동의 전망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경제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식하며, 데이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디지털 경제가 진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경제를 규율하는 규범과 양 당사국의 양자 협력도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양자 협력을 약속하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디지털 경제에 관한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과 약정에서의 각 당사국의 권리, 의무 및 약속을 확인하면서,,, *... Recognising the Parties' common vision of enhancing free and open trade links through digital means to enable businesses and consumers to take advantage of digital opportunities;* *Further recognising the fundamental rol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maintaining dynamism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the digital economy;*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the flow of data and strengthening consumer and business trust in the digital economy;* *Recognising the need to foster an open, fair, and trusted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digital economy;* *Acknowledging that the digital economy is evolving and therefore the rules governing the digital economy and the Parties' bilateral cooperation must also continue to evolve;* *Committing to continued bilateral cooperation on the digital economy;* *Affirming each Party's rights, obligations and undertaking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other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concerning the digital economy...*

74.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for Digital Econom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상품무역과 관련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의 개념이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제품 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지칭하며,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WTO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 부속서 1

상품 무역과 관련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는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였거나 (표준),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기술규정), 이러한 표준과 기술규정상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적합성 평가)를 지칭함. 구체적으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의는 현재까지 부재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표준에 대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131]

미국, EU, 중국은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목표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버보안 표준 등 디지털표준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즉, 주요국들이 디지털표준 확산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최근 국제표준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일례로 싱가포르와 호주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10대 분야에서 디지털표준 협력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디지털 공급망을 보호하고 기술동맹 강화를 통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전망임. 또한 자율주행에 관한 치열한 국제표준화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EU는 AI법 도입을 통해 관련 표준 개발을 규정하고 있음.

디지털 무역협정 내 디지털 표준 관련 규범 포함

CPTPP 전자상거래 조항과 USMCA 디지털통상 조항, 미국-일본 디지털 무역협정,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등 다수 디지털 무역협정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등 광범위한 디지털경제 이슈가 포함되고, 표준과 모범 관행 개발, 표준협력 확대, 국제표준 사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도입된 디지털무역 협정은 표준 개발과 확산을 도모할 목적의 협력 규정을 활발하게 채택한 것으로 분석됨. 표준 개념의 모호성 문제와 협력 규정의 이행 문제가 향후 주요 쟁점 사항으로 제기될 수 있음.

[131] 자세한 내용은 김민정, 양인창 (2021), "디지털무역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 06 참고.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EU-인공지능(AI)법

EU는 2023년 8월 기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인 'AI 법(EU AI Act)'을 도입하고자 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은 AI가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 또한 동 법을 통하여 유럽의 주요 표준개발기구들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표준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기구들은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European Electrotechnical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ELEC),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3.2 정책 이슈

국가기술표준원, 2023년은 '국가표준 디지털 전환 원년'… 표준화정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국가표준화 핵심목표를 '수출 지원 및 신시장 창출'로 정하면서 첨단·주력산업 선제적 표준화와 더불어 시장 맞춤형 기업지원, 국제표준화 협력강화 등을 추진함. 특히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자율차와 인공지능·반도체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표준화'에 나서고, 국가표준(KS)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삼아 KS데이터 '개방성 확대' 및 인공지능 산업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임.

미국-2023년 5월 '핵심·신흥기술 국가 표준 전략' 발표

국제 표준 개발에서 미국의 지도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신흥기술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핵심·신흥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표준 개발 지원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 분야 등에서 민간의 참여 확대 △표준 개발 인력 확충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통합성 강화 등을 주요 추진 항목으로 내세웠음. 미국은 반도체·컴퓨팅·인공지능(AI)·바이오·통신 등에서 표준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임.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KSDPA*	제14.31조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Article 14.31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for Digital Economy*	1. 양 당사국은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디지털 경제를 조성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는 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요성과 기여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아래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의 개발 및 그 채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역, 다자 또는 국제 포럼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중략) 3. 양 당사국은 적합성평가 결과의 국경 간 인정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 (중략) 5.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하여 정보 교환 및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and contribution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 fostering a well-functioning digital economy and reducing barriers to trade by increasing compatibility, interoperability, and reliability*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t regional, multilateral or international fora that both Parties are party to, to promote development of standards relating to the digital economy and adoption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as below:* *3. The Parties recognise that mechanisms which facilitate the cross-border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can support the digital economy. Such mechanisms include:* *5. The Parti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exchange and transparency with regard to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on the digital economy.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75.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Competition in the Digital Econom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독과점이 없는 공평한 시장 환경 속에서의 경쟁을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자국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위 '경쟁법'을 제정하고 기업의 독점적, 협조적, 또는 경쟁방법으로서 불공정한 행동 즉,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경쟁법과 경쟁정책은 독점에 의해 발생하는 후생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에서 또한 '경쟁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OECD, "성장하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132]

2023년 3월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한 규제 및 경쟁 정책이 없으면 디지털 혁신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시장의 경쟁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 정책이 필요하며, 디지털 기술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새로운 혁신가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경쟁 시스템과 데이터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다고 강조하였음. 특히 데이터 흐름과 관련하여 독점적 플랫폼을 가진 '게이트키퍼'가 제3자 사용자 접근을 통제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사용자는 높은 개인화와 싱글홈(Single-home, 단일플랫폼 사용)에 따른 편이를 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게이트키퍼가 유지되면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꺾이고 잠재 경쟁자들의 혁신 저해 발생하게 됨을 우려하였음.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경쟁행위 소송 증가

2020년 12월 9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46개 주 검찰은 페이스북의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와 2014년 왓츠앱 인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반경쟁적 조건의 부과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음. 또한 2020년 10월 20일 미국 법무부는 텍사스 등 11개 주와 함께 구글이 검색 및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2022년 1월에는 앱 개발자들이 가격 제한, 30% 수수료, 앱스토어 업로드 제한 등 불법적인 독점을 행사하고 있다며 2019년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음. 2022년 9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아마존이 반경쟁적 계약 관행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인상을 초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132] 자세한 내용은 OECD, "Competition, regulation and growth in a digitized world – Dealing with emerging", (2023.3.20.) 참조.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EU-디지털 시장법

기존 EU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라 한다)의 경쟁법(Competition Law) 규정만으로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되었음(2023.5.2. 시행).

미국-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6개 법안 패키지가 2021년 6월 11일 발의되었으나 과잉규제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결국 2023. 1. 3. 의회 회기 종료 시까지 의회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계류되어 있던 관련 법안들은 전부 폐기하였음.

3.2 정책 이슈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1. 12.「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동 심사지침은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행위 유형 및 사례를 제시하게 됨에 따라 향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법제화될 가능성도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KSDPA*	제14.27조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Article 14.27 Competition in the Digital Economy*	1.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법 집행 및 경쟁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 정책 및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 관행을 공유한다. 나. 양 당사국의 디지털 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쟁 가능하며 효율적이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확인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자문이나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2. 양 당사국은 협의 및 정보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협력한다. *1. Recognising that the Parties can benefit by sharing their experiences in enforcing competition law and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mpetition policies to address the additional challenges that arise from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e best practices on the competition policies and effectiv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ctivities to promote and protect a competitive environment in digital markets;* *(b) ensure that the Parties' digital markets are open, contestable and efficient; and* *(c)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by providing advice or training, including through the exchange of officials, in order to identify and mitigate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digital markets.* *2. The Parties shall cooperate, as appropriate, on issues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digital markets, including through consult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76. 정부데이터 공개 (Open Government Data)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OECD는 '정부데이터공개 (open government data)'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정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책임성 및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철학이자 정책"이라고 설명함. 즉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실현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단위정책(unit policy)이자 하위정책(sub-policy)에 해당됨.

'정부 데이터 (government data)'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지칭하며, 소위 '공공데이터'라고도 불림. 이러한 데이터를 '공개'함에 있어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물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또한 정부데이터 공개행위에 포함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과 제2항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지칭함.

한국-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과 제4항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지칭하며,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의 "정부데이터 공개" 정책 장려

"정부데이터 공개(OGD)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에 관한 개발프로젝트는 2014년 여름에 승인되었으며 UN 경제사회국 (DESA)의 공공 기관 및 부서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공공제도디지털정부국 (DPIDG)는 특히 동 프로젝트에서 방글라데시, 네팔, 파나마, 우루과이 등 4개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OGD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정부 관리 및 기타 이해 관계자 사이에서 OGD 요구 사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임. DPIDG는 관련 정부 기관은 물론 UN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위원회(ECLAC),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약칭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동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범주에 속하게 됨.

한국-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미국-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 2018(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2018년 하원에 발의되었던 "OPEN Government Data Act"를 포함하여 2019년 1월 서명되었으며, 동 법에 따라 연방 기관들은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 데이터로서 온라인에 공표해야 함.

3.2 정책 이슈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사업' 본격 추진

2023년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그간 3차에 걸쳐 모두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해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와 법률 정보 기술(리걸테크) 등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4차 데이터 개방사업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패키지) 형태로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자 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 협정 *KSDPA*	제14.26조 정부 데이터 공개 *Article 41.26* *Open Government Data*	1. 양 당사국은 정부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이익, 경쟁력,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독려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대중에게 정부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선택하는 범위에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그 정보는 적절하게 익명화되고 서술적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며, 기계판독이 가능한 공개된 형식으로 검색, 불러오기, 사용, 재사용 및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사용이 용이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한 API를 통하여 공간적으로 구현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3. 양 당사국은 사업 및 연구 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공개한 정부정보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facilitating public access to and use of government information contributes to stimulating economic and social benefit, competitiveness, productivity improvements and innovation.* *2. To the extent that a Party chooses to make governmen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it shall endeavour to ensure:* *(a) that the information is appropriately anonymised, contains descriptive metadata and is in a machine readable and open format that allows it to be searched, retrieved, used, reused and redistributed; and* *(b) to the extent practicable, that the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in a spatially enabled format with reliable, easy to use and freely available APIs and is regularly updated.* *3.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to identify ways in which each Party can expand access to and use of government information that the Party has made public, with a view to enhancing and generating business and research opportunities.*

77. 디지털 플랫폼 정부 (Digital Platform Governmen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되며, 궁극적인 목표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2023년 1월에 동 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 발표되었음. 동 법안상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관한 정의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 도모

2022년 1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업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기업 참여와 협력 시너지를 통해 신규 정책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 디지털 생태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표출되었음. 특히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보유 데이터 전면 개방 방침에 따라, 민간 수요가 있는 데이터 우선 개방 및 필요 데이터에 대한 협업·공동생산이 전망됨.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이 주도적으로 플랫폼 참여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연계된 플랫폼 서비스 및 디지털 경제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해외성공사례: 싱가포르

2022년 12월 세계은행 블로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사례로서 싱가포르를 소개하였음. 싱가포르 정부는 “APEX (API Exchange)”라는 디지털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 기술스택(SGTA)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정부 기술청(GovTech)에서 구축하였음. 45개 이상의 기관이 API에 대한 액세스를 게시 및 관리하고 정부 전체에서 2,000개 이상의 API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이러한 투명한 데이터 교환에 기반하여 국가 디지털 ID인 Singpas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Singpass는 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국가 디지털 ID로, 모든 싱가포르 국민과 거주자는 출생 등록시 Singpass를 신청하게 됨. 다만 이러한 ID는 건강 기록, 은행 계좌 개설 및 대출 및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국회에 보고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에서는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제정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음. 이와 더불어 2023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NIA)에서는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모델 개발을 지원을 위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API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모델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음.

3.2 정책 이슈

2023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글로벌 아젠다로 채택

2023년 1월 WEF 요청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Korea's new innovation strategy: Digital Platform Government)'를 주제로 작성된 디지털플랫폼위원회의 기고문이 게재되었는데, 동 기고문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의 과정과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역량 및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정부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발생한 부처 간 분절적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 등 문제점도 지적하였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78. EU 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 Ac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EU 디지털 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133]이란 EU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말부터 추진해 온 법을 의미하며, 현재 동 법은 2023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EU 단일 시장의 디지털 부분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시장지배력 보유가 예견되는 "게이트 키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고, 디지털 부문에서 공정성(Fairness)과 경합성(Contestability) 개선을 목적으로 함. 법률(Regulation)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침 등과 같이 각국이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 그대로 EU 역내에서 효력을 가짐.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EU 디지털 시장법상 "게이트 키퍼" 선정요건

EU 디지털 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은 게이트키퍼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이트키퍼의 지정 요건은 중요함. 대규모 플랫폼으로서 사업이용자(Business user)와 최종사용자(End user) 사이의 게이트 키퍼로서 활동하고, 견고하고 영속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서 진입장벽을 강화한 사업자만을 의미함. 온라인 중개서비스나 온라인 검색 엔진 등 8가지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를 제공하는 기업들 중에서 시장 영향력, 관문,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 DMA의 적용을 받게 됨(DMA 제3조 제1항).

삼성도 EU 디지털 시장법상 게이트 키퍼인가?

2023년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EU로부터 디지털시장법의 '게이트 키퍼' 지위에 해당해 관련 규제를 받을 전망이 있었음. 만약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유럽에 공급하는 스마트폰에 삼성 제품이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에 탑재하는 기본 앱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금지될 수 있음. 즉,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할 때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이는 게이트 키퍼로 지정될 애플이 생산하는 아이폰과 맥북 등 제품에도 똑같이 해당됨. 그러나 2023년 9월 6일 발표된 게이트키퍼 사업자 6곳(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애플,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마존,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삼성이 제외됨. 하지만 추후 다시 게이트키퍼로 선정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님.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들의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임. EU의 DMA는 종래의 경쟁법상 규율을 넘어 게이트 키퍼에 대해 자사의 온라인 검색 서비스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이트 키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들 플랫폼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기능하게 하며, 자사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위법 상태의 시정과 중소·신생기업과의 상생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EU에서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나라의 입법 대응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33] REGULATION (EU) 2022/19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September 2022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and amending Directives (EU) 2019/1937 and (EU) 2020/1828 (Digital Markets Act).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134]

EU-디지털 시장법 제3조 제1항

게이트 키퍼 지정요건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첫째, 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l market)을 가질 것, 둘째, 사업이용자들이 최종이용자들에게 닿는 중요한 관문(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to reach end users)으로서 기능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것, 셋째, 그 운영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확고하고 견고한(entrenched and durable) 지위를 갖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지위를 누릴 것임.

EU-디지털 시장법 제3조 제2항

제1항에서의 요건에 대한 정량적 추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① "내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a size that impacts the internal market)", ② "사업이용자들이 최종 고객들에게 접근하게 하는 중요한 관문을 통제(the control of an 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towards final consumers)", ③ "시장에서 당해 지위가 확고하거나 지속적인지 여부(an (expected)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EU-디지털 시장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핵심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는 위 3 요건의 정량적 기준에 자신이 충족한다고 판단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집행위원회에 통지(Notify)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이러한 정보를 제출받은 집행위원회는 60일 내에 해당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함.

EU-디지털 시장법 제5조

게이트키퍼가 집행위원회와 협의없이 그 부과조건에 합치하도록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인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① 개인정보의 결합 금지, ② 사업이용자의 판매자율권 허용, ③ 이용사업자의 홍보·거래 자율권 및 소비자의 CPS 자율접근권 허용, ④ 사업이용자의 이의제기 허용, ⑤ 게이트키퍼의 본인확인서비스 강요금지, ⑥ CPS 접근·가입·등록을 위한 조건 부가 금지, ⑦ 광고서비스 제공조건의 투명성 의무

EU-디지털 시장법 제6조

게이트키퍼가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된 세부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방식의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① 사업이용자들이 제공했거나 이용사업자들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사업이용자들과 경쟁하는데 사용하지 말 것, ② 최종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에 사전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등 11가지 의무 규정

EU-디지털 시장법 제7조 내지 제9조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불충분 할 때 게이트 키퍼가 도입해야 할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게이트키퍼의 합리적인 청구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또는 게이트키퍼로부터의 합리적인 청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에 대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중도덕,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임.

[134] 자세한 내용은 김병일,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ISO저널 제46호, 법제 동향, (2022.3.18.) 참조.

EU-디지털 시장법 제12조

게이트키퍼 사업자는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나 디지털 분야의 다른 서비스를 인수하는 경우 결합 이행 이전에 기업결합규칙(Regulation No 139/2004)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건이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음("irrespective of"). 이러한 신고는 인수 대상 기업의 연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79. EU 디지털 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EU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135]이란 2001년 전자상거래지침을 확대 개정한 것으로, EU 디지털 단일시장의 온라인 컨텐츠 및 플랫폼 신뢰성 제고, 전자상거래 불법상품 퇴출 및 온라인 구조적 위험 완화 등과 관련하여 EU 역내 공통 적용되는 프레임 규정.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 책임원칙과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의 처리, 제3자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공급자의 책임, 제3자 공급자의 심사 의무 및 온라인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규칙 변경을 목적으로 함(2022.11 발효, 2023.8 시행).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적용대상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4월 25일에 디지털 서비스법(DSA) 규제가 적용될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 19개를 발표했음. 여기에는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MS) 빙, 부킹닷컴, 페이스북, 구글 플레이, 구글 맵, 구글 서치, 구글 쇼핑,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틱톡, 트위터, 위키피디아, 유튜브, 잘란도(독일 온라인 쇼핑몰) 등 EU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인 초대형 플랫폼들이 해당됨. DSA 적용 대상 플랫폼들은 혐오 발언, 테러 선동,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사용자의 성, 종교, 인종 등 민감한 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와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광고는 금지됨. 최근 오·남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AI 생성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아마존, EU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법 관련 소송 제기

2023년 7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Amazon)에 대한 EU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 (VLOP)" 지정과 관련하여 아마존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VLOP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엄격하게 적용받게 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아마존 대변인은 "회사가 VLOP에 지정되는데 EU 내 더 큰 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VLOP 지정에 직접적으로 반발한 기업은 아마존이 처음이며, 애플,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등 VLOP로 지정된 다른 글로벌 플랫폼들의 반응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음.

한국판 '디지털 서비스법' 논의 본격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와 플랫폼 사업자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2023년 5월 11일에 '플랫폼 산업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5월 16일에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가 열렸음.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5월 17일 성명을 내고 "국내 디지털 산업을 위축시키는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논의 또한 귀추가 주목됨.

[135]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Text with EEA relevance).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136]

EU – 디지털 서비스법 제4조 내지 제7조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단순정보전달(mere conduit), 캐싱, 또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불법 콘텐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 등의 요건에 따라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EU – 디지털 서비스법 제9조

불법 컨텐츠 삭제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대형플랫폼에 대해 이용약관을 통해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컨텐츠를 제한할 의무를 부담함. 광고 컨텐츠는 명백하게 광고임을 밝혀야 하며,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적 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나 미성년자 개인정보에 근거한 타깃형 광고는 금지됨.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추천시스템의 개인 최적화 컨텐츠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개인 프로파일링 이외의 대체 추천시스템을 제공해야 함.

EU – 디지털 서비스법 제33조 내지 제37조

EU 역내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을 대형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으로 지정하여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함. 대형플랫폼은 거짓 정보, 허위 컨텐츠, 리벤지 포르노 등 구조적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독립적 감사기관이 인정한 적절한 완화조치를 이행해야 함.

EU – 디지털 서비스법 제36조

'위기 대응 메커니즘(crisis response mechanism)'을 도입하여 이를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전쟁 등 위기 시 긴급 대응조치로 대형플랫폼에 전쟁 프로파간다 삭제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됨. 긴급조치는 회원국 당국자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며, 연장이 없을 경우 발동 3개월 후 자동 만료함. 위기 종료 3개월 후 집행위는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EU – 디지털 서비스법 제43조

소형플랫폼에 대한 감독권한은 회원국 당국이 보유하나, 대형플랫폼에 대한 감독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독점적으로 보유함. EU 집행위원회는 대형플랫폼 감독을 위한 예산으로 플랫폼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단 플랫폼 연간 글로벌 순수익의 0.05%를 초과할 수 없음.

EU-디지털 서비스법 제52조

독립적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의무 미이행은 DSA 위반에 해당되며,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해당 위반 업체에 대해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136]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소비자법연구, Vol. 7 No. 2, (2021); 한국법제연구원,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최신외국법제정보 제3호 (2021) 등 참조.

80.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Online Platform Fairness)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독점화되고 그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공정거래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정책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1조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해나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EU의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선례

EU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게이트키퍼)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거나, 또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는 비례적으로 가중된 공적 책임을 부과함. 다만 초대형 게이트키퍼가 미국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자(예:GAFA)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 WTO 규범상 사실상(de facto)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하게 되므로 다자통상규범 위반에 대한 다툼 가능성이 존재함.

한국-싱가포르 DPA나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DEPA 가입 등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의무

우리나라가 최근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나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경우 모두 소위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관련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또한 일종의 디지털 경제로 볼 수 있으며,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규제 역시 '공정화' 정책에 해당함. 물론 이러한 규범들이 강제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 협정들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정책 개발과 이행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추후 우리나라에서의 법률 제정에 있어서도 조약상 협력 의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 동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에는 유사한 내용의 의원 발의안이 7개 제출

되었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즉 '입점 업체'의 권익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음.

-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함.

- 제3조(적용범위) 제2항

이 법의 규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제3조(적용범위) 제3항과 제4항

이 법 제9조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양태및 이용 집중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거래의존도,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1.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 물품 ·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3.2 정책 이슈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 1. 1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비록 동 심사지침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시행되게 되었으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의 대표적인 행위 유형 및 사례를 제시하게 됨에 따라 향후 법률 제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MEMO

제 6 장

디지털 경제와 사회

81. 디지털 포용 (Digital Inclusion)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의미. 이는 단순히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디지털 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디지털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전반을 정비하는 것을 뜻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기술 접근의 불평등이나 활용 능력의 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기도 함. 예컨대 코로나 시기 비대면 문화 확산과 함께 국내 요식업 매장에 도입된 키오스크를 두고 기계를 통한 응대에 친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대표적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디지털 포용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하였으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서 잠정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음.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11.1조 (디지털 포용)

"각 당사자는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기회를 만들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한다."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xpanding and facilitating digital economy opportunities by removing barriers. This may include enhancing cultural and people-to people links, including between Indigenous Peoples, and improving access for women, rural populations and low socio-economic groups."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통상규범의 규율범위 확대[137]

디지털 무역규범의 규율 범위가 데이터 이슈와 거래의 공정성, 디지털 포용성, 디지털 윤리 등으로 확장되면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소비가치 측면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138]

산업,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이 중장기 과제가 될 것임.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잊지 않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산업, 무역구조의 변화로 피해를 입을지 모를 기업, 근로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보완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한국의 디지털 경제가 장기 균형 경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임.

[137] 관련 세부 내용은 이금노(2021)이 발간한 「디지털 무역규범 동향과 소비자 정책 시사점」 –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

[138] 관련 세부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이 발간한「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정책[139]

한국 –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접근, 이용뿐 아니라 참여, 활용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이 마련되었음. ('21.1월,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접근성 확대) 장애인, 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접근성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결과공표를 할 수 있게 됨. (제4장, 제16~24조)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DEPA*	제11.1조 디지털 포용 *Article 11 Digital Inclusion*	1. 각 당사자는 참여에 필요하는 기업과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참여해야 하는지 디지털 경제로부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성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2. 각 당사자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디지털 경제의 기회를 만들고 확장하는 중요성을 인지한다. 이를 위해 원주민이 동참하는 문화적 연결 및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여성, 농어촌 주민들 및 사회적·경제적 하위집단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향상되어야 한다. 3. 이를 위해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여성, 농촌 인구, 사회경제적 약자 및 원주민의 참여 등을 포함한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력한다. *1. The Parti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digital inclusion to ensure that all people and businesses have what they need to participate in,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the digital economy. _1* *2.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xpanding and facilitating digital economy opportunities by removing barriers. This may include enhancing cultural and people-to-people links, including between Indigenous Peoples, and improving access for women, rural populations and low socio-economic groups.* *3.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cooperate on matters relating to digital inclusion, including participation of women, rural populations, low socio-economic groups and Indigenous Peoples in the digital economy.*
2	영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 *UKSDEA*	제8.61-P 디지털 포용 *Article 8.61-P Digital Inclusion*	1. 각 당사자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 참여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회를 확대하며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해당 장애물이 불평등하게 직면하는 법적 주체, 개인 및 기타 그룹들과 협의하여 개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digital inclusion, that all people and businesses can participate in,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the digital economy. To this end,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xpanding and facilitating opportunities in the digital economy by removing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economy, and that this may require tailored approaches, developed in consultation with juridical persons, individuals and other groups that disproportionately face such barriers. (...)*

[139] 관련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가 발간한 보도자료 「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법제 마련 시동'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2. 정보 격차 (Information Divide/Digital Gap)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정보 격차(Information Divide or Digital Gap)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의미함. 이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측면을 강조한 개념임.

정보 선진국인 미국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정보 격차가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으며, 지식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 계층이 중산층에서 탈락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임.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한국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정보격차"란 사회적 · 경제적 ·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140]

디지털 통상 협상과 개도국 참여: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디지털 통상 협상에서 상당수 개도국들이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데, 이들은 디지털 통상,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에 합의하는 것보다는 WTO 개도국 회원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주장함(UNCTAD, 2020). ICT 인프라나 전자결제 수단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차원의 기술적 이슈부터, 개인과 기업의 디지털 활용 역량, 정부 규제 체계에 이르기까지 개도국이 겪는 디지털 격차의 범위는 매우 크다는 것임.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 vs. 디지털 격차 해소

영향력의 차원에서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ASEAN Agreement on E-Commerce)은 지역 차원의 단일 디지털 통상 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였으나,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회원국 간 디지털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공동의 규범 창출에는 한계가 있음. 일부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협정에서 다루어진 핵심 이슈들과 관련된 국내법이나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반면, TPP 참여 회원국들의 경우, 현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정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항들을 CPTPP 일환으로 이미 도입하는 등 회원국 내에서도 규제 체계성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140]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2021)가 발간한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 12장 '기회의 확대 혹은 불평등의 확대? (주한나): 디지털 통상질서와 개도국' 참고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법임(제1조).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제14.15조 협력 *Article 14.15 Cooperation*	1. 전자상거래의 글로벌 성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이용에 관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업한다. 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법, 정책, 실행 및 준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에는 다음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이 포함된다. (...) *1. Recognising the global nature of electric commerce,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 work together to assist SMEs to overcome obstacles to its use;* *(b)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e experiences on regulations, policies, enforcement and compliance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
2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 협정 *SADEA*	제4조 협력 *Article 4 Cooperation*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더욱 증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적 협력의 역할을 인지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기업, 연구자, 학자들이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이 협력은 CSP, 해당 협정, 싱가포르-호주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체결한 문서, 또는 당사국이 가입된 다른 국제 포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Recognising the role of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increasing and enhancing the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on matters concerning the digital economy and shall also encourage their businesses, researchers and academics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engage in this cooperation. The Parties may undertake such coop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CSP, this Agreement, the Singapore-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or any instrument entered into by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is Agreement, or in the context of other international fora of which the Parties are participants or members.*

83.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141]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용어는 1997년에 폴 길스터(Pual Gilster)가 처음 사용하였음. 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컴퓨터가 전달되는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과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말함. 길스터는 "온라인을 통해 찾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보았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14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국제협력을 포함한 '파리 이니셔티브'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음. 윤 대통령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고 나아가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음. 또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돼야 한다"며 "또,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함.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윤리 규범 원칙 9가지를 열거하고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음. 즉,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에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보장,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 작동, 위험 정보 즉각 공유·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 시스템 유지, 규제 위반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 디지털 규범 집행에 관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 등의 원칙을 역설함.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은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3월 시행됨.

-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141] 관련 세부 내용은 천재교육(2021)이 발간한 「디지털 교과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모델 연구」 – 3. '이론 및 선행 연구 분석: 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교육적 특성' 참고

[142] 관련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0621)이 배포한 보도자료 「대한민국, 유럽의 중심 파리에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방향 제시」 참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한국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해당사항 없음.

84. 디지털 생태계 (Digital Ecosystem)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디지털 생태계(Digital Ecosystem)란 디지털 네트워크가 창출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소비자와 사회, 기업이 접점을 공유하여 초연결 환경을 이루는 일종의 유사 생태계를 의미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143]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한국의 디지털 뉴딜 1.0 정책

디지털 뉴딜 1.0 추진 과제인 데이터 · 네트워크 · AI 생태계 강화(데이터 구축 · 개방 · 활용, 전산업 5G · AI 융합 확산 등),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 온라인교육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스마트 의료, 원격근무 확산 등), 그리고 SOC 디지털화(국가 핵심인프라 디지털화, 도시 · 산단 · 공간 디지털 혁신 등)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의 잠정적인 정의를 확인할 수 있음.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144]

EU 개발을 위한 디지털(Digital for Development)

유럽연합(EU)은 2017년부터 개발을 위한 디지털(Digital for Development, D4D)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음. 2020년에는 EU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가 주축이 되어 아프리카와 지역 차원의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EU-AU D4D 허브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음.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아프리카의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및 투자를 전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아프리카 연합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계획(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for Africa) 2020-2030"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데이터 및 디지털 혁신 부문에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함.

미국 USAID 디지털 전략

미국의 개발원조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은 USAID 디지털 전략(2020-2024)를 발표하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에서 디지털 전환 이행 계획을 제시하였음. 이 계획은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디지털 생태계(digital ecosystem)구축 및 유지를 통해 광범위하고 측정가능한 개발 및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고, 신흥 시장 국가들의 자생력(self-reliance)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이 전략은 USAID의 고유한 정책 프레임워크 뿐 아니라 국무부-USAID 공동 전략계획 및 미국의 국가 사이버, 국가 안보 및 반테러리즘 계획에 제시된 주요 목표와 원칙을 준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143] 관련 세부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이 발간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에 디지털 경제정책: 나. 디지털 경제정책' 참고

[144]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2021)가 발간한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 제12장 '기회의 확대 혹은 불평등의 확대?(주한나): 디지털 통상질서와 개도국' 참고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145]

EU –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이 법은 유럽연합(EU)이 2020년 말부터 추진해 온 법안으로, EU 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함께 시장 지배력 제한을 목적으로, 특히 플랫폼 기업이 사업 참여자 및 최종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게이트키퍼'로 대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시도함.

- 제5조 게이트키퍼의 의무(Obligations for gatekeepers)

게이트키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a)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b) 관련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 데이터를 추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 또는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의 개인 데이터 또는 제3자 서비스의 개인 데이터와 결합

(c)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하여 게이트키퍼가 별도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관련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 데이터를 교차 사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d)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를 게이트키퍼의 다른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경우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제19.10조 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사용과 접근 원칙 *Article 19.10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of Digital Trade*	당사국은 자국 내 소비자들이 다음과 같은 해택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따라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나. 네트워크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소비자가 선택한 종단 사용자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다. 소비자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The Parties recognize that it is beneficial for consumers in their territories to be able to:* *(a) access and use services and applications of a consumer's choice available on the Internet,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b) connect the end-user devices of a consumer's choice to the Internet, provided that such devices do not harm the network; and* *(c) access information on the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of a consumer's 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
2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제14.10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용과 접근 원칙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한, 상대국은 자국 내 소비자들이 다음과 같은 능력의 이익을 인지한다. (아래 세부 사항은 위 USMCA와 동일) *Subject to applicable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the Parties recognise the benefits of consumers in their territories having the ability to:* *(a) access and use services and applications of a consumer's choice available on the Internet,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b) connect the end-user devices of a consumer's choice to the Internet, provided that such devices do not harm the network; and* *(c) access information on the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of a consumer's 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

[145] 관련 세부 내용은 Regulations (EU) 2022/19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September 2022) – 'Chapter 3 Practies of gatekeepers that limit contestability of are unfair article 5' 참고

85. 디지털 공공재 (Digital Public Goods)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146]

디지털 공공재(Digital Public Goods or DPGs)란 국가 간 디지털 공공 인프라(예: 전자 지급 및 데이터 교환 시스템)를 운영하는데 활용 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데이터, 오픈 AI 모델, 오픈 표준과 컨텐츠 등을 의미함.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적용 가능한 법을 준수하고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및 포용적이고 회복력이 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폐쇄된 사회나 독재 국가에 악용될 수 있음.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디지털 공공재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디지털 제품은 상품적 측면에서는 네트워크재, 경험재, '공공재'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 잠금효과,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승자독식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공공재의 잠정적인 의미를 내포함.[147]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공공재 연합 (Digital Public Goods Alliance)[148]

UN은 디지털 공공재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또는 SDGs) 달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디지털 공공재 개발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여러 플랫폼이 형성에 주목하고 있음. 특히 다자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공공재 연합(Digital Public Goods Alliance)"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노르웨이와 시에라리온 정부, 유엔아동기금 그리고 비정부기구인 iSPIRT의 주도로 디지털 공공재 관련 대표 플랫폼으로 부상 중임.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149]

EU GDPR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적정성 결정이나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법적 권리의 확립·행사·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외이전이 가능함(제49조). 이처럼, EU는 데이터의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 적정한 안전조치 등 통로를 열어두고 있음.

[146] 관련 세부 내용은 Brookings(2022)이 발간한「Can open-source technologies support open societies?」 참고

[147]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2007)이 발간한「디지털상품의 국제거래 유형과 분쟁 해결방안」- 2장 '디지털상품의 개념 및 특징'(심상렬, 정윤세) 참고

[148] 관련 세부 내용은 UN(2020)가 발간한「디지털협력을 위한 로드맵 - 사무총장 보고서」- 3장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 권고안 고려사항 - 디지털 공공재' 참고

[149]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2021)가 발간한「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3장 '구글, 5천만 유로 과징금?: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서버 현지화 이슈'(손승우) 참고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150]

한국-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법임.

- 제39조 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DEPA*	제2.7조 전자결제 *Artcle 2.7 Electronic Payments*	새로운 결제 서비스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전자결제 방식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당사국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을 촉진하고 결제 인프라들 간 병용가능성 및 상호 연결성을 증진하고 결제 생태계에서의 유용한 혁신 및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경 간 전자결제 제도를 개발하기로 합의한다. *Noting the rapid growth of electronic payments, in particular, those provided by new payment service providers, Parties agre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safe and secure cross border electronic payments by fostering the adoption and us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promoting interoperability and the interlinking of payment infrastructures, and encouraging useful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payments ecosystem.*
		제4.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이전 *Article 4.3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pnic Means*	당사국들은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이전에 관한 자신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한다. 당사국들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이전에 관해 각 당사국 고유의 규제요건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개인정보 포함)의 국경 간 이전이 적용대상자의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The Parties affirm their level of commitments relating to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 particular, but not exclusively:*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150] 관련 세부 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12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참고

86. 디지털 권리 (Digital Rights)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151]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는 사회의 구성원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당연하며, 정당하게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고 누리도록 부여받은 자격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함. 디지털 권리는 누구도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으며,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내포함. 내 권리를 위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희생시키도록 하지 않는 '디지털 포용'을 포함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디지털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대한 법률 제정 검토[152]

디지털 안전과 권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는 「(가칭)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디지털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디지털 안전'과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보호해야 할 '디지털 권리'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가칭)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활동을 하고 자신의 디지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 또한 디지털 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법률에는 디지털 사회의 기본이념과 가치, 국가·사업자·이용자의 책임,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y) 강화, 추진 주체,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153]

한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51] 관련 세부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2022)가 발간한「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조성과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김여라)」– 3. 디지털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디지털 안전과 권리 관련 법률 제정 검토' 참고

[152] 상동

[153] 상동

한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7. 27.〉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국내외 주요 정책[154]

한국 –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내 디지털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시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은 2019년에 산업부가 발표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안)' 내용과 유사함. 2019년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안)을 살펴보면,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핵심과제와 동일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적 대응'을 첫 번째 추진방향으로 꼽음. 다음으로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거대 글로벌 플랫폼과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글로벌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디지털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이니셔티브를 제시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EU-호주 자유무역협정 *KORUS FTA*	제14조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규제 문제에 대한 협력 *Article 14 Cooperation on regulatory issues with regard to digital trade*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의 맥락에서 다음 사항을 다루는 규제 사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a) 상호운영하는 전자적 신뢰 및 인증 서비스의 승인과 촉진 (b) 다이렉트 마케팅 소통 방식의 처리 (c)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d) 디지털 무역 발전에 유의미한 기타 문제 *The Parties shall exchange information on regulatory matters in the context of digital trade, which shall address the following:* *(a) the recognition and facilitation of interoperable electronic trust and authentication services;* *(b) the treatment of direct marketing communications;* *(c) the protection of consuemrs; and* *(d) other matters relevant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2	미국-일본 디지털무역 협정 *USJDTA*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Article 15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각 당사자는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digital trade.*

[154] 관련 세부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이 발간한「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참고

87.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155]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란 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의 기기끼리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고, 정보 교환이나 일련의 처리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상호운용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디지털 시스템 간의 원활한 상호운용과 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의 촉진을 위해 표준 특히 개방형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함."

"Recognise the role of standards, in particular open standards in facilitating interoperability between digital systems and enhancing value-added products and services;"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전자상거래 무역의 원활화[156]

2018년 3월 WTO 71개 회원국이 채택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2019년 3월에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되었고, 그 이후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협상이 2023년 4월 기준 89개국의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6개의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전자상거래 원활화에 관한 것이다. 전자거래 원활화에 관하여 전자인증·전자서명·전자계약·전자송장의 법적 효력의 동등성 인정, 전자결제 서비스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디지털 무역원활화 및 로지스틱스에 관하여 종이 없는 무역의 법적 효력 동등성 인정, 간소화된 세관 절차, 싱글윈도우 정보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 상품 반출과 통관을 위한 기술 사용, 무역원활화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간소화된 세관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단독으로 제안하였음.

EU 무역협정의 주요 유형[157]

EU는 기존 협정을 개선·보완해서 새로운 협정으로 최신화하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멕시코와의 '글로벌협정(Global Agreement)'을 개선한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살펴볼 수 있음. 기존 글로벌협정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다양한 협력 사항들, 특히 그중에서도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통신 · 정보기술 협력,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상호연결과 상호운용성 강화, 규제 협력, 데이터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표준 사용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러한 협력 사항들은 디지털 통상과 관련 있는데 양자 협력의 방향을 언급한 것이므로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규범이라고 보기는

[155]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용어사전」 참고

[156]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한국표준협회(2021)가 발간한「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11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직구의 통관 및 안전인증 이슈(엄도영)' 참고

[157] 관련 세부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이 발간한 「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연구 」– 제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EU가 체결한 협정 현황과 논의 형식' 참고

어려움. 이처럼 글로벌 협정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나 전자인증 관련 조항과 같이 전형적인 디지털 통상 규범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2018년에 발효한 연합 협정은 제16장 디지털 무역 조항을 두고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함.

② 사업자는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제2.5조 전자 송장 Article 2.5 Electronic Invoicing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의 전자 송장에 관한 조치가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당사국들은 자국들의 조치를 국제표준이나 국제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에 기반을 두어 입안해야 한다.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related to e-invoicing in its jurisdiction is designed to support cross-border interoperability. For that purpose, Parties shall base their measures ralted to e-invoiving on international standar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where they exist.*
		제7조 디지털 신원 *Article 7 Digital Identities*	디지털 신원, 개인 또는 기업에 관한 당사국들 간의 협력이 역내 및 글로벌 연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과, 당사국별로 디지털 신원에 대한 접근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각 당사국은 각국의 체계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Recognising that cooperation fo the Parties on digital identities, individual or corporate, will increase regional and global connectivity and recognising that each Party may have different implementation of and legal approaches to digital identities,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promot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ir respective regimes. This may inlude:*
2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제15.5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Article 15.5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4.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의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4. The Parties shall work towards interoperability of electronic signatures issued by either Party.*

88. 투명성 (Transparenc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158]

투명성(Transparency)의 사전적 의미는 '액체의 물 등이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음', '사람의 말이나 태도, 펼쳐진 상황 따위가 분명함', '앞으로의 움직임이나 미래의 전망 따위가 예측할 수 있게 분명함', '물체가 빛을 잘 통과시킴' 등을 뜻함.

국제통상에서 투명성이란 법 규범의 의미와 협정 참가국 및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정책과 행위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용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159]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상호운용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정의 사전

투명성은 위험평가에 사용된 모든 자료, 정보, 추정, 방법, 결과, 논의 및 결론에 대한 종합적인 문서화를 말하며, 결론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문서는 참고문헌 등이 명시되어야 함.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의 투명성 확대[160]

한국-싱가포르 디지털통상협정은 신설되는 각종 조치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투명성 조항을 두고 있음. 나아가서 KSDPA는 투명성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좀 더 정교한 조항을 두고 있음. 첫째, 당해 협정 문안, 요약본, 협정 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를 무료로 웹사이트에 공개함. 둘째, 각 당사국은 자국의 웹사이트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웹사이트나 협정의 이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 및 그 밖의 단체의 웹사이트 등의 링크 또는 정보를 포함함. 또한 통관 규제, 절차나 문의처, 데이터 이전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제, 혁신 및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제나 절차,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기술 규제,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위생이나 식물위생조치, 무역증진 프로그램, 정부조달 기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동 웹사이트와 링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함.

중국의 디지털 무역[161]

투명성 원칙에 관해서만큼은 중국-호주 FTA부터 별도의 조항을 두고, 2021년 1월 발효한 중국-모리셔스

[158] 관련 세부 내용은 Naver Pricacy White Paper(2015)이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 고개의 의미(김일환) – 3. '헌법상 투명성 원칙의 의의와 내용: 가. 투명성의 개념' 참고

[159] 관련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의 사전 – '투명성' 참고

[160] 관련 세부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이 발간한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표준모델 설정 연구」 – 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라. 공통이슈' 참고

[161]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2021)가 발간한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2장 '한국-칠레 FTA를 넘어 한국-싱가포르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이주형): 3. 중국의 디지털 무역 규범에 대한 발전' 참고

FTA에서도 동일하게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신속 출판 및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함. 이러한 태도는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음. 다만, 중국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국경 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현지 서버 설치의무화 금지 등 수준 높은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에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지만, 2020년 11에 서명한 RCEP에서 이와 같은 규정들을 대거 포함하게 되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

한국 –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제5조(투명성)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DEPA*	제4.2조 개인정보 보호 *Article 4.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3. 당사국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뒷받침하는 원칙들이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a) 수집 제한 (b) 데이터 품질 (c) 목적의 명시 (d) 이용 제한 (e) 보안 세이프가드 (f) 투명성 (g) 개인의 참여, 그리고 (h) 책임 *3.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principles underpinning a robust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include:* *(a) collection limitation;* *(b) data quality;* *(c) purpose specification;* *(d) use limitation;* *(e) security safeguards;* *(f) transparency;* *(g) individual participation; and* *(h) accountability.*
2	싱가포르 호주 디지털 경제 협정 *AUDEA*	제14조 투명성 *Article 14 Transparency*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transparent measures are important for building trust in the digital economy, creating a conducive environment for digital trade and facilitating trade.* 1.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 좋은 환경을 형성하고 무역을 가능하게 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 형성을 위해 투명한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89. 기술 중립성 (Technological Neutrality)

1. 용어의 의미

1.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기술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이란 규제나 선정 기준이 모든 기술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정성을 의미함.

1.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의 정의[162]

법률 또는 통상 협정문 상에서 기술 중립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찾지 못함.

WTO 전자상거래에서의 정의

WTO 전자상거래 이슈에서 사용되는 '기술 중립성'의 개념은 기술을 대하는 기본적인 시각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이를 다루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냄. 즉, 그동안 WTO 전자상거래 논의과정을 통해 제기된 '기술 중립성'은 WTO 규범의 적용 및 선택과 같은 '판단기준'으로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앞서 통신규범에서 주로 논의되던 '기술의 중립성'과 표현의 양태는 유사하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규범적으로 구별되는 차이를 나타냄.

2. 디지털통상 관련 사례 및 쟁점[163]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에 기술중립성 원칙 반영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과 같은 전자문서의 교환 시에, 당사국들은 전자문서의 진본성(Authenticity)과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상협정에는 전자인증에 관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됨. CPTPP, USMCA, USJDTA, SADEA, RCEP 등 최근 체결된 대다수의 통상협정 또는 디지털 통상협정에는 공통으로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에 관한 조항에 기술 중립성 원칙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정 수준의 성능이 필요한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국들은 전자인증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규정함.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현이나 강한 논조의 자구를 사용하지 않고 연성법에 가까운 표현만으로 구성하거나, "가능한 한도에서(To the extent possible)",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According to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등 수식어를 추가하여 의무의 수준을 낮추는 경우도 있음.

3. 주요 법령 또는 정책 동향

3.1 국내외 주요 법령·규제[164]

한국 - 방송법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162] 관련 세부 내용은 성신여자대학교(2019)가 발간한 「GATS에서 기술중립성 개념의 적용과 한계」 - 2장 '기술중립성의 형식적 의미와 한계: 기술중립성의 배경과 개념'(권현호) 참고

[163] 관련 세부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이 발간한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 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참고

[164] 관련 세부 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방송법」- '제9조의 4' 참고

- 9조(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2 주요 이슈

한국 –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개사에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를 허가 (2021년 11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7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해 11월 말 허가 심사 결과를 확정, 공표함.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KCTV 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JCN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등 총 6개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업체는 이미 허가받은 종합 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인터넷망을 사용해 케이블TV 방식 외에 IPTV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을 위해 전송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동시에 업체들의 신규 망 투자와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했던 조치임.

4.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No.	협정명	조항번호	내용
1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DEPA*	제3.3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적 대우 *Article 15.3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당사국들은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이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적 대우에 관한 자신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한다. 어느 당사국도 다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생산되거나 발표되거나, 계약되거나, 위탁되거나 상업적으로 처음 제공된 디지털 제품, 또는 다른 당사국의 적용대상자가 저자, 연주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인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 *The Parties affirm their level of commitments relating to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for example:* *No Party shall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or to digital products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an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2	미국-일본 디지털 협정 *USJDTA*	제8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적 대우 *Article 8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1. 어느 당사국도 다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생산되거나 발표되거나, 계약되거나, 위탁되거나 상업적으로 처음 제공된 디지털 제품, 또는 다른 당사국의 적용대상자가 저자, 연주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인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 *1. No Party shall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or to digital products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an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제 2 부

디지털통상 협정/파트너십 용어

산업통상자원부 KSA 한국표준협회 비매품

90. FTA상 전자상거래의 장

1. 개요

1.1 배경

- WTO 등 다자차원의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협상이 지연되wk 양자 차원에서 디지털통상규범을 수립하고자 하는 논의가 더욱 활발하였음.
- 2001년 뉴질랜드-싱가포르 FTA에서 '종이서류 없는 무역' 조항이 처음으로 도입
- 그 이후 '전자상거래'라는 제목 하에 몇 개의 조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장(Chapter) 형태로 FTA에 도입된 것은 2004년 호주-싱가포르 FTA 전자상거래의 장이 최초임.

1.2 특징

- 호주-싱가포르 FTA는 제14장(전자상거래)이라는 별도의 장을 두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여 왔음. 특히, 동 협정에서는 별도의 서문(Preamble)을 설치하고 '양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성장 및 기회, 전자상거래의 사용 및 발전에 장애물 제거의 중요성 및 관련 WTO 규범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취지 등을 별도로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음.[165]
-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일종인 FTA 내의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처음 편재되었다는 형식적 특징 존재

2. 주요 내용

2.1 한국이 체결한 FTA상 전자상거래의 장(Chapter)

- 한국이 체결하고 발효 중인 FTA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자상거래에 대한 독립적인 장을 포함함. 전자상거래에 대한 독립적인 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FTA는 한국-칠레, 한국-EFTA, 한국-아세안 FTA, 한국-인도 FTA, 한국-뉴질랜드 FTA, 한국-인도네시아 FTA, 한국-캄보디아 FTA가 있음.

- 다만, 한국-EU FTA 등 일부 협정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별도의 장 대신 서비스 관련 장에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2.1.1 한국-싱가포르 FTA

- 초기 단계의 FTA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의무와 비차별 대우원칙 등 디지털 교역의 중요한 원칙들을 처음으로 포함하기 시작하였음.

2.1.2 한국-EU FTA

-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독립적인 장 없이 제7장(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내의 조문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유지 및 전자인증서비스 촉진, 소비자 보호, 스팸메일 및 양국의 국

[165] Preamble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ies provided by electronic commerce, the importance of avoiding barriers to its use and development, and the applicability of relevant WTO rules.
http://www.austlii.edu.au/au/other/dfat/treaties/2003/16.html#art14 (2023.8.5. 최종방문).

내법령 등에 관하여 대화 채널을 통한 포괄적 협력조항을 두는 데 그침.

2.1.3 한국-페루 FTA

- 온라인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유지조항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 조항[166], 개인정보 보호 조항[167] 등이 포함되었음. '국경 간 정보 이동'에 대하여 한국-페루 FTA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국경 간 정보의 흐름 유지 노력'이라는 협력의 한 분야[168]로 규정한 바 있음.

2.1.4 한국-미국 FTA

- 한편, 한국-미국 FTA는 비구속적 노력 의무의 형태이지만 미국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국경 간 정보 이동 관련 규정이 별도의 조항[169]이 삽입되었음.

  - 동 규정은 강제력 있는 규정 형태는 아니지만, 국경 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2.2 미국이 체결한 FTA상 전자상거래의 장(Chapter)

- 초기 단계의 FTA부터 한국-미국 FTA까지의 시기

2.2.1 미국-요르단 FTA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대우를 단순한 노력 조항[170]으로 규정함.

  - 반면, CAFTA-DR(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 미국-칠레 FTA, 미국-싱가포르 FTA, 미국-호주 FTA, 미국-모로코 FTA 미국-바레인 FTA, 미국-오만 FTA 미국-페루 FTA, 한국-미국 FTA, 미국-콜롬비아 FTA, 미국-파나마 FTA[171]는 모두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부과를 의무조항으로 명시

-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 조항의 경우 미국-요르단 FTA를 제외하고는 CAFTA-DR,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 미국-호주, 미국-모로코, 미국-바레인, 미국-오만, 미국-페루, 한국-미국, 미국-콜롬비아, 미국-파나마 FTA[172]에 모두 포함되었음.

2.2.2 USMCA 및 CPTPP의 등장

- **(USMCA)** USMCA는 2015년 TPA에서 제시되었던 협상 목표인 ① 비차별 대우원칙, ②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③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보장, ④ 국내규제의 적절성 관련 규정 등이 모두 포함되었음.

- **(CPTPP)** CPTPP는 국내규제 프레임워크[173], 개인정보 보호[174], 인터넷 방문료[175], 컴퓨터 설비 위

[166] 한국-페루 FTA 제14.5조.
[167] 한국-페루 FTA 제14.7조.
[168] 한국-페루 FTA 제14.9조.
[169] 한국-미국 FTA 제15.8조.
[170] 미국-요르단 FTA 제7조.
[171] 그 이외에도 미국-칠레 FTA 제15.3조, 미국-싱가포르 FTA 제14.3조, 미국-호주 FTA 제16.3조, 미국-모로코 FTA 제14.3조, 미국-바레인 FTA 제13.3조, 미국-오만 FTA, 미국-페루 FTA 제15.3조, 한국-미국 FTA, 미국-콜롬비아 FTA, 미국-파나마 FTA 등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72] 그 이외에도 미국-싱가포르 FTA 제14.3조, 미국-칠레 FTA 제15.4조, 미국-호주 FTA 제16.4조, 미국-모로코 FTA 제41.3조, 미국-바레인 FTA 제13.3조, 미국-페루 FTA 제15.3조 등에 포함되어 있다.
[173] TPP 제14.5조.
[174] TPP 제14.8조.
[175] TPP 제14.12조.

치[176], 스팸메일[177], 원시 코드[178] 및 분쟁 해결[179] 관련 규정이 새롭게 포함된 바 있는데, USMCA는 이러한 CPTPP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대부분 차용하면서도, 공공 데이터(Open Government Data)[180]와 인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s)[181] 등도 추가함.

- 미국이 맺은 지역무역협정에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언급한 협정은 미국-칠레 FTA가 최초임. 동 협정 제15.5조에 따르면 '활발한 전자상거래의 환경을 위하여 국경 간 정보 이동이 필수적이라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 간 협력을 다짐함. 비록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고 비교적 절제된 내용으로 삽입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 한미 FTA 제15.8조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규정 형태로 도입되었고, CPTPP 및 USMCA에서 이것이 강행규정으로 삽입됨. 특히 CPTPP보다도 USMCA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규정을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명시[182]한 바 있음.

2.3 EU가 체결한 FTA상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2.3.1 캐나다-EU FTA(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및 EU-베트남 FTA

- CETA[183]는 전자상거래 규정을 서비스 및 투자의 장 안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장으로 편제함.
  - 목적과 범위[184], 다른 장과의 관계,[185]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조항[186] 및 대화 채널을 통한 협력 조항[187] 등이 주요 내용이고 '전자상거래의 신뢰 및 확신' 관련 조항[188]을 두고 국제기구가 채택한 데이터 보호 관련 국제표준을 고려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U-베트남 FTA에서는 의무규정의 형태로 포함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원칙[189]외에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협력(Regulatory cooperation on electronic commerce)'[190]조항을 두고 양국의 협력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2.3.2 EU-싱가포르 FTA

- 동 협정에는 전자적 전송에 관한 무관세 원칙[191]뿐만이 아니라 전자서명[192],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협력규정[193]이 포함되어 있음.

[176] TPP 제14.13조.
[177] TPP 제14.14조.
[178] TPP 제14.17조.
[179] TPP 제14.18조.
[180] USMCA 제19.18조.
[181] USMCA 제19.17조.
[182] USMCA 제19.11조.
[183] CETA는 2016.10.30. 서명되고 2017.9월 잠정 발효되었다.
[184] CETA 제16.2조, 즉, CETA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 타 장과 비교시 일반법적인 위치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185] CETA 제16.7조.
[186] CETA 제16.3조.
[187] CETA 제16.6조.
[188] CETA 제16.4조.
[189] EU-베트남 FTA 제8.51조.
[190] EU-베트남 FTA 제8.52조.
[191] EU-싱가포르 FTA 제8.58조.
[192] EU-싱가포르 FTA 제8.60조.
[193] EU-싱가포르 FTA 제8.61조.

- 또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비스 공급 관련 조치'의 경우 '서비스의 장의 의무 및 예외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조항을 삽입한 바 있음.[194]
- 비록 법적 구속력 없이 중요성을 확인하는 형태이지만, 제8.57조 (목적)에서 '인터넷상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최초로 추가하였음.[195]

2.3.3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196]

- 목적 및 일반 조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의 기회를 증진시키며, 전자상거래의 사용 및 개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한바 있음.
- 나아가 전자상거래 이용시 믿음과 신뢰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음.[197]
- 또한, 디지털 교역에서 기술 중립성(Technical neutrality)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문구가 삽입되었음.[198] 과거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는 없었던 원시 코드, 국내규제, 사전승인금지 원칙,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계약 체결, 전자 인증 및 전자서명, 스팸메일 규정 등을 모두 의무규정 형태로 포함하였음.

2.3.4 EU-멕시코 FTA

-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명칭의 제목 대신 USMCA와 동일하게 '디지털 교역(digital trade)'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였음.
-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최초로 '개방적인 인터넷 접근(Open Internet Access)'을 규정함.
- 디지털 교역에 관한 각국의 규제 권한을 확인하는 규정[199]을 두고 규제권 발동을 위한 합법적인 정책 목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음.

2.4 중국이 체결한 FTA상 전자상거래의 장(Chapter)

- 중국이 FTA에서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언급[200]한 것은 중-뉴질랜드 FTA로, 기술무역장벽의 장 및 관련 부속서 내에서 관련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에 그침. 한편, 중국이 지역무역협정에서 최초로 전자상거래 관련 장을 규정한 것은 한국 및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임.
- 2015.12월 동시에 발효된 한국-중국 FTA 및 중국-호주 FTA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두

[194] 사실 동 조항이 부재한다 하더라도 CETA를 제외한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모두 전자상거래 조항을 서비스의 장의 일부로 포함시켰으므로 서비스 장의 의무 및 예외, 유보사항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해석으로 사료된다.

[195] 3.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while agreeing that this should not impair the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given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internet.

[196] EU-일본 EPA는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중 가장 거대 파트너와의 결합으로 전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며, 양측 모두 디지털 무역이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세계 수위를 차지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합의 내용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197] EU-일본 EPA 제8.70조
Objective and general provisions
2. The objective of this Section is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environment of trust and confidence in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and to promote electronic commerce between the Parties.

[198] EU-일본 EPA 제8.70조 3항.

[199] Article 1 Scope
2. The Parties affirm the right to regulate within their territories to achieve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such as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social services, public education, safety, environment or public morals, social or consumer protecti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cultural diversity.

[200] 권현호 (2010), "한국-중국 FTA 논의와 IT 서비스 무역의 통상법적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8(1), 이에 따르면 중국의 초기 FTA 추진 방향은 상품무역과 제한된 분야에서의 투자만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인 뉴질랜드와의 FTA에 이르러서야 지역무역협정을 총 18개 장(Chapter)로 구성하고 SPS, TBT,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도록 하였다. 이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자상거래 조항은 대부분의 내용이 실질적인 개방보다는 협력조항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녔다.

고 각각 9개 및 11개의 조항을 규정함.

- 한국-중국 FTA에서는 여타 지역무역협정상 전자상거래 목적 조항과 유사하게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과 기회의 중요성, 그리고 WTO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단순히 인정하는 수준에 그침.
- 반면, 중국-호주 FTA의 경우 협력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촉진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이용 및 발전의 장벽을 회피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다른 형태의 무역보다 전자상거래가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있음. 비록 의무조항이 아닌 노력조항[201]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국-호주 FTA가 한국-중국 FTA보다 무역장벽 제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 한국-중국 FTA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화 규정의 경우, 의도만을 보여주는 용어(will)를 사용[202]함으로써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았을뿐더러, '각주'의 추가규정을 통하여 각국이 무관세화 관행을 변경할 권한이 있음을 더욱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중국-호주 FTA에 따르면, 비록 향후 WTO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논의에 따라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화 관행에 대해 각국이 변경할 권한을 보장한다고 규율하는 점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무관세화 관행만큼은 명백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음.[203]
- 중국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상 전자상거래 조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자상거래 조항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경우 FTA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임.
- 한편, 중국이 가입국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경우 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전자적 무역 행정문서를 수용하고, 전자 인증·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의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스팸메시지 방지 등 규정을 도입하였음.
- 또한, 국경간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원활화 및 컴퓨터 서버 현지화 금지 규정 마련하고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및 안보 이익이 있는 경우 정부의 규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각국 정책 권한과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 간의 조화를 도모하였음.

[201] ARTICLE 12.1: PURPOSE AND OBJECTIVE
3.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bilateral trade through electronic commerce is no more restricted than other forms of trade.
[202] 한중 FTA 제13.3조 및 각주 3 참고.
[203] 중국-호주 FTA 제12.3조.

91.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1. 협정 개요

1.1 체결 국가

- 미국, 일본

1.2 체결 배경

- 미국-일본 양국 간 디지털무역규범의 수립을 위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의 대두

1.3 발효 시기

- 발효 시기 : 2020.1.1. (2019.10.7. 미국-일본 무역협정과 함께 정식 서명)

1.4 협정 특성

- **(형식적 특성)**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의 형식
  - 일반적으로 디지털무역에 관한 규범의 수립시 FTA 등 지역무역협정상 몇 개의 조항을 넣거나 전자상거래라는 제목의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 관련 조항들을 포함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음.
  -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은 비록 미국-일본 무역협정과 함께 협상되고 정식서명되었지만, 미국-일본 무역협정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별개의 독자적인 조약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stand-alone digital agreement로 평가됨.

미국-일본 무역협정과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 미국과 일본은 양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미국-일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시장접근을 위한 관세 인하 및 시장접근 향상을 위한 쿼터 확대를 규정한 바 있음.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 무역촉진권한(TPA, P.L. 11-26)에 근거한 위임된 권한을 사용하여 미국-일본 무역협정을 타결하였고, 동 협정은 미국 의회의 별도 비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0.1월 발효되었음.[204]
- 미국-일본 무역협정과 함께 체결된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의 경우 동 협정 체결로 인하여 미국 법률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평가됨.[205]

- **(내용적 특성)**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은 과거 FTA의 전자상거래의 장(chapter)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던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 이외에도 암호를 사용한 전기통신기술상품, 세금 및 안보 등 각종 일반적 예외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조항은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상품,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장(chapter)에 널리 퍼져 존재하는 디지털무역 관련 규범을 전부 취합하여 독자적인 조약 형태로 만들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다만,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은 독자적 협정 형태로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협정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204]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Japan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2022,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1120
[205] ibid.

-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과 동시에 서명된 미국-일본 무역협정의 경우 제6조를 통해 당해 협정의 운영이나 해석 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규정을 두고 있어 협정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경우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의 경우 이와 같은 협의조항조차 없음.[206]

2. 주요 조항

- **(제2조 범위)**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등 미국이 기체결한 전자상거래 범위 조항과 동일하게 '전자적 방법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정부조달, 정부 권한 행사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방되는 정부 데이터 이외에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소지하는 정보 및 당해 정보 취합 관련 조치는 동 협정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
- **(제7조 관세)** USMCA의 경우 '디지털 제품'에 국한하여 영구적인 무관세 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을 무관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타방 당사국 영토 내 창작, 생산, 출시, 계약, 위탁 또는 상업적으로 처음 제공되는 디지털 제품, 또는 타방 당사국의 인이 저자, 연주자, 제작자, 개발자, 소유자 등인 디지털 제품의 경우 여타 동종 디지털 제품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보조금, 지식재산권, 방송 공급사의 해외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는 비차별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방송'이란 대중에게 직접 접수되는 전기통신의 전송을 의미하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주문형 서비스(on-demand service)'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13조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컴퓨터 설비 설치)**
  - **(제1항)**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거래나 운영에 근본적인 정보 등에 대한 금융규제 기관의 즉시, 직접적이고도 완전한 접근권은 금융규제 및 통제에 매우 긴요하고, 이와 같은 접근권에 어떠한 잠재적 제한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음.
  - **(제2항)** 금융규제기관이 금융규제 및 통제 목적으로 당사국 영역 밖에 위치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컴퓨터 설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즉시, 직접적이고도 완전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당해 당사국 영역 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조건으로 영역 내에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을 규정함.
  - **(제3항)** 금융규제기관이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이 불가할 경우 당사국 영역 또는 제3국 관할권 내 관련 컴퓨터 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되 이와 같은 컴퓨터 설비 설치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당국의 정보 접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함.[207]
- **(제17조 소스코드)** 어느 국가라도 자국 영토 내로 소프트웨어나 그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상품을 수입하거나 당해 영토 내 유통, 판매, 이용하기 위하여 타방당사국 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또는 그 소스코드에 내장된 알고리즘을 이전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 허용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무단 공개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제공되는 한도 내에서는 규제기관 또는 사법당국이 특정 검사, 조사, 시험, 강제집행 또는 사법절차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소소코드 또는 동 소스코드 내 내장된 알고리즘을 보전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206] 이주형(2023), "디지털경제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제514호, p.45.
[207] 이주형(2019),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과 예외규정에 관한 소고",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제3호, p.163.

- **(제20조 개방 정부 데이터)** 정부 데이터에 대한 대중 접근 및 이용 원활화가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경쟁력, 그리고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 데이터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한 한도 내에서는 동 정부 데이터가 기계로 인식되고 공개되며 검색, 이용, 재이용 및 재배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제21조 암호를 사용한 정보통신기술상품)** 동조를 위하여 '암호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화 기법', '암호화', '전기통신기술제품', '키'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내리고 있음.
  - 당해 규정은 암호를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국의 법 집행, 금융기구 규정, 중앙은행 등 당사국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사용자기구를 포함한 네트워크 접근 관련 요건, 금융기구 또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감독, 조사기구가 채택한 조치, 당사국 정부에 의한, 또는 당사국 정부를 위한 상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및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암호를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상품을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a) 특정기술 또는 제조과정 또는 여타 정보공개 등 암호와 관련된 재산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이전 또는 제공하도록 요구, (b)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에 있어서 당해 영역 내 인과 협력하도록 요구, 또는 (c)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 등 사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강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3. 주요 의의

- 향후 FTA와는 별개로 디지털무역에 대한 내용만을 규율하는 협정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와 함께 독자적인 디지털무역협정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선도적 조약으로 평가됨.
  - 특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디지털산업 강국 간 체결한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상 예외조항

-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내의 총 22개 조문 중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일반적 예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조)** 제21조(암호를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상품)의 경우 GATT 제20조가 적용되고, 그 이외의 모든 규정의 경우 GATS 제14조 (a) 공중도덕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b)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및 (c) 국내 법규 이행을 위한 조치에 일반적 예외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조)** 안보상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제5조)** 건전성, 통화 및 환율정책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즉, 투자자, 예금자, 증권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 제도의 무결성 및 안전성 보장 등 건전성 사유로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조치가 협정에 배치되는 경우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함. 또한, 공공기관이 비차별적으로 시행하는 통화 및 관련 신용 또는 환율정책은 당해 협정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제6조)** 내국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우선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이 과세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시한 후, 당해 협정이 조세 조약상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상호 불일치의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은 각 규정별로 독자적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국경 간 데이터 이동조항의 경우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공공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의적이고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이 아닌 한, 정부의 규제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반면, 컴퓨터 설비 현지 설치 강요금지 조항의 경우 CPTPP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조항과 동일하게 합법적 공공정책 이행을 위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지만,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의 경우 이와 같은 예외문구를 완전히 삭제하였음. 따라서 컴퓨터 설비 현지 설치 강요금지 조항에 한해서는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이 CPTPP보다 훨씬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협정으로 이해됨.

92.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1. 협정 개요

1.1 체결 국가

- 호주, 싱가포르

1.2 체결 배경

- 호주 및 싱가포르 간 기존 자유무역협정상 디지털규범을 보다 현대화하고 양국 간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긴밀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

1.3 발효 시기

- 2020.12.9. (2019.10.12. 협상 개시)
- 양국 간 전자상거래 규정 변천 경과

- 2003년 호주와 싱가포르는 FTA를 체결(이하 '舊협정')하면서 제14장(전자상거래)을 두고, 서문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음.
- 그 이후 동 FTA를 전면개정한 호주-싱가포르 FTA(이하 '신협정')가 2017.12.1. 발효하였음. 新협정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14장(전자상거래)을 두고 있음. 舊협정상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의 개수가 10개이었던 반면, 新협정은 총 19개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두고, 협정 적용의 범위를 舊협정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허용 원칙, 국경 간 정보 이동, 인터넷 접속료, 컴퓨터 설비 위치, 스팸메일, 협력, 사이버보안 협력, 원시 코드 등의 신규 조항을 추가하였음.
- 新협정 발효 후 2년 만에 新협정상 규범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싱-호 디지털경제협정 협상이 체결되었음.

1.4 협정 특성

- **(형식적 특성)**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형식

- 동 협정은 호주-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을 새로운 제14장(디지털경제)으로 대체하는 일종의 개정의정서임.
- 특히 호-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체결 계기 양국은 총 8개의 MOU를 체결,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채널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이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협력 사항을 합의하였음.
- 인공지능 분야 협력 MOU, 전자송장 협력 MOU, 스팸매일 방지를 위한 법률 집행 관련 협력 MOU. 디지털 신원 관련 협력 MOU,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력 MOU, 데이터 혁신 관련 MOU. 전자인증 협력 MOU, 무역 원활화 MOU 등 총 8개로 구성.

싱가포르의 디지털경제협정 전략[208]

- 디지털경제협정은 디지털무역에 대한 규칙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으로 싱가포르는 주요 파트너국과의 디지털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표준 및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디지털무역 및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디지털경제협정을 통해 자국의 자유무역협정 및 기타 디지털협력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는 호주 및 일본과 함께 WTO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 이니셔티브(WTO E-commerce Joint Statement Initiative, JSI)'의 공동의장을 맡아 동 협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
- 싱가포르가 체결하고자 하는 디지털경제협정은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디지털 규칙 및 표준을 정립하고 디지털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증진
  - 국경 간 정보 이동을 지원하고 개인의 데이터 및 소비자 권리 보호
  - 디지털 신원,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혁신 등 신규 영역에서 싱가포르와 주요 파트너국 간의 국제협력 장려

- **(내용적 특성)** 동 협정은 싱가포르가 체결한 2번째 디지털경제협정으로 특히 전자지급, 국경 간 정보 이동,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정부 데이터 개방, 중소기업 관련 협력, 해저케이블 등의 내용에 방점을 두고 있음.

2. 주요 조항

- **(제2조 범위)** 동 협정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를 촉진하는 조치에 적용됨.
  - 다만, 정부조달, 제27조(공개된 정부 데이터)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보유 또는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수집과 관련한 조치 등 이와 관련된 조치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호주의 경우 자연인의 신용정보 또는 관련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2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제24조(컴퓨터설비의 위치) 및 제25조(금융서비스컴퓨터설비의 위치)를 적용하지 않음.
- **(제5조 관세)** 양국 간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다만,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각국별로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 부과는 가능
- **(제6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디지털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여기에서의 '디지털제품'에는 금전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 지식재산권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비차별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나아가 정부 지원 대출,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한 보조금, 방송에도 비차별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 **(제10조 전자송장)** 상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자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국별 전자송장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인정함.
  - 전자송장 체제 간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각국별 전자청구 조치가 필요
- **(제11조 전자결제)** 비은행, 비금융기관 및 핀테크기업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경간 전자결제체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각국은 아래사항을 지원하게 됨.

[208]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ti.gov.s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

- 이를 위하여 각국은 규제승인, 인허가 조건, 절차 및 기술 기준 관련 전자결재규정을 공개하도록 함.
- 규제 또는 인허가 승인의 적시 결정을 위한 노력
- 전자결제 제도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 전자결제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서비스 공급자 간의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Standard ISO 20022 Universal Financial Industry Message Scheme) 등 전자결제 메시지 전송에 관한 국제기준 도입
-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를 통해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오픈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결제의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제서비스 제공자들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API를 안전하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
-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 채택 등을 통해 적시에 혁신 및 경쟁, 신규 금융 및 전자결제 상품/서비스의 도입을 촉진

• **(제16조 경쟁정책 협력)** 디지털 시장 경쟁정책 개발에 관한 정보 및 경험 교류, 경쟁법 집행 및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에 관한 모범사례 공유,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정책 개발 및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직자 교류를 통한 자문 또는 교육 제공, 양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기술 협력 등 경쟁정책 개발 및 시행 관련 협력

- 각국은 가용자원을 전제로 하여 각국별 법령에 따라 통지, 협의 및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디지털시장 내 경쟁법 집행 협력에 노력

• **(제18조 안전한 온라인환경 조성)** 테러 및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비즈니스 혁신 및 창의성을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한 온라인환경을 조성하고 촉진

- 안전한 온라인환경이 정부, 서비스 제공업체 및 이용자 간 공통된 책임이라고 인식
- 유해한 온라인환경으로부터 아동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
- 각국별 법령에 따라 개방적이고 무료이며 안전한 인터넷 유지를 위해 노력

• **(제21조 인터넷 접속료)** 각국은 국제 인터넷 연결을 추구하는 공급업체가 상업적으로 상대국의 공급업체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이러한 협상에는 각 공급업체의 시설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상이 포함

• **(제22조 해저 통신케이블 시스템)** 해저 통신케이블 시스템과 동 시스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치, 유지 및 보수가 국가, 지역 및 글로벌 통신 연결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 각국은 가능한 한 해저 통신케이블 시스템을 운영, 소유 또는 통제하는 상대국 인의 자가 설치, 유지보수 또는 수리 서비스 공급업체(양국 또는 제3국 포함)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

- 각국은 상대국 영역 내에 등록된 선박이 상대국 인이 운영, 소유 또는 통제하는 해저통신 선로의 설치,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것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어느 당사국은 상대국의 조치로 인하여 자국 해저통신 선로설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치, 유지, 보수 또는 보호 능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상대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들은 조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

- 각국은 상대국 인이 운영, 소유 또는 지배하는 해저 통신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피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동 노력에는 지리적 경보 시스템의 사용, 해저 통신케이블 시스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해저통신 선로설비 보호를 위한 해저통신 선로설비 설치지역의 공공분계, 해저 통신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인식 재고 활동 등이 포함

• **(제31조 AI)** 일반인과 기업에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 내에서 AI 기술의 이용과 채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각국 정책에 따라 AI 기술 관련 연구, 산업 관행 및 거버넌스 공유, 기업 및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AI 기술의 책임 있는 이용과 채택을 촉진, 연구자, 학계 및 산업계 간의 비즈니스 기회 및 협업 장려를 통한 협력

- AI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는 신뢰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윤리적 지배구조 체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의 국경 간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이러한 체제가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지역 및 국제 포럼을 통해 신뢰하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 사용을 지원하는 "AI 거버넌스 체제" 개발, 채택 협력 및 AI 거버넌스 체제를 개발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원칙이나 지침을 고려

• **(제32조 핀테크 및 레그테크(RegTech))** 각국별 정책 및 무역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을 통한 핀테크 및 레그테크 관련 협력을 장려함.

- 핀테크와 레그테크 기업 및 산업체 간 보다 긴밀한 협업 촉진
- 간소화된 인가절차를 활용하고 규제 샌드박스에 접근하는 등 가능한 경우 상대국 내 시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
- 핀테크 및 레그테크 기업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및 국제 포럼 차원의 협력

3. 주요 의의

• 양국 간 다음 표와 같이 무려 3차례의 디지털규범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장 최신 디지털무역규범의 높은 수준을 제시한 협정으로 평가됨

〈 디지털규범 변천사 〉

조항	舊협정 (2003년 발효)	新협정 (2017년 발효)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서문	O	X	O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1조	제1조 및 제2조
투명성	제2조	제3조	제14조
관세	제3조	제4조	제5조
국내규제	제4조	제6조	제8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5조	제7조	제9조
온라인 소비자보호	제6조	제8조	제15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제7조	제9조	제17조
종이서류없는 무역	제8조	제10조	제12조
예외	제9조	제11조	제3조
분쟁해결	제10조 (FTA분쟁절차 제외)	FTA 분쟁해결절차	FTA 분쟁해결절차
추가된 내용	-	제2조(범위) 제5조(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제12조(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허용원칙) 제13조(국경 간 정보 이동) 제14조(인터넷 접속료) 제15조(컴퓨터 설비 위치) 제16조(스팸메일) 제17조(협력) 제18조(사이버 보안 협력) 제19조(원시 코드)	제10조(전자송장 발행) 제11조(전자결제) 제13조(특송화물) 제16조(경쟁정책에 대한 협조) 제18조(안전한 온라인환경 조성) 제19조(스팸메일) 제20조(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접속 및 이용원칙) 제21조(인터넷접속료 분담) 제22조(해저통신케이블 시스템) 제2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정보 이전) 제24조(컴퓨터설비 위치) 제25조(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제26조(데이터 혁신) 제27조(개방 정부 데이터) 제28조(소스코드) 제29조(디지털신원) 제30조(디지털무역 관련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제31조(인공지능) 제32조(핀테크 및 레그테크 협력) 제34조(사이버보안) 제35조(이해관계자참여) 제36조(중소기업) 제37조(역량강화)

93.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Digital Economy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1. 협정 개요

1.1 체결 국가

- 영국, 싱가포르

1.2 체결 배경

- 양국 간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상 디지털무역규범의 강화

1.3 발효 시기

- 2022.6.14. (2021.6.28. 협상 개시)

1.4 협정 특성

- **(형식적 특성)**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의 형식
  - 동 협정 조항들은 양국의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일부가 개정된 형식으로 기존 자유무역협정 중 F절을 '디지털무역 및 디지털경제'라는 제목의 절로 대체하는 방식임. 따라서 분쟁해결, 향후 개정 및 종료 등의 경우 기존 영국 및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의 프레임워크가 적용됨.
  - 동 협정은 싱가포르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임과 동시에 싱가포르가 체결한 3번째 디지털경제협정임.
- **(내용적 특성)** 데이터를 필두로 한 디지털 경제의 가장 기본요소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도입, 인공지능, 핀테크 및 레그테크, 디지털 신원 및 레그테크(RegTech) 협력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의 새로운 혁신 영역에 대한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2. 주요 조항

- **(제8.58조 범위)** 동 협정은 디지털무역시스템 이용 및 개발에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디지털무역 원활화를 위해 규제 체제의 상호운용성을 도모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무역 규율을 위한 체제 개발을 위해 협력할 것을 인정함. 이를 위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를 동 협정의 적용범위로 설정함.
  - 다만, 시청각 서비스, 정부조달, 제86-H조(공개된 정부자료)를 제외하고, 어느 한 당사국을 대리하여 보유 또는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수집과 관련한 조치 등 이와 관련된 조치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 **(제8.59조 관세)** 양국 간의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다만,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각국별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 부과는 가능
- **(제8.61조 전자인증)** 각국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효력이나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음.

-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적절한 전자인증 방법이나 전자서명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전자거래 당사자가 전자인증 또는 전자서명 사용이 관련 법률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사법행정기관에 입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

• **(제8.61-A조 전자송장 발행)** 상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자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 당사국별 전자송장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인정함.

- 자국 영토 내에서 전자송장 관련 조치가 각국의 전자송장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상호운용성 있는 전자송장 시스템의 글로벌한 도입촉진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함.

• **(제8.61-C조 물류)** 비용절감, 공급망 속도 및 신뢰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국경 간 물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물류 관련 모범사례와 일반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함.

- 주문형 및 다이내믹 라우팅 솔루션을 포함하는 라스트마일 배송
- 전기,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차량 사용
- 택배 사물함과 같은 상품배송을 위한 국경 간 선택권의 용이성
- 물류 관련 신규 배송 사업 모델

• **(제8.61-D조 표준 및 적합성평가)** 디지털경제에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을 증진하여 무역장벽을 감소하는 역할을 인정함.

- 각 당사국은 국가 간 적합성 평가결과를 용이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디지털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모범사례 교환,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채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포럼에 적극참여,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분야의 공동 이니셔티브 발굴, 개발 및 추진,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당사자들 및 업계 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경 간 연구 또는 테스트베딩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간 협력을 추진
- 상대국 요청 또는 적절한 경우 양국이 합의한 합리적 기간 또는 가능한 경우 60일 이내에 디지털무역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정보를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제8.61-E조 개인정보 보호)** 전자적 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무역에 관여하는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의 경제적 및 사회적 혜택을 인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가 디지털경제 및 무역발전에 있어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 또한 인정함.

-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 및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개발시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을 고려해야 함.
- 각국은 전자적 거래를 포함하는 디지털 무역에 관여하는 자연인이 당해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할 의무가 있음.
- 각 당사국별로 전자적 거래를 포함하는 디지털무역에 관여하는 자연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구제수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그리고 법인에게는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

• **(제8.61-F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동)** 각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대하여 스스로 규제요건을 보유할 수 있음을 인정함. 각국은 개인정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이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인 경우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다만, 적법한 공공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방법이 아니고 목적달성에 필요이상으로 정보 이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제한할 수 있음.

• **(제8.61-G조 컴퓨팅 설비 위치)** 각국이 통신보안 및 기밀성 확보를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팅 설비 사용에 관한 자신의 규제요건을 보유할 수 있음을 인정함.

- 어느 국가도 해당 지역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조건으로 당해 지역 내에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적법한 공공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방법이 아니고 목적달성에 필요이상으로 정보 이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제한할 수 있음.

• **(제8.61-M조 온라인 소비자보호)** 디지털 무역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기여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 채택 및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함.

- 각국은 디지털 무역에 관여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오해소지가 있거나, 기만적, 사기적, 불공정한 상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을 포함한 조치를 채택 및 유지하여야 함.
- 각국은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자국 소비자 보호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 간 디지털 무역 활동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촉진함.
- 디지털무역에 관여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대국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자국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접근권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
- 디지털 무역에 따른 분쟁해결 촉진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모색

• **(제8.61-Q조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 역할 및 이들 기업의 디지털 경제 참여시의 장벽 해소의 필요성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중소기업 간 디지털무역에 관한 긴밀한 협력 증진 및 중소기업의 일자리 및 성장촉진 협력, 중소기업이 국제적 공급자, 구매자, 기타 잠재적 사업자와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참여 유도, 디지털 기술 향상을 위한 정보 교환 및 모범사례 공유,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정부조달 기회 참여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무역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 등의 기회를 모색함.

• **(제8.61-R조 인공지능 및 신흥기술)** 분산원장 기술, 디지털트윈, IOT 등 인공지능 및 신흥기술이 경쟁력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함.

- 인공지능 및 신흥기술의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책임있는 개발 및 사용을 위한 관련 국제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하고, 이러한 기술의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정책 체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
- 이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원칙 및 지침 고려, 업계에서 주도하는 기준 및 리스크관리 모범사례에 기반한 리스크 기반 규제 접근법 활용, 기술적 상호운용성 및 기술중립성 원칙 등의 중요성을 인식함.

• **(제8.61-T조 레그테크 협력)** 각 당사국별 시장에 대한 레그테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레그테크 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

- 이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규제 체계에 대한 지식, 연구, 업계관행 및 정보 공유 등 레그테크 관련 사안에 대한 대화, 각 규제기관, 학계, 산업체 간 지식공유 장려, 레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업체들

이 상대국 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협력함.

- 각국은 법률서비스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각국의 법률 및 규제체계를 뒷받침하는 원칙 하에 신뢰있고 안전하며 책임있는 레그테크 사용 장려가치를 인정함.

디지털 포용[209][210]

-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현재까지 공통되는 정의는 부재함. 다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경제의 발전 속에서 다양한 디지털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확보하고 이로 인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이제까지 '디지털 포용' 조항이 도입된 디지털무역협정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과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임
- DEPA는 가장 처음으로 '디지털 포용' 모듈을 도입하였음. 제1항에서 모든 개인 및 기업이 디지털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이로부터 혜택을 받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경제로 인한 각종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주민을 포함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및 문화적 연결을 강화하고, 여성, 지방주민 및 사회경제적 하위집단들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제3항은 이를 위하여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경험, 모범 관행 공유 및 전문가 교류,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디지털 경제가 주는 기회에의 접근을 방해하는 각종 장벽 제거, 디지털경제 참여 촉진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경제 참여에 관한 데이터 확보, 지표 활용 및 통계의 분석을 위한 방법론 및 절차 공유 등을 국가 간 협력 사항으로 열거함.
-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의 경우에도 '디지털 포용'을 규정함. 동 협정 역시 모든 개인 및 기업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디지털경제에 기여하며 이로부터 혜택을 받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음. 또한, DEPA와 유사하게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경험, 모범 관행 공유 및 전문가 교류, 디지털 무역 기회에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확인, 디지털경제 참여시 불공정한 관행을 마주하는 여성 및 기타 집단의 디지털경제 참여 관련 방안 및 절차, 온라인 비즈니스 도구에의 접근권 및 디지털 기술 개발 등 양자적 협력 사항을 제시함.
- 그런데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음. 디지털 격차로 인한 소외계층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DEPA 디지털포용 조항과는 달리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상 '디지털 포용' 조항은 '노동자 보호'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임. 동 조항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 종사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자의 양질의 작업조건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정책 채택 및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디지털무역에 종사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자의 보호 촉진을 국가 간 협력 사항으로 추가하고 있음
- 특히 동 협정은 각국의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가능한 한 디지털 포용 관련 협력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노동자도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디지털 포용이라는 개념이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각종 기회 증진과 혜택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노동자야말로 디지털기술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무역정책적 고려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평가됨.

3. 주요 의의

- 동 협정은 싱가포르가 유럽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무역협정으로, 기존 영국-싱가포르 FTA상 전자상거래의 장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신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조항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선도적 조약으로 평가됨.

- 또한, 디지털포용 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노동관련 문제가 양산되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관련 문제를 처음으로 디지털무역협정에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209] 이주형(2023), "노동자 중심의 디지털무역정책에 관한 소고, 디지털무역협정상 디지털포용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p.190.
[210] 본 교재의 81.디지털 포용 참고

94.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1. 협정 개요

1.1 체결 국가

- 한국, 싱가포르

1.2 체결 배경

- 최근 디지털전환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 마련 목적으로 한국 최초의 독자적 디지털무역협정 추진

1.3 발효 시기

- **(발효 시기)** 2023.1.14. (2021.12월 협상 타결)

1.4 협정 특성

- **(형식적 특성)**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의 형식
  - 본문, 부속서 가 및 나, 부속서한 등 총 3부분으로 구성되고, 부속서 가의 내용이 기존 한국-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을 대체하게 됨.
  - 독자적 디지털무역협정과 같은 제목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 FTA의 일부분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개정의정서(amendment protocol)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나아가, 동 협정 제3조는 '동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싱가포르 FTA 중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각각의 부속서를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할 것을 규정하는 소위 '빌트인(built-in) 조항'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디지털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비스 무역 및 투자의 장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항 마련을 위해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됨.

전자서명과 조약 서명식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2조는 서명 절차를 통해 기속적 동의를 부여한다고 조약이 규정하거나, 교섭국 간 합의 등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에 의한 서명에 따라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서명식장을 준비하고, 양측의 국가대표가 서명식장에서 만나, 서명한 양측의 조약문을 상호 교환하는 서명식을 거치고 있음.
- 반면, 동 협정 제7조(전자서명)는 '양국은 동 협정에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으며, 그 전자서명은 국제법상 조약의 수기 서명과 동일한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양해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서명 절차를 진행하였음.

- **(내용적 특성)** 우리나라 기체결 FTA상 전자상거래의 장(chapter)와 비교할 때, 동 협정은 보다 다양한 디지털통상규범을 채택하였음. 예컨대,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 소스코드, 인공지능, 핀테크, 디지털경제 표준 등의 조항은 동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규정됨.

2. 주요 조항

- **(제14.5조 관세)**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국경 간 전자적 전송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다만, 전자적 전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내국세, 수수료, 그 밖의 부과금 부과가 허용됨.
- **(제14.6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디지털제품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규정한 후,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자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정부보조금, 방송에 대해서는 비차별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정 및 한국-싱가포르 FTA 제17장(지식재산권)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의무와 불합치하는 한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함.[211]
- **(제14.7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양국은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국내법 체계를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및 UN 전자계약 협약 원칙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고,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
  - 특히, 전자거래상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자국법 개발시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제14.9조 물류)** 최종단계 배송(last mile delivery),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 운수수단을 활용한 물류, 연합물품 보관소(fererated locker) 등 새로운 배송방식과 물류 신산업에 대한 우수사례와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14.10조 전자송장)** 국제적 체제에 기반한 국내 전자송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국간 나아가 세계적으로 상호 운용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 채택을 위해 협력할 것을 규정
  - 기업의 전자송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원정책을 구축하고 기반시설을 마련하며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제14.11조 전자지급)** 전자지급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채택, 전자지급 인프라 간 상호운용성 및 연결성 증대, 전자지급 서비스 혁신 및 경쟁장려의 중요성을 인정함.
  - 나아가 인허가 절차 및 요건,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여 전자지급 관련 규제를 공개하고 적절한 기간 내 인허가 완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
  - 또한,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 서비스 및 인프라 접근에 대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간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금융기관 및 서비스 공급자 간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전자지급 메시지 관련 국제표준을 채택해야 함.
  -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 등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이용을 촉진하고, 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제3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경쟁, 새로운 전자지급 상품 및 서비스 도입을 촉진함.
- **(제14.14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비즈니스 과정상 일어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이 불가능함.

[211]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은 동 조항상 비차별대우 중 최혜국 대우를 제외하고 내국민 대우로만 한정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설시하는 부속서한을 추가하였음. 또한,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다만, 각국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고,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성취를 위한 금지나 제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 이 때 각국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제14.15조 컴퓨터 설비 위치)** 각국 내 사업수행 조건으로 당해 영토 내 컴퓨터 설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당사국 내 컴퓨터 설비 위치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

- 다만, 각국별 고유한 규제 권한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위한 요구는 예외적으로 인정됨.
- 이 때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제14.16조 금융서비스를 위한 컴퓨터 설비의 위치)**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보유한 정보에 관한 금융당국의 즉각적, 직접적, 완전하고 지속적 접근이 금융규제 및 감독에 있어서 중요함을 인정하고 관련 접근 보장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역외 컴퓨터 설비에서 처리되는 정보에 대한 즉각, 직접, 완전, 지속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개발, 채택, 이행 관련 경험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이와 같은 금융당국 정보 접근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자유롭게 역외 컴퓨터 설비 이용을 촉진하는 공동 이니셔티브를 개발 및 장려할 수 있음.

• **(제14.17조 개인정보보호)** 각국은 전자거래에 참여한 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법제를 채택 및 유지해야 하고, 관련 국내 법제 개발시 관련 국제기구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해야 함.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시 타국 국민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보호
- 전자거래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연인의 구제방안,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준수 방안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 공표 의무
-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 활용 또는 각국이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 간 상호인정 등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매커니즘 개발 장려

• **(제14.18조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의 상업적 이용을 조건으로 암호기법 관련 정보 이전 또는 관련 정보 접근, 자국 기업인과의 동업, 특정암호 또는 알고리즘 사용 강요 불가

• **(제14.19조 소스코드)** 상대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또는 이를 포함하는 제품을 국내로 수입, 유통, 판매, 사용조건으로 당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이전, 접근 또는 관련 알고리즘 접근 강요 불가

- 다만, 국내법령에 따른 수사, 조사, 검사, 사법/행정절차 등이 목적일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보존 또는 관련 기관이 이용하도록 요청 가능

〈 한국-싱가포르 디지털통반자협정(KSDPA) 부속서 가 〉

대분류	조항	조항명
일반조항	제14.1조	정의 (Definitions)
	제14.2조	범위 (Scope)
	제14.3조	정보의 공개 (Disclosure of Information)
	제14.4조	정보 공유 (Information Sharing)
디지털제품	제14.5조	관세 (Customs Duties)
	제14.6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디지털무역촉진	제14.7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Domestic Electronic Transactions Framework)
	제14.8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제14.9조	물류 (Logistics)
	제14.10조	전자송장 (Electronic Invoicing)
	제14.11조	전자지급 (Electronic Payments)
	제14.12조	종이서류 없는 무역 (Paperless Trading)
	제14.13조	특송화물 (Express Shipments)
데이터	제14.14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제14.15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제14.16조	금융서비스를 위한 컴퓨터 설비의 위치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for Financial Services)
	제14.17조	개인정보 보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기업과 소비자신뢰	제14.18조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제14.19조	소스코드 (Source Code)
	제14.20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제14.21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Online Consumer Protection)
	제14.22조	사이버보안 협력 (Cybersecurity Cooperation)
	제14.23조	온라인 안전 및 보안 (Online Safety and Security)
디지털경제 개방 및 혁신	제14.24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제14.25조	데이터 혁신 (Data Innovation)
	제14.26조	정부 데이터 공개 (Open Government Data)
	제14.27조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Competition in the Digital Economy)
기타 협력 및 대화	제14.28조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제14.29조	핀테크 협력 (FinTech Cooperation)
	제14.30조	디지털 신원 (Digital Identities)
	제14.31조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for Digital Economy)
	제14.32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SMEs and Startups)
	제14.33조	협력 (Cooperation)
	제14.34조	이해관계자의 참여 (Stakeholder Engagement)

- **(제14.21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온라인 상업활동상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또는 기만적 행위를 막는 소비자보호법을 채택,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유용성을 인정
- **(제14.22조 사이버보안 협력)**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관련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 담당 국가기관의 역량 구축, 악의적 침입 및 악성코드 대응시 기존 협력 매커니즘 활용, 상호 자격인정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분야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함.
- **(제14.23조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디지털 경제상 온라인 안전 및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
  - 온라인 안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문제관련 공동 대응책 발전을 위한 협력 노력
- **(제14.24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국내법령에 따라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접근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함.
  - 또한, 네트워크에 위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장치를 인터넷 연결, 소비자가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 관련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익 인정
- **(제14.25조 데이터 혁신)** 당사국은 규제 샌드박스 활용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고, 데이터 혁신에 도움을 주는 환경 조성 필요성을 인정
  - 규제 샌드박스 활용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 추진, 데이터 이전 관련 정책 및 표준개발, 데이터 혁신 관련 사례 공유 등 협력 노력
- **(제14.26조 정부 데이터 공개)** 정부 데이터에 대한 대중접근 및 사용 촉진의 유익함을 인정하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부 데이터가 적절한 방법으로 익명화되고, 서술적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며, 기계판독 가능한 공개형식으로 검색, 불러오기, 사용, 재사용 및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노력
- **(제14.27조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법 집행, 경쟁정책 개발, 이행관련 경험, 정보교환, 관련 공무원 인적교류 등 협력 노력
  - 양국 디지털 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
- **(제14.28조 인공지능)**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있는 인공지능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개발 중요성을 인정
  - 또한, AI 기술 사용 관련 규제, 정책 및 이니셔티브 관련 대화를 촉진하고 관련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을 위해 노력함.
- **(제14.29조 핀테크 협력)** 핀테크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고 핀테크 분야 기업인 및 스타트업 인재에 대한 협력 장려

3. 주요 의의

-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 무역절차를 전자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 아세안 디지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95.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1. 협정 개요

1.1 가입 국가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 한국 : 실질적 타결(2023.6월.)
  - 중국, 캐나다 : 가입절차 개시(2022.8월)
  - 코스타리카(2022.12월) 및 페루 가입의사 표명(2023.5월)

1.2 체결 배경

- 디지털 무역 주요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

1.3 발효 시기

- **(발효 시기)** 2021.1.7.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 기준으로 칠레의 경우에는 2021.11.23. 발효)

1.4 협정 특성

- **(형식적 특성)**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형식
  - 최근 등장하는 '디지털경제협정'이나 '디지털동반자협정'이 기존 FTA 전자상거래의 장(chapter)을 개정하거나 대체하는 일종의 개정의정서 형식인 것과는 달리, DEPA는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과 유사하게 독립적인 별도의 형태로 디지털경제에 특화된 협정임.
- **(내용적 특성)** 디지털무역협정상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소비자보호' 조항뿐 아니라, '디지털 신원', '데이터 혁신', '인공지능', '디지털 포용', '경쟁정책 관련 협력' 등의 조항이 DEPA에서 새롭게 채택되었음.
  - 참고로, 한국이 가입하면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의정서를 통해 9개 조항으로 구성되는 의정서가 추가되었음.

2. 주요 조항

- **(적용범위와 일반규정)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조항으로 당해 협정의 적용범위는 '디지털경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임
  - 정부권한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전자지급을 제외한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 수집관련 조치를 포함한 정보 관련 조치는 적용제외
  -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제3.4조(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이송), 제4.4조(컴퓨터 설비 위치)는 원주민 권리, 이익, 임무 및 책임 보호나 촉진에 필요한 조치는 적용제외
- **(제2.2조 종이서류 없는 무역)** 수입, 수출 및 경유에 관해 필요한 무역 서류 및 데이터 제출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각국이 일원화된 창구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무역 관련 서류에 관한 데이터 등 및 각 기업 간 상업적 무역활동에 사용된 전자적 기록 등의 교환을 지원하는 데이터 교환시스템 개발 노력 의무를 규정

• **(제2.5조 전자송장)** 관할권 내의 전자송장 관련 조치가 국경 간 상호운영 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에 기반하여 전자송장 관련 조치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당사국들은 상호 운용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 채택 촉진을 위해 모범관행을 공유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음.

• **(제2.6조 특송화물)** 전자상거래상 특송화물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각국 통관절차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특송화물 도착 전 화물 인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여 처리하고, 적하목록 등을 전자적 수단으로 일괄 제출하며, 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특송화물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과함.

• **(제2.7조 전자결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채택 및 사용촉진, 결제 인프라간 상호운용가능성 및 연결성을 증진하고 결제생태계에서 유용한 혁신 및 경쟁을 장려하는 방법을 통해 효율적, 안정적인 국경 간 전자결제 제도개발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각국의 법체계에 따른 전자결제 규칙 확립,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재표준 고려, 규제를 통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중요성 등에 관한 원칙에 동의함.

• **(제3.3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조항으로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임.

- 지식재산권,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한 보조금이나 무상교부, 방송에는 비차별대우 규정 적용 제외

- 다만, 2023.7.15.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의정서 발효일 전 서명된 국제협정에 따른 차별대우는 부과 가능

• **(제5.1조 사이버보안 협력)** 디지털경제를 사이버보안이 뒷받침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국은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 담당 국가기관의 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전자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성코드 배포를 식별하고 저지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 강화, 사이버보안 분야의 인력개발 등의 중요성을 인정함.

• **(제7.1조 디지털 신원)** 디지털 형태로 된 개인 및 법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상호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 및 글로벌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규정함

• **(제8.2조 인공지능)**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있는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강조함.

- 이를 위해 설명가능성, 투명성, 공정성 및 인간중심적 가치 등의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것을 규정

• **(제8.4조 디지털 경쟁정책)**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디지털 시장 내 경쟁촉진 모범 관행을 공유하며, 경쟁법 실시 및 정책 개발 강화를 위한 역량구축 등에 대한 공무원 교류 등 경쟁법 집행에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

• **(제9.4조 데이터 혁신)** 국경 간 정보 이전 및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 주도의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내법 보호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규제 데이터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이 촉진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 각국이 데이터 주도 혁신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 및 체제, 데이터 샌드박스 등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개념 입증에 대해 협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기타)** 분쟁해결을 규율하는 당해 모듈 중 의정서를 통해 부속서14가(분쟁해결의 적용범위)가 운영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부속서 1(이 협정에 대한 양해) 역시 운영종료되었음.

- 개정 전의 경우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제3.4조(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이송), 제4.4조(컴퓨터 설비 위치)에 대해서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상 분쟁해결절차 적용이 불가능하였지만 개정 의정서를 통해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 개정 전의 경우 부속서1(이 협정에 대한 양해)로 인하여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제3.4조(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이송), 제4.4조(컴퓨터 설비 위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못했지만 개정 의정서를 통해 당해 협정들로 인한 권리 의무가 유효하게 되었음.

3. 주요 의의

• 향후 FTA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디지털무역협정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과 함께 독자적인 디지털무역협정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선도적 조약으로 평가됨.

- 또한, 모듈 접근법이라는 파격적 형식을 통해 다자적 체재가 부족한 디지털무역규범의 외연 자체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도 동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이후 아태지역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모듈별 조항 구성 〉

모듈	모듈명	조항번호	조항명
모듈1	초기 조항 및 일반적 정의	1.1	범위
		1.2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
		1.3	일반적 정의
모듈2	기업과 무역의 원활화	2.1	정의
		2.2	종이서류 없는 무역
		2.3	국내전자상거래 체제
		2.4	물류
		2.5	전자송장
		2.6	특송화물
		2.7	전자결재
모듈3	디지털제품의 대우 및 관련 문제	3.1	정의
		3.2	관세
		3.3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3.4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모듈4	데이터이슈	4.1	정의
		4.2	개인정보보호
		4.3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4.4	컴퓨터 설비 위치
모듈5	신뢰제고 환경	5.1	사이버보안 협력
		5.2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모듈6	기업과 소비자 신뢰	6.1	정의
		6.2	스팸메일
		6.3	온라인소비자보호
		6.4	인터넷 접속 및 이용 원칙
모듈7	디지털신원	7.1	디지털신원
모듈8	최근 추세 및 기술	8.1	금융기술 협력
		8.2	인공지능
		8.3	정부조달
		8.4	경쟁정책 협력
모듈9	혁신과 디지털경제	9.1	정의
		9.2	목적
		9.3	공공영역
		9.4	데이터 혁신
모듈10	중소기업 협력	10.1	일반 원칙
		10.2	디지털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 및 투자기회 강화 협력
		10.3	정보 공유
		10.4	디지털중소기업 대화
모듈11	디지털포용	11.1	디지털포용

모듈12	합동위원회 및 연락처	12.1	합동위원회 설치
		12.2	합동위원회 기능
		12.3	의사 결정
		12.4	합동위원회 절차 규정
		12.5	본 협정 협력 및 이행
		12.6	연락처
모듈13	투명성	13.1	정의
		13.2	공표
		13.3	행정절차
		13.4	재심 및 불복
		13.5	정보 통지 및 제공
모듈14	분쟁해결	14.1	정의
		14.2	목표
		14.3	범위
		14.4	재심 및 불복
		14.5	중개
		14.6	중재
		14.7	법원의 선택
모듈15	예외	15.1	일반적 예외
		15.2	안보 예외
		15.3	와이탕기 조약
		15.4	재정 및 금융통화정책예외
		15.5	조세 예외
		15.6	국제수지균형 보호조치
모듈16	최종조항	16.1	수탁처
		16.2	발효
		16.3	개정
		16.4	가입
		16.5	탈퇴
		16.6	정보 비공개
		16.7	신뢰성
		16.8	부속서 및 각주
		16.9	전자서명

96.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ASEAN Electronic Commerce Agreement)

1. 협정 개요

1.1 가입 국가

• 아세안 10개국(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안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1.2 체결 배경

• 아세안 국가 간 디지털 무역 주요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

1.3 발효 시기

• 발효 시기 : 2021.12.3.(2019.1.22. 서명)

1.4 협정 특성

• **(형식적 특성)**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의 형식

-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은 DEPA 및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과 유사하게 독립적인 별도의 형태로 디지털경제에 특화된 협정임.

• **(내용적 특성)** 개도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협정으로 특정 국가의 유보나 해석선언 등이 추가되지 아니하였음.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조항도 다루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2. 주요 조항

• **(제2조 목적)** 아세안 역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거래를 촉진하고 아세안 지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아세안 지역 성장 및 발전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자상거래 개발 및 이용강화를 위하여 아세안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 **(제3조 범위)**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회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됨.

* 다만, 정부조달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함.

• **(제4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동 협정은 회원국이 당사국인 기타 어떠한 아세안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함.

- 동 협정과 기타 다른 아세안협정 간의 불일치시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아세안협정이 우선함.

• **(제5조 원칙)** 전자상거래 개발 및 촉진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법적 및 규제적 환경을 제공하고 경쟁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며 공공이익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함.

-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각 회원국의 법적 및 규제적 프레임워크는 국제적으로 채택된 모델법, 협약 및 원칙을 고려해야 함.

- 각 회원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장려해야 함.
- 기술중립성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회원국 간 정책 및 규제 접근방식의 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함.

• **(제6조 협력)** 각 회원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교육 및 기술역량, 온라인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법규 및 규제체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등 전자거래시 보안, 전자결제 및 전자분쟁해결, 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사이버안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물류 등에 관하여 협력함.

• **(제7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각 회원국은 2012.3.30. 캄보디아에서 체결된 아세안 세관협정 및 회원국이 당사국인 종이서류 없는 무역 관련 기타 국제협정에 따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전자문서 교환을 확대하고 촉진해야 함.

- 전자서명: 각국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다만,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의 경우 동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함.
- 전자인증: 전자거래 참여자로 하여금 전자거래를 위한 적절한 인증기술 및 이행모델을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인증기술 및 이행모델의 인정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전자거래 참여자가 자신의 전자거래가 각 회원국의 인증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가지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채택 및 유지하도록 함.
- 온라인소비자보호: 각 회원국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조치 및 소비자 신뢰발전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함. 각 회원국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관련 법령 및 정책에 의거하여 다른 형태거래 소비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함. 다만,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안마는 동 협정 발효 후 5년간 동 조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함.
- 국경 간 정보 이동: 회원국은 정보가 업무상 목적 및 관련 법규를 전제로 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국경 간 이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정보의 보안 및 기밀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안정장치 및 기타 합법적 공공정책 목표가 지시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정보의 이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국제적 전자상거래 촉진에 동의함. 다만, 이는 GATS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회원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유지해야 함. 다만,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이 제정된 날 이전에는 동 조항 이행을 요구받지 아니함.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발시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해야 함.
- 컴퓨팅 설비 위치: 회원국은 상호 교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회원국의 컴퓨팅 설비의 필요성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조건을 보유할 수 있음을 인정함. 회원국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어느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른 회원국의 인 및 그 계열사가 영토 내 컴퓨팅 설비를 위치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함. 다만, 이는 GATS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 **(제8조 사이버안보)** 모범사례 교환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자국 기관의 역량을 구축하고 사이버안보관련 사안에 협력하기 위한 현존하는 협력체제를 이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함.

• **(제9조 전자결제)** 회원국은 전자결재시스템의 용량, 인프라 및 규정 측면에서 각 회원국의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상호운용성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정함.

- 각 회원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상호운용가능한 전자결제시스템을 촉진해야 함.

• **(제10조 물류)**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국경 간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망 속도 및 신뢰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제11조 이해관계자 참여)** 회원국은 정보교환,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피드백, 제안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분야, 학술기구, 국제기구 및 기타 관련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으로 협력해야 함.

• **(제12조 국내규제 프레임워크)** 회원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협정 또는 모델법을 참고하여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규를 유지 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해야 함.

• **(제13조 투명성)** 회원국은 동 협정 운영과 관련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적용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공개하거나, 만일 신속한 공개가 어려울 경우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

- 각 회원국은 동 협정 운영과 관련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적용관련 조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여타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함.

• **(제14조 예외)** GATS 14조 및 GATS 14조 bis는 동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함.

• **(제15조 분쟁해결)** 동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2004.11.29.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서명된 '강화된 분쟁해결에 관한 아세안의정서(The ASEAN Protocol on Enhanced Dispute Settlement)가 적용됨.

- 다만, 이는 제6조(협력)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제16조 기구적 약속)** 아세안 고위경제관리회의(SEOM)는 동 협정의 이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

- SEOM은 아세안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아세안 전자상거래 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Electronic Commerce, ACCEC)와 공동으로 동 협정의 이행을 조정, 모니터링 및 검토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함.

- SEOM은 ACCEC가 제출한 통계보고서를 기반으로 동 협정 이행현황에 대하여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함.

• **(제17조 검토)** 회원국은 동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및 그 이후에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 3년마다 동 협정을 공동으로 검토해야 함. 이와 같은 검토에는 동 협정의 추가약속의 필요성도 포함됨.

3. 주요 의의

• 아세안 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세안 국가 간 원칙과 규칙을 수립하고자 한 점에 의의가 있음.

- 또한, 역내 전자상거래 관련 최신 규칙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지역적으로 통합된 디지털 경제를 향한 미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97.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 (EU-Japan Digital Partnership)

1. 협정 개요

1.1 체결 국가

- EU, 일본

1.2 체결 배경

- 제28차 EU-일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디지털기술, 무역 및 투자,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지속가능발전, 안보 등 양국 간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분야에 대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디지털파트너십을 채택

1.3 체결 시기

- 체결 시기 : 2022.5.12.

1.4 협정 특성

- **(형식적 특성)**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 동 디지털파트너십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본문에 명시하는 한편, 가입국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규정
- 내용적 특성 : EU의 디지털파트너십은 '디지털 나침반((Digital Compass)'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음. 따라서 디지털파트너십은 디지털 나침반의 네 가지 핵심 요소인 인프라, 기술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민관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한, 여기에는 디지털 무역 요소도 포함됨.
  - 디지털파트너십은 1년 주기로 운영
  - 기존의 디지털 정책 및 기타 부문별 대화, 전문가워크숍과 웨비나를 각료급 연례 회의인 디지털 파트너십 위원회로 통합할 예정
  - 디지털 파트너십 위원회는 디지털 정책을 실행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결과물을 검토할 예정임.

2030 디지털 나침반

- '2030 디지털 나침반: 디지털 시대를 향한 유럽의 길(2030 Digital Compass: the European way for the Digital Decade)'은 기술과 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4대 축을 포함하고, EU 역내 원칙과 규범 마련, 모니터링 제도와 지표 구축,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기술 프로젝트 추진, 국제적인 파트너십 강화 등 대내외 포괄적인 정책과제를 포함[212]

[212] 권현호 외4인,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p.54.

2. 주요 조항

• **(제1절 배경)** 2021.5.27. EU-일본 정상회의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협력 강화가 모색됨.

- 일본의 'Society 5.0' 비전은 2016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이버 물리적 공간을 고도로 통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경제적 진보와 균형을 이루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임.
- 또한, 일본의 국가 데이터 전략(2021)과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우선 정책 프로그램(2021)은 'Society 5.0'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고 데이터 이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Data Free Flow with Trust"(DFFT)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요구함. 이와 관련, 양국은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필수적이고 코로나 19가 DFFT의 필요성과 글로벌 회복에 대한 역할을 보여준 점을 인식하며 이러한 배경에서 신뢰를 증진시키는 기술은 국경 간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고, 프라이버시, 보안,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임.
- EU 데이터전략(2020)은 유럽의 가치관에 맞춰 국경 간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데이터 중심의 혁신이 사회에 포용되는 데이터싱글마켓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 지역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한편, EU 집행위원회의 2030년 '디지털 나침반 커뮤니케이션(Digital Compass Communication)'은 EU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의제를 홍보하고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요구
- EU 집행위원회의 '무역정책심의소통(Trade Policy Review Communication)'은 녹색·디지털 목표에 따라 EU 경제의 회복과 근본적인 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 2022.2.22. 승인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호주, 코모로, 인도, 일본, 모리셔스, 뉴질랜드, 대한민국, 싱가포르, 스리랑카의 공동선언"은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간 중심적 접근이라는 공동 비전을 표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 자유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양측은 EU-일본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SPA")과 일본-EU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의 맥락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함.
- 본 파트너십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재정적 부담이 없음.

• **(제2절 인간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위한 협력)** 기술의 설계·개발·거버넌스·활용이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 존중을 실현하는 디지털 경제의 긍정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비전이라는 의지를 공유

-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국경을 넘어 디지털 거래를 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며, 부당한 장벽을 제거하고, 온·오프라인 활동 차별을 방지한다는 공동의 목표 설정
- 디지털파트너십은 인프라, 기술,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디지털 전환의 주요 부분을 다루고자 함. 높은 수준의 사생활과 보안을 존중함으로써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를 강화
- 공통된 비전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유사 파트너국들에게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G7, G20, OECD, WTO와 같은 양자 및 다자간 포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EPA 챕터에 포함된 전자상거래에 대한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함.
- 디지털 솔루션도 기후변화와 싸우고 녹색 전환을 이루는 핵심인 만큼 강력한 디지털파트너십은 디지털 의제를 넘어 양국이 녹색동맹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임.

• **(제3절 디지털파트너십 구축)** 디지털파트너십은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공동작업을 촉진하고자 하며, 향후 협업을 위한 분야 및 가능한 결과물을 파악하여 매년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제공

- 매년 장관급 회의("일본-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설립할 예정
- 디지털 파트너십은 어느 일방의 법적 의무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디지털 정책 대화, 산업 대화, EU-일본 산업협력센터, EU-일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사이버안보대화, EPA 위원회, 전문가워크숍 등 기존의 협력 활동을 대체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가적인 행정부담이나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함.

• **(제4절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중점분야 공동 성과 달성)** 개인정보보호 부문에서 양측은 높은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인간 중심적 접근방식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신흥 기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영향,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정보보호 감독기관 간의 법 집행 협력 등에 대하여 추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 각국의 접근방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차세대 반도체 연구와 혁신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보조금 경합을 피하고자 함.
- 고성능 컴퓨팅 및 양자(Quantum) 기술에 대한 연구자 및 엔지니어 교류를 촉진하고 슈퍼컴퓨터 및 양자컴퓨터 인프라의 연구 커뮤니티 활용을 촉진하며, 공통의 관심사인 고성능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협력 강화 촉진
-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 사이버·물리적 보안체계(CPSF)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사이버안보 분야의 정보 교류와 협력 장려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국제적 활용을 앞당기기 위해 인공지능 원칙의 국제적 도입에 협력하고, G7, G20, OECD, 유네스코 등 국제포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입장을 조율
- 디지털 연결성 측면에서는 안전한 연결성을 도모하고, 해저케이블 착륙장소의 보안·신뢰·녹색 데이터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확보
-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시민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고,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공유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주요 규제 원칙과 효과적인 시행에 대한 협력 도모
- 데이터 관련, 신뢰 제고 기술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상호 이해 심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양측의 규제 자율성을 보전하면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부당한 장애물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 강화를 추구
- 신뢰를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사이버보안, 반도체 공급망, 5G·beyond 5G 기술, 고성능 컴퓨팅, 퀀텀 기술,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신뢰받는 기술, 인증, EU 5G 툴박스와 같은 제도의 역할을 인정
- 디지털 무역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무역 원활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고 무역과 투자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전 세계 동향과 관련해 각자의 접근방식을 협력하고 조율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의 디지털화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를 교환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 국제표준기구 내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와 관련한 협력관계를 구축
- 모범사례, 틀, 내용을 공유하고 공공부문 상호운용성 분야에서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웹/EU 디지털 신원 지갑(Trusted Web/EU Digital Identity Wallet)'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교환 등 디지털 신원 솔루션에 협력
- 국제 이해관계자 참여, 모범사례 공유, 규제 체계의 조화 가능성 모색 및 국제 블록체인 응용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rusted Blockchain Applications, INATBA)의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 수준 높은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모범사례, 콘텐츠 및 강좌를 공유

• **(제5절 성공적인 디지털 파트너십을 위한 모니터링)** 디지털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심화하고자 하므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및 경제 파트너십 계약이 중요

- 디지털파트너십 협의회(Japan-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는 달성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우선순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국으로부터 진행 보고서를 제공받게 됨.

※ 부속서 : 우선순위 목록

• **(반도체)** 공동 모니터링, 공급망의 차질에 대비한 정보 교환, 효과적인 조기경보장치, 위기대비, 장기 투자 전략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관계부처간 수출통제 조율을 달성하고자 함.

-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가치사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칩 설계, 자동차 및 전력 기술, 센싱 및 통합 광학 등 복합강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차세대 컴퓨팅의 미래 아키텍처를 가능케 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모색하고 오픈소스 하드웨어 설계, AI용 칩, 5G/6G, HPC, 반도체 통합기술 등 산업의 미래를 위한 연구협력이 관련 영역에 구축될 예정

• **(5G/5G이상)** EU의 경우, 스마트 네트워크 및 서비스(SNS) 공동 확약(Smart Network and Services Joint Undertaking)의 맥락에서 진행되며, 이는 선택된 파트너와 주제 협력을 위한 산업적 요구사항에 따라 추진될 것

- 특히 디지털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사항과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결 인프라 지속가능성 관련 진행상황 정보를 공유
- 개방적이고 상호운용성 있는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안 및 에너지 효율성 평가와 이를 위한 시험 설비 개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ICT 공급망 전반의 보안, 다양성, 상호운용성 및 탄력성 육성 노력
- 6G라는 공동의 글로벌 비전과 6G 표준화를 포함한 글로벌 6G 생태계의 자극을 위해 노력

• **(고성능 컴퓨팅(HPC) 및 양자 기술)** 각국의 슈퍼컴퓨터 접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슈퍼컴퓨팅 및 양자컴퓨팅 인프라, 특히 "Fugaku" 및 EU/EuroHPC, JU의 LUMI, Leonardo 및 MareNostrum 슈퍼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양국 연구원의 상호주의적 접근을 모색

- 미래 세대의 고성능컴퓨팅 플랫폼/아키텍처(pre-exascale, exascale, post-exascale, hybrid Quantum-HPC)에 공통 관심사인 HPC 응용프로그램의 최적화에 관한 정보를 교환. 그 출발점은 생물의학, 물질과학, 지진/지진해일 및/또는 날씨 및 기후 모델링과 관련된 응용분야를 포함

• **(사이버보안)** 인도-태평양 지역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보공유·분석센터(ISACs) 간 정보공유와 EU-일본-미국국 산업통제체제 사이버보안 교육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이버보안 조치가 거래에 부당한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

• **(인공지능)**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AI의 기본 원리 및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각자의 방식에 대한 상호 이해를 지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기술적 요건에 대한 협력을 모색

-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에서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상 협력을 추진

- G7, G20, OECD, 유네스코 등 국제포럼에서 AI에 대한 입장 조율 추진

- AI 글로벌 표준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 내 조율 노력

• **(디지털 연결)** 강력한 디지털파트너십의 기반이 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결성 연결을 보장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EU와 일본 간 연결 인프라(주로 잠수함 및 공간) 수준에서 현재 및 미래의 맵핑 기회를 추가적으로 모색.

- EU-Japan Connectivity Partnership의 산하에 제3국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연결성의 구축을 추진

• **(플랫폼 협력)** 안전, 경쟁 및 공정성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향후 정보 교환 및 플랫폼 규제 이행 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 정보공유를 넘어, 각자의 플랫폼 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하는 공통 보고 양식을 비롯하여, 혐오 발언 및 비공개, 알고리즘 증폭 등의 온라인 불법 및 유해 콘텐츠와의 싸움에 중점을 두는 절차 및 방법을 모색. 온라인 광고 시장도 미성년자 보호, 경쟁제한 우려 등 불법·유해 콘텐츠를 넘어선 이슈를 다뤄야 함.

• **(데이터 및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 (DFFT))** 양측은 정보보호 규칙 및 기타 공공정책 목표(공공보안 및 공공질서 포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디지털화의 이익을 실현하는 근본 방법임을 인식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혁신 및 연구를 발전시키고, 경제적 및 기술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상업적 기밀유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보호되는 공공부문 정보의 재이용에 대한 우려로 해당 국가 외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간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 노력

- 프라이버시, 사이버보안, 반도체 공급망, 5G·비욘드 5G 기술, 고성능 컴퓨팅, 퀀텀 기술,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EU 5G 툴박스와 같은 신뢰기술 인증 및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양측 기술전문가 간 의견교환을 촉진

• **(디지털 무역)** 종이서류 없는 거래, 전자 청구서 발행, 전자 거래 프레임워크 및 디지털 신원,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소스 코드 및 암호화 등 디지털 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EPA의 디지털 거래

원칙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모색

- **(산업의 디지털 전환, 혁신)** 관련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제조를 위한 AI 애플리케이션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교류를 지원
- **(표준화)** 국제 포럼에서의 표준화 협력을 위해 (i) INDICO 파트너십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표준을 홍보하고, (ii) 5G, 5G/6G 초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에 대한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며, (iii) 연구 및 혁신(R&I)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에 협력
  - 에너지·교통·건설·농업·스마트시티 등 주요 분야 디지털솔루션의 순환경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
- **(디지털 신원 및 디지털 서명)** 공공행정, 기업거래, 전자상거래의 핵심 주체인 신탁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
-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디지털 코로나 인증(DCC) 동등성 판단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함.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VDS-NC, SHC, EU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Digital Covid Certificate)에 기반한 다양한 접근방식에 대한 협력을 수반
- **(디지털 교육 및 기술 향상)**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실력을 향상시켜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일본 학교 및 기타 기관들은 EU "CodeWeek" 가입을 고려할 수 있음. '코드위크'는 EU 외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EU 풀뿌리 운동으로 코딩과 컴퓨팅 사고와 관련된 어린이가 참여하는 활동을 촉진하고 조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양측은 개인정보 관련 상호적절성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안전한 데이터 이동 영역이 형성됨.
  - 양측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과 정보보호 감독 당국 간 집행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

3. 주요 의의

-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된 이해 하에 규범을 기반으로 한 다자적 글로벌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명한 최초의 디지털파트너십이라는 점에 시사점이 있음.
  - 안전한 5G, "Beyond 5G"/6G 기술, 인공 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적용,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같은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공동협력을 위한 포럼이라는 의의가 있음.

98. 한국-EU 디지털파트너십 (Korea-EU Digital Partnership)

1. 협정 개요

1.1 체결 국가

- 한국, EU

1.2 체결 배경

-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발표한 이후,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구현을 위해 주요 파트너국과의 디지털 관련 협력체제 구축

1.3 체결 시기

- 체결 시기 : 2022.11.28.

1.4 협정 특성

- **(형식적 특성)**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 동 파트너십 제38조에서 디지털 파트너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어떤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대체하려는 의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
  - 나아가 동 파트너십은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각국의 법과 규제 테두리 내에서 이행되며, 자발적 협력에 기반하여 이행된다고 규정
- **(내용적 특성)**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인프라, 인적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
  - 이에 따라 공동연구, 반도체, 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협력,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

EU '인도-태평양 협력전략'과 디지털 파트너십[213]

- 각종 파트너십 전략은 EU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으로 EU와 무역 · 투자 규모가 크고 개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전략상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포용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214]
- 이 전략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법치주의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며, 무역과 투자에서 공정 경쟁, 개방적이고 공평한 환경 증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 기후변화 파리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목표를 위한 양자협력 및 다자간 협력 강화, UN과 브레튼우즈 제도 유지, 포용 정책 지지, 상호 증진적인 무역과 경제 관계 확립, 인구변화 대응이라는 8대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번영 (2) 녹색전환 (3) 해양 거버넌스 (4) 디지털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5) 연결성 (6) 안보와 국방 그리고 (7) 인류 안보를 7대 우선순위 분야로 제시함.
- 이 중에서도 '(4) 디지털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전략은 EU 디지털 대전환을 향한 2030 목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나침반(Digital Compass) 정책을 반영한 것임.

2. 주요 조항

- **(제1절 배경)** 2020.6.30. 개최된 한국-EU 화상 정상회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화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양측은 개정된 기본협정,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국-EU 과학기술협력협정(2006년)에 기반한 연구 및 디지털 정책 분야에서 오랜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밀접한 유대관계를 구축한바, 이에 이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간 중심의 접근에 관한 공동의 비전을 목표로 디지털 경제의 기회를 활용하는 열쇠로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
- **(제2절 디지털 사회 공동 비전 추진을 위한 연대)** 기술의 설계, 개발, 거버넌스,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산업혁신 필요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비전인 점을 공유함.
  - 양측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각자의 활동 및 국제적 파트너국들과의 활동에서 이같은 비전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
  - 공동의 비전을 전 세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파트너십을 뜻을 같이하는 다른 파트너국들까지 확장하기 위해 노력
  - 세계 디지털 경제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을 공유하며 G20, OECD, WTO 등에서 각자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채널 활동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
  - 기업과 시민에게 확실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국경 간 디지털 무역거래에 관여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며, 부당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 간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
  - 디지털파트너십은 인프라, 인적역량,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경제 및 무역 등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 협력 증진을 위한 전반적 체계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존중하며 소비자 및 기업 신뢰를 강화
- **(제3절 디지털 협력 강화 우선순위 분야에서의 공동 성과 달성)** 양측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오랜 협력을 바탕으로, 2014.6월 체결되었던 'ICT 및 5G 협력 공동선언문'을 계승 및 확대하고, EU의 연구 및 혁신을 위한 Horizon Europe 및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반도체, 고성능컴퓨터(HPC), 양자 기술, 5G/Beyond 5G 및 6G, 디지털 표준화 등 최첨단 기술 분야와 신흥 기술 분야에 있어 협동연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
  -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와 공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 및 복원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및 혁신 고도화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보조금 분야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보조금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는 FTA의 경쟁 장(chapter)의 약속을 상기함.
  - 고성능컴퓨터(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 대해 협동연구 증진, 고성능컴퓨터(HPC) 및 양자컴퓨터 관련 인프라의 상호 접근성 확대 및 사회적 관련성이 있는 응용기술의 공동개발 증진, 연구자와 전문가, 학생 등의 인적 교류 장려, 국제표준 정의의 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

[213] 권현호 외4인,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p.54.
[214] European Commission(2021c),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 팬데믹과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국제적 사이버안보 협력 도모
- 응용, 표준, 활용례, 상호운용성 및 지속가능성 등 Beyond 5G 및 6G 생태계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또한, 6G 기술·융합 서비스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협동연구, 6G 주파수 수요 정보 공유, 6G 기반의 이종산업 융합 등 생태계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증진, 국제 행사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
- 디지털 인프라 확충, 디지털 역량 강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한 기술 개발을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며, 서로의 훈련 프로그램 및 연구자 교류 참여 독려 등 협력 활동 증진
- 인공지능 원칙과 각국 관할 내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인간 중심적인 인공지능의 개발과 세계적 활용 촉진을 목표로 수립
- 서로를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성장에 대응하는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여 혁신, 안전, 공정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
-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
- 데이터 관련 법률 및 체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며, 기존의 적정성 대화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규제의 접근법과 수단 간의 공통성, 상호보완성, 수렴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 나가고자 함.
- 각각의 규제 자율성을 보존하면서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사안에 대해 협력할 예정
- 디지털 통상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성을 공유하고 일련의 디지털 통상 원칙에 반영될 디지털 통상 촉진에 관한 협력 관계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
- 무역과 투자 흐름을 저해하는 세계적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동향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협력 및 조율을 목표로 함.
- 디지털 기술은 중소기업(SME) 및 스타트업이 혁신, 성장 및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요소임. 따라서 양측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각각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협력할 방법을 검토하고자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의 디지털화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지원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모범사례 교환
- 한국-EU 디지털파트너십 협의회에서 협력 분야 및 성과물로 논의된 모든 주제 및 사안에 대해 형태나 종류에 무관하게 협력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주제 목록은 한국-EU 디지털파트너십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갱신될 것임.

• **(제4절 디지털파트너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양측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며, 장관급 연례 회의로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

- 디지털파트너십 협의회는 1년 주기로 번갈아 개최될 예정
-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럽집행위원회(정보통신총국)는 디지털파트너십 사무국으로써 각각의 위치에서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활동 조율

※ 부속서 : 우선순위 협력 과제

- **(협동연구)** 고성능컴퓨터(HPC), 양자기술, 6G, 디지털 표준 및 기타 신진기술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EU의 Horizon Europe의 연계를 통해 한국-EU 협력 활동을 지원
  - 디지털파트너십은 산업 현안에 대한 합작사업(joint undertaking) 등을 통해 추가적 협동연구 활동 수행 기회를 제공
-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공정, 혁신적 전력전자, 이종 집적화 등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동향에 대해 반도체 연구자 간 논의할 수 있는 '한국-EU 연구자 포럼' 신설 추진
  - 조기 경보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격차 및 잠재적 공급망 차질 파악에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산업 정책 정보 공유 및 관련 당국 간 수출통제 조정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
  - 신뢰할 수 있는 반도체 및 칩 보안에 대한 국제표준화 시너지를 모색하고, 다자간 이니셔티브 내에서 이 같은 공동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고성능컴퓨터(HPC) 및 양자기술)** 고성능컴퓨터(HPC) 및 양자 인프라에 대해 자국의 우수한 연구자, 기술자 및 학생들의 상호 접근성을 높여 활용성을 증진
  - 고성능컴퓨터(HPC) 분야 프로세서 기술 및 컴퓨팅시스템, 양자센서, 양자통신(QKD, 양자인터넷), 양자기술 분야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협동연구 활동을 추진
  - 양자기술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학회 세미나 또는 포럼 등을 통해 우수한 연구자, 기술자 및 학생의 교류를 촉진하며, 국제표준화에 대한 협력 증진
  - 양자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분기 중으로 양자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 구성
- **(사이버안보 및 신뢰)** 사이버안보 위협 및 양측에게 가치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
  - 민간 분야의 관여를 통해 제3국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간 MOU 체결 등의 협력 방안 포함
- **(Beyond 5G/6G)**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는 당사자는 EU 측에서는 '스마트 네트워크 및 서비스 합작사업기구(The Smart Networks and Services Joint Undertaking, SNS JU)', 한국 측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임.
  - 양측은 각각의 유관기관에 의해 조직되는 체계적 대화채널을 통해 6G 로드맵과 향후 6G 주파수 수요에 대한 의견교환
  -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향후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의 입장을 논의하고 공유
  - 양측이 개최하는 6G 관련 행사에 공무원, 연구자, 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 초청을 통해 정기적 참석
  - 3GPP에 의한 단일 글로벌 6G 표준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협력 심화
-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ICT 분야에서 젊은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한국의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VET) 기관들은 청년층이 코딩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컴퓨터적 사고의 기본을 완전히 익힐 수 있도록 돕는 EU의 풀뿌리 이니셔티브인 "CodeWeek"에 참여
- **(인공지능)**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각자의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각의

정의, 활용례, 고위험 인공지능 응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

- 양측은 국제 표준화 기구 및 GPAI, OECD 등 관련 협력채널에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협력

•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경제 내에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기업들에게 공정성 및 경합성(contestability)을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정책 분야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

- 사례조사, 시장 조사, 공동 학술활동 및 협동연구, 비규제적 모범사례의 개발(예: 알고리즘 투명성 등) 등의 협력방안이 포함

- 궁극적으로 각각의 규제 자율성(regulatory autonomy)을 유지하는 한편 각각의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구조적인 집행 협력 모색

- 양측은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하며, 글로벌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우며 상호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에 대한 비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전세계적 존중을 심화시키는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모델에 대한 비전을 실천하는 방식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양측은 디지털화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보호 규칙과 치안, 공공질서 등을 포함한 기타 공공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국경 간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인지

-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현재의 적정성 결정에 기반하여 데이터 보호 규칙의 융합을 촉진하는 등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역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며, 데이터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양측은 디지털 신원 솔루션에 관해 협력하고 활용례 및 전자 서명과 같은 신뢰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협력 노력

• **(디지털 통상)** 양측은 한국-EU FTA를 바탕으로 향후 구축될 일련의 디지털 통상 원칙에 반영될 디지털 통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종이서류 없는 무역, 전자 송장, 전자 거래 프레임워크 및 디지털 신원, 온라인 소비자 보호, 소스코드 보호, 암호화 기술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자 함.

- 양측은 제3국이 채택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접근방식을 조정하기 위해 논의하고자 하며, 적절한 경우 정보 공유

99. EU-싱가포르 디지털파트너십 (EU-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1. 협정 개요

1.1 체결 국가

- EU, 싱가포르

1.2 체결 배경

- EU-싱가포르 FTA 차원에서의 협업 방편으로 양국은 디지털 영역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 수립을 위해 디지털파트너십을 체결

1.3 체결 시기

- 체결 시기 : 2023.2.1.

1.4 협정 특성

- **(형식적 특성)**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 동 파트너십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도출하지 아니하고 재정적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내용적 특성)** EU-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디지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임. 특히 무역 촉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혁신, 디지털 신뢰, 표준, 근로자를 위한 디지털 기술, 비즈니스 및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이 포함됨.

- 또한, 5G/6G, 인공 지능, 디지털 신원 확인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에서 공동 노력의 기회를 창출할 것임.

2. 주요 조항

- **(제1절 배경)** 디지털 전환은 삶의 모든 면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양국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미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마련

- 양국은 디지털 규범과 표준을 구체화하고 상호운용성을 위해 협력고자 함. 2020년 12월 1일자 연결성에 관한 EU-아세안 통합 장관 성명(EU-ASEAN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Connectivity) 및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도 뜻을 같이하고 있음.

- 2022년 2월 22일자 인도-태평양 협력 포럼(Ministerial Forum for Cooperation in the Paris in Indo- Pacific)에서 발표된 EU, 싱가포르 등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은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간 중심적 접근(human-centric approach)의 공통 비전을 제시함.

- **(제2절 디지털 전환의 발전을 위한 협력)** 양국은 다자주의, 자유무역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및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견고한 경제 파트너십은 EU-싱가포르 FTA 및 EU-싱가포르 투자보호협정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음.

- 양국은 EU-싱가포르 FTA의 일환으로 양국 간 무역 파트너십을 디지털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해 EU-싱가

포르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함

- 디지털 파트너십은 디지털 시장과 정책 체계의 연결성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체제임. 디지털 이슈 전반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임
- 양국은 기업과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디지털 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며,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온·오프라인 활동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공유

• **(제3절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구축)**

- 디지털 파트너십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대화와 정보 교환, 더 나아가 상호 관심 분야의 공동작업을 촉진, 조직하고자 함. 이를 위해 EU-싱가포르 FTA 위원회, 전담 전문가 워크숍 등 기존 협력 체계를 대체하거나 중복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가적인 관료 부담이나 과도한 조정 비용을 초래해서는 아니됨.
-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협업을 위한 분야 및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인 "EU-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함. 동 협의회는 디지털 파트너십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정치적 지침을 제공
- 디지털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핵심이며,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과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디지털 파트너십 대화의 일환으로 조직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파트너십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음.

• **(제4절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중점분야 공동 성과 달성)** 양국은 우선 분야에 대하여 공동협력하고, 부속서에 기술된 초기 공동작업을 개시하고자 함

- 디지털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와 무역행정 및 상업문서의 인정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협력을 추구하고자 함. 또한, 정책과 규제 자율성을 수호하면서도 개방적이고 연결된 디지털 시장을 유지하고 디지털 무역과 투자 흐름에 대한 부당한 장벽 해소를 목표로 함
- 디지털 연결성과 관련하여, EU와 아세안 간의 연결을 위한 데이터 센터 및 해저 통신 케이블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구축,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한 환경 조성
- 5G와 5G 서비스 도입에 대해 교류하고자 함. 또한, 싱가포르의 5G/6G 미래 커뮤니케이션 R&D 프로그램 및 유럽연합 내 공동 관심사의 활용 사례를 모색하고 R&D 파일럿에 대한 협력 및 교류를 개발할 계획
- 국경간 데이터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 자유로운 흐름을 강화하는 작업, 개방적 정부 데이터 활용 등 연구 데이터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음. 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활용에 대한 협업도 모색
- 사이버보안 분야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촉진의 중요성을 인식함. 양측은 관련 있는 국제 표준 제정 기관의 체제를 고려하여, 사이버보안 인증 및 기술 중립성, 객관성, 개방성, 투명성 및 상호 운용 가능한 사이버보안 표준 분야에서 협력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글로벌 보조금 경쟁을 피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탄력성에 기여할 민간 투자를 장려
-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AI에 대한 우수성과 신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행정적 부담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 및 향후 EU

와 싱가포르 간의 국제 협정에 따른 상호 인정 약정의 추가에 따라, 적절한 경우 양측이 상호 호환 가능한 접근방식을 모색하는 상호 인정이 추진가능. 양측은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GPAI") 및 기타 국제 포럼 내에서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AI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실질적인 이니셔티브에서 입장을 조율하고자 함. 양측은 연구자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AI 테스트베드 협력 기회를 모색

-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시민에게 안전하게 보급하고,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공유하고 있음. 양측은 주요 원칙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보다 큰 조율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구조 및 규제에 대한 당사의 각 접근방식에 대한 정보를 교환
- 전자서명 등 신탁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이용 사례 및 시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한편 디지털 서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비롯해 디지털 신원 확인 솔루션에 대해 협업
-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
- 디지털 기술은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며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므로 양측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각 시책별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우수사례와 콘텐츠, 강좌를 공유하고 인력과 ICT 전문가, 여성을 위한 디지털 스킬 등 디지털 교육훈련 분야에서 대화를 추진 예정. 이는 인간 중심의 비전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싱가포르와 EU에서 수준 높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경제의 호환성, 상호운용성,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STRACA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에 STRACAP를 적용함에 있어 EU와 싱가포르 간의 정보 교환 및 투명성뿐만 아니라 국가간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인식
- 우선과제 리스트는 양국의 기존 협업과 협력이 가시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것임. 이는 EU-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될 예정

• **(제5절 성공적인 디지털 파트너십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및 이행)**

- 디지털 파트너십의 활동과 결과가 기업과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을 주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디지털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심화하고자 함
- EU-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디지털 파트너십은 기업들에게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디지털 경제로부터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 전반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 부속서

• **(디지털 무역)**

- EU-싱가포르 FTA의 디지털 무역 원칙을 확립하고, 종이서류 없는 거래, 전자 송장, 전자결제, 전자거래 프레임워크, 디지털 신원, 디지털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메일, 사이버 보안, 소스 코드 및 암호 보호 등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공통의 이해를 모색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에 기반한 무역 문서 디지털화를 위한 개방 체제의 개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이러한 개방 체제의 사용을 촉진 및 고도화하는 새로운 계획에 협력
- 국경간 전자송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전자송장 방안을 파악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프

레임워크(특히 PEPPOL)의 활용을 모색

- 정책과 규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개방적이고 연결된 디지털 시장을 유지하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

• **(디지털 연결)**

- 데이터센터와 해저통신케이블을 포함한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이러한 노력에는 (a)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각 접근방식의 정보 공유, (b) 해저통신케이블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치, 유지 및 보수 촉진, (c) 네트워크 및 해저케이블 정전 관련 정보공유체계의 필요성 평가가 포함

• **(5G 초과)**

- 6G라는 공동의 글로벌 비전과 6G 표준화를 포함한 글로벌 6G 생태계의 촉진을 위해 노력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 신뢰할 수 있는 국경간 데이터 흐름이 정보보호규칙 및 공공보안 및 공공질서를 포함한 기타 공공정책 목표를 준수하도록 노력. 모범적인 데이터 보호 계약 적용 및 지도를 통한 협력 증진 노력 포함
- 공통 데이터 공간 개발, 개방적 정부 데이터 활용, 과학 정보에 대한 개방적 접근성, 데이터 이동성에 관한 정보 교환
- 산업 및 연구 협업을 위한 분야를 파악하는 등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

• **(사이버보안)**

- 사이버보안 규제 체계 및 기술 표준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증진하고자 함. 양측은 사이버보안 인증 및 표준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행정 부담 및 준법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및 양측이 호환 가능한 접근방식이 있는 경우, 잠재적인 상호 인정 약정을 모색
- 유엔을 비롯해 국제포럼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추진해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며 접근이 가능하며 평화로운 ICT 환경 개발 추진
- 글로벌 번영을 위해 디지털 무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이버보안 조치가 거래에 부당한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됨을 인식

• **(공급망 회복력: 반도체)**

- 싱가포르의 물류 허브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급망 모니터링, 공급망의 차질을 대비한 정보 교환 및 효과적인 조기 경고 메커니즘에 대한 협력
- 다자 주도 하에 민간부문이 긴밀히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급 패키징, 특수 반도체 및 사이버보안 테스트의 가능성을 모색

• **(인공지능)**

- 양측은 AI 거버넌스, AI 표준 및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운용성을 장려
- AI 테스트 협력, AI 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싱가포르, 아세안 및 EU 전역의 국경간 접근 지원, AI 기술의 신뢰도, 투명성 등 AI에 대한 협업 연구 등을 모색

• **(온라인 플랫폼)**

- 양측은 플랫폼 거버넌스와 규제 분야에서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조
- 보다 안전하고 인간 중심적인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유해 콘텐츠를 줄이기 위해 정부, 당국, 온라인 플랫폼 등이 채택할 조치관련 원칙을 논의하고자 함.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적 확실성,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 시민사회 권력 강화 방안도 논의하고자 함.

• **(디지털 신원 및 전자 인증)**

- 양측은 공공행정, 기업거래, 전자상거래의 핵심 주체인 SingPass와 EU Digital Identity의 향후 상호 운용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 양측은 디지털 신원 정책 및 규정, 기술 시행 및 보안 기준, 디지털 신원 사용 촉진과 관련된 모범 사례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교류하고자 함
- 디지털 신원 상호인정을 위한 활용 사례를 파악하여 시행함으로써 디지털 신원 제도 간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 클러스터 협력 및 디지털 이노베이션 허브 등 우수사례에 대한 교류
-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협력 구축 등 중소기업 역량구축 협력을 모색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성숙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교환
- 디지털 도구·기술 활용에 있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본·신용 접근성 제고, 정부조달 기회 참여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디지털 무역에 적응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 계획
- 디지털 미래에 중요한 디지털 교육 및 기술 향상
-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여 모두가 디지털화로부터 이익을 얻고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모
- 특히 인력 및 ICT 전문가들의 디지털 기술 향상을 위해, EU 디지털 기술 및 일자리 연합과 같은 역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모색
- 청년창업자를 위한 국경 간 멘토십 네트워크 개발 모색
- 양측은 기술 인재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국경 간 인재 네트워크 개발 가능성도 모색

• **(금융 부문 디지털화)**

-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접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디지털 금융 개발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자 함
- 양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채택을 장려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적합성 평가 결과의 국제적 인식을 촉진하고자 함
- 양국은 (a) 공통 기준을 전세계적으로 홍보 (b) 5G/6G, 사물인터넷(IoT), AI 및 디지털 정체성을 넘어 5G에 대한 글로벌 목표와 비전에 기여하고 (c) 연구 및 혁신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에 협력하고자 함
- 양국은 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교통·스마트시티 등 주요 분야 디지털솔루션의 환경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100.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 협상

1. 협정 개요

1.1 체결 목적

- 디지털무역 규범에 대한 다자체제 수립 추진

1.2 체결 배경

- 처음으로 WTO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가 개시된 것은 1998.2월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에 전자적 전송시 무관세화와 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부터임.
- 1998.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언문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 정식으로 채택되며 전자상거래 논의는 본격화됨.
  - WTO 회원국들은 동 선언문을 통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계속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는 향후 작업 계획의 진전에 따라 추가적으로 논의[215]하자고 약속
  - 그러나, 디지털 교역의 대상물을 상품에 분류할지 서비스에 분류할지와 같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 1998.9월 WTO 일반이사회는 'WTO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개략적이나마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 개발에 관련된 이슈'를 논의에 포함시키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지식재산권이사회 및 무역개발위원회[216] 별로 전자상거래 관련 주제를 나누어 각각 논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그 이후인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WTO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지속하는 것에 합의하고, 국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과 포괄적인 무역 및 개발을 위해 창출되는 기회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지만, 전자상거래 관련 구체적 규범 합의는 상당 기간 지체되었음.
-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MIKTA[217] 및 '개발을 위한 전자상거래 프렌즈 그룹(Friends of E-commerce for Development, FEDs)'[218] 등 신규 그룹이 생겨나며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미국, EU, 일본 및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자국의 의견을 개진하고 WTO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

[2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18, p.5, 동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도하, 2005년 홍콩, 2009년 제네바, 2011년 제네바, 2013년 발리, 2015년 나이로비, 2017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각료회의시 모두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에는 합의한 바 있다고 한다.

[216] 특히 무역개발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무역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도국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다자무역체제에서 개도국 통합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 및 전자상거래가 개도국의 상품 유통을 위한 전통적 수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217] 외교부 홈페이지, Mikta란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5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초지역적인 (cross-regional) 협의체이다. 한국 정부의 중견국 외교 추진을 위한 핵심 기제 중 하나인 Mikta는 2013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제1차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공식 출범하였고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협력체로 활동하고 있다.

[218]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등 개도국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모임이다.

TiSA와 WTO 전자상거래협상

- 미국과 호주가 주도한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은 2013년 처음 개시되었음.
- 동 협상은 WTO 복수국간 협상으로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EU, 일본, 한국 등이 협상국으로 참여하게 됨.
-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와 같이 서비스 교역이 활발한 주요 개도국들도 참여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음.
- 미국은 동 협상을 통해 단순히 기존 서비스 무역 규정에 대한 추가 합의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교역에 관하여 별도의 부속서를 추가할 것을 주장함. 특히, TiSA에서도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온라인 소비자 보호, 상호 운용성 등 디지털무역규범을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함.
- 따라서, 디지털 교역 관련 각종 신규 규범들을 TiSA 협상에서 별도의 부속서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체화[219] 하고,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투명성, 국내규제 및 특정 섹터별로 각각 제안된 부속서에 의하여 보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2016.11월 동 협상의 중단과 함께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음
- 그러나, TiSA를 통해 제안된 바 있는 각종 주제들이 추후 발전되어 미국이 주도하는 TPP나 USMCA 등 지역무역협정에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2019.5월 공식 개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1.3 체결 추진

- 2019년 세계경제포럼 계기 비공식 장관회의에서 75개국이 WTO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 협상 개시를 선언.
- 2019.5.14. 일본, 호주 및 싱가포르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총 77개 국가[220]가 참여한 복수국간 협정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
  - 공식적으로 개시된 동 협상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방안, 소비자 보호, 투명성, 비차별 의무 및 책임 등 매우 폭넓은 범위의 논의가 개시.
  - 한국 역시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동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22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병행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우리 기업이 디지털 무역을 선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표한 바 있음.[222]
- 2023.2월 기준, 협상 참가국은 총 89개 회원국에 달하고 있고, 호주, 일본 및 싱가포르가 의장국임.

[219] TiSA, Annex on Electronic Commerce, undated (2016.11월), http://www.bilaterals.org/?tisa-draft-annex-on-electronic-32465 (2019.5.26. 최종방문).

[220] WTO 사무총장 로베르토 아제베도, 연설문, WTO (2019.5.23.), https://www.wto.org/english/news_e/spra_e/spra264_e.htm (2019.5.26. 최종방문), 동 연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의 90%를 대변하는 총 77개 국가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 개시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221] 한국은 2019.5.9.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6.8.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되어 있다.

[222] 파이낸셜 뉴스, "홍남기,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식 참여", (2019.4.8.) http://www.fnnews.com/news/201904081321463898

2. 주요국의 입장

2.1 미국

- 미국[223]은 디지털 교역이야말로 글로벌 경제성장의 실질적인 발동을 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미국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기업들이 이제까지 실제로 디지털 교역의 장애물로 부딪혀야 했던 문제점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 수립을 통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및 기업 모두에게 상업적으로 중요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1)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2) 디지털 제품의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3) 재산적 정보(Proprietary Information) 보호, 4) 디지털 보안, 5) 인터넷 서비스의 원활화, 6) 경쟁적인 통신 시장, 7) 무역 원활화로 주제를 구분하여 제안

1) 미국은 자국의 제안 중 가장 핵심 이슈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내세우고 있음. 미국은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보 이전이 가능하도록 보장될 경우 경제 모든 분야를 걸친 포괄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제규범 수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음. '

2) 미국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대우 및 제품이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배포될 경우를 위한 디지털 제품에 관한 비차별 대우원칙을 포함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공정대우' 의무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3) 미국은 원시 코드 보호, 강제적인 기술이전 금지, 차별적인 기술요건 금지 등 '재산적인 정보 보호' 부분에 대한 규범 수립을 제안함. 디지털 교역 기업들이 컴퓨터 원시 코드, 알고리즘, 영업비밀 등 각종 재산적인 정보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상, 시장접근을 허여한다는 미명 아래 각종 정보를 경쟁 업체에게 이전하거나 공개하는 조건을 내걸 수 없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4) 미국은 디지털 네트워크, 데이터 및 거래상 안보가 기업 및 소비자들의 주된 고민인 이상, 암호화(encryption) 및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규범을 수립하자고 제안

5) 미국은 디지털 관련 시장접근 약속, 공공 정부 데이터(open government data), 비지식재산권(non-IP) 콘텐츠에 대한 책임 등 '인터넷 서비스 원활화'를 위한 규범을 수립하자고 제안

6)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디딤돌은 '경쟁적 통신서비스 시장'을 조성하는 것임을 유념하고, 경쟁 보장장치, 투명한 허가제 운영 및 할당,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정 등을 기반영하고 있는 WTO 정보통신 참조문서(telecommunication reference paper)[224]를 각국이 자국 GATS 양허표에 반영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신서비스 투자자 및 국경 간 공급자들에게 시장접근을 허여하여야 한다고 주장

7) 미국은 디지털 교역이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를 촉진시키므로, WTO 무역원활화협정에 포함된 규정들이야말로 디지털 교역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음

[223]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the U.S.", INF/ECOM/5 (2019.3.25.) 이하는 미국의 제안서를 필자가 정리하였다.

[224] 강하연, "한미 FTA IT 분야 타결 내용 및 시사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슈리포트. Vol. 2007 No. 8, 2007, 이에 따르면 1997년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 당시 채택된 참조 문서상 조항들을 지역무역협정인 FTA 등에서 수용하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 기본통신협정 참조문서는 통신부속서에서는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아니한 기본통신서비스 관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필수설비 및 주요사업자의 정의를 내리는 한편, 경쟁보장장치, 상호방문, 보편적 서비스, 허가기준의 공개, 독립규제기관, 희소자원 할당, 경쟁보장장치, 공중통신사업자의 상호방문 제공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2.2 EU[225]

-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규범, WTO 통신서비스에 대한 개정, 각국의 기존 양허 개선을 위주로 하는 시장접근 요청 등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안

- EU는 이 중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규범'과 관련하여 1) 전자 계약, 2)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 3) 소비자 보호, 4) 스팸메일, 5)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6) 원시 코드의 이전 및 접근, 7) 국경 간 데이터 이동, 8)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9) 인터넷 접근권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 문안을 제안

2.3 중국[226]

-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래로 '개발을 위한 전자상거래 프렌즈 그룹(Friends of E-commerce for Development, FED)'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으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게 도움을 주고 이들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섭시킴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함을 금번 전자상거래 협상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

- 중국은 총 4가지의 활동영역을 제안하고 있음. 1) 전자상거래상 무역 관련 측면의 정의 및 향후 수립될 전자상거래 규범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 2) 전자상거래의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3) 전자상거래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것, 4)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개발 협력을 촉진하는 것

- 중국이 금번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의제는 시장접근이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위한 비차별 대우원칙보다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 무역 원활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

- 각국이 적절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중국은 미국 등이 주장하는 데이터의 이동이나 데이터 저장, 디지털 제품에 대한 대우 등의 이슈들은 대단히 복잡하고도 민감함과 동시에 회원국별로 이에 대하여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이슈들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영향과 결과를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경계.

[225]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EU", INF/ECOM/22 (2019.4.26.), 이하는 EU의 제안서를 필자가 정리하였다.

[226]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China", INF/ECOM/19 (2019.4.24.), 이하는 중국의 제안서를 필자가 정리하였다.

〈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227] 〉

구분	소구분	내용
Section A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거래 원활화	-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제 - 전자인증과 및 전자서명 - 전자계약 - 전자송장 - 전자지급서비스
	디지털무역원활화 및 로지스틱스	- 종이서류 없는 무역 - 미소마진 및 세관절차 - 싱글 윈도 정보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 - 로지스틱스 서비스 - 상품반출과 통관을 위한 기술 사용 - 무역원활화 지원 서비스
Section B 개방과 전자상거래	비차별 및 책임	-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책임제한 -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침해
	정보의 이전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 컴퓨터설비의 위치 -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인터넷과 정보 접근	- 공공데이터 개방 - 인터넷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 양방향컴퓨터 접근과 사용 - 경쟁
Section C 신뢰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 온라인소비자보호 - 원치 않는 상업 전자메시지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보호
	비즈니스 신뢰	- 소스코드 -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Section D 공통이슈	투명성, 국내규제 및 협력	- 투명성 - 무역 관련 정보의 전자적 가용성 - 국내규제 -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 역량 강화 - 기술 지원
Section E 통신	통신서비스에 대한 WTO 참고문서 업데이트	- 범위, 정의, 경쟁적 세이프가드, 상호연결, 보편적 서비스, 라이선싱과 인증, 통신규제기관
	네트워크 장비 및 제품	-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장비 및 상품
Section F 시장접근	서비스 시장 접근, 임시 입국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인원 부족, 상품 시장 접근	
부속서	서문, 정의,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일반적 예외, 안보 예외, 건전성 조치, 조세, 분쟁해결, 전자상거래의 무역측면 위원회	

[227] 이규엽, 강민지,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3월 p.5.

협상 의장국 공동성명(2023.1.20.)[228]

- 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해 WTO 전자상거래협정 협상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경제에서 창출될 새로운 가치의 약 70%는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디지털 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 도전적인 지정학적 환경,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비즈니스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은 물론 거래의 성격과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국제 무역규범은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현실을 반영하고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JSI의 공동 의장단과 참가국들은 디지털경제 규율을 위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바임. 특히 동 협상은 WTO 협정을 업데이트하고 WTO 협상기능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
- JSI 협상 모멘텀이 계속 구축되는 중으로, 2022년 12월 종이서류 없는 무역, 전자 계약,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 메시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방형 정부 데이터, 개방형 인터넷 액세스, 투명성, 사이버 보안, 전자 거래 프레임워크 등 10개 조항을 통합한 문안을 발표함.
- 또한, 암호화를 사용하는 개인 정보 보호 및 ICT 제품 등에 대한 소규모 협상 그룹을 구성하여 협상 진전을 도모하는 한편, 전문, 정의, 원칙을 다루는 일반 조항과 같은 수평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함.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 및 소스 코드 등과 같이 데이터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는 조항 및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희망함. 이러한 모든 이슈는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협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228] 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commerce: Statement by Ministers of Australia, Japan and Singapore, https://www.meti.go.jp/press/2022/01/20230120002/20230120002-3.pdf 20 January 2023

교재집필위원 (가나다順)

고보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서 통상협상,통상정책 및 디지털통상(Digital Trade)와 무역과 성평등(Trade and Gender) 분야를 주로 연구 중이다.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통상트랙 전임교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및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2022년부터 산업부 '디지털통상 학부수업 지원사업' PM으로 연속 참여 중이며,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협정분과 전문가풀 소속이다.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주관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FTA 협정 및 법령' 출제교수이자 인천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스마트도시 서비스분과'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곽동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법 및 통상정책 전공으로 국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디지털통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정책입안자, 학생, 일반 대중에게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과 집필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통상을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의 모임인 Digital Scholars Network의 일원이기도 하다.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부터 산업부에서 통상협상본부장을 자문하고 있으며 학부 외교통상학 협동과정 및 글로벌인재학부 국제통상 전공 책임교수(학과장)을 역임하였다.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에 저자로 참여하였으며 다수의 기술무역장벽과 디지털 통상 관련 논문이 있다.

배재권

서강대학교 정보시스템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계명대학교 경영정보/경영빅데이터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위원, 한국글로벌경영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금융빅데이터분석, 비즈니스인공지능, 마이데이터산업 등이며, 이들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 대표 저서로는 금융빅데이터분석(카오스북, 2019),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비즈니스(박영사, 2020), 헬로,핀테크 금융플랫폼금융데이터(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0), 경영정보 시스템의 이해(한티에듀, 2022), 인공지능과경영(생능, 2023) 등이 있다.

손승우

미국 Wisconsin 주립대 로스쿨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산학협력단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단 및 법률컨설턴트,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간수출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까지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지식재산법의 이해』(2023), 『데이터법』(2022), 『산업보안법』(2021) 등 다수가 있다.

신경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로 근무한 후 현재 동대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주제는 디지털 통상과 무역을 위한 원조, 글로벌 가치 사슬 등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무역 발전을 위한 원조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엄도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네덜란드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에 관한 강의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기술과 관련된 표준 정책과 국제통상 등이다.

오준석

서울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뉴욕주립대에서 조세학을 공부했다. KOTRA와 와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국제조세 상담역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숙명여대 교수로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과 국제조세분야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주제는 국제조세와 디지털통상으로 OECD Tax Center에서 각국의 조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제조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주형

사법연수원 졸업 후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FTA, 한-EU FTA 등 주요 통상협정 협상, 조약법 등 국제공법, 기후변화 관련 국제환경법 업무를 담당하였고, 약 2년 반 동안 대법원 국제심의관으로 역임하며, 국제사법공조 및 국제사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정부부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법 및 국제통상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스위스에서 국제법으로 석사학위, 국내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디지털 통상과 국제법 관련 다수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EU 디지털 무역규범의 변화와 시사점', '미-일 디지털무역협정과 예외규정에 관한 소고', '디지털 무역상 원산지에 관한 연구', '디지털 통상의 국제규범화 현황과 쟁점', 'A Soft Landing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Non-Discrimination in Digital Trade: Possible Lessons from Asian Countries' 등 다수 논문을 발표, 디지털 무역 관련 법률실무뿐 아니라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희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동 대학원 사회학 석사, London School of Economics 정보시스템학 박사. 영국 브루넬대과 호주 멜번대 교수 역임. 연세대 '디지털 통상 연구센터'(미래융합연구원)와 '호주연구센터' 센터장.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을 역임. 기술표준과 표준화가 주요 연구분야이며, 이밖에도 '정보통신기술과 개발도상국'(ICT4D), 호주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 "표준으로 바라본 세상: 일상에서 만나는 표준의 정치경제학"(한울아카데미, 2020), "4차 산업혁명과 표준화: 사례 모음"(편저; 박영사, 2019)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표준의 지정학을 연구하고 있다 (The Geopolitics of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The Case of Open RAN", Telecommunications Policy, 2023).

정연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전문가로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 및 중국의 사이버 보안 규제가 주요 관심 분야이다.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와 개인정보보호 연구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개인정보보호단장, 북경 한중인터넷협력센터장 등을 역임하였다.

허난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LLM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고려대와 서강대 국제대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에 설립된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서 정부 및 기업에 국제통상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국제투자규범, 무역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

발 행 일	2023년 12월 20일
발 행 처	한국표준협회 www.ksa.or.kr
집 필	고보민(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곽동철(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곽주영(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배재권(계명대학교 경영정보/경영빅데이터학과 교수) 손승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신경림(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엄도영(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연구교수) 오준석(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주형(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희진(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연수(개인정보보호협회 전문위원) 허난이(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연구위원)
기 획	고장원(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 정성관(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사무관) 최동근(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 센터장) 조수민(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 연구원) 이정민(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 연구원)
편집·제작	거목정보산업㈜ ☎ (02)2164-3233

비매품

ISBN 979-11-92872-10-0 93500

저작권법에 의거, 본서의 내용을 무단 전재·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디지털 통상 교재 시리즈

〈1권〉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2권〉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3권〉 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
1. 디지털 통상 규범의 정립 2.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3. 구글, 5천만 유로 과징금 4. 넷플릭스와 OTT 서비스 분류 5. 사이버 만리장성과 디지털 검열 6. 온라인 도박 서비스의 국경 이슈 7. K-콘텐츠에 관세를 부과 8. 구글에 13억불 관세(디지털세) 9. 우버가 한국에서 불법(공유경제) 10. 디지털 융합 시대와 표준 11.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12. 디지털 통상과 개도국	1. APEC CBPR vs. EU GDPR 2. 공공데이터(지도)의 국경 간 이전 3. 금융분야 개인정보 국내 저장 의무화 4. 우리나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5.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산업 6. 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7.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통상 장벽? 8. 구글 인앱결제와 디지털 통상 이슈 9.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쟁 10. 넷플릭스는 무임승차?	[제1부] 디지털 통상 용어 1. 디지털 제품/서비스 2. 디지털 통상 및 비즈니스 촉진 3. 데이터 4.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5. 디지털 경제의 개방과 혁신 6. 디지털 경제와 사회 [제2부] 디지털통상협정/파트너십 용어

산업통상자원부
KSA 한국표준협회
93500
9 791192 872100
ISBN 979-11-92872-10-0
비매품